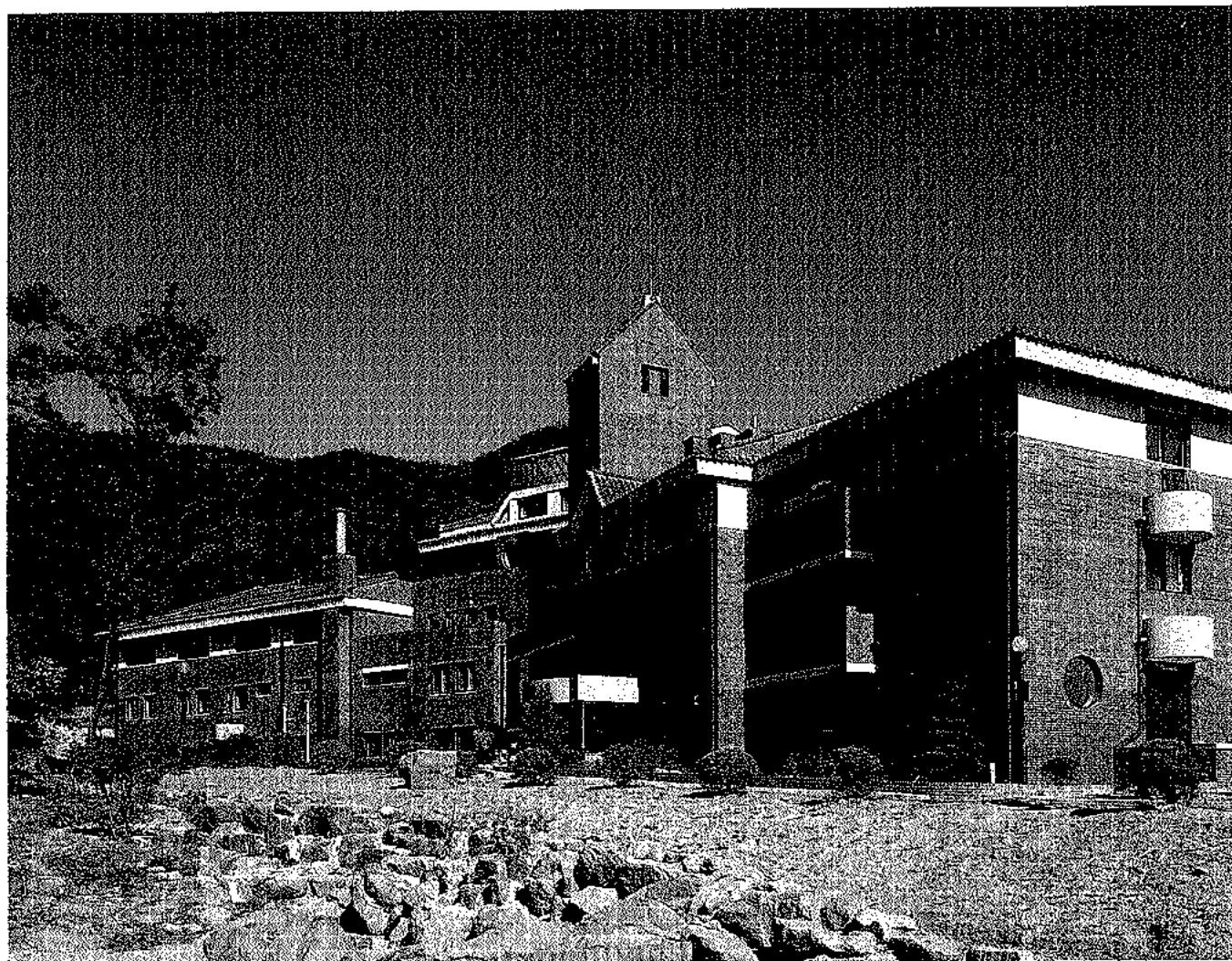


月刊 建築士 1994년 8월호
 통권 304호(매월 15일 발행)
 발행·대한건축사협회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65
 등록·1967년 3월 23일
 등록번호·(서)라-26
 1986년 12월 31일 제3종우편물
 (나)금인가

建築士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ugust 1994



칼럼

“건축신문”발간의 당위성과 방향/김규태

특별:

① 건 J 방화 대책/최진환
 ② 건 540.5 세 관한 외국 사례

회원: 대 92.7
 성묘: 304c.2

내한: |영희+민병훈+이석문
 경기: |+민병훈+이석문
 중앙: 경림건축
 옥련동: 다천장/송광섭
 포아동: 텁빌라/한재원+최병일
 목포: J씨 주택/한진수

회원갤러리

IMAGE(30×45)/최영진
 살기위한 집/윤여욱

좌담회

건축사사무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II)

기획연재

건축실무의 역사(I)/송 를

기 고

환경보전과 건축디자인/이경희

연 구

한국의 전통건축(I)/장순용

현상설계

화곡지구 아파트

8

AUGUST

發 行 人: 吳雄錫
 編 輯 企 劃: 編纂委員會
 委 員 長: 李俊憲
 委 員: 吳龍大, 李柱勳, 梁海潤,
 崔泰容, 李復, 金宗植
 編輯·取材: 弘報部/梁元錫, 鄭孝相,
 趙漢國, 李善模
 發 行 處: 大韓建築士協會
 (協會創立日: 1965年 10月 23日)
 住 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 便 番 號: 137-070
 電 話: 代表 (02)581-5711,
 581-5712~14
 팩 시 밀 리: (02)586-8823
 登 錄 番 號: 서울 라-26(月刊)
 登 錄: 1967年 3月 23日
 U. D. C.: 69/72(054-2): 0612(519)
 印 刷 人: 李鳳秀/正文社



표지사진: 성요한의 집
 (설계/민승립)

卷首	“건축신문” 발간의 당위성과 방향/金奎泰	22
<u>要目/목</u>		
[1] 건축설계시장의 국제개방화 대책/崔燦煥	24	
[2] 건축설계업과 건설시공에 관한 외국사례	32	
<u>解説特集(근작 + 주택)</u>		
성요한의 집/閔承烈	42	
대한투자신탁본점사옥/李永熙+閔丙勳+李錫文	48	
경기은행 수원지점/李永熙+閔丙勳+李錫文	52	
중앙투자신탁본점사옥/경림건축	56	
옥련동 다천장/宋光燮	60	
포이동 탑빌라/韓在源+崔秉日	64	
복포 J씨 주택/韓頃洙	68	
<u>解説特集</u>		
분당 K씨 주택/金錫桓	70	
<u>解説特集</u>		
관암장/禹時庸	72	
<u>解説特集</u>		
IMAGE(30×45)/崔永集	74	
살기 위한 집/尹汝郁	75	
<u>解説特集</u>		
건축사무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Ⅱ)/ 吳龍大, 金武權, 柳然昌, 安文孝, 李逢春, 鄭求榮, 鄭德薰	76	
<u>解説特集</u>		
건축실무의 역사(1)/宋 律	84	
<u>解説特集</u>		
환경보전과 건축디자인/李暉會	90	
<u>解説特集</u>		
한국의 전통건축(1)/張順鏞	100	
<u>解説特集</u>		
화곡지구 아파트	104	
<u>解説特集</u>		
1994년도 6월분 전국도서신고 현황	110	
<u>解説特集</u>		
1994년도 6월분 전국도서신고 현황	112	
<u>解説特集</u>		
전국지도건축사회 및 건축상임실 안내		
<p>■ 서울특별시건축사회/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 603-55, 581-5715~8, 서대문분회/서대문구연희동 169-25, 333-6411, 관악분회/관악구신길동 142-17, 882-6744, 도봉분회/도봉구수유동 191-13, 903-3425, 영등포분회/영등포구 당산3가 81, 632-2143, 강동분회/강동구성내동 317-4, 184-6840, 강서분회/강서구화곡동 1105-05, 604-7168, 송동분회/성동구구의동 252-16, 446-5244, 동대문분회/동대문구신설동 101-7, 623-0158, 종로분회/종로구수령 8-18, 735-1806, 미포분회/미포구성산동 275-1, 333-5251, 응암분회/송파구송파동 50-12, 423-9158, 중구분회/중구 2기 10-11, 279-1415, 용산분회/용산구원효로 121-29-22, 717-6607, 서초분회/서초구서초동 1623-1, 552-8468, 은평분회/은평구동원로 79-32, 388-1406, 동작분회/동작구사당동 206-6, 815-3026, 강남분회/강남구논현동 242-30, 517-3071, 노원분회/노원구상계1동 707-4, 633-8076, 양천분회/양천구신정동 1027-9, 653-2892, 등장분회/등장구민족동 166-46, 437-7356, 신북분회/성북구삼선기 110, 922-5117, 구로분회/구로구구로동 88-4, 852-2275</p> <p>■ 부산지역건축사회/부산시진구남천동 807-18, 28 (051)634-4979~9</p> <p>■ 대구지역건축사회/대구직접시수선구번어동 321-6, (053)753-8990~5</p> <p>■ 인천직접시건축사회/인천직접시남동구간석1동 568-1, (032)437-3381~4</p> <p>■ 광주직접시건축사회/광주직접시복구중흥동 694-0, (062)521-0025~6</p> <p>■ 대전직접시건축사회/대전직접시 중구나동동 487-1, (042)256-9550~4</p> <p>■ 경기도건축사회/경기도수원시매산로 371-24-5, (031)47-6129~30, 각할분회/경기도수원시매산로 371-24-5, (031)43-6652, 7072, 안양분회/안양시 일산 522-5, (034)45-2898, 부천분회/부천시 송내 1동 88-1, (032)664-1554, 성남분회/성남시수정구내평동 3407, (034)755-5445, 의정부분회/의정부시의정부동 182, (035)1876-0458, 용인분회/용인시서장동 343-22, (033)666-6153, 고양분회/고양군위성주교 388-16 콘트, (034)463-3902, 구리분회/구리시수택동 409-2, (034)63-2337, 이천분회/이천군이천읍증리 192-1, (033)635-1545, 광명분회/광명시 철산동 200-2, (02)681-5845, 안산분회/안산시고잔동 536-1, (034)80-9130, 시흥분회/(032)694-1121, 양주시 100-2, (031)54-2442, 원주분회/원주시 중앙 60-54, (037)43-7290, 강릉분회/강릉시상내동 6-14,</p>		

COLUMN

<i>The Necessity and Purpose of Architecture Newspaper/Kim, Kyu-Tae</i>	22
---	----

SPECIAL ISSUE

[1] The Counterplan for Internationalization of Architectural Design Market/ Choi, Chan-Hwan	24
[2] Instances of Each Country for Design and Build	32

WORKS

House of St. John/Min, Seung-Ryeol	42
Taehan Investment Trust Head Office/Lee, Young-Hee/Min, Byeong-Hoon & Lee, Suk-Moon	48
Kyeonggi Bank, Suwon/Lee, Young-Hee/Min, Byeong-Hoon & Lee, Suk-Moon	52
Chung-ang Investment Trust Head Office/Junglim Architect's & Engineers	56
Dhachun Residence/Song, Kuwang-Sub	60
Poi Top Villa/Han, Chae-Won & Choi, Byeong-Ill	64
Mokpo J's Residence/Han, Jin-Su	68

PROCESS WORK

Mr. K's House in Puntang-gu/Kim, Suk-Hwan	70
--	----

EXHIBITION

Kwan Am Jang/Wooh, Shi-Yong	72
------------------------------------	----

CALENDAR

IMAGE(30×45)/Choi, Young-Jip	74
House for the Sake of House/Yun, Yeo-Wook	75

DISCUSSION MEETING

The Problem of Architect's Office & Course of Improvement (II)	76
Oh, Yong-Boo/Kim, Moo-Kwon/Ryu, Yeon-Chang/An, Moon-Hyo/ Lee, Bong-Chun/Cheong, Ku-Young/Cheong, Teok-Hoon	76

REPORT

The History of Practical Architecture Business(I)/Song, Yul	84
--	----

FEATURE

Environment Protection & Architecture/Lee, Kyeong-Hoe	90
--	----

REPORT

Houses of Kang-neung Province(I)/Chang, Soon-Yong	100
--	-----

DISCUSSION

Hwagok-District Apartment	104
----------------------------------	-----

CULTURE

Architectural Art	110
--------------------------	-----

ARTICLES

Architectural Art	112
--------------------------	-----

(031)141-7371 · 속초분회/속초시동명동466-63 · (030)133-5081 · 삼척분회/삼척시남양동55-43 · (039)31-8708 · 영월분회/영월군영월읍영월1
리960-12, (0373)374-2659

■ 충청북도건축사회/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3가87-3, (043)56-2752, 53-7342 · 충주분회/충주시역전동673-1, (041)347-3082 · 청천분회/제
천시의원동8-3, (043)43-6253 · 익산분회/익산시 익천읍삼양리222-206, (0475)33-3502

■ 충청남도건축사회/대전직할시증구대통령52-2, (042)256-4088 · 천안분회/천안시문화동160-1, (041)551-4551 · 홍성분회/홍성군홍성읍
오관리238-1, (041)32-2755 · 부여분회/부여군부여읍동남리203-1, (043)335-2217 · 대전분회/대전시내 칠동197-10, (042)34-3307 · 서산
(045)64-2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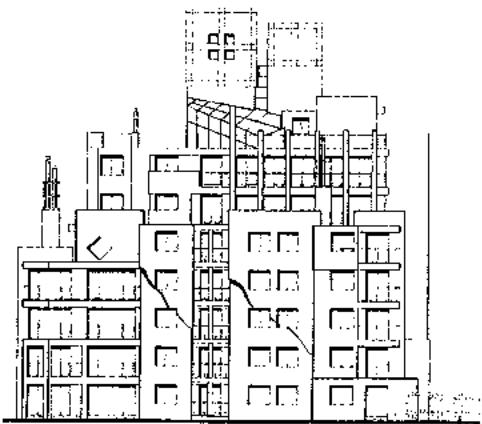
■ 전라북도건축사회/전주시 완산구 날로중앙 531-1, (062)187-6007~8 · 어진분회/이리시남중동1277-21, (065)52-3796 · 군산분회/군
산신창동35-4, (064)43-3816 · 남원분회/남원시 하정동 59-1, (061)32-5000

■ 전라남도건축사회/광주직할시구회장동783-238(주선회관), (062)346-7567, 33-9044 · 목포분회/목포시내안동1, (061)72-3349 · 순천분회
/순천시장전동51-1(061)743-2457 · 여수분회/여수시금정동411번지, (062)652-7023

■ 경상북도건축사회/대구직할시동구신천4동338-1, (053)742-8317~8 · 포항분회/포항시 북구 도동43-8, (052)44-6023, 45-1664 · 경주분회/경주시
시동천동801-1, (051)2-4710 · 구미분회/구미시송정동34-3, (054)6151-1537~8 · 안동분회/안동시서부동157-4, (051)54-5703 · 김천분회/김
천시남산동24-2, (054)434-2541 · 영주분회/영주시 하정3동941-12, (052)54-5580 · 청도분회/경주시봉암동280-3, (053)53-6677 · 상주분회/
상주시남성동36-7, (052)32-5868 · 경산분회/경산시 중방동539-5, (053)812-6721 · 달성분회/달성군화원읍 산내리113-3, (053)634-6336 · 영천
분회/영천시청구동25-10, (053)31-8256

■ 경상남도건축사회/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3기-47, (051)46-4530~1 · 울산분회/울산시남구신정동585-6, (052)74-8836 · 진주분회/진주시
봉정동 20, (051)745-6103 · 충무분회/충무시서호동163-18, (055)165-7420 · 김해분회/김해시부원동611-1, (052)35-5692 · 밀양분회/밀양
시내일동392-1, (052)355-4848 · 거창분회/거창군기장읍풀양리274-1, (059)43-6000 · 양산분회/양산읍양산읍남부동467-19, (053)
84-3060 · 거제분회/거제군신협읍고현리139-2, (0558)635-3432 · 삼천포분회/삼천포읍동금동91-6, (053)33-9779

■ 제주도건축사회/제주도제주시2도1동1289-6, (064)52-3248 · 서귀포분회/서귀포시서귀동299-6, (064)62-2223



“건축신문”발간의 당위성과 방향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Architecture Newspaper

金奎泰/본 협회 이사, 신문발간위원회 위원장

by Kim, Kyu-Tae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수 년 전에 율곡 이이 선생은 섬나라 일본의 정세가 심상치 않아 조선을 침략할 수도 있으니 서둘러 군사를 모집하여 대비해야 한다는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다. 이 건의를 접한 조정은 전위를 파악하기 위해 두 명의 정보원을 일본에 보내 정세를 살펴보게 했다. 그런데 장기간 동안 적정을 분석한 후 귀국한 두 정보원의 정세분석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한 사람은 일본의 정세가 심상치 않으니 서둘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보고였고, 다른 한 사람은 일본이 내부의 혼란상황으로 인해 난국을 맞고 있기 때문에 군사를 일으켜 조선을 침범할 역량도, 의사도 없다고 보고했다.

두 정보원의 서로 판이한 보고를 접한 조정은 후자의 보고를 근거로 양병설을 무시해 버렸다. 수 년 후 일본은 자국의 혼란으로 인한 민심 수습방안을 이웃나라를 침략함으로서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조선을 침략했다. 이 결과 조선은 일본군대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당하게 되는 대전란을 무방비 상황에서 맞게 됐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만약 두 정보원이 10만 양병설 당위론을 함께 인식하여 보고했다면, 아니 두 정보원의 판이한 정세 보고를 접한 조정이 전자의 정보에 가치를 두어 10만 양병설을 결정했다면 어떨했을까?

임진왜란이란 말 자체가 생겨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민족의 운명이 현재와 같은 모습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최소한 임진년이 후세 사가들에 의해 치욕의 역사로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임란의 역사적 교훈은 정보의 가치와 정보분석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함과 동시에 의미상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여전히 중요성을 강조한 율곡 이이선생의 이 글귀를 다시금 크게 느끼게 한다.

“백성의 말길(言路)이 막힐 때 나라는 망하나니 그것은 하루도 막을 수 없다. 온 백성이 다 옮다고 동의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國是이다.”

신문발간에 즈음하여 이처럼 장황한 서설을 논하는 이유는 향후 창간될 협회 신문이 언론 본래의 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창간의 의미를 곱씹어 보자는 생각에서이다.

시대흐름에 따른 사회의 변화는 필연적 과정이며, 유형·무형의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사회조직의

자기변신은 역시 당연한 이치이다. UR의 타결로 국내 건설시장이 올해부터 외국업체에 문호를 개방한다. 1월부터 일반기업이 빗장을 푸는 것을 필두로 96년부터 외국 건축사가 국내 건축사와 공동 계약의 경우 개방이 허용되게 된다. 물론 지금까지의 국제 경쟁도 치열했지만 그동안 우리 서비스 분야는 보호장벽이 쳐져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경쟁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국경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같은 시대변화를 가능케 했던 힘은 바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의 혁명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정보를 생산, 가공, 공급하는 정보통신을 갖추지 못해 왔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시대변화에 동참할 수 있는 정보통신 바로 언론의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나온 시간을 반추해 볼 때 우리 건축계도 외형적으로는 거대조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외형성장에 가리워진 많은 내적문제를 안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시대가 변했고, 주변환경이 변해가고 있듯이 이제는 건축계도 변해야 한다. 건축계내에 만연하고 있는 개인주의 사고의 팽배, 외부에 대한 조직적 힘의 결여, 부당한 피해의식 등을 공개된 장으로 끌어내어 건설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발전적인 건축의 미래상을 이루어 내어야 한다.

여기서 신문발간의 일차적 필요성이 제기된다. 협회가 발간하고 있는 기존 월간 건축사지가 일정정도 회원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으나,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절한 주제, 주장을 펴기에 마흡한 Document(자료)성 역할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격변기 국내, 외에서 가해지는 유형, 무형의 압력에 맞서 5천여 건축사의 권익을 옹호하고 여론을 이끌어 갈 Opinion leader(여론 선도자)로서 건축신문발간의 의의는 상당히 크리라 본다.

특히 오늘날 과학기술의 빌랄로 인간의 생활공간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고, 이에 따른 가치관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수요자는 정보의 다양성과 차별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회발전에 따른 기술적 가능성의 증가는 사회의 분업화, 전문화를 가속화 시켜 전문적인 정보의 필요성을 한층 높여 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신문은 획일적이고, 규범적인 기준의 신문체계는 다른 형태, 즉 개별적이며 선별적인 정보의 제공을 가능케

고도정보화시대의 언론기능은 정보의 홍수현상속에서 인간의 사회활동에 유효한 정보를 적절하게 선택, 정리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가 넘쳐흐를 수록 이를 공급하는 언론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고 볼 때 현대사회에서 정보전달 수단으로서 신문은 인간의 혈관구조와 같은 기능을 한다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혈관이 막히면 동맥경화증이 생겨 생명을 위협하듯이 조직의 개별 의견이 조직내에서 공유되지 못하고 제한 받는다면 그 조직은 죽은 조직에 다를 바 없다.

하는 전문지 형태가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창간될 건축사 신문은 회원의 개별정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그 욕구를 전전하게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신문발간을 실무에서 준비하고 있는 필자는 창간될 건축신문이 건축계의 다소 폐쇄적인 기존의 논의 구조를 공개된 장으로 끌어내어 건축계 발전과 건축인의 단합을 위한 촉매적 역할을 다하리라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은 신념을 가지고 신문발간에 임하고 있다.

먼저 건축 신문은 건축사뿐 아니라 나아가 건축계의 전전한 발전을 위해 곧은 소리를 내는 신문이 되어야 한다. 이론바 “正論”을 펼쳐야 한다. 특정 단체만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건축인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곧은 소리를 내어야 한다. 나아가 건축계 뿐만아니라 사회의 전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문의 취재영역이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신문의 모든 지면은 주의. 주장의 차이에 상관없이 전 건축인에게 개방되어야 하고, 간접하고 건설적인 정보 공유의 열린 장이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건축인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정보 보고의 전문신문이 되어야 한다. 현대사회는 극도로 세분화되고 전문화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전문 정보지를 지향하는 협회신문은 회원들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 및 지식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술과 지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고도의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언론인의 직업윤리로 분석되고 걸려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문은 건축사는 물론 건축계가 지향하는 바를 대내·외에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대변적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집단 이기를 실현하기 위한 맹목적 대변기능이 아니라 전문인으로서 건축사 및 건축종사자의 사회 기여도를 대외에 바르게 인식시키는 참 의미의 대변기능을 다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신문발간의 정신에 기초하여 건축사 신문이 진정 전 건축인의 신문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방향, 다시 말해 보도방향(기준)이 정해져야 한다. 건축사협회를 정점으로 전 건축계가 상하 논의 구조를 원활하게 유지하여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시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문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보도방향(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 조형 창작 예술인으로서 건축사가 창의력을 발휘하여 건축문화 창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언론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한다.

둘째, 기술개발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 전문인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축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건축정보언론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한다.

셋째, 국민의 쾌적한 생활공간과 환경의 개선을 위해 건축사가 성실히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건전한 여론을 주도하는 생활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

넷째, 우애와 신의를 바탕으로 건축인이 서로 결속하여 건축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촉매적 언론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의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건축사의 올바른 위상을 알리는 홍보언론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

고도정보화시대의 언론기능은 정보의 홍수현상 속에서 인간의 사회활동에 유효한 정보를 적절하게 선택, 정리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가 넘쳐흐를 수록 이를 공급하는 언론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고 볼 때 현대사회에서 정보전달 수단으로서 신문은 인간의 혈관구조와 같은 기능을 한다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혈관이 막히면 동맥경화증이 생겨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듯이 조직의 개별 의견이 조직내에서 공유되지 못하고 제한받는다면 그 조직은 죽은 조직에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신문발간에 즈음한 전 건축인의 절실했던 바램에도 불구하고 신문발간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의 문제와 주변여건의 변화로 인해 연초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신문발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지만 더 좋은 결실을 위한 작은 아픔으로 안위하며 건축사협회 창립 30여년 만에 갖게되는 신문이 진정한 건축언론으로 탄생하여 건축계를 결속하고 나아가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보듬고, 다듬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다.

건축설계의 국제개방화 대책

The Counterplan for Internationalization of Architectural Design Market

崔燦煥/서울시립대 교수

by Choi, Chan-Hwan

1. 서론

우리나라 건축계는 1960년 이후의 공업화, 도시화, 고도경제성장 등으로 이어지는 커다란 변혁의 시대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경제, 사회의 발전에 힘입어 실로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일제치하, 해방과 사회적 혼란, 전쟁과 전후 복구사업 등으로 어려운 여건을 겪었고 60년대초에 1인당 국민소득이 70달러에 불과하였으나 93년에는 1인당 GNP가 7400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약 30년동안 100배 이상에 해당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더구나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해외건설의 진출 경험은 1970년대 중반의 중동 건설붐을 맞게 되어 국가경제 성장에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80년대에 원유가 하락과 함께 중동에서 건설의 특수붐이 퇴조하면서 우리나라 해외건설경기가 어려움을 겪은 반면 200만호 주택건설정책은 상대적으로 국내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건축설계부문은 기능공의 장인 정신으로 전수되어오던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왔으며 일제시대 조선대서사 취체규칙(朝鮮代書土取締規則)에 의거하여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건축대서사제도가 시행되었다. 그 후 1963년 12월 16일 건축사법이 제정, 공포되어 종전업무수행자를 인정하는 등으로 건축사제도를 확립하여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업무를 업역으로 규정하는 법적 보호장치와 전문화를 기하게 되었다.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축물량도 대폭 늘어났으며 건축사업무도 함께 늘어나게 되었다.

우리나라 건축계가 설계와 공사감리를 업역으로 하는 설계사무소와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회사로 업역을

분장하여 업무의 전문화와 함께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도록 오랫동안 시행하여 왔다.

그간 국내건설시장은 설계와 시공을 막론하고 거의 보호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시공의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대외 경쟁력을 가진 성장산업으로 국가 경제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해와 대외 지향적이고 진취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국내 설계용역 부문은 창의적 디자인, 기술수준, 자본 등에서 외국업체에 비해 열악한 실정일뿐 아니라 영세 소규모로 운영되는 자영용역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여 대외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 영세 설계사무소가 난립하여 건설시공부문과는 반대로 외국에 진출하기는커녕 외국의 설계사무소가 국내 대형 건축물의 설계를 맡게되어 국내설계 용역시장을 잠식당하게 되는 수세(守勢)에 몰려있는 형편이다. 대외적으로 국제화, 개방화의 거센 물결과 싸워야 하고 국내적으로는 고유업무 이외에 행정위탁업무의 확대, 감독 및 처벌의 강화, 지나친 행정규제와 함께 까다롭고 복잡한 인·허가 업무의 대행, 건축사의 자격강화, 기술 및 기능인력의 부족, 잦은 정책과 제도의 변경, 통제된 저가의 보수요율, 과당한 수주경쟁과 덤핑, 이로 인한 부실설계와 설계의 질적수준저하, 국민들의 설계에 대한 인식 부족 등 복잡하게 얹혀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매우 어려운 현실여건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빛어지고 있는 공사감리 업무의 분장, 종합건설업면허로 설계권을 요구하는 건설회사의 고유업무에 대한 논쟁 등 건축설계업이 최대의 시련과 위기를 맞고 있는 느낌이다. 여기서는 이와같은 현상의 여러 여건과 어려운 문제점을 살펴보고 건축설계가 국제화, 개방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그 바람직한 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건축설계의 개념과 현황

건축활동은 크게 기획(Programming), 계획(Planning), 설계(Design), 시공(Construction)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기획은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업의 타당성, 시장분석, 사업의 내용과 규모, 투자 등 기본적이고 전략적인 것을 다루며 건축주 또는 별도의 전문업체가 담당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설계자와 시공자 등 각 전문업역의 협조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전문업자(General Contractor)가 담당할 수도 있다.

계획은 기획을 보다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꾸고 건축주와 설계자가 상호협의하에 진행하는 설계의 전 단계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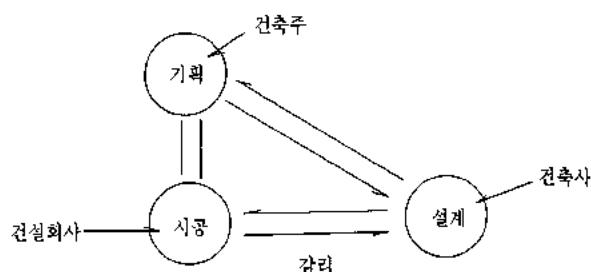
설계는 계획내용을 형태화시키는 작업이며 이는 디자인이라는 조형예술적 창작활동과 기술적인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시공은 설계에 따라 건축물을 구축하는 작업으로서 기술경제성을 위주로 한다.

위에서와 같이 건축물을 만드는 4단계를 고찰하여 보았을 때 각 단계가 업무성격의 특성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면 세부업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겹치거나 뚜렷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계획을 기획과 설계의 중간과정으로 본다면 기획-설계-시공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종합적인 용역 수행자제도가 발달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보면 건축주가 외부의 전문연구업체에서부터 기획업무를 발주하든지 건축주 스스로가 기획을 담당하게 된다.

건축설계는 건축사 자격면허를 가지고 등록된 건축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전문화하여 법으로 그 업역을 보호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등록된 건설회사가 시공할 수 있도록 건설법에서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3자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 업무와 주체

기획에 맞추어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와 맞추어 시공을 해야 한다. 즉, 기획 또는 계획은 설계를 제어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시공은 설계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설계와 시공은 건축주로부터 별도로 발주를 받아 시행되는 별개의 업무이며 건축주가 비전문가로서 설계된 도서에 따라 시공을 발주할 경우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공자에게 설계의 내용을 전달하고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현장에서 보완적 설계를 하거나 설계의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공자의 의견을 건축주에게 전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된다.

공사감리는 건축주와 시공자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는 보완적인 과정으로서 설계감리와 시공감리로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 설계감리는 설계자가 필수적으로 담당해야 하며 시공감리는 시공관리의 일부로서 건설회사가 자주감리를 하고 설계자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역할분담과 함께 업무구분을 뚜렷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관계에 따라 업무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하게 되어 설계 및 설계감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가 시공 및 시공감리는 건설법에 의한 건설회사가 전담하며 시공감리는 건설회사가 하되 설계자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1) 건축활동의 본질

건축은 문화적 요소로서의 조형예술성을 주로 하는 디자인과 경제성을 위주로 한 기술과 자본이 함께 결합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종류, 성격, 내용에 따라 그 비중의 경량은 있겠지만 결코 어느 하나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보아 조형예술성은 디자인이라는 설계작업을 통하여 깊이 있게 이루어지며 기술경제성은 시공과정에서 보다 심도있게 취급되어 진다. 따라서 설계업무를 주도하는 건축사무소는 조형예술을 근간으로 하는 창작활동이 주가 되는 반면 건설회사는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이익추구의 경제성논리에 의거 시공기술에 치중하게 마련이어서 각기 특성을 가진 설계와 시공이 건축활동의 영역에서 균형과 조화를 가지면서 상호보완하고 협동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작활동은 자본과 규모, 조직의 논리보다는 작가개인의 정신적 작업과 능력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보장된 독자적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여 그와 같은 분위기와 여건위에서 성숙될 수 있다. 물론 전문화 고도화된 오늘날, 개인작가의

독자적인 활동만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설계에 관련된 여러 분야의 협동조직과 여러 작가의 협업적 공동작업이 수반될 때도 많지만 조형예술을 창작하는 근원은 작가의 창작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활동이며 이를 살릴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 예술활동의 예를 비추어 보아도 명확하며 동서고금을 통하여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한편 건설회사는 경제성을 추구하는 기업정신과 조직으로 시공관리와 기술, 자본과 인력 그리고 시스템의 운영을 위주로 하고 있다.

설계라는 조형예술의 창작이 “무엇을” 그리고 “어떤것을” 만들 것인가는 점을 추구한다면, 시공은 주어진 도면을 건립하는 방법 즉,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과업의 목적을 두고 있다. 건설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설계와 시공을 건축활동의 한울타리안에서도 당연히 독립된 다른 성격의 업역과 분위기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점을 근거로 설계와 시공에 대한 업역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설계와 시공의 업역 차이

설계	조형예술성, 작가의 창의적 정신과 Design Oriented, 작품 성추구, 공공성의 강조
시공	기술성, 경제성 자본과 기술중심의 Engineering Oriented로 이용추구의 상업성의 강조

그러므로 현행의 업역구분이 상호의 업역을 존중하고 보호해주는 가운데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고 외국의 예도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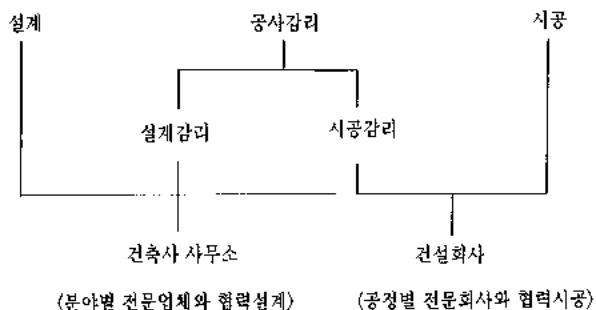
2) 설계와 시공업무의 성격

하나의 건축물이 세워지기까지는

「설계—공사감리—시공」으로 이어지는 건설과정을 겪으며 이 과정에서 업무의 특성에 따라 업무의 담당과 그 역할이 부여된다. 또한 설계라는 창작과정도 여러 과정을 거치며 건축외적인 여러 분야의 협력과 분화가 필요할 뿐 아니라 설계과정에서도 구조, 설비, 조경, 토목 등 여러 전문분야와의 협력설계가 필요하다.

시공은 설계의 내용에 따라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이므로 인력, 자금, 공정, 자재 등의 시공관리와 품질관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여러 공정별 전문화된업체를 거느리고 현장을 통제관리한다. 또한 설계와 시공의 가교적 역할로서 공사감리라는 업무가

필요하다. 이는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그 설계의도와 설계기술을 시공과정에 전달하고 설계의 현장적용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 확인하고 보완하는 설계감리와 시공감리를 하며 시공업자는 시공관리에 대한 자주적 시공감리로 설계에 필요한 시공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을 설계에 전달하는 상호 기술교류와 협력 그리고 상호조정과 견제를 하게 된다.



〈그림 2〉 설계와 시공업무의 성격 구분

〈표 2〉 설계, 시공의 업무 성격

구 분	업 무	타분야와의 협력
설 계	기획, 계획, 기본설계, 실시 설계, 건축외적인 분야와 협력설계, 설계감리	설계의도와 설계기술을 시공과정에 전달, 여러 전문분야와 협력(구조, 설비, 조경, 토목 등)
시 공	설계의 내용에 따라 건축물의 건립—시공관리, 품질관리, 현장에 대한 통제관리, 시공감리	시공관리에 대한 자주적 시공감리로 설계에 필요한 시공기술개발, 새로운 기술을 설계에 전달

3) 건축설계사무소 현황

1994년 초를 기준으로 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는 4,000여명 단독 건축사 사무소는 1,900여개, 종합 건축사 사무소 600여개사에 건축사 2,100여명이며 93년을 기준으로 설계건수 146,171건이며 면적은 124,107,497m²이며 건축사 1인당 평균 건수는 34.8건, 면적은 29,563.48m²로 되어 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감리전문회사가 90여개사로 되어 공공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축설계의 용역 시장규모가 넓어 8,000억~1조 2,00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1개 설계사무소의 연간 평균 수주액이 2억 5천만원~4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연도별 설계물량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과당경쟁으로 보수요율보다 낮은 설계비로 덤핑수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정확한
건축설계시장의 규모를 추정하기가 어렵다.

4) 설계사무소와 건설회사의 제휴

설계사무소의 설계와 건설회사의 시공은 그
업무성격상 뚜렷히 구분되고 있어 상호보완적 협력자가
될 수 있다.

설계사무소와 건설회사는 각기 예속될 수 없는
독립성을 가지고 독자적 업무수행을 하면서 전문화
되어야 한다. 전문화를 위해서는 경쟁보다는 상호
협조적 동반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역의 논리도
성립된다.

설계와 시공은 경쟁적 상대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그리고 공생공존의 관계를 가진 협력자이다.
설계사무소와 건설회사의 제휴와 협력(Partner ship, Joint
venture, Consortium)등은 업무의 수직계열상
당연하겠지만 최근에 해외건설시장에서 경쟁적 상대자인
건설회사 상호간이 필요에 의해 제휴,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특이한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말레이지아 최대 최고의 복합빌딩인
KLCC쌍둥이 빌딩을 삼성건설과 극동건설이 공동으로
수주하였고 싱가풀의 Suntec City프로젝트에 현대건설과
쌍용건설이 공동수주하는 등 한국업체간의 공동수주가
있는가 하면 외국 건설회사와의 제휴, 현지국가의
건설업체와의 제휴 등 다양하게 결합 하고 있다.
대형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하면 위험도 크기 때문에
국내업체간의 수평적인 합작과 수직적으로는 하청형태로
공동참여함으로써 위험의 분산, 책임시공의 분위기
확보, 과당경쟁의 지양, 업체의 공존공영 등을 도모하고
있다.

치열한 수주경쟁에서는 상황에 따라 경쟁자와
제휴하여 동반자로 공생하게 된다. 따라서 국내
건설회사간의 긴밀한 정보 교환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해외건설협회, 건설협회 등의 여러 관련
단체가 적극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건설회사는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값진 경험과 많은
실적과 명성 그리고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화의
감각을 익혔을 뿐 아니라 자금과 조직력을 십분
활용하여 해외 시장개척에 유리한데 비해 설계분야는
여러면에서 극히 취약하다. 따라서 오늘날의 세계
건설시장 수주경향이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건설회사와 설계사무소의 보다 긴밀한 협력 동반관계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설계는 고부가가치를 가진 아이디어와 기술을
생명으로 하는 시공의 전위 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외국설계에 경험이나 실적이 있고 진출을
희망하는 설계사무소가 집합하여 정보, 인력 등을
공유하여 기술축적을 하고 이를 전략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는 특성화, 방안이 강구됨직하다.

또 하나는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교포 건축가와
제휴하여 상호정보와 기술교류를 증대하면서 해외시장의
개척과 함께 국내시장을 보다 유리한 방향에서 보호적
개방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

여기서 한가지 언급할 문제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고 종합건설업면허로서 건설회사가 설계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간단히 논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건축사사무소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와 공사감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건설업법에 의한
등록업체가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기 업역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관련법으로 이를 보호하여 왔다. 이는 오랜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업역의 구분이며 그에 따라 건축분야가
상호협력과 보완 그리고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 설계용역업 분야도 다양한 업종의
전문설계사무소로 특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건설회사도
엔지니어링 기술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시공회사의 형태를 벗어나 여러 분야의 고급기술자를
보유하고 기술경쟁에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고도의 종합기술을 요하는 공장이나 특수 공법의
공사 등의 설계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건축사사무소는 소자본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서 건축조형예술을 창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설회사는 건설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자체
설계조직을 두거나 인·허가를 할 수 있는 설계권을
가지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설계업무를 설계사무소에
하도급관리하는 형식으로 관리하겠다는 생각이
농후하다. 그 깊은 의미를 헤아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설계를 본연의 주업무인 시공에 연결시키고 이를
제어(control)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종래의 단순공사발주가 아닌 투자를 동반한
기획에서부터 유지관리까지 기획, 개발형 공사발주가
많아짐에 따라 사업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계가 시공발주를 위한 필수적인 사전과정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시공기술의 설계에의 환류, 설계시공의 일괄발주에 대한 대비, 자본과 조직 그리고 경영으로 대형화하여 개방화에 대비 자유경쟁의 원리 등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설계사무소는 건축의 문화예술성, 디자인 설계와 감리 그리고 시공의 특성차이나 역할 분담이 상호보완 및 견제, 독점적 지배에 의한 수직계열화 보다는 전문성을 살린 협력, 중소기업 업역보호, 자체에서 설계인력을 고정적으로 확보하기 보다는 과제에 따라 협력자를 외부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협력체계의 구축, 설계와 시공의 독자성 확보, 설계가 건설공사의 수주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업역의 분리와 보호의 당연성과 합리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의 이면에는 상호이해의 부족과 이기주의 견해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는 생각하기에 따라 경쟁자가 아닌 상호 공존공생하는 협력 동반자로 반전할 가능성이 있다.

건설회사가 영세규모의 설계사무소에 대한 설계능력을 믿지못하는 깊은 불신감이 있는가 하면 설계사무소는 대자본을 가진 건설회사가 소규모 설계사무소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경쟁적 입장에서 자본과 조직으로 공략하게 될때 도산하게 되거나 건설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된다는 위기 의식이 팽배해 있다.

건설회사는 설계능력도 없이 건축허가를 대행하는 소위 “허가방”이라 불리는 곳을 설계사무소의 이미지와 연결시키고 있는가 하면 설계사무소는 자본지배와 이익추구의 기업활동을 하는 건설회사가 설계업무에 경쟁적 상대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과 설계가 시공의 하도급관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기본 논리를 앞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심하게는 덤펍과 부실시공을 일삼는 무등록 시공업자인 “집장사”的 형태와도 연결시키기도 한다.

건설회사와 설계사무소는 상호간에 이해하지 못하는 불신과 업종의 전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경쟁 그리고 단절의 범위를 넘어선 반목으로 까지 가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각자 고유업역의 특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동반자와 협력자로서 상호보완하며 이해와 신뢰속에 공존공생하여야 한다. 건축설계는 창의와 예술이라는 경제활동이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거나 고집할 수 없다.

3. 건축설계의 환경변화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국제화, 개방화, 복합화, 다원화의 시대이며 건축설계분야도 이와 같은 여건변화에 따라 전문화, 고도화하여 기술과 경영에서 새로운 준비와 각오를 새로 하지 않으면 건축설계부분도 국제경쟁력을 잃게 된다.

건축설계용역업도 96년에 민간부문이 97년부터는 공공부문이, 개방될 계획으로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경제수준, 국민의식수준이 높아지며 생활여건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건축사업무인 설계 및 공사감리의 강화, 보수요율의 조정, 지방자치제와 권한 위임, 규제완화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건축설계업은 설계물량이 소규모이고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무특성으로 인하여 국내에 등록된 건축사사무소가 대부분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며 일부 대형건축물이나 특수한 건축물은 외국의 설계사무소가 기본설계를 하고 국내 설계사무소와 제휴하여 실시 설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예도 있다.

건축설계업의 개방화는 곧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가지 조치와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국내 건축설계업의 현황진단을 토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과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의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국제화, 개방화는 건축설계부문에서 전문화, 고도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관행화하여 왔던 설계와 시공의 분리발주가 일괄발주(Turnkey Base)로 되는가 하면 설계된 부분이라도 공사의 절을 유지하면서 공기를 단축하고 공사비도 저렴하게 하도록 시공자가 그 동안의 시공경험과 기술개발을 하면서 노력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주처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연구검토하는 Value Engineering의 수주방법, 충분한 설계시간을 가지지 못하면서 조기 공사발주를 하게 될 때 설계자가 대략적인 개념설계(Skematic, Conceptual Design)를 하고 설계와 시공의 실력과 신용을 전제로 수주를 하는 Semi-Turnkey 방법인 Fast Track방법 등 다양한 발주방법을 택하고 있다.

즉, 디자인과 기술을 기본전제로 하여 고품질의 건축물을 비용, 시간을 단축시키도록 요구하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지금까지 폐쇄된 국내 건설업계에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건축설계도 이에 대비한 방안을 마련하고 발빠른 변신을 해야만 무한

경쟁체제에서 자기 생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여건은 종래의 설계와 시공이라는 독립된 영역이 지금 보다 훨씬 긴밀한 관계로 좁혀지고 있으며 건설업계에서는 일부 건설회사가 이를 이유로 종합건설회사(General Contractor)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으며 EC(Engineering Construction)화를 부르짖고 있다. 건설산업은 디자인과 기술력 그리고 경영전략에 따라 성패가 달렸다고 볼 수 있다.

디자인은 우수한 설계능력을 가지고 국제적인 명성이나 인지도를 가진 건축가 또는 설계조직을 양성 또는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적인 건축가와 설계조직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서 시공에 비해 건축설계가 절름발이가 되어 있어 건축설계시장이 개방화되면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될 뿐 아니라 건설회사가 국내 공사의 수주를 위하여 국내 설계회사를 배제하고 외국의 유수한 설계회사와 제휴함으로써 설계사대주의에 젖어있는 한국적 사고와 풍토 하에서 건설회사가 건축설계용역의 수입업자가 되어 지원 육성해야 할 국내설계업체에 차명적인 타격을 입히지 않을까 하는 일부의 우려도 있다.

건축설계가 국제무대에서 설계분야에 활약할 여건도 마련되지 않았고 국내시장에 안주하여 해외에 눈을 돌리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국외에 진출하여 크게 번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축설계사무소가 국제 설계의 경험이나 실적이 거의 없다는 점은 설계의 국제화가 취약하다는 것을 뜻할 뿐 아니라 설계와 시공의 동반자 관계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등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못나고 능력이 모자라도 상호이해하고 끝까지 동반자가 되도록 감싸고 육성하는 넓은 아량이 필요하며 설계사무소도 스스로 자신을 키워서 대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4. 건축설계사무소의 문제점

국내 건축설계사무소가 대외경쟁력에서 취약한 몇 가지 주요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시장이 영세하고 해외시장개척을 도와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대 건축의 역사가 일천하고 건축문화가 초보적인 발전단계에 불과하여 건축설계를 위한 여러가지 여건이 미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유명한 건축가와 그들의 작품이 거의 없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료, 방화, 기술적 기준 등의 여러관련 코드에 대한 정보도 미흡하며 건축설계의 국제화에

무관심하거나 기술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와같은 문제가 건축설계의 사대주의 경향을 부추기고 조그마한 국내시장에서 과열경쟁을 일으키며 건축설계의 쇄국주의를 가져오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소규모 설계사무소의 난립과 과열수주경쟁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건축설계사무소는 건축사 1인이 운영하는 단독건축사사무소가 가장 많고 3인이상의 건축사가 운영하는 종합건축사사무소 형태가 있으나 법적으로 최소 기준인 건축사 3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나마 상당한 경우는 공동운영사무실이 아닌 단독 건축사사무소가 형식적으로 종합형태로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단독사무소와 마찬가지이다. 건축을 문화예술활동으로 본다면 건축사의 수와 직원수 등 사무소의 외형적인 규모에 따라 우열을 가누기는 어렵지만 우수한 자질을 갖춘 건축사가 없다면 체계화 운영을 위한 일정규모 이상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몇개의 대규모 설계사무소가 있을 뿐 대부분은 극히 소규모 설계사무소가 난립되어 있으며 직원의 실무경력이 짧고 직장이동이 많은 등으로 설계능력이 모자라고 기술개발이나 기술축적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취약성이 있으며 그나마 일부 인원은 디자인이나 기술 등 설계의 고유업무에 매달리지 못하고 수주활동, 인·허가처리 등 사무소 경영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 건축설계가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과열 수주경쟁을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국내 건설정책의 영향과 건축행정업무의 대행에 관한 문제이다.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가격경쟁기반이 취약하고 건축을 문화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경제의 논리로 해석하는 것 그리고 건축물의 질적 수준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양위주로 되고 있으며 심지어 설계를 경쟁입찰방법으로 저가낙찰하는 등 설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분위기 형성이 안되어 있으며 최근 응찰가와 설계점수를 연동시키는 방법 등이 있어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그 개념부터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한 설계를 허가를 득하기 위한 절차요건으로 보거나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단순히 불법, 위법 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법적하자가 없는 단순설계작업으로 생각한다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며 건축설계발전에 적신호가 된다.

건축설계가 건축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는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복잡한 행적절차와 까다로운 규제에 매달려 엄청난 노력과 비용,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이것이 건축설계발전에 큰 장애가 되다면 하루빨리 이를 타개하여야 한다.

넷째, 건축설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건축설계는 용역 서비스이면서 문화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예술활동의 일부로 인식해야 하며 또한 엔지니어링 기술을 뒷받침해야 하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5. 건축설계의 개방화에 대한 득실

건축설계의 국제화, 개방화는 어쩔 수 없는 국면이며 오랫동안 굳게 닫혔던 설계부문을 개방하고 국제 경쟁 대열에 나섬으로써 예상되는 이해관계를 몇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자 한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과 기술개발이 활성화되고 선진기술의 습득, 효율적 경영관리, 국제적인 정보를 가지고 넓은 활동무대 위에서 국제감각을 익힘으로써 보다 활력있고 세련된 건축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선진 외국 설계사무소와의 경쟁은 설계비를 현실화하는 계기가 될것이며 재료, 공법 등이 국제화될 것으로 본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외국업체가 조직적으로 침투하여 국내시장을 잠식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해 경쟁력을 상실한 설계사무소는 점차 도태하게 될 것으로 본다.

개방화는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인 양면성이 있으므로 긍정적인 면을 최대한 살리고 부정적인 면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업체가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극소화하는 대신 국내업체가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설계가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있는 분야로 자리잡을 수 있고 아울러 수준높은 건축문화를 만들고 가꾸는 것이 필요하다.

6. 설계의 개방화 대책

건축설계의 개방화에 대한 대책은 현행의 우리나라의 설계여건과 문제점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1) 설계사무소의 전문화

현재 건축사가 자영하는 소규모 설계사무소의 경우는 물론 거의 대부분의 대규모 설계사무소까지 모든 건축물의 설계를 하고 있어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설계사무소간에 치열한 경쟁을 유발할 뿐 아니라 설계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병원, 호텔, 아파트, 도서관, 학교 등의 건물 종류에 따라 전문화하고 아울러, 설계, 구조, 설비, 조경, 인테리어 등 전문영역으로 구분하여 상호 협력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건물별, 업종별, 전문설계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기술축적이 어렵고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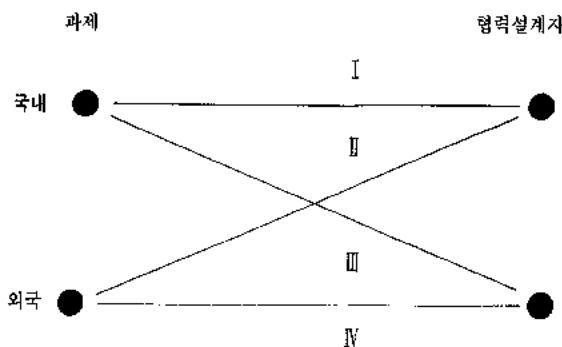
현재 제기하고 있는 종합건설업면허제도는 설계사무소가 전문화가 되지 못한 실정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건설회사가 자체의 설계조직으로는 전문화가 어렵고 때로는 전문화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인력관리와 경영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설계와 시공을 일괄수주 하였다 하더라도 외부의 전문업체에게 설계를 하도급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설계사무소의 전문화는 자기발전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필요할뿐 아니라 건설회사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시장개척과 기술축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실한 문제이다.

2) 협력설계 체계의 확립

건축설계는 다양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설계와 시공의 업역간 협력, 설계와 구조 설비 등과의 협력, 그리고 국내 또는 외국업체와의 제휴 등 과제별로 가장 효율적인 전문조직을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다양하게 결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와같은 협력설계는 설계과제와 내용에 따라 유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아 우리나라 건축설계 사무소가 구조, 설비, 조경, 토목, 견적 등을 외부 전문 사무소에 하청 또는 협력설계를 하고 있으며 일부 설계사무소의 경우 실시설계까지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다.

설계과제가 국내 또는 국외에 있는 가를 구분할 수 있고 협력설계자가 국내, 국외에 있는 경우를 조합하면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 협력설계자의 유무와 그 숫자 그리고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다.



3) 디자인과 엔지니어링기술의 결합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은 건축가가 좋은 건물을 디자인하고 고도의 전문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설계능력을 가짐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국제적으로 명성있는 훌륭한 건축기를 포함한 훌륭한 전문인재가 양성되고 이를 결집하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디자인과 엔지니어링기술의 결합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의 접목으로 인력과 조직을 육성하고 기술을 축적한다.

4) 장애요인의 제거

우리나라 건축설계의 장애 요인인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와 고유업무 이외의 행정위임 업무의 배제, 기술, 공법, 자재 등 연관 분야의 정비와 체계화 미비 등 건축설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과감히 개선하고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5) 설계사무소의 각종기계와 장비 현대화

설계사무소에 각종 장비를 현대화하고 인력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경영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설계의 CAD화와 설계자와 단순체도사의 적절한 배분 등으로 인력관리와 업무 효율을 극대화한다.

6) 건축설계사무소 경영의 합리화

건축설계사무소의 대부분은 건축사의 자영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력과 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무소의 경영 합리화가 필요하다. 다양한 사무실의 크기, 전문화 특성화의 정도와 수준, 독립채산제 운영, 분업화 경영 등 새로운 경영기업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다만 개인 작업실이나 공방 그리고 영세작업장의 범위를 벗어나 안정된 직장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일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설계 보수요율의 합리화, 업무 환경의 개선, 급여 수준의 상향, 후생복지문제 등 모든 협안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7. 결론

건축설계의 국제 개방화에 대한 대책으로는 유능한 설계 인력을 양성하며 설계조직을 육성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정보를 가지도록 하여 급속하게 발전되어가는 국제건설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디자인과 기술이 결합된 설계능력을 배양하여 합리적 경영전략을 세움으로써 국내시장을 보호함은 물론 더 나아가 해외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업역의 구분과 특성화 전문업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건축설계사무소와 건설회사의 상호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공생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건축설계용역이 고도의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나 해외건설의 경험과 명성을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와 긴밀하게 상호 협조함으로써 제2의 건설붐이 일고 이것이 국가경제 성장에 큰 보탬이 되고 건축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

건축설계업과 건설시공에 관한 외국사례

Instances of Each Country for Design and Build

■ 국가별 사례

1. 독일

본지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건설업체의 설계용역업허용요구와 관련해 건축설계업과 건설시공간의 상호관계 및 역할분담 등에 관한 선진 외국의 사례들을 모아 조사·확인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이같은 주장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또한 이번 조사내용은 국내건축문화 발전의 건전한 풍토조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삼고자 한다. (편집자)

1) 건축교육

독일의 경우 건축교육은 공과대학교 안에 건축대학에서 이루어지며 대학 입학전 13년간의 교육기간중 인문사회교육 등을 받고 대학에서는 바로 전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축과는 공학기술, 예술 그리고 인문사회의 종합학문을 다루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교육과정은 2~3년후 수료하는 중간 수료하는 과정과 법적 최소 연한이 4년인 대학졸업(diploma)은 보통 6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대학 졸업은 미국의 석사과정과 비슷한 교육경력을 가진다. 교육과정에서 1년 기간의 건축실습이 의무로 부여되어 있으며, 대학입학전 6개월 그리고 대학 입학후 2년이내에 6개월간의 실습기간을 가져야 한다.

2) 건축사자격

졸업후 2년간의 실습을 마치면 건축사 협회에 등록할 수 있고 모든 학교가 국·공립이므로 건축사 자격은 학교교육과 연계되어 있고 별도의 자격시험은 없다.

3) 설계사무소와 건설회사의 역할분담

건축설계는 문화적 성격이 강하므로 건축사가 담당하며, 건설회사가 기술부서(Engineering department)을 가지고 있어도 건축물의 설계는 하지 않는다. 건축사는 설계도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건설회사는 설계도면에 대한 일체의 권한이 없으며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역할분담과 책임한계가 뚜렷하다.

4) 시공상세도 작성

설계사무소에서 시공상세도(Sharp drawing)까지 연간 처리하는 설계건수는 적으면서도 건축사의 업무량은 많고 설계 보수요율도 높으며(건설비의 7~8% 정도)건축사의 수(인구 925명당 1인)도 많아 여려면에서 건축설계 서비스 수준이 높다.

— 목 차 —

■ 국가별 사례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4. 미국
5. 일본
6. 동남아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 설계와 시공에 대한 외국의 사례요약

시공도면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건설회사가 설계사무소에 요청한다. 건축설계과정에서 디자인 이념과 Idea를 끝까지 살릴 수 있으며 충실한 설계를 할 수 있다. 공사감리에 해당되는 현장감독은 건축사의 책임이며 특수한 경우 건설회사(시공)에 의뢰할 수 있다.

큰 건설회사에도 건축사를 고용하고 있으나 이는 시공을 위한 도면의 이해와 함께 시공과정에서 설계자와의 긴밀한 협의와 연결을 가지기 위함이며 설계와 시공의 업역분담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5) 건설엔지니어링

독일의 경우에도 건축대학에서 Plant 등 특수한 건축물 설계는 가르치지 않으며 그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고도한 기술을 요하는 Engineering plant, 공장, 특수구조의 건축물 등을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건설회사에서 설계하고 있다.

6) 지구상세계획

주택단지는 주택전문회사에서 설계를 하는데 이 경우 대개 지구상세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및 설계가 완료된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와같은 지구상세계획은 공공성격의 공공계획으로 전문가가 참여하여 계획하고 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우리나라도 시설계와 상세계획에 해당).

지구상세계획에 따라 별다른 아이디어를 요하지 않는 상세설계를 주택전문회사가 할 수 있게 하는 셈이다. 지구상세계획은 건축물의 위치, 배치, 층별 용도 및 밀도, 높이, 모양, 색채 등을 상세하게 지정하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단순히 기술적인 면을 고려하는 실시설계를 하게 된다.

건축설계사무소가 설계에 대한 모든 업무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시공 상세도까지 작성해주게 되면 현장감독업무를 줄일 수 있고 충실한 시공을 위하여 업무의 한계와 책임이 분명해진다.

7) 건축사의 설계권

문화적 성격의 건축물은 건축설계사무소가 전담하여 설계하고 기술이 중시되는 공장 등은 엔지니어링을 가진 건설회사가 시공할 수 있으며 주택단지는 공공성의 지구상세계획이 작성된 후 전문업체가 부분적으로 설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시공회사가 설계조직을 가지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이는 시공을 위한 설계, 기술엔지니어링, 전문분야 등에 국한되어 있다.

8) 설계사무소의 규모

설계사무소의 인원도 대형사무소(30~40명 인원)에서부터 소형사무소(3~4인 정도)까지 다양하지만

대개 10명내외가 대부분이며 인건비가 비싸고 설계과제의 수주한에 있어 변화가 많기 때문에 고정인원을 많이 두지 못하여, 큰 설계과제가 있으면 필요시 인원을 융통성 있게 보강하여 탄력적으로 활용한다. 사무소 인원의 1/3이상이 건축사이며 유명한 건축설계사무소도 10~20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역사가 오래된 그리고 꾸준히 이루어진 안정된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상세계획제도 등 새로운 도시개발 및 관리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으로서 결과적으로 일본 및 우리나라 제도가 독일제도를 많이 참고하고 있다.

이는 역사가 一磧하거나 자본주의와 상업주의가 강한 선진국에 비해서 독일의 합리성과 실용성이 높이 평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설계사무소의 업무가 극히 전문화되어 있다.

2. 프랑스

1) 건축시스템

프랑스에서는 건축물의 계획에서부터 실현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부류가 크게 나누어 네부류가 있는데 건축사(설계자), 기술 연구사무소(Bureaux d'Etudes Techniques), 감시. 감독사무소(Bureau de Controle), 재정관리업체(Etreprise)이다. 이상의 네분야는 각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계획(Project)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계획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서로 협조적으로 이루어지며 각 분야 전문가들 상호간의 조화로운 개입과 인식이 바탕으로 되어진다.

가. 건축사(Architect)

계획의 실행을 담당하는 건축사는 크게 나누어 두가지 임무로 구분되어지는 데 완벽한 작품을 책임지는 임무(Mission de maître D'oeuvre compléte)가 그 첫째로 공사의 감독 그리고 시행되는 공사의 서류를 담당하는 경우이고, 둘째로는 개념(concept) 단계에만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적인 임무 (mission partielle dite conception) 즉, 계획이전의 개요(Avant-Project Sommaire)의 제공, 공사허가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구체적인 설계 이전 단계까지만 책임을 지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공사현장에서 계획(Project)의 건축적인 감독을 보증하기 위한 감독인(협력자) 한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

나. 기술연구 파트(Bureaux d'Etude Techniques, BET)

이 분야는 계획의 기술적인 구상이 전문가를 필요로 할 때, 또는 건축사가 그의 사무실내에 이러한 전문가를

두고 있지 않을 때 구조나 설비, 기타의 기술적인 면을 담당하는 분야이다.

이 분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혹은 부동산(자본주)계열회사에 소속 되며 자본운영을 담당하는 사업체(Entreprise)의 조회(열람) 서류를 짜맞추는 일, 공사에 관한 시장 감독, 운반까지의 공사현장 감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다. 감독(감시)파트 : (Bureau de Coutrole, BC)

감독 파트는 도면과 개념(Concept)에 대한 서류(자료)의 일치를 확인한다.

또한 완성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을 감시한다.

라. 재정관리 파트 : (Enterprise)

계획에 대한 경비를 건축주와 의뢰 및 상담하는 것을 담당하는 분야이다.

이상의 네파트가 건축주와 더불어 실제적으로 건축물이 완성되기까지 필요한 요소들이 된다.

프랑스에서의 법규들은 건축물의 규모나 난이도 등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계약(건축주와 건축사)의 종류에 따라서 건축사가 책임을 지는 정도에도 큰차이가 있는데 간략하게 예를 들면,

APS ————— PC

(Avant Projet Sommaire 디테일한 설계가 아닌 개념 정도의 설계, 설계개요, 공사허가증을 받기 바로전 단계)
(Permis de Construire
공사허가증)

∴ 건축사는 이 단계까지만 건축주와 계약할 수도 있다. 즉, 공사감리를 책임질 필요는 없는 경우

PC ————— APD ————— DCE

(Avant Project Détail)
완전히 계획단계는 아니지만
APS보다는 디테일한 계획
BET(기술연구파트)의
개입이 이루어짐
(dossier de consultation de
l'entreprise)
공개입찰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건축주가 선정한다.

∴ 계획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더욱 세분화되어 있는데 건축사(설계자)가 건축주와의 계약에서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mission complète)로 계약했을 경우에는 공사감리까지를 모두 담당하며, 이때에는 또한 감리파트(Bureau de Coutrole)에서도 감리를 하게 되는데 이 감리 파트는 국가에서 공인(임무를 수행하는)분야로 건축사는 이 감리 파트의 의견을 참고해야하며 승인이 있어야 한다.

2) 건축교육과 건축사

프랑스는 예술의 나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문화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으며 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다.

프랑스는 건축사가 되기 위한 시험제도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시험을 거쳐 건축사가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에서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시 논문 또는 논문과 함께 제출하는 설계 계획안의 심사가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졸업장이 주어지고 국가가 인정하는 소위 “건축사”가 된다. 따라서 프랑스의 건축교육은 그 자체가 “건축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교육을 하며 시험의 장과 같다. 물론 프랑스는 건축사가 예술가라는 개념이 오랫동안 성숙되어온 서양의 전통적인 건축역사가 존재하고 있고 시험이라는 제도적 장치보다는 “문화적 소양”이나 “문화적 인식”에 가치를 더 두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대학교육이 뒷받침하여 내실있는 전문교육이 이루어지므로 시험이라는 “판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질적으로 우수한 자질의 건축사들이 배출되어 왔다.

3) 건축사와 건설회사의 역할 분담

졸업과 함께 건축사가 되면 건축협회에 자유스럽게 등록할 수 있으나 사회 여건으로 인하여 설계사무소 근무경력을 가져도 등록은 쉽게 못하고 있다. 설계사무소의 설계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로 끝나며 총공사금액(total amount)을 산출하여 공사를 발주한다.

건설회사는 Engineering부서를 가지고 있으며 시공과정에서 모든 시공 상세도(sharp drawing)를 작성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기술비법(Technical know-how)을 축적하며 이 도면을 설계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와 시공의 분리를 법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거의 관습적으로 분리하고 있다. 최근에 건축사가 건설회사를 운영하여 엄청난 거부가 된 예가 있다고 한다. 시공상세도는 관계자들의 정례모임에서 확인을 받게 되며 특수한 것은 설계자가 시공상세도를 그린다. 건축사(설계자)는 디자인하고 시공은 기술력을 가진 건설회사 Engineering에서 맡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 설계자가 이를 설계의도에 적합하는 지에 관하여 검토하고 Engineering은 공기단축, 특수공법, 재료사용 등 기술적인 부분에 치중한다. 그리고 건축사의 설계를 가지고 구조문제, 시공기술 등 전문성(Technical know-how)를 가지고 기술적 해결을 해야 하며 시공상세도를 그려 설계자의 승인을 받는다.

4) 설계자가 건설회사 선임

건축주가 건설회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직업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 건축사의 지위가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설계자는 건축주의 조언자로서 건축주가 시공자를 선정하고 설계자가 감리자로서 전문성이 없는 건축주의 업무를 협력, 조언, 대행함으로서 시공자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런데 프랑스는 설계자의 입지를 훨씬 강화하여 발주자는 자금만 대고 설계자가 시공자 선정까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시공자의 업무 통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시공상세도를 승인함으로서 충분한 감리 확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건축사는 기본설계에 따라 설계의도를 지시하고 공사의 방향을 제시하면 건설회사는 시공상세도 등을 그려 기술적으로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또 법규의 검토 등은 기술건축협회(Technical Architectural Association) 등 제3자가 교체 검토함으로써 설계자의 업무보조와 공정성 확보 그리고 설계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즉, 건축사는 下命만하고 시공업체가 작성한 상세도는 건축사와 협의, 확인(sign)을 받아 시공한다.

5) 스페인

스페인의 경우(강석원씨가 현재 국내에서 설계 진행중인 과제가 있음)에도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어 있으며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건축사 협회에서 기본계획을 확인한 후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하며 기술, 감리자가 없으면 허가되지 않는다.

3. 영국

1) 건축사의 등록

영국은 3부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 RIBA(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건축사 시험제도에 따라 자격과 등록을 한다. RIBA는 1834년에 만들어진 건축사들의 전문모임이 1837년 William 4세로부터 왕립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RIBA 시험은 1,2부는 학교 교육제도와 일치되어 있고 3부시험은 건축사로서 실무에 따르는 책임과 책무, 사무소운영의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직업적 수행의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고의 성숙도, 지식, 기술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논문서술시험 및 구두시험을 치른다. 1,2차 시험에 통과 또는 면제 된 후 2년간의 실무경험을 가져야 하며 그중 1년은 영국에 있는 설계사무소에서 실무를 경험해야 한다.

2) 교육과 건축설계

대학에서 건축교육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설계업무를 대학에 위임시킨 것에 해당되어 학교건축교육이 곧 건축사 양성, 배출교육이다. RIBA의 건축사는 등록법(Registration Act)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누구든지 설계 시공할 수 있으므로 건축사는 그 소속여부에 관계없이 설계권한을 가지고 있다.

건축사의 40~45% 정도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고 공공계획 및 공공설계 등에 관여할 수 있다.

3) 건축설계 계약

건축설계에 대한 직업적 전문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은 누구와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계약서(Law of Contract)는 표준계약서(Standard form of Contract)와 건축주의 요구에 의한 일괄수주계약서(Design & Build Contract)가 있으며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역할 분담, 책임규명을 하게 되며 건축주와 계약된 건축사(Contract Architect)와 시공자에 소속된 건축사(Employed Architect)가 협의한다.

4) 설계자의 책임

설계자인 건축사는 설계한대로 시공한지를 확인(Observing)하는 것이지 이를 감독자(Supervisor)이며 건설회사가 시공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되며 업무단계(Work Stage)가 7~8단계 정도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건축설계가 건축가가 설계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즉 설계권을 보호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에 비해 색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영국에서는 설계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설계자가 제도권에 들어오던 그렇지 않던 자유스럽게 행해지고 있다.

5) 공공설계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건축사가 도시계획이나 도시설계(B-plan, F-plan 해당), 공공계획의 철저한 수립 등을 하기 때문에 건축의 질서와 통제가 가능하다. 영국에서도 60년대부터 건축사에 대한 건설회사의 도전에 해당되는 설계 시공의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설계, 시공 일괄수주(Design & Build package system)는 건축주가 판단해야 할 문제로 하였다.

6) 설계와 시공의 분리

종전 영국의 건축사 윤리강령에는 설계한 건축사가 입찰하기 전에는 건설회사를 만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담합과 불공정거래 등을 방지하여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영국의 경우 건축사의 40~45% 정도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분(public sector)에 속해 있고, 30% 정도가 설계사무소 등에, 20% 정도가 건설회사에 소속되어 있다. 설계사무소에도 전체 설계 인원의 50% 정도가

건축사이며, 설계사무소의 건축사와 건설회사의 소속건축사가 상호 협의하여 설계, 시공을 한다.

4. 미국

1) 주별로 독립된 제도

미국은 각 주별로 독립된 제도와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르다. 미국은 자본주의 하에서 시장경제원리의 상업주의와 공공성,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익우선과 합리주의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2) 건축사 자격 등록

건축사자격과 등록제도에서 건축과는 5년제가 많고 대학원과정인 1~3.5년의 Professional School(5년제)이나 School of Architecture가 있으며 대학졸업후 3~4년(4년제) 경력 후에 시험을 볼 수 있다.

주 정부에 등록하고 시험과 면허를 주는 NCARB Council이 있고 AIA는 면허와는 관련없는 건축사의 임의 단체이다. 건축사가 되면 설계에 대한 권한과 책임(Sign and Seal)을 가지며 주(州)에 따라 설계와 시공을 염격히 구분하여 이를 통합(Design and Build)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주(펜실베니아주)가 있으며 이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설계와 시공은 업역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직업의 전문성(Professionalism)이 확고하며 계약이 보편화되고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의식이 철저하며 하자에 대한 배상과 보험제도가 있기 때문에 설계와 시공을 나누는 업역구분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

3) 건축계약에 있어서의 건축사의 지위

미국에서의 건축사의 지위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양상에서 그 특성을 나타낸다.

가. 자유로운 면

이것은 건축사를 창조자, 코디네이터(조정자), 건축물에 관한 계획, 건물에 필요한 모든 설계 명세서를 작성하는 저자라고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자유로운 관점은 건축물의 제작에 있어서 건축사가 초기부터 끝까지의 모든 지배(제어) 즉 완전한 책임을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나. 전문적 지배권

미국 건축사는 직접적으로는 엔지니어를 고용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언제나이와 하청계약을 함으로써 공사를 지배(관리)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건축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한 의미에서의 책임자(창조자)로 남아 있어야 한다.

다. 현대적인 어프로치

미국에서의 건축사라는 직업의 현대적 접근은 미국사회에 의해 이루어진 승인으로 계약업체를 법률가(Lawyers)와 협상하면서 건축물의 제작을 통치하게 되는 건축사의 역량을 뜻한다.

또한 미국 건축사는 건축공사(Construction)의 진정한 관리인(책임자)으로 남는다. 왜냐하면 미국 건축사는 부동산업자가 될 수도 있고 자본문제를 관할할 수도 있으며, 계획실행에 있어서 재정적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4) 설계와 시공의 분리

설계와 시공의 분리로 건축사의 공사감리를 종전에는 Construction Supervision으로 칭하였으나 요즘은 Construction Administration으로 명칭하는 감독자보다는 시공과정에서 법적 책임이 없는 확인자 또는 관리자이며 시공상세 도면(Sharp drawing)은 건설회사가 작성하고 건축사(설계자)의 확인(Sign)을 받아야 하며 시공에 대한 최종책임은 건설회사가 지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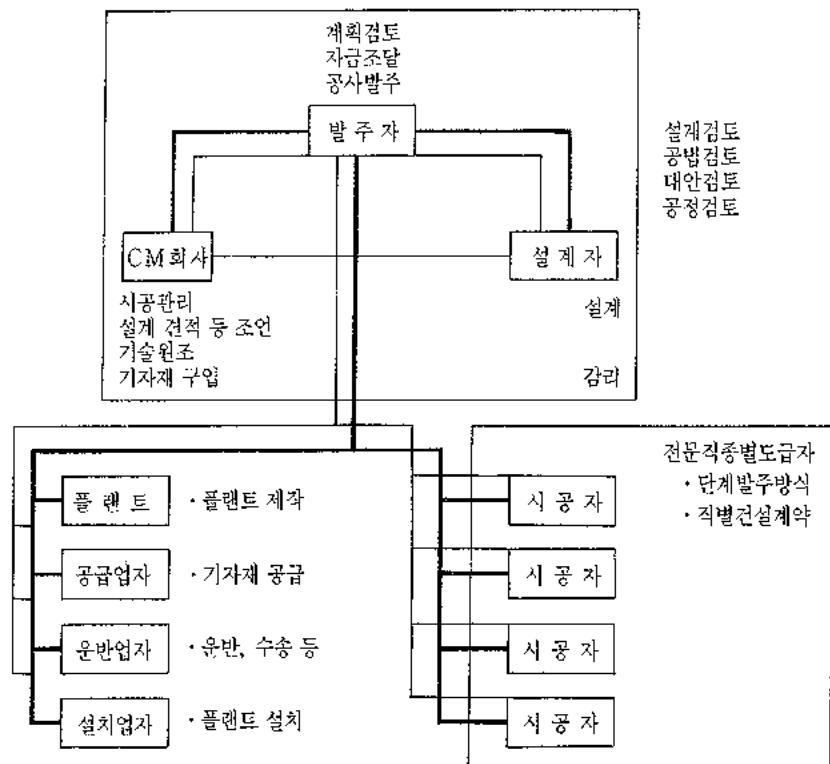
미국의 경우 법정소송이 많기 때문에 책임의 한계 구분이 뚜렷하고 법적 대응을 고려한 계약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신용본위이기 때문에 설계의 전문성이 없는 건설회사가 설불리 설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주에 따라 일괄 발주계약(Design & Build Contract)이 이루어지더라도 자기소속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고 전문설계조직과 협력설계팀(Joint-Venture Team)을 만들어 시행하며 대부분은 자체 설계조직을 가지고 않고 외부의 전문설계팀과 연계한다.

5) 베텔 회사

베텔(Bechtel Group, INC)은 최대의 용역업체로서 Plant가 주축이 된 Engineering Management를 전문으로 하는 C.M(Construction Management)회사이다.

건설관리전문회사는 발주자, 설계자 및 시공자와의 관계를 건설계약방식에 의해 대규모 시설물의 기획에서부터 관리까지 전건설과정에 걸쳐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문업무(Consulting Service)를 담당한다. CM전문회사는 자체 설계팀과 시공팀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설계팀과 시공팀을 프로젝트에 적절하게 구성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어 실체적으로 설계 및 시공의 업역 구분은 뚜렷하여 다만 CM회사가 계약에 의해 이를 적절히 통제 조정하고 있다.

미국의 CM회사 건축설계자, 건설회사(시공업자)와의 관계도¹⁾



6) Pennsylvania의 설계-시공(Design-Build) 금지 규정

건설회사가 건축사를 고용하고 설계하는 회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주 법조문(State Law)에서 Design-Build가 불법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설계사무소의 대표자는 반드시 등록된(Licenced)건축사만이 될 수 있으며 경영자의 명의로는 된 것이 없으며 불법으로 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다음의 팬실바니아 건축사법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Design-Build가 불법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1993년 6월 1일 어느 면허취득자에 보낸 State Architects Licensure Board의 회장 Peter F. Arfaa의 회답을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State Architects Licensure Board는 펜실베니아에서 디자인 빌드(design-build)가 합법적인지에 대한 문의를 수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AIA에 디자인 빌드 계약서 모델이 있긴 하지만 펜실베니아에서 디자인 빌드는 불법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축허가법은 허가된 건축사들만이 건축서비스를 제공 혹은 제안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건축사는 건축사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지라도 그러한 건축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발주자와 계약자간의 개별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계약자와 건축서비스 제공계약을 맺은 건축사에 대한 금지가 있긴 하지만 발주자와 계약자 및 발주자와 건축사간에 건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구성하면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에는 본위원회의 라이센스 취득자인 소유주가 최소한 1인 있어야 하고 그 소유주는 최소한 사업체의 50%를 소유하고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7) Design-build에 대한 Licensure Board의 규정

“건축사나 건축회사가 아닌 디자인 빌더는 디자인 빌더의 고용인인 건축사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안할 수 없으며 건축회사가 아닌 디자인 빌더는 건축서비스를 증개할 수도 없다.”

5.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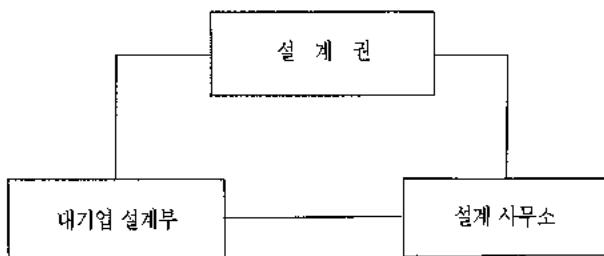
1) 설계권

일본의 경우, 건축설계사무소와 건설업체의 설계권에 대해서는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건축설계사무소에 한해서만 설계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설계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짓이 현실이다. 선진 여러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같은 독특한 예는 다른 선진국과는 다른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설계권을 갖는 것은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설계사와 대기업의 설계부,

제네콘(General-contractor)이라고 말하는 플랜트기술엔지니어링그룹 등을 들 수 있다.

설계허가와 관련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관청에서 설계를 확인하는 확인제도가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종업원 중에 건축사(1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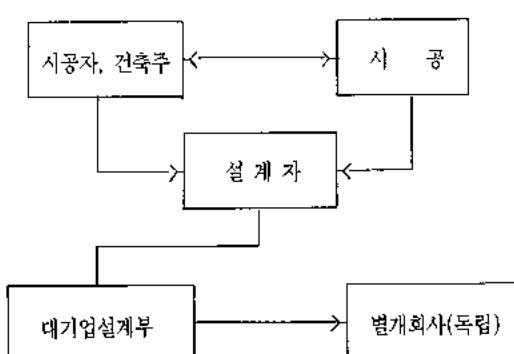


건축사) 면허를 갖고 있어야 내부 건축설계부서를 두고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건축설계사무소와 동일하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역시 기본적으로 법률상 설계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

2) 건설업체의 설계권의 제한

우선 대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민간의 설계권에 관해서는 자유롭게 설계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공공기관의 설계권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로는 대기업에 공공기관의 설계권을 인정해 주었을 때 시공자가 곧 설계자라는 등식이 성립되므로 가장 중요시 해야 할 확인(Check)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일단 별개의 사무소를 개설하고 독립하게 되면 영원히 동일기업에 복귀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즉 대기업이 곧 설계 및 감리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는 등식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권에 아무런 규제나 제한이 없지만 공공사업에 한해서만큼은 설계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3) 설계경기에서 설계자와 시공자의 구분

공공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특별규칙을 준수할 경우에는 흔히 있다. 그것은 대기업 설계실이지만 설계경기(현상설계)일 경우에 응모해서 당선이 된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설계권을 부여하지는 않는 대신 설계경기를 다음 조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상설계에 당선된 주설계자가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독립해서 별개회사를 설립할 경우이다. 이 경우는 경기설계 당선후 별개회사를 설립하면 설계권을 인정하여 주고 있으며 아울러 소속되었던 대기업에서 그일에 대한 시공권을 부여하고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일단 별개회사를 설립해서 독립한 후에는 영원히 원래 회사로의 복귀는 금지규정에 의해 규제하고 있다.

4) 공정성 확보 방안

그래야만 공공사업의 경우 의회가 공사내역을 공정하게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이런 장치를 마련한 것은 제네콘의 부정, 부패의 원인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례를 든다면 일본의 최고 재판소(우리나라의 고등법원) 경기설계 응모시에 대기업 설계실에 근무하던 건축사 岡田信一(오까다 신이찌)라는 분의 예를 꼽을 수 있다. 그 분은 최고 재판소 현상설계에 당선되자 여태까지 종업원으로 다니고 있던 대기업에 사표를 내고 별개의 설계회사를 설립해서 독립하고 자신이 설계한 일을 무사히 잘 수행했던 것이다. 이런 경우를 제외한 경우 독립된 설계사무소에서 대규모 건물을 설계한 예는 극히 드문 현상인 것이 사실이다.

5) 협력설계

일본의 몇몇 유명한 건축가를 제외하고는 흔치않은 것이 또한 사실이다. 이 경우의 사례로서는 대표적인 것으로 대규모 건축물인 東京都廳을 설계했던 건축가 円下健三(단케겐조)를 들 수 있다. 특별한 예라고도 할 수 있는 동경도청 설계는 이렇게 설계사무소에 설계권을 행사하게 되었지만 본질적으로 배후에는 일본의 대기업인 大成建設과 제네콘회사들의 설계에 관한 역할 분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면이나 협조체계가 다른 나라와는 전혀 다른 일본 나름대로의 내막임과 동시에 독특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을 고려해 볼 때 대기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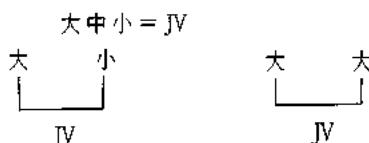
경우는 민간사무소인 일반 중소규모의 설계사무소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혁신의 설계가 대기업에서는 가능한 점이다.

대규모 건축을 할 때의 장점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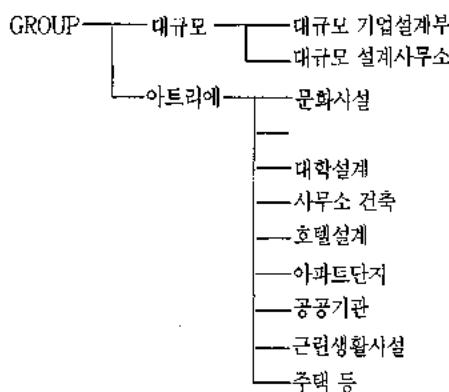
1. 로봇을 이용한 기술혁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2. 지진대책에 대한 설계의 혁신적인 창작작품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점이다. 한 예로서 지진설계에 대비했을 경우 지반에 고무장치를 함으로서 지진에 대비할 수 있게 한점이나 건물옥상에 물을 저장시키거나 수영장을 설계함으로서 지진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점 등이다.
3. 현재 총체적인 제도(우리나라의 건축허가제도)로서 모델시범건축설계인 경우 전국 어디서든 한번 허가를 받은 설계로서 동일한 내용으로 건축할 경우는 재차 관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개발건물 또는 대규모일 경우에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동일설계에서 신뢰성을 인정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6) 전문성의 확보와 협력 설계 구축

* 앞으로 21세기의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해서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바람직스러운 점을 들 수 있다면 대기업과 설계사무소는 공존공영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의 시대상황에서는 조인트 벤처(JV)가 선행되어야 함을 들 수 있다. 즉,



*역할분담과 설계의 특색창출



*역할분담의 변화가 선행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들 수 있다. 대규모기업과 소규모 아트리에 사무소와의 그룹화나 특징있는 건축설계에 전문성이 요구된다.

*건축설계

1. 마을지역의 건축
2. 예술(건축가)
3. 조직(대규모 오피스 빌딩 형성)
4. 설계부(실)

일시에 설계권을 부여했을 경우 그 다음에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어떻게 방지할 방법이 없다.

*결과적인 부패 등으로 실패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 나갈 방안이 없다.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 방안으로 대처함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된다.

*특히 우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UR에 대처할 수 있는 방파제역인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결과가 우려된다.

*일본의 경우 시장개방중 건설업분야에서 특히 기술개방에 해당되는 건축설계사무소 등을 인정치 않는 내부 방침을 결정해 놓고 있다.

첫째, 지진국으로서의 지진의 특성을 들고 있으며 둘째, 기후나 자연적인 특수성을 내세우고 있고 셋째, 법규 등으로 차원있게 개방못할 이유를 들어 설득에 임하고 있음(명분축적을 위한 작업, 시공분야에 한해 점차적인 시장개방허가)

7) 건축교육제도

일본의 대학에서는 공과대학, 이과대학, 미술대학에서 건축을 교육하고 있다.

대학원에서는 학부에서 동일한 전공에 대해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대학원입학에서 규제하지 않는다. 1993년 9월 일본건축학회 특별세미나에서는 앞으로의 건축교육제도에 혁신적인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의과대학처럼 건축대학을 창설 6년간 교육하고 졸업과 동시에 건축사시험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8) 자격제도

일본에서는 1급건축사 제도가 있다. 시험자격은 대학졸업후 2년이다. 자격시험은 가능한 한 일정 기준의 실력이 있으면 합격시킨다.

9) 제안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대학졸업과 동시에 건축사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합격후 의과대학의 예처럼 실무 5년 경험을 마치면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 시험도 권위주의에서 탈피해서 일정수준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6. 동남아(싱가포르,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1) 설계와 시공의 분리

영국의 제도가 많이 도입되었으며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세계적 수준의 도시국가이다. 원칙적으로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어 있다. 대부분의 건설회사가 설계조직이 거의 없으며 설계기능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설계팀이 완벽한 설계를 하여 건설회사의 시공과정을 철저하게 확인 및 검사(Check & Sign)하게 된다.

2) 발주자와 설계팀

발주자는 별도의 project manager Team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설계자를 중심으로 하는 설계팀(Consultant Team)에게 설계와 공사감리를 계약에 의해 의뢰한다.

3) 설계팀의 구성

설계팀은 건축가(Architect)를 중심으로 구조기술자(Structural Engineer)와 기계설비 및 전기 기술자(M & E Engineer), 수량견적사(Quantity Surveyor)를 가진다. 수량견적사는 단가기준계약을 하기 때문에 공사에서 물량과 공사금액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그의 필요에 따라 조경설계자(Landscape Designer), 음향설계자(Acoustic Consultant), 조명 설계자(Lighting Designer)가 설계에 참여한다.

4) 협력설계

이와같은 각 전문 분야별 설계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가진 고정인원보다는 외부의 전문조직과 협력설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들이 공사감리를 하게

된다.(우리나라의 경우도 비슷함)

발주처가 설계팀에 권한을 부여하고 설계팀이 건설회사의 시공과정을 발주자를 대신하여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하게 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총액을 기준으로 계약하는 일괄도급 금액방식(Lump Sum)은 설계가 완벽하게 되어야 하지만 단가기준계약(Cost & Fee)이 될 경우 견적에 의해 공사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

Turn Key의 경우는 Quantity Surveyor가 없으며 일어규모 이상 공사에는 건축사업부 보조자와 구조기술자가 공사현장에 상주하게 된다.

5) 일괄수주방식(Turn Key)에 의한 공사

건설회사에 설계팀이 없으므로 외부 설계팀과 합작(Consorciun)하거나 협동(Joint-Venture)으로 할 수 있다. 발주처의 요구조건(Requirement)에 따라 설계팀의 권한은 다르지만 Project Manager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즉, 설계팀이 감리를 하여 건설본부에 인력고용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감리만 하는 전문회사는 없다. 감리 감독이 강한 것은 감리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발주자 측에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철저한 공사감리로 건축시공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6) 해외설계진출

설계는 현재 제도 및 법규와 인허가 과정 때문에 현지 설계자에게 협력 또는 부분 하청을 준다.(설계하도급) 동서양을 막론하고 설계와 시공의 분업과 Check기능이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시공회사의 생리는 이윤추구에 집착하기 때문에 감독과 관리를 강화할 수 밖에 없으며 설계팀에 공사중지권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자료제공

- 양동양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교수/독일 아헨공대 및 동대학원 공학박사)
김기호 (서울시립대학교 공과대학 도시계획과 교수/독일 아헨공대 공학박사)
윤도근 (홍익대 건축공학과 교수/프랑스 유학)
강석원 (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가 대표/프랑스 유학)
전영일 (동국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교수/영국 Strath Clyde Ph.D University)
김종규 (마루건축/영국 AA School 졸업, RIBA 건축사)
이정근 (우리계획 대표/영국 Edinburgh University Ph.D)
이상준 (KACI 까치 설계사무소 대표/미국 AIA회원, 미국건축사 등록)
김영하 (단국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교수/일본 와세다대학유학, 교환교수)
김자호 (간접건축대표/일본에서 설계사무소 근무)

* 주1)

자산건설정책 연구회「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 1993. 8 p.20

■ 설계와 시공에 대한 외국의 사례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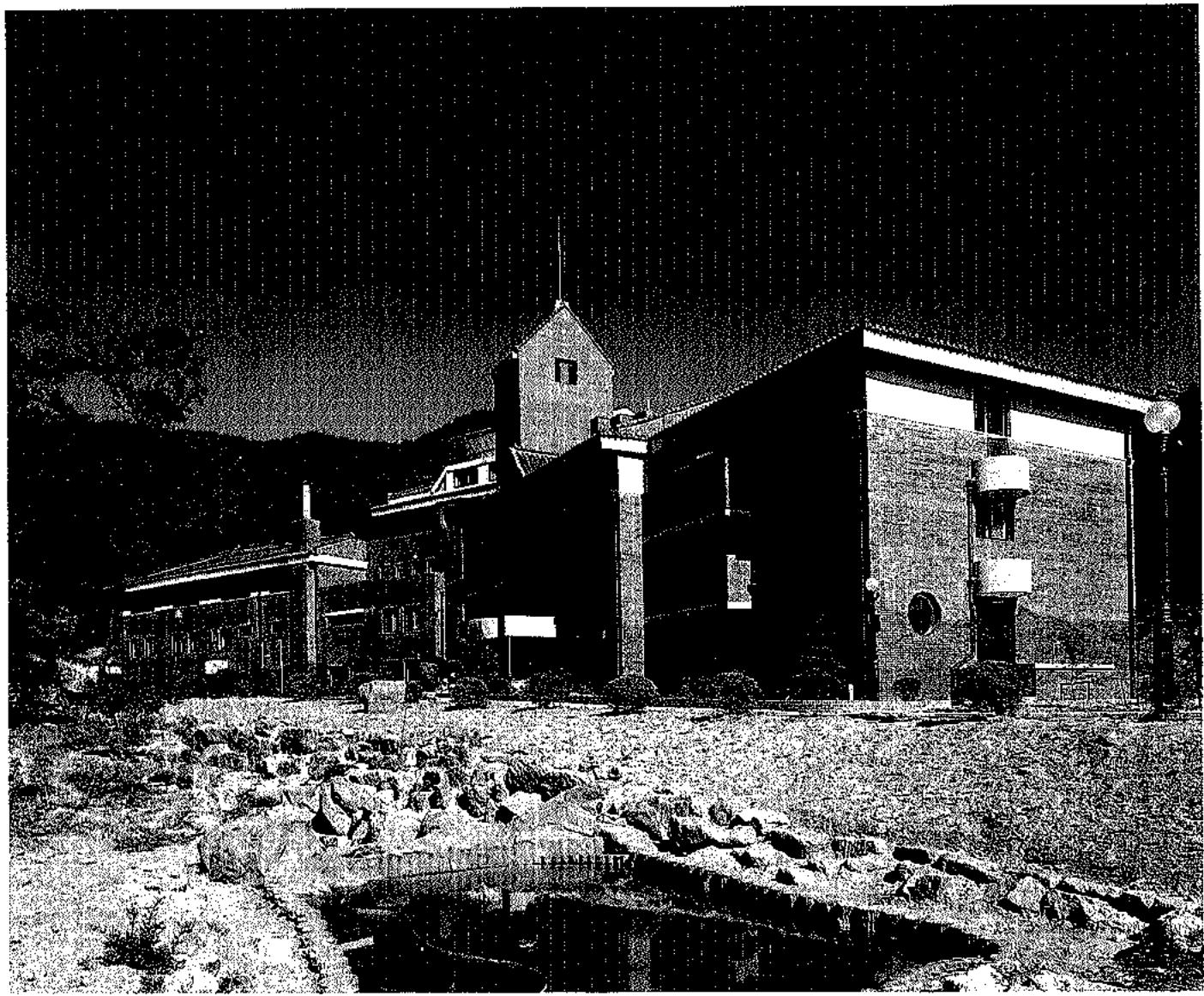
국 가	설계와 시공의 관계	요 약 내 용
독 일	분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설계사무소 기본도면에서 시공상세 도면(Detailed drawing)까지 작성함 -설계에 대한 책임을 짐 건설시공회사 모든 설계도면을 설계사무소에 의뢰하고 승인을 받음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짐 예외 특수공장(Plant) : Engineering회사에서 설계할 수도 있음(우리나라 엔지니어링 기술 전통법과 유사) 주택건설회사가 지구상세계획지구내 주택설계를 할 수 있음. * 지구상세계획 -공공부문에서 작성한 기본설계(상세한 규정과 기준을 정함)에 맞추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건설회사는 시공에 필요한 상세 설계만 작성하는 셈이다.
프랑스	분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가는 기본 설계를 담당한다. 시공회사는 기본설계에 따라 시공상세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건축가의 확인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축가가 권한과 책임을 시고 시공회사를 선정하고 공사를 철저히 감리함(설계와 시공의 분리가 필수적)
영 국	법적으로는 금지 규정이 없음, 자연적으로 분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는 설계권을 가짐(소속에 무관함) 공공기관 소속 건축사는 많음-공공설계를 주도함 엄격한 계약제도로 전문화 분업화 됨
미 국	주별로 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시공 통합(Design-Build)을 금지하는 주(예, Pennsylvania) 필요에 의해 저질로 구분되고 있음, 계약 및 보험제도가 별달되어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 설계-시공 통합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을뿐 전문설계회사가 아니면 실제로 설계가 관란(크레임)-Professionalism -규제하자는 않으나 설계와 시공이 거의 분리 되어 있음 Check & Balance -설계회사가 Consultant Team을 구성하여 시공회사를 철저히 감리
	세계적 대규모 회사의例	<ul style="list-style-type: none"> Bectel과 Parson Group은 주로 Project management회사(특히 디자인보다 기술주도형인 Plant 및 도목)이며 건축설계는 건축설계 사무소에 설계하고 사공을 입찰공모하여 시공회사를 선정함(설계시공의 분리) -용역 관리회사이다.
일 본	통합허용 설계 시공을 분리해야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 설계용역회사가 일부시공을 하는 경우 시공회사에서 설계팀을 두어 설계하는 경우 민간공사에 한정함 공공 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야 함 -건설회사는 설계 응찰자격이 없다. 경기설계(현상설계)는 설계자와 시공자가 완전 분리됨 -건설회사 설계팀이 당선되어 설계권을 가질 경우 그 회사는 시공권이 없다. -당선된 건축사가 별도의 설계사무소로 독립하고 그 시공회사에는 영원히 다시 위임하지 못하게 될때 시공회사가 응찰할 수 있다. -완전한 분리(Check기능과 공정성 확보)
동남아 (싱가폴,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분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회사에 설계팀이 없음 상세설계도(Detailed drawing)를 설계팀에서 작성함 설계사무소가 Consultant Team을 구성하여 시공을 철저하게 감리하며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Consultant Team은 외부설계팀과 협작(Consorciun)하거나 협력설계(Jointventure) 한다. -일괄수주방법(Turn-key)일 때도 협력설계를 하고 설계 시공은 분리되어 있다.

성 요한의 집

House of St. John

閔承烈/종합건축사 사무소 예인·빛

Designed by Min, Seung-Ryeol



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삼계리 327

산51 · 52

용도 / 소유자 시설(장애인 복지시설)

지역 · 지구 / 자연보전권역, 도시계획지역외

대지면적 / 9,800m²

건축면적 / 1,152.93m²

연면적 / 4,230.69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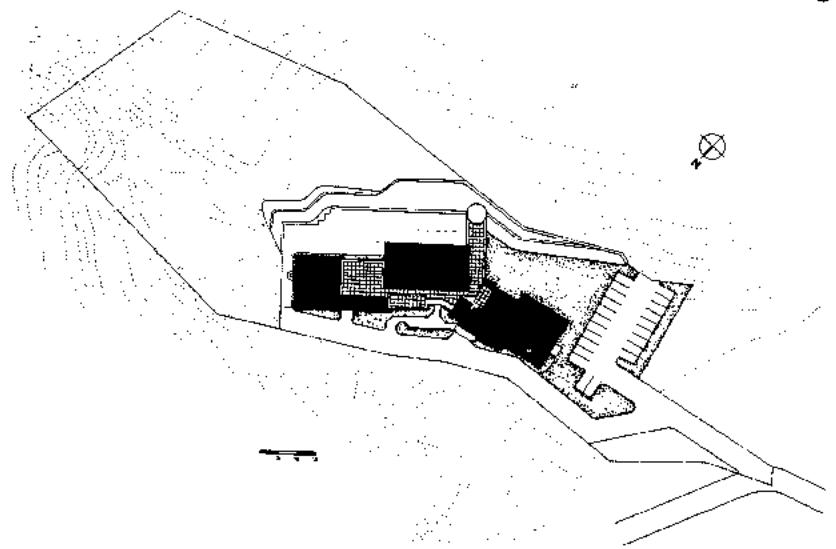
건폐율 / 1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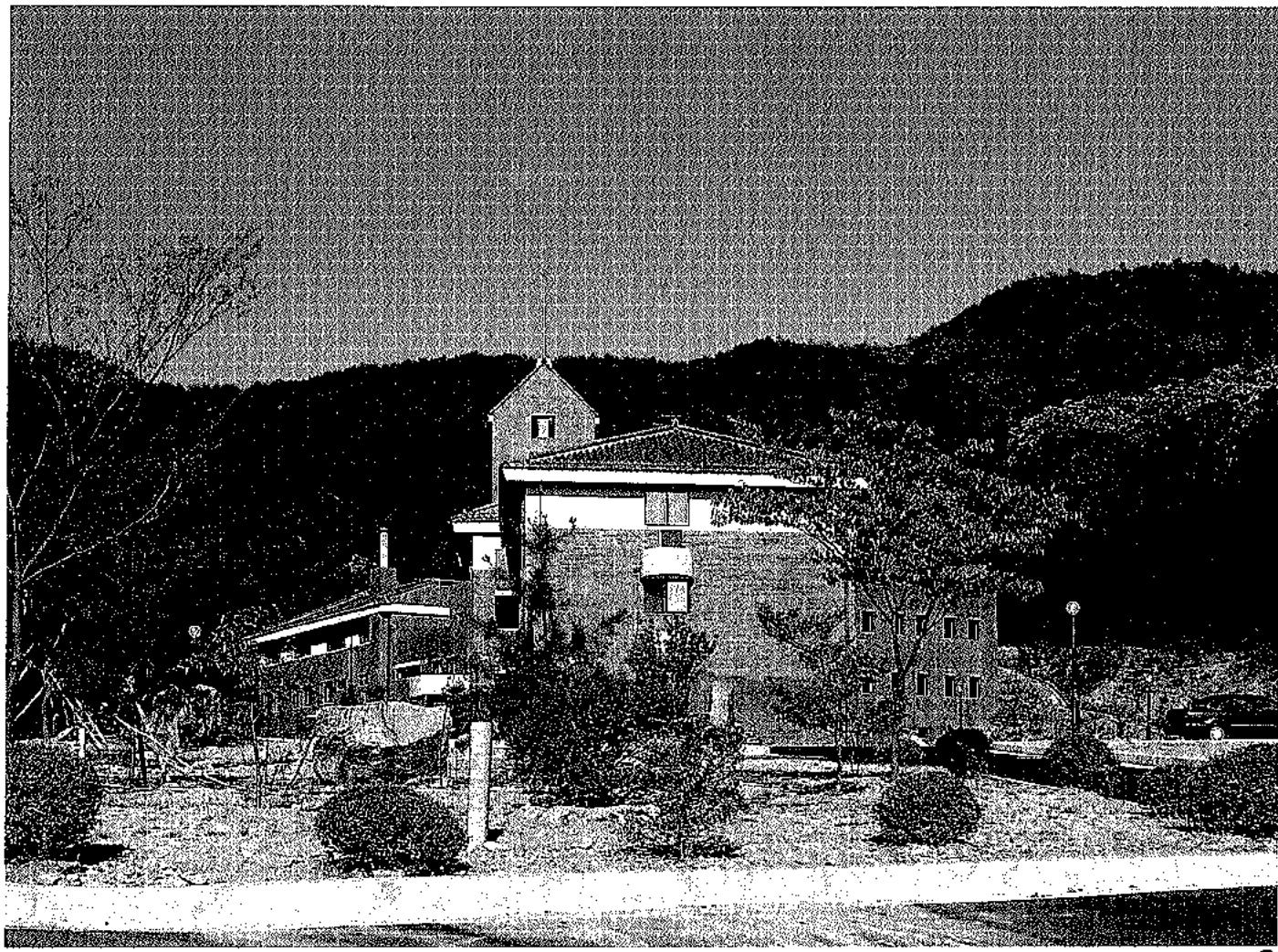
용적률 / 37.70%

구조 /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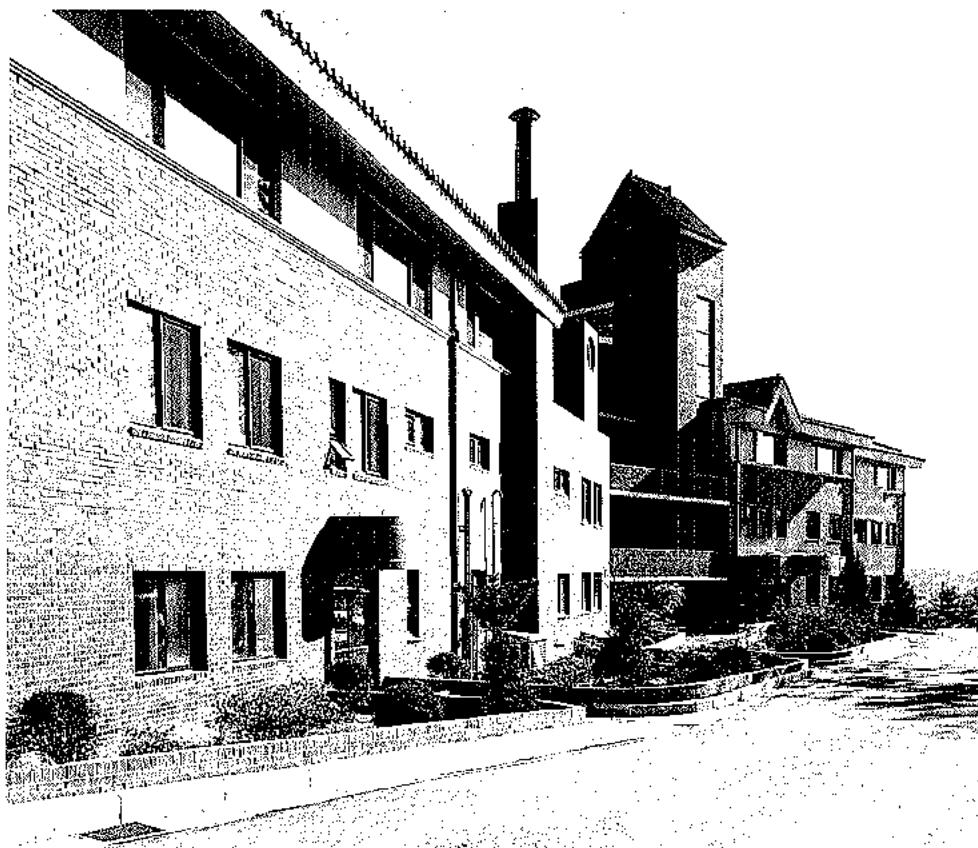
층수 / 지하1, 지상5

설계담당 / 조환우, 이백범, 공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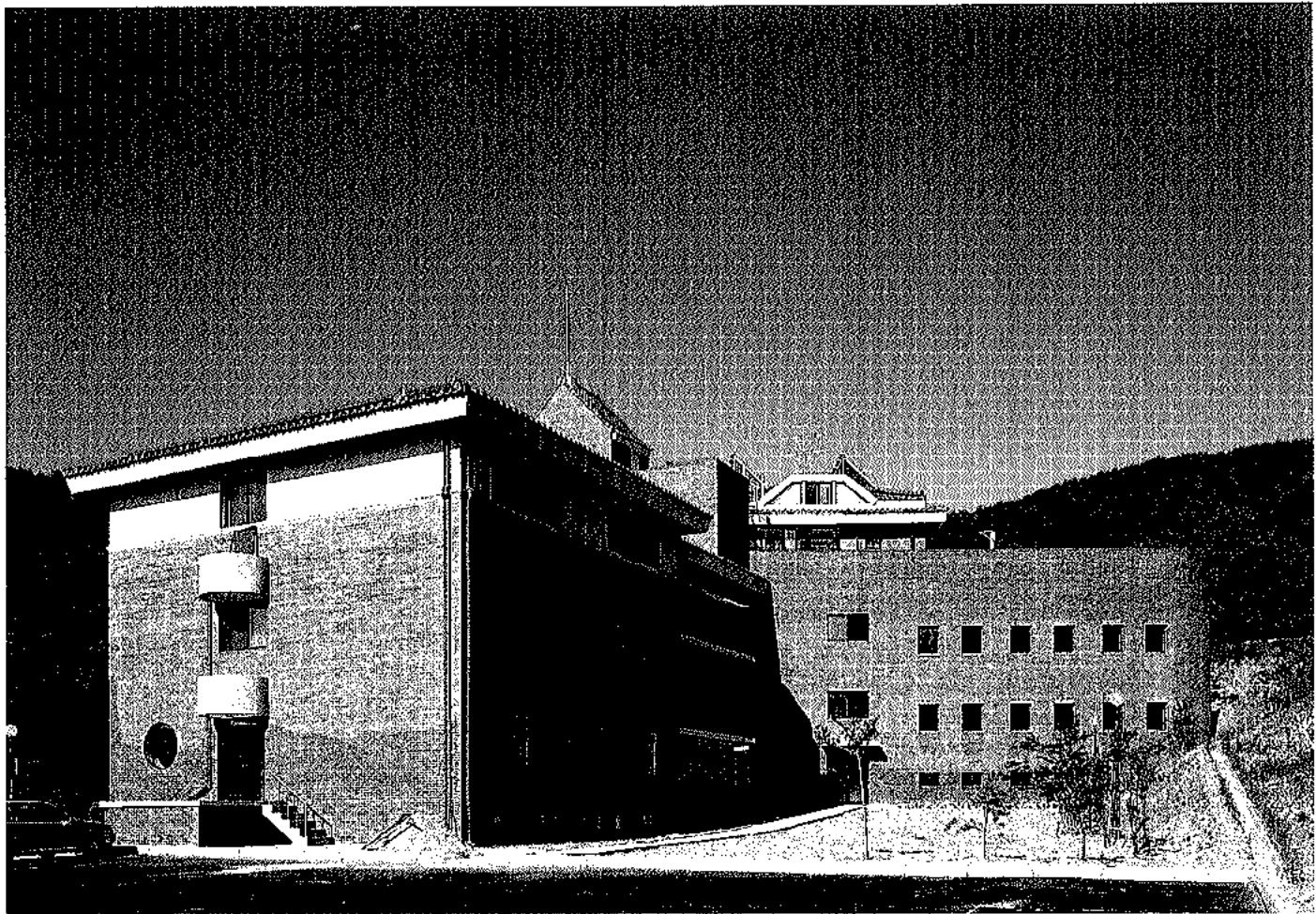


3



4

- ① 전경
- ② 배치도
- ③ 주진입로에서 본 전경
- ④ 서쪽에서 본 주출입구 전경



6



6

「이 세상의 천사는 뇌성마비아 장애인이다.」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우리가 그들을 돋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돋고 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강조하시는 신부님의 뜻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건축사로 선정됨에 두려움이 앞서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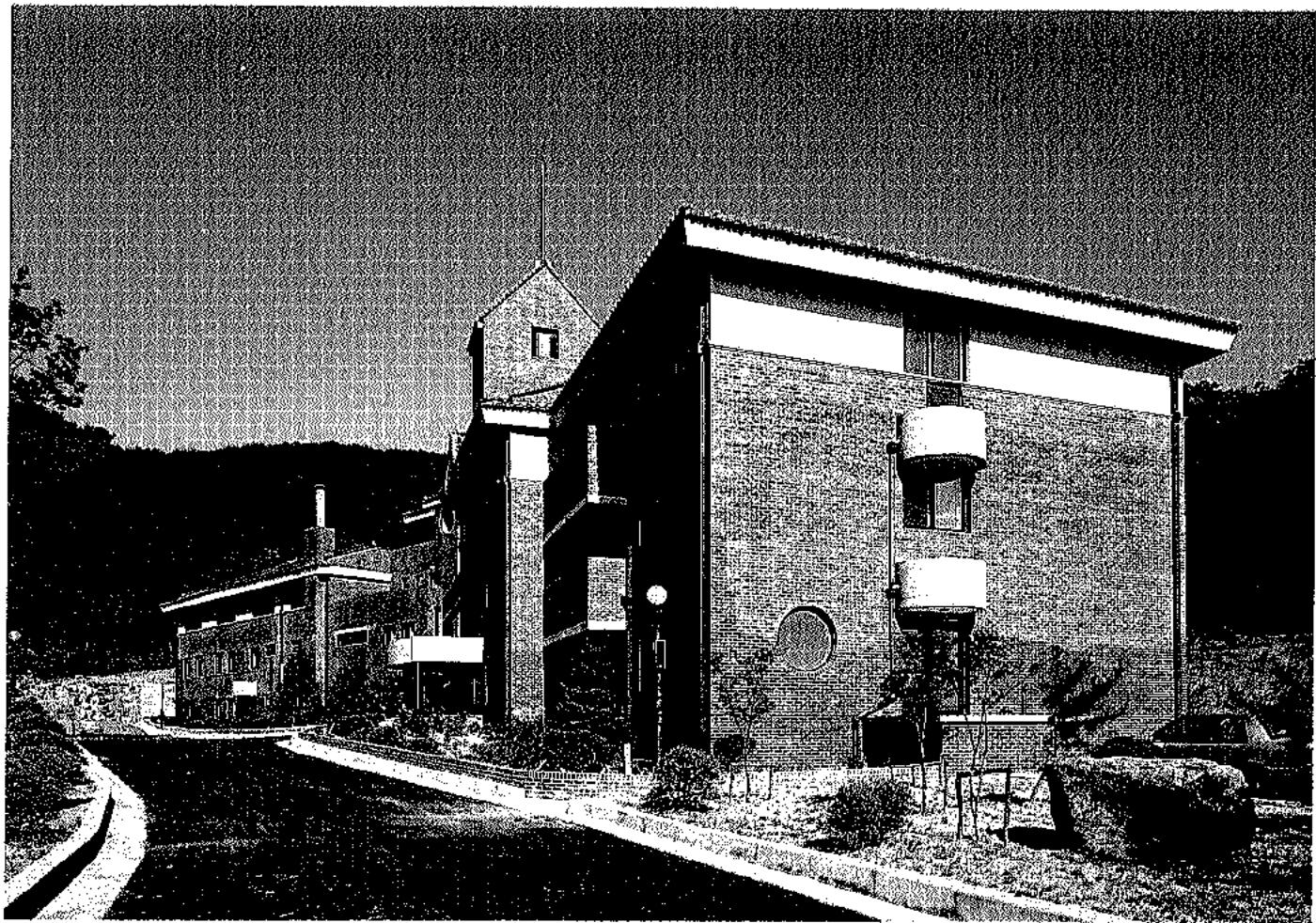
10여년전부터 시작되었던 프로젝트는 진행 도중에 Site가 한번 바뀌는 커다란 아픔과 시련을 겪는 등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1994년 5월 준공을 보게된 눈물과 사연이 깊은 작품이다.

뇌성마비 장애인들을 가진 가정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 시작된 이 작품은 가정을 떠나지만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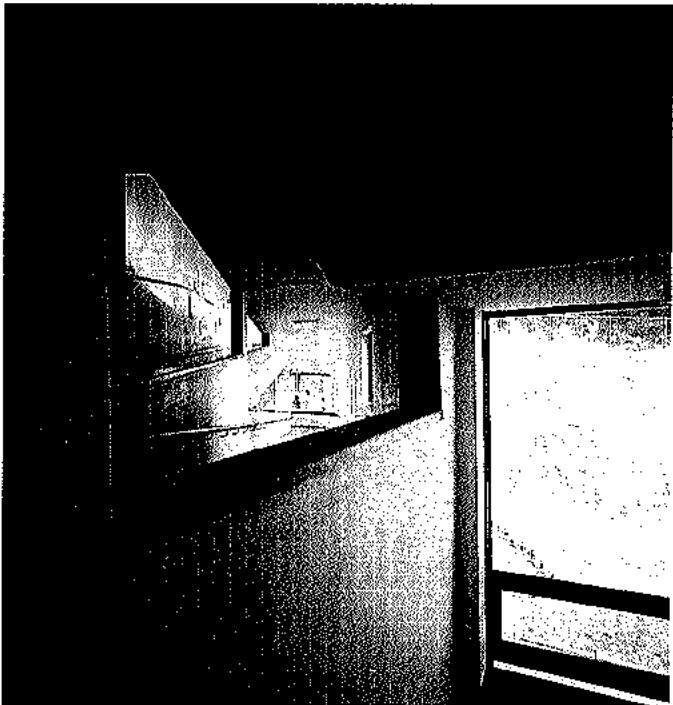
장애인 내부도 자기와 가정과 똑같은 평면을 구성도록 했다. 즉 10여명이 함께 살 수 있는 아파트 같은 평면을 3개의 Zone으로 연결 시켰다. 세탁기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거실에서 주로 10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재활시킬 이 집은 가능한 한 스케일을 Down시켜 어린이들이 무설고 새로운 세계로 이사해야 한다는 마



5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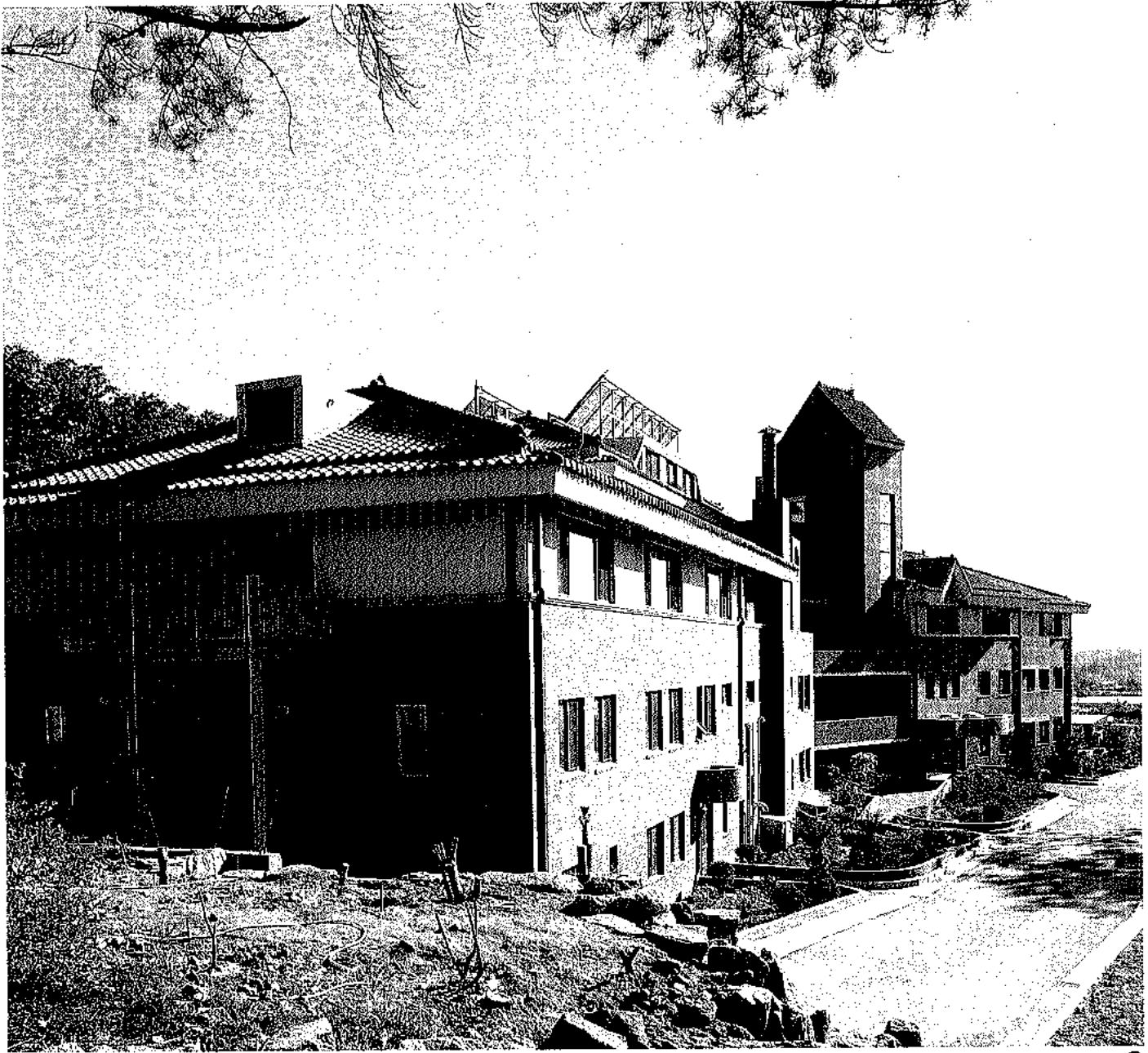
음을 없앨 수 있도록 건축적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이 어린이들을 돌볼 봉사자들의 생활도 편리하도록 동선체계를 단순하게 처리하였다.

지저분해지기 쉬운 이용 도구들을 쉽게 수납할 수 있는 수납공간을 마련하고 하루생활의 프로그램에 맞추어 순서대로 이용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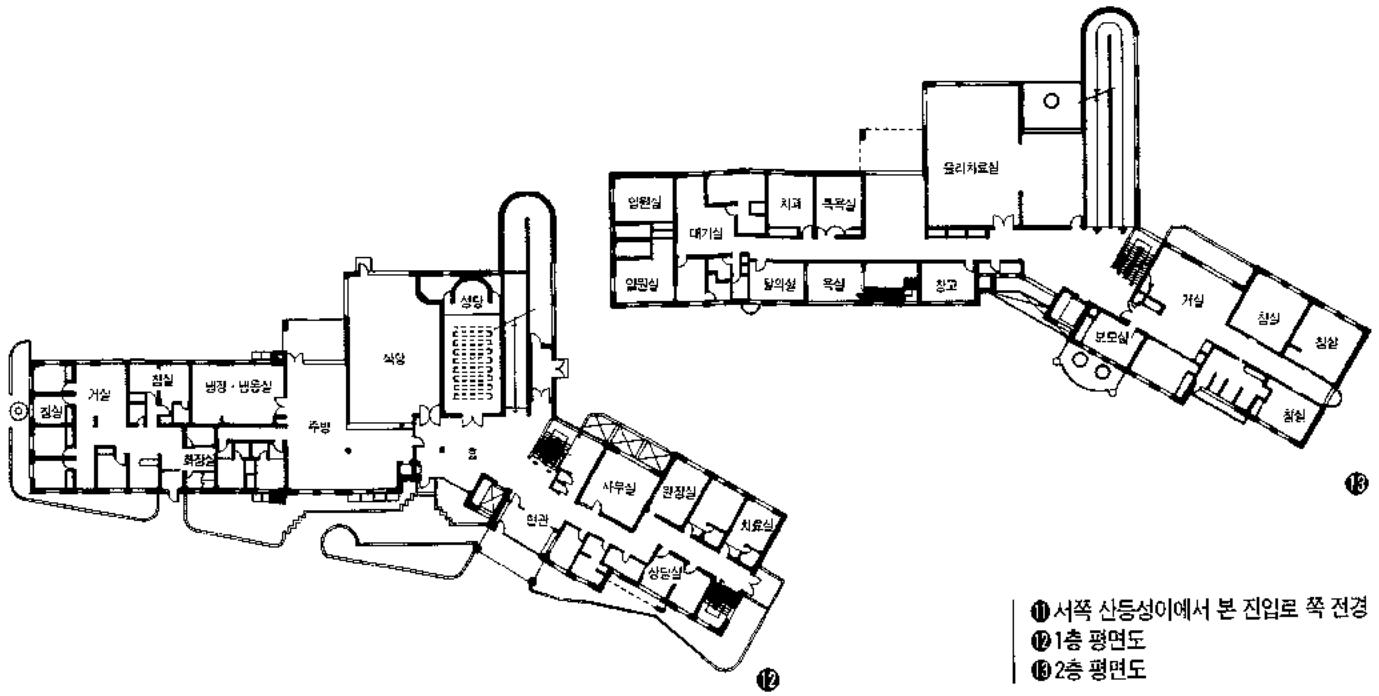
도록 평면계획도 세웠다.

가능한 한 어린이들이 재활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시설이었으면 더할나위 없겠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있는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면 한다.

- ⑤ 아외마당에서 본 전경
- ⑥ 홀에서 본 주거 UNIT
- ⑦ 성당내부
- ⑧ 주진입로에서 본 전경
- ⑨ 1층 홀 내부
- ⑩ 1층 홀에서 본 램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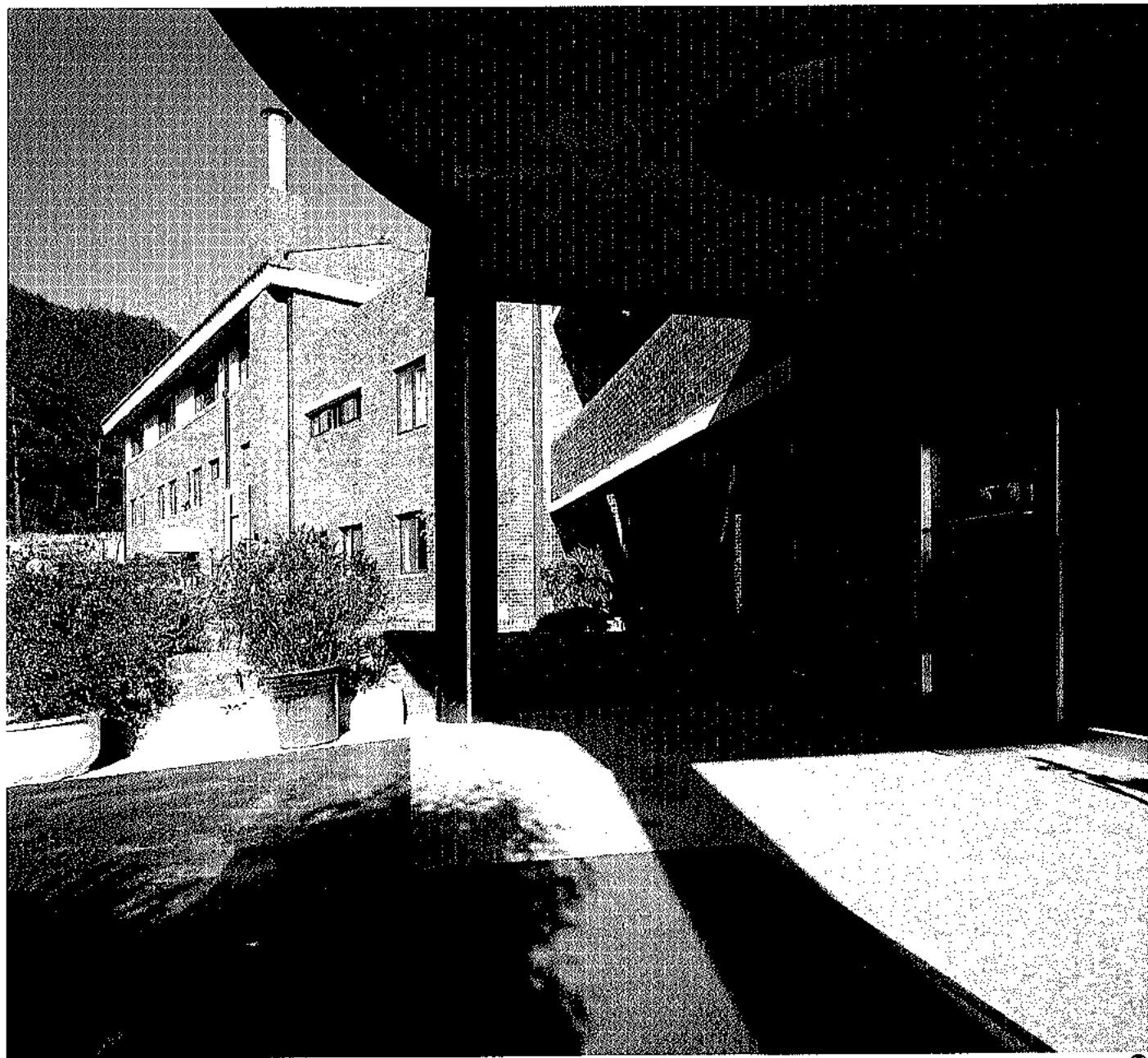
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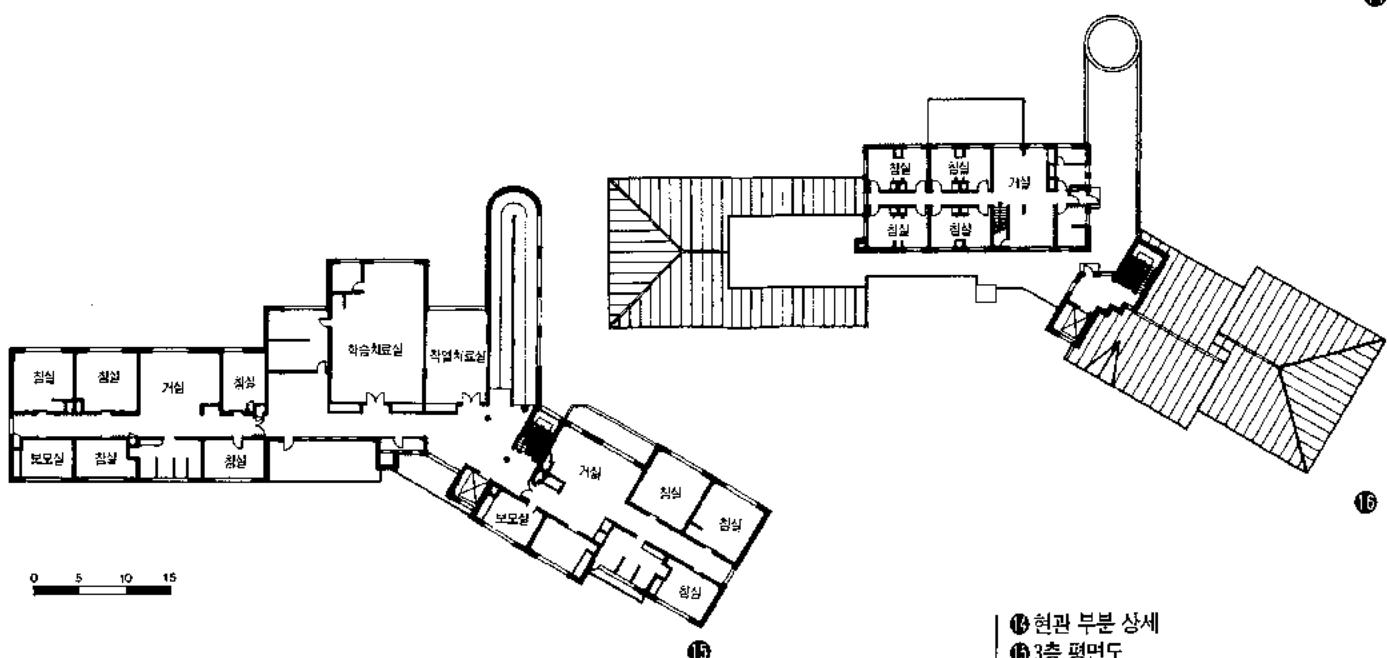
⑫

⑬

- ⑪ 서쪽 산등성이에서 본 진입로 쪽 전경
 ⑫ 1층 평면도
 ⑬ 2층 평면도



14



15

- ⑯ 현관 부분 상세
⑰ 3층 평면도
⑱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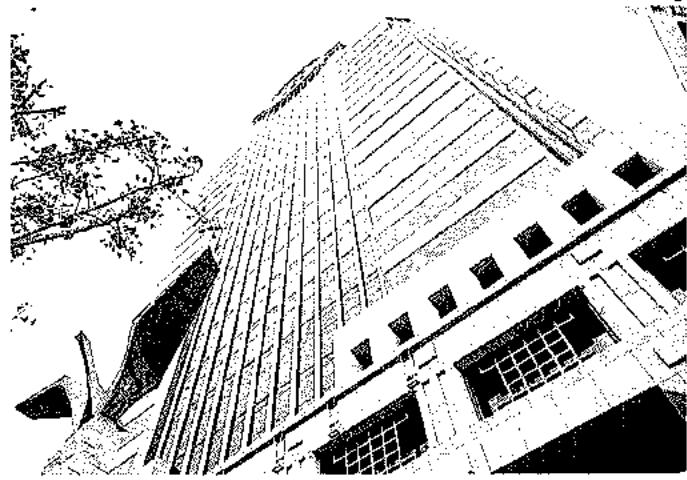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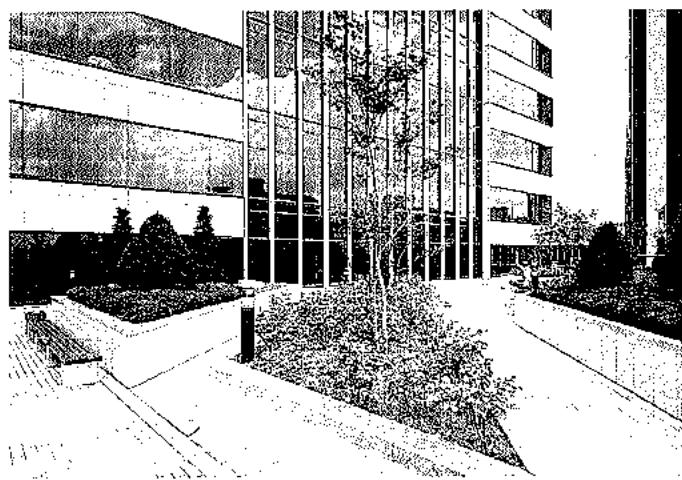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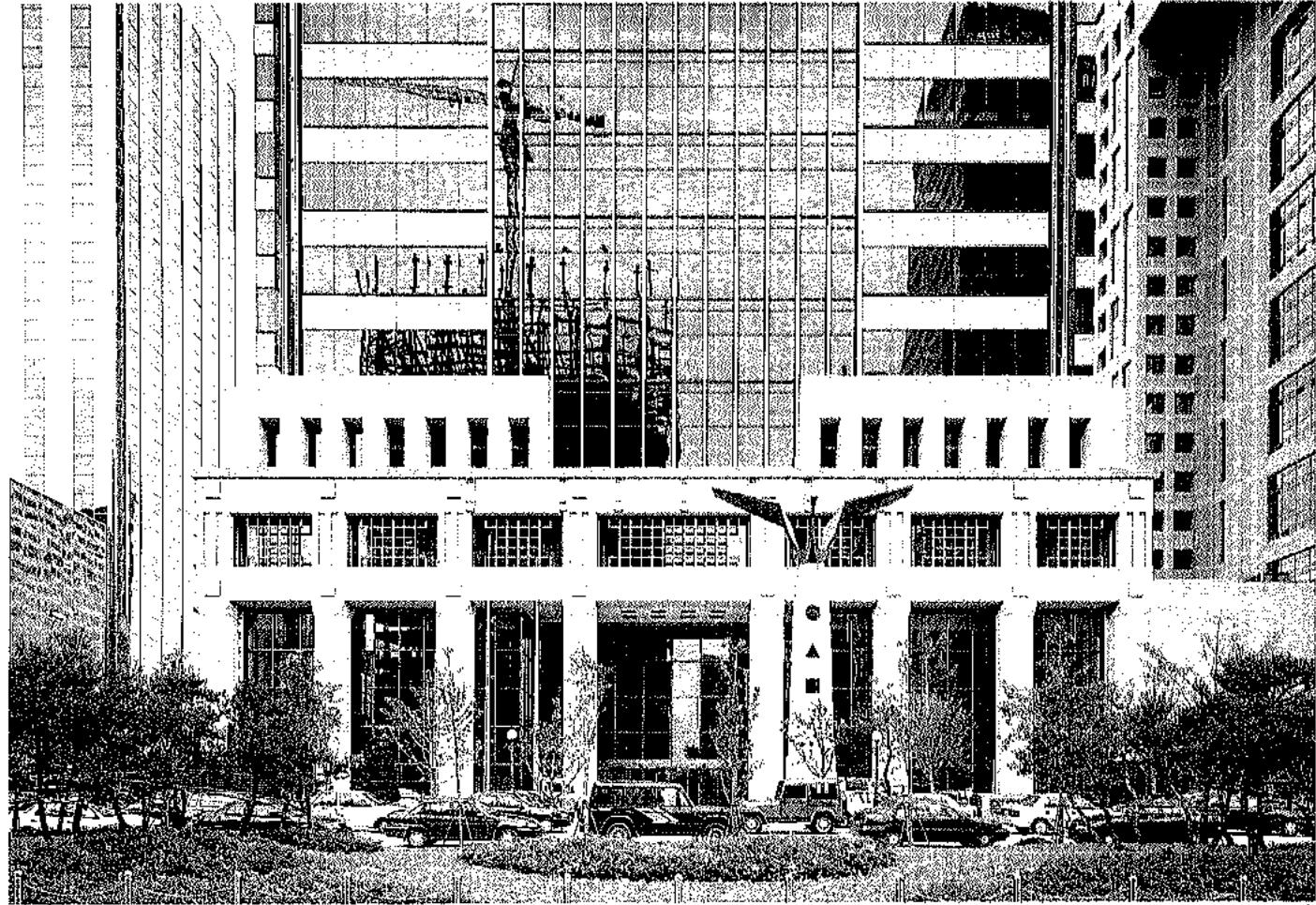
대한투자신탁 본점사옥

Taehan Investment Trust Head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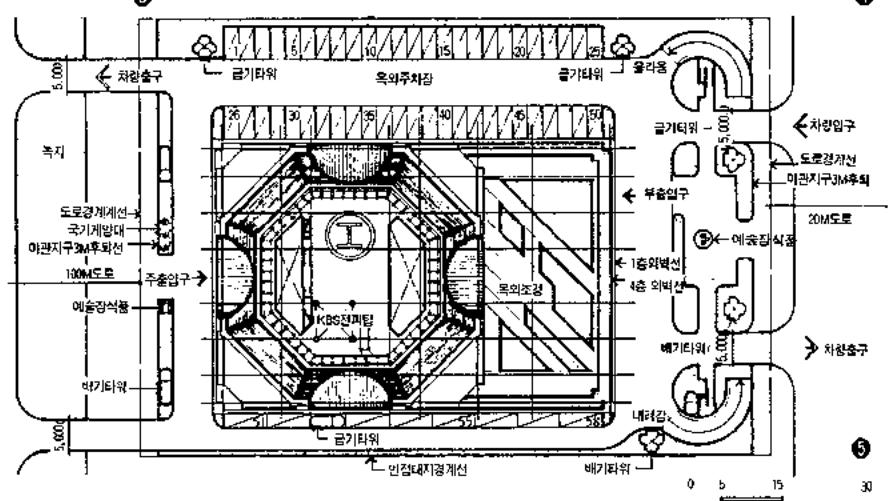
李永熙十閔丙勳十李錫文/(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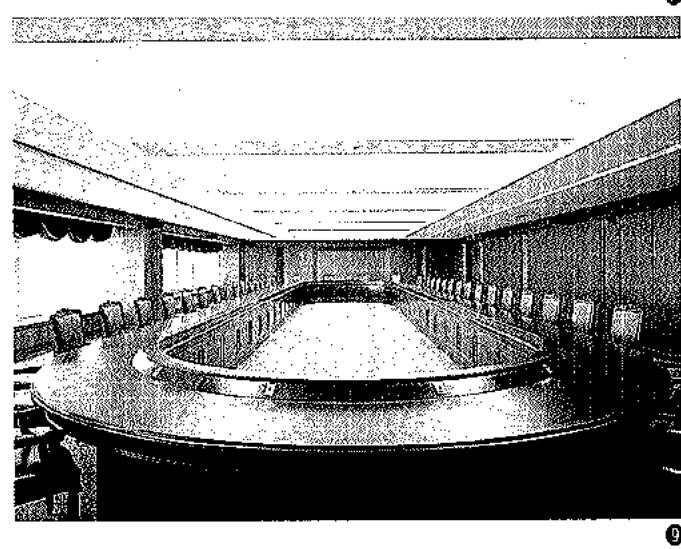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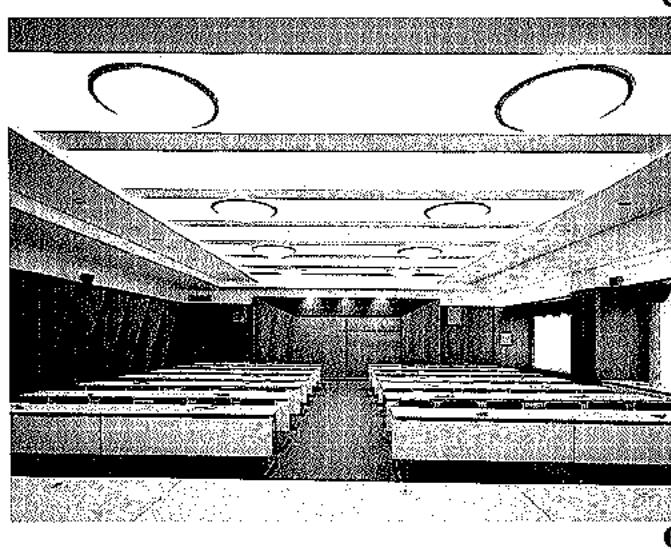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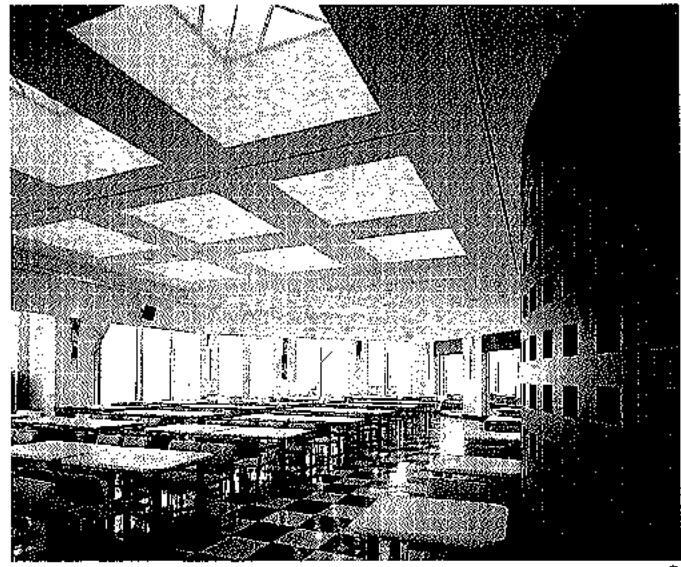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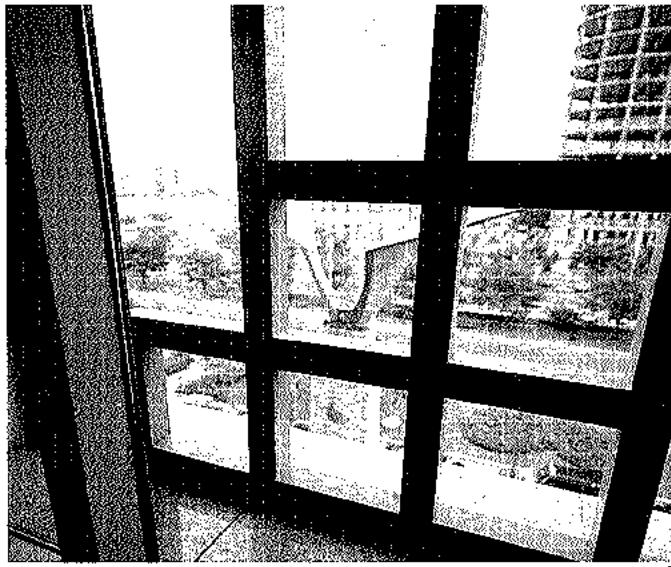
Designed by Lee, Young-Hee/Min, Byung-Hoon & Lee, Suk-Moon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대지면적 / 7,576m²
 건축면적 / 2,803.99m²
 연면적 / 69,078.8m²
 건폐율 / 37.04% m²
 용적률 / 570.60%
 규모 / 지하5층, 지상23층, 옥탑2층
 구조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화강석 벼너구이, 컬러알루미늄
 바, 착색 복층유리
 설계담당 / 이목운





배치

대지의 후면은 밀집된 APT단지이고, 전면은 국회의사당을 향한 100m폭의 의사당로가 여의도광장과 마주차는 끝부분에 위치한다. 국회의사당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을 때 광장만큼의 수평적 거리에 비례하여 본 건물의 높이 및 형태가 강한 시각적 틀을 구성한다.

반면, 후면의 APT군에서는 답답하게 하늘을 가로막는 벽이 되지않게 하고 휴먼스케일을 감안한 입면으로 시각적 편안함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배치는 고층부가 의사당로에 바짝 다가서서 후면의 시야를 최대화하여 근접거리에서의 가로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전면부는 국회의사당을 중심으로 한 여의도 전체 가로체계를 원거리에서의 축을 형성하기 위해 다소 강한 자기주장을 하도록 하였다.

전술한 대지의 양면성은 건물의 입면에 있어서 도시적 스케일에서의 고려, 인간적 스케일에서의 고려는 물론 인지차원에서의 다의적 요소들과의 결합과 결합과정에서의 모호함에 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저층부와 고층부

도시적 차원에서 저층부는 길을 구체화시켜 주는 담의 성격을 가지며, 소유를 구분하는 단

순한 Fence이기 보다는 외부공간이 장소성을 가질 수 있도록 특성화된 표정을 가지도록 하였다.

따라서 음영이 깊고 고전적 분위기의 화강석 열주와 창들의 반복, 전통 완자문양의 그릴 등으로 외피의 딱딱함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강한 상징적 표정을 갖도록 했으며, 정면에서는 상징적 건물로서의 고층부를 받쳐주는 좌대의 역할을 하며 후면에서는 가로축으로 펼쳐되어 고층부의 위압감을 감소시켜 준다.

고층부는 직선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각면의 중앙부는 수직멀리온을 곧게 배치시키고, 좌우측에 GPC수평띠로 이를 완화, 보완시켰으며 옥탑의 경사진 지붕으로 수직멀리온과 수평 GPC의 점진적 상승감을 통일시켜 그 합침에 상징마크를 두었다.

고층부의 네 모서리는 또다시 수직멀리온으로 처리하여 건물이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통일된 입면을 유추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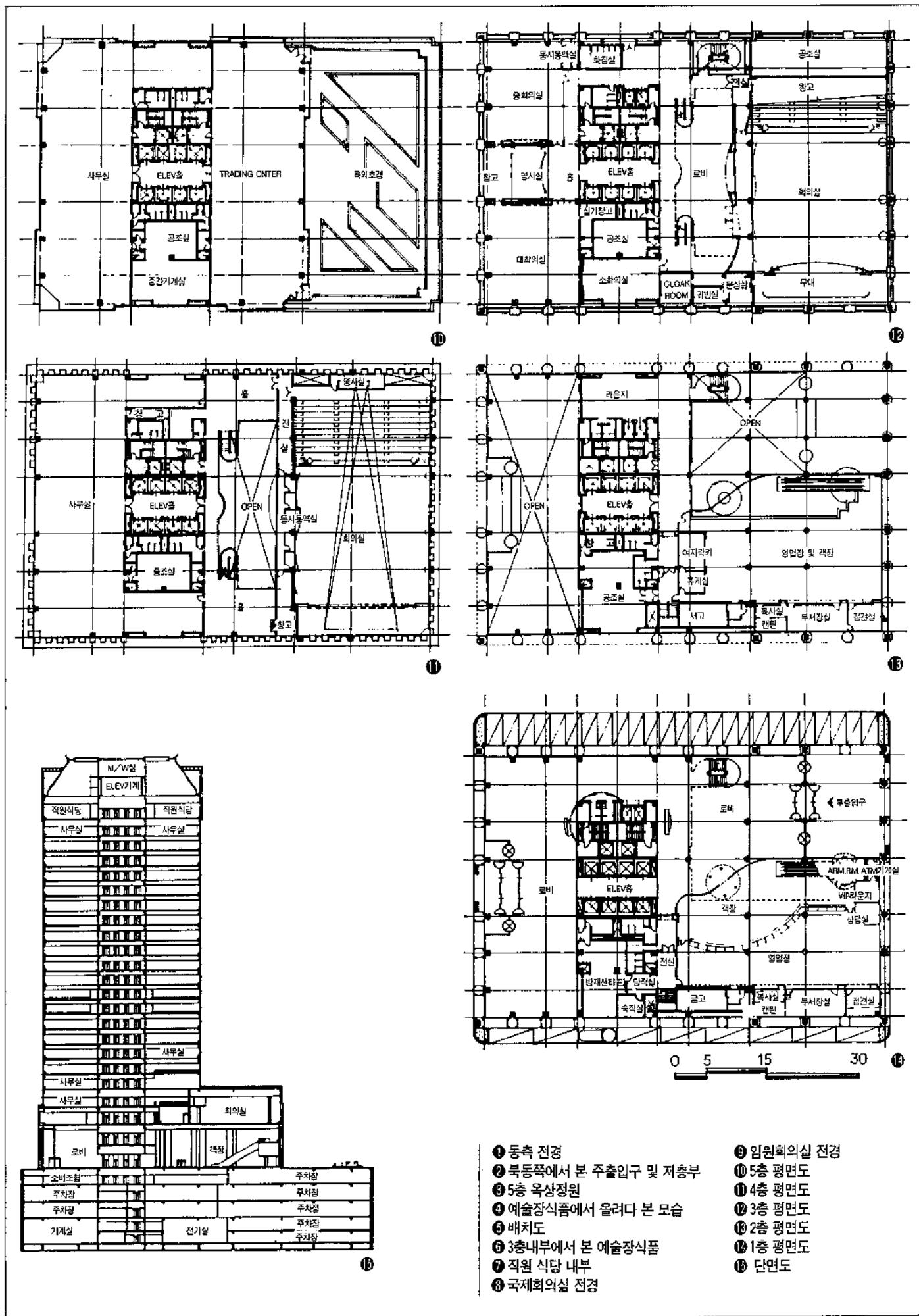
강조와 완화 또다시 강조, 그에 따른 다양한 면의 분할과 또 다른 요소에 의한 통합, 이것이 전술한 배치개념에서의 양면적 환경요소가 설계에 있어서 다의적인 요소의 통합으로 구체화 된 것이다.

상징마크는 중심부에 상입성을 띤 현대건축으로서의 Symbol적 기능을 강조한 CLP마크를 두고 외곽에서 백제 와당에서 유추한 전통적 (Vernacular)문양으로 감싸므로써 입면전체는 도시적 요소는 물론 점, 선, 면에 의한 단순 3차원적 심미감과 그 시작적 디자인에 내포된 전통성, 상징성 등의 4차원적 개념이 모두 통합되도록 하였다.

내적의도와 외적표현

건축의 내면적 의도와 외부적 표현요소들은 꼭 서로 종속, 통합되는 것은 아니다. 의도 자체가 다의적인 제약들에서 출발함은 물론, 표현요소들은 내면적 의도와 비슷한 질량의 독자적 의미를 갖게 되므로 통합되었는가 하면 해체되어지려 한다. 그 사이에 약간의 과장과 모호성이 보이고 이러한 모호성(Ambiguity)은 논리적이건 갑작적이건 시대정신이 산출해 낸 인식의 틀을 약간을 비집고 그 속에 갇혀있던 창조적 정신이나, 풍부한 미적 토양들이 살아나도록 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때문에 통합된 설계 산물로서의 건축은 역사의 양식을 포용하면서도 항시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



경기은행 수원지점

Kyeonggi Bank, Su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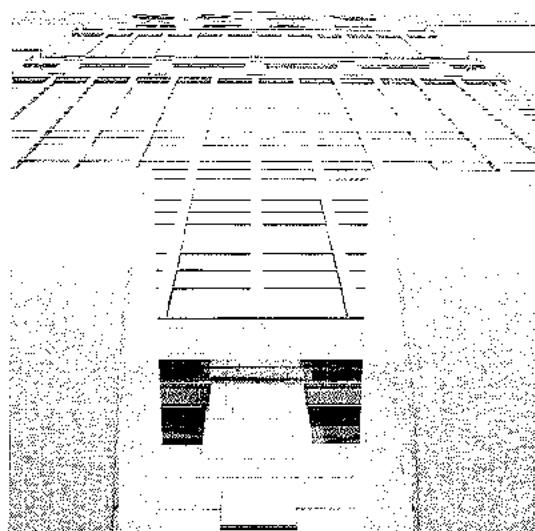
李永熙+閔丙勳+李錫文/(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Young-Hee / Min, Byeong-Hoon & Lee, Suk-M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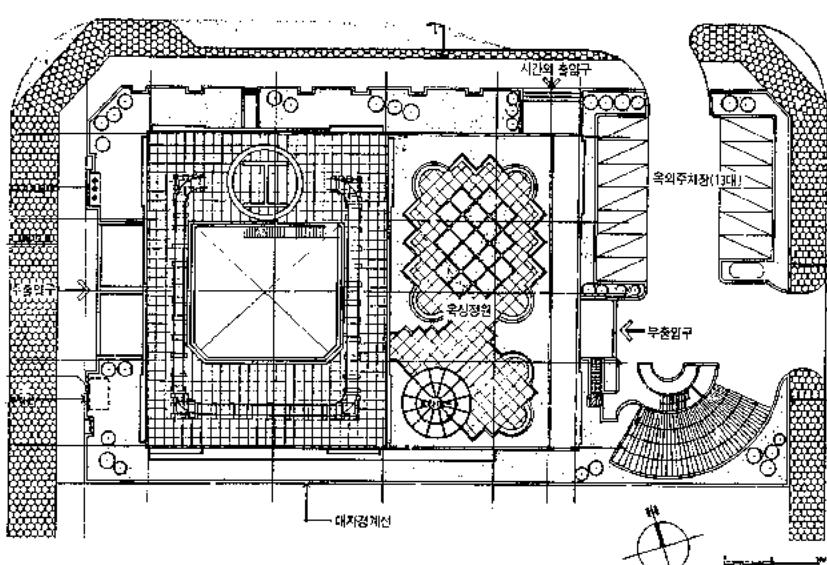




②



③



④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지구 인계동 1124

지역 · 지구 / 일반상업지역, 2종미관지구,

방화지구

대지면적 / 3,537.6m²

건축면적 / 1,735.05m²

건폐율 / 49.04

용적률 / 459.8

연면적 / 27,186.27m²

규모 / 지하3층, 지상15층

구조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설비방식 / 중앙집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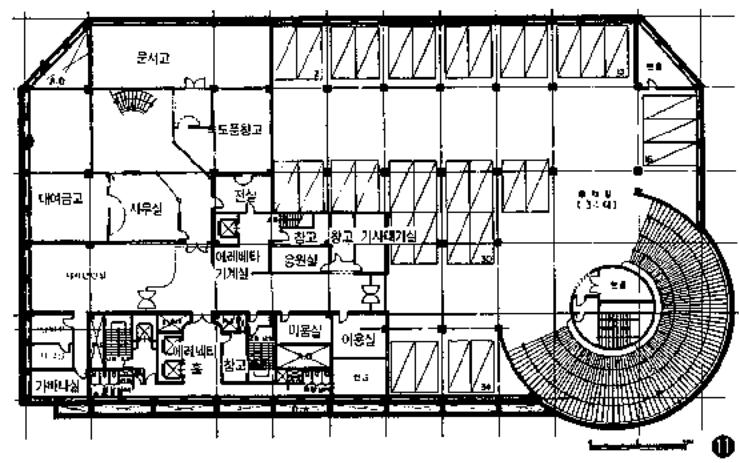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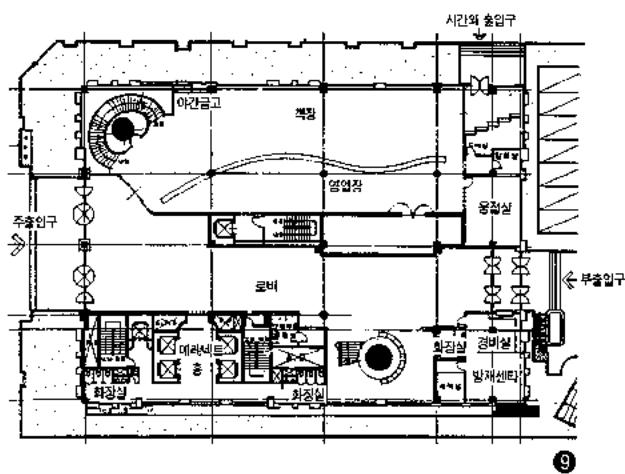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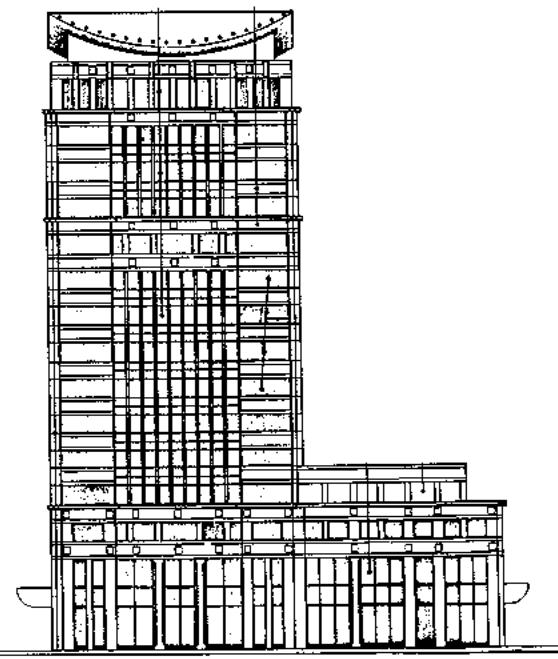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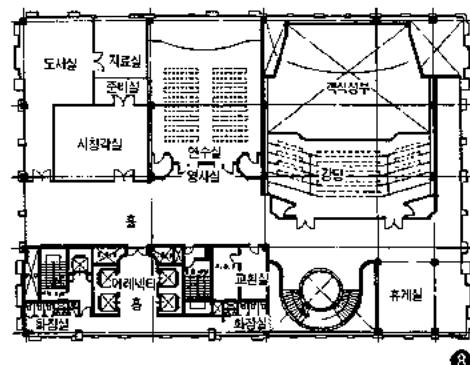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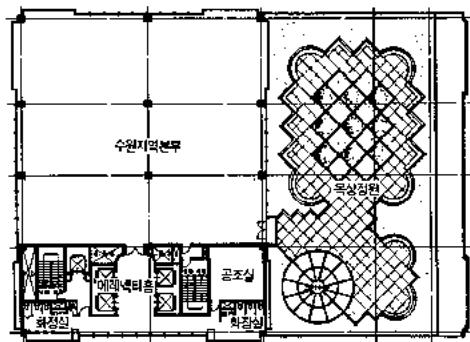
주요외장 / 화강석 벼너마감 + 18mm 박사복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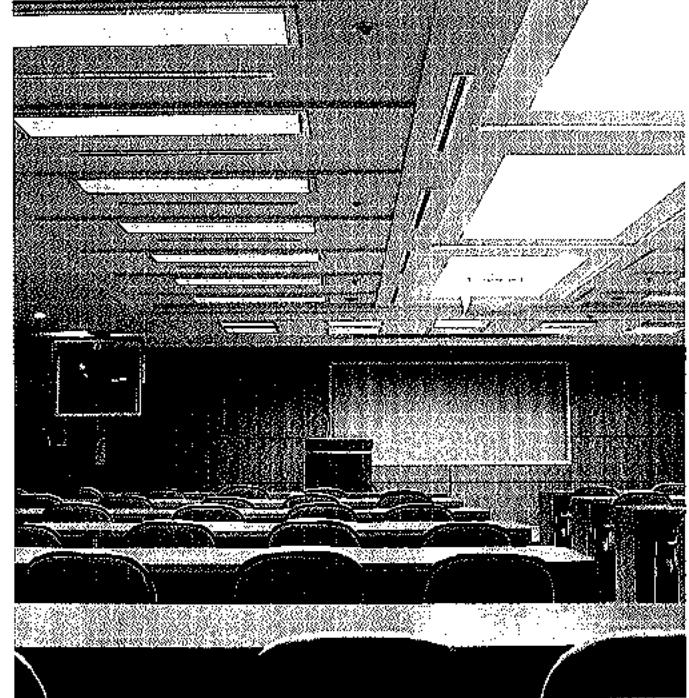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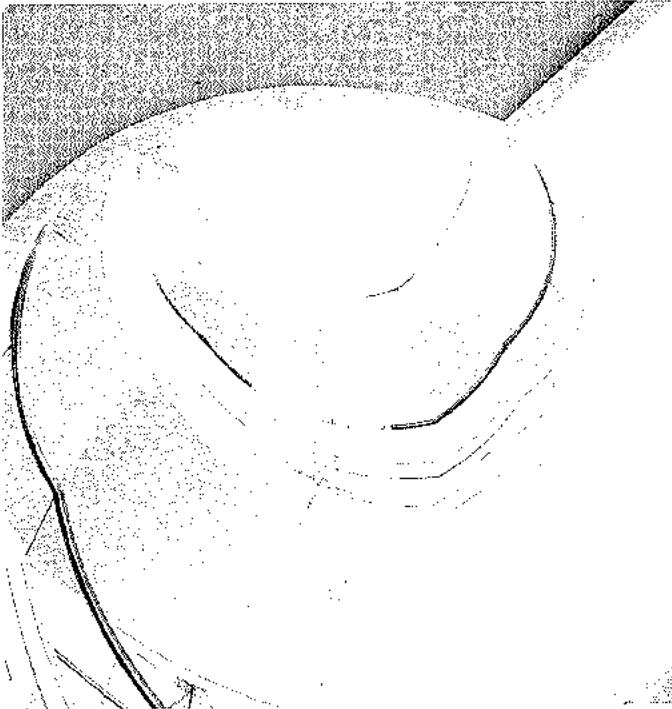
유리

- ① 북측전경
- ② 주출입구 상세
- ③ 주출입구에서 올려다 본 모습
- ④ 배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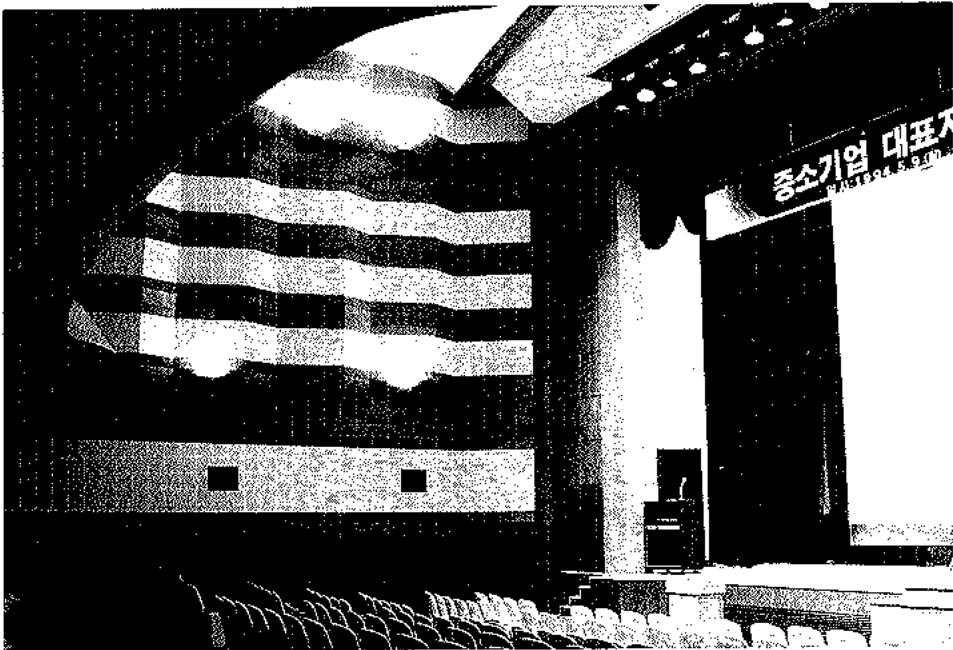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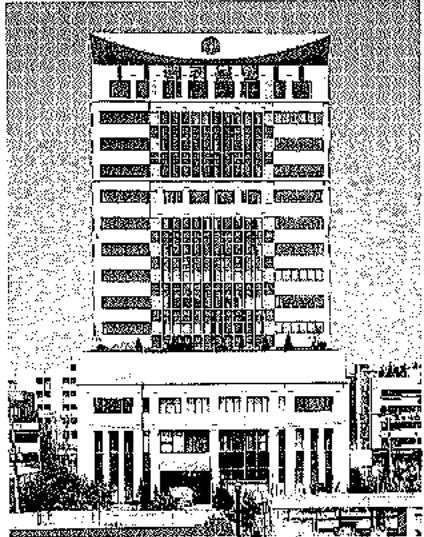


12

13



14



15

경기은행 수원지점 신축설계의 주안점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첫번째는 경기은행이 가지는 특성이 무엇이며, 또한 경기은행이 요구하는 특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우선 은행의 특성은 안정과 번영 및 신뢰성을 건물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상업적 성격의 강조에 따른 인지성을 높이는 것이다.

○ 두번째는 장소적 특성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광역적으로 볼 때 본 건물이 위치한 수원은 수원성을 비롯한 전통건물이 잘 보존된 곳으로서 그 장소성을 대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소적 특성을 조형상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 세번째는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이 시대에 사용하기에 편리한 기능적인 건물과 이 시대에 적합한 건설기술방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에 의해 우선 건물의 외관은 기단부와 몸통부분, 누간 및 지붕부분의 삼단으로 구성하였다. 기단부는 좀 거친돌을 사용함으로써 안정감을 추구하였으며, 몸통부는 수직선을 강조하여 번영을 의미하도록 하고 네 귀퉁이는 수평적 요소로 감싼으로서 상승감과의 조화 및 상호 보완관계로 입면 구성상 수평적 삼단구성과 일관된 구성으로 통일감을 준다.

지붕부분은 전통 건축에서 유추한 지붕 면을 살림으로써 도시건축의 Symbol로서 상업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장소적 특성 및 Land

Mark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재료는 돌과 유리 알루미늄 등을 사용하여 이러한 형태와 재료에 이어서 대비와 통함으로서 전체적인 조화를 추구한다.

- ⑥ 1층 계단홀 및 조형물
- ⑥ 1층 은행 객장
- ⑦ 5층 평면도
- ⑧ 3층 평면도
- ⑨ 1층 평면도
- ⑩ 우측면도
- ⑪ 지하1층 평면도
- ⑫ 계단 천장 상세
- ⑬ 세미나실 내부
- ⑭ 강당내부
- ⑮ 북서측 전경

회원작품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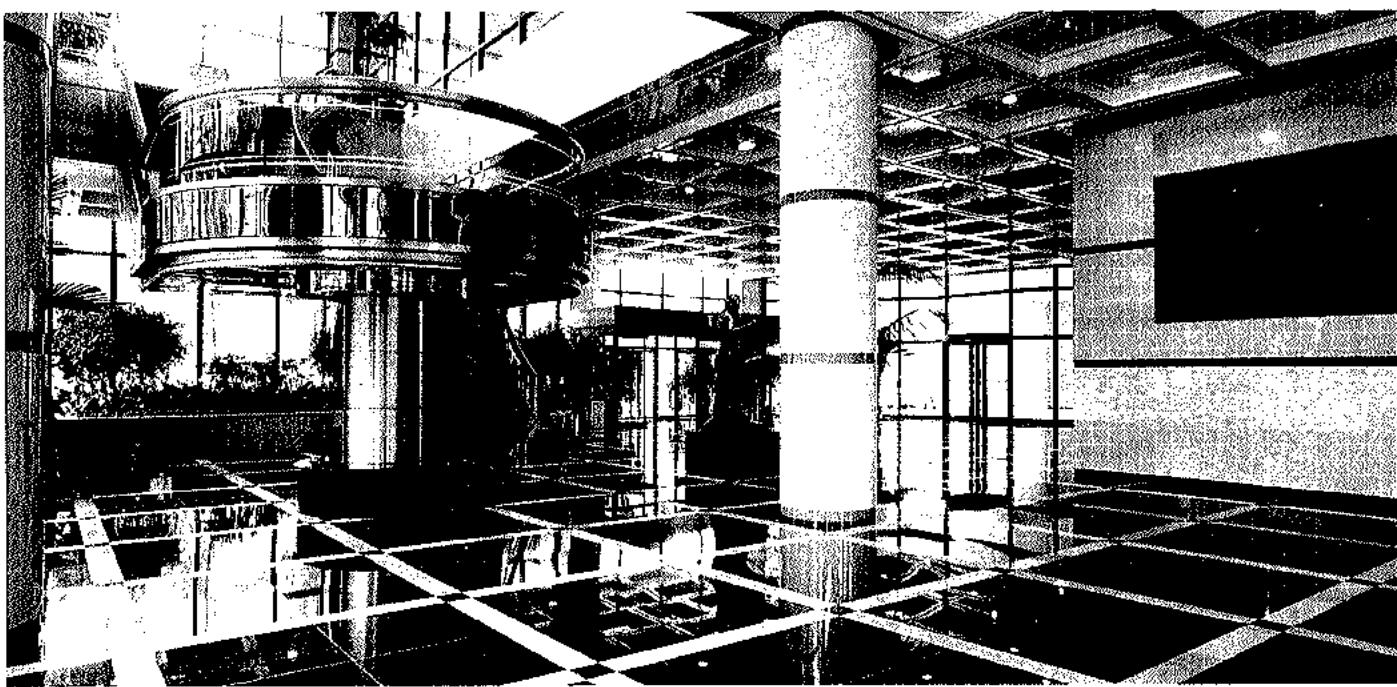
중앙투자신탁본점사옥

Chung-ang Investment Trust head Office

(주) 정림건축

Designed by Junglim Architects & Engine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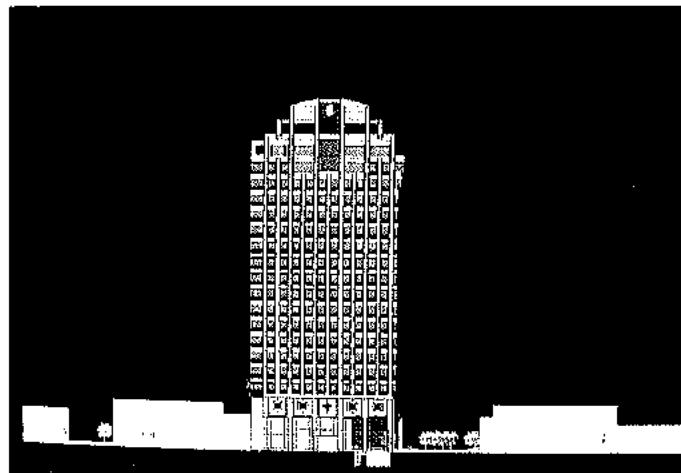




②



③



④

위치 / 대전시 중구 선화동 83-11

대지면적 / 2,206.1m²

건축면적 / 1,110.47m²

연면적 / 25,799.53m²

건폐율 / 50.33%

용적률 / 781.48%

규모 / 지하 5층, 지상 16층, 옥탑2층

구조 / 철골조, 철근콘크리트 라에조

외부마감 / T30 화강석불갈기, 베녀구이

설계기간 / 91년 1월~91년 7월

완공 / 94년 7월

설계담당 / 김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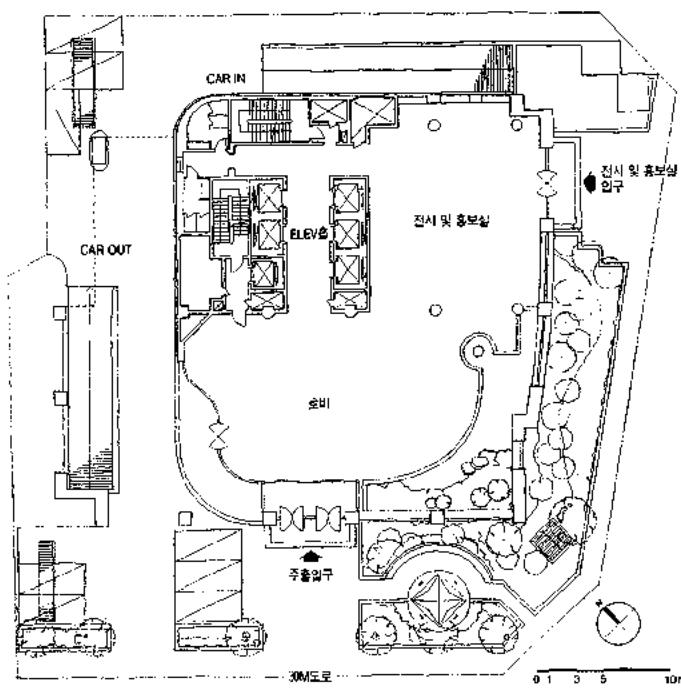
① 남측전경

② 1층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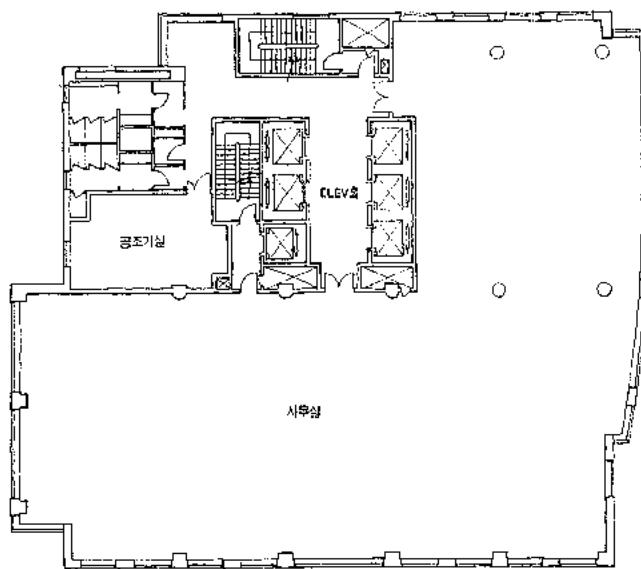
③ 캐드 초기안 1

④ 캐드 초기안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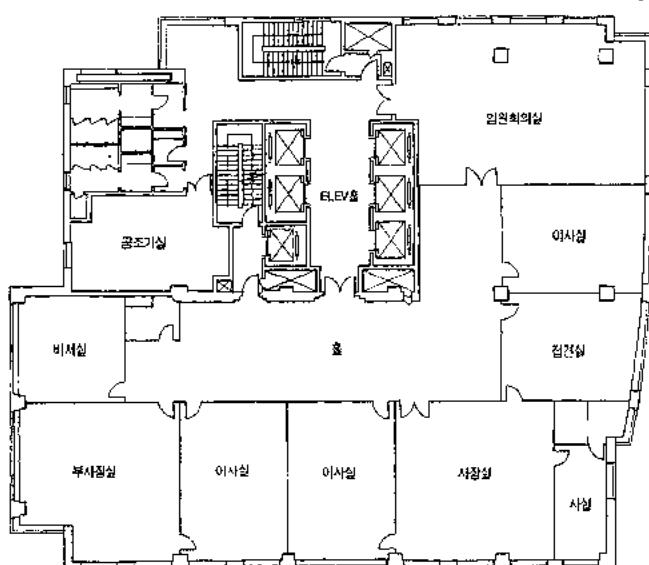
⑤ 1층 평면도 및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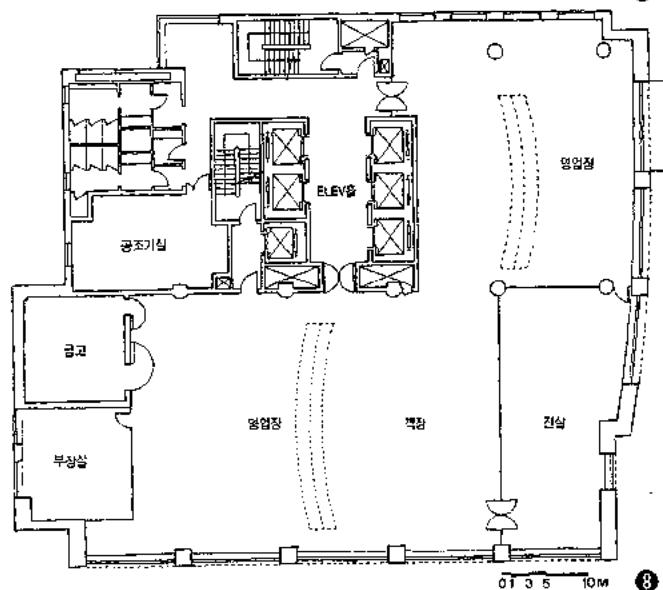
⑤



⑥



⑦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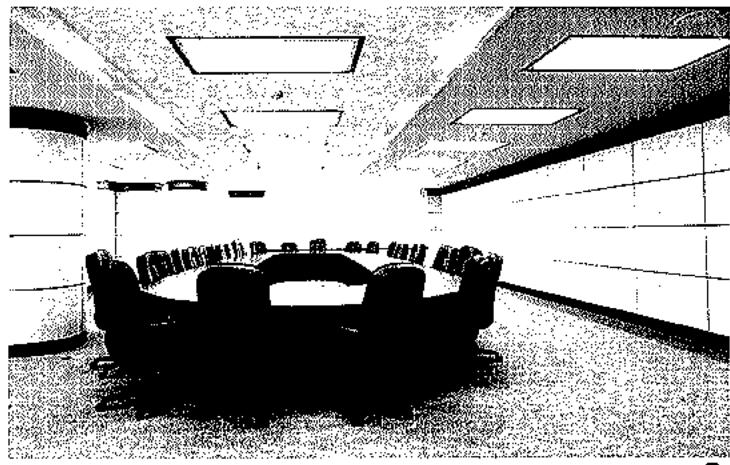


⑨



⑩

- ⑥ 기준층 평면도
- ⑦ 7층 평면도
- ⑧ 2층 평면도
- ⑨ 남서측 원경
- ⑩ 2층연결 계단실



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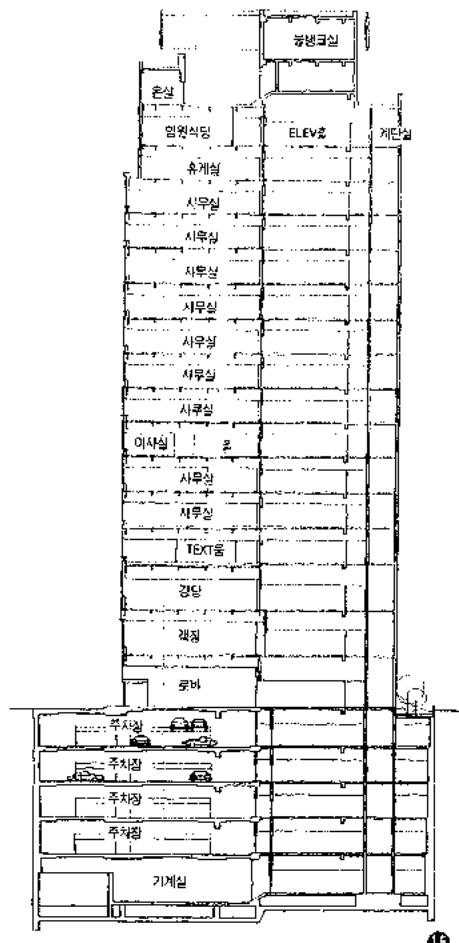
⑫



⑬



⑭



본 건물은 현상설계에 의해 실현된 Project이다.

계획 초기에 주안점을 두었던 사항들은 건축주가 표현하고 싶은 건물의 Image에 대한 분석과 대전시 도시환경과의 관계 설정에 당위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업무시설 계획시에 공통적으로 요청되는 사항들은 해당부지가 갖는 제반법적 허용기준에 최대한 근접하는 전폐율과 용적률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본 건물의 평면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다.

형태 또한 부지여건과 직접적인 건물의 외관에 의한 Image는 지방화 시대의 실증적 표현과 그 지역에서 출발한 제2 금융권 사옥으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 석재와 Grid Pattern을 주조로 하여 각 면에 부분적 변화를 갖게 하였다.

또한 이러한 외관 Image는 대전 기존 도심권의 변화감 없는 도시 환경에 어떤 훌륭함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⑪ 7층 임원회의실

⑫ 5층 사무실 내부

⑬ 3층 강당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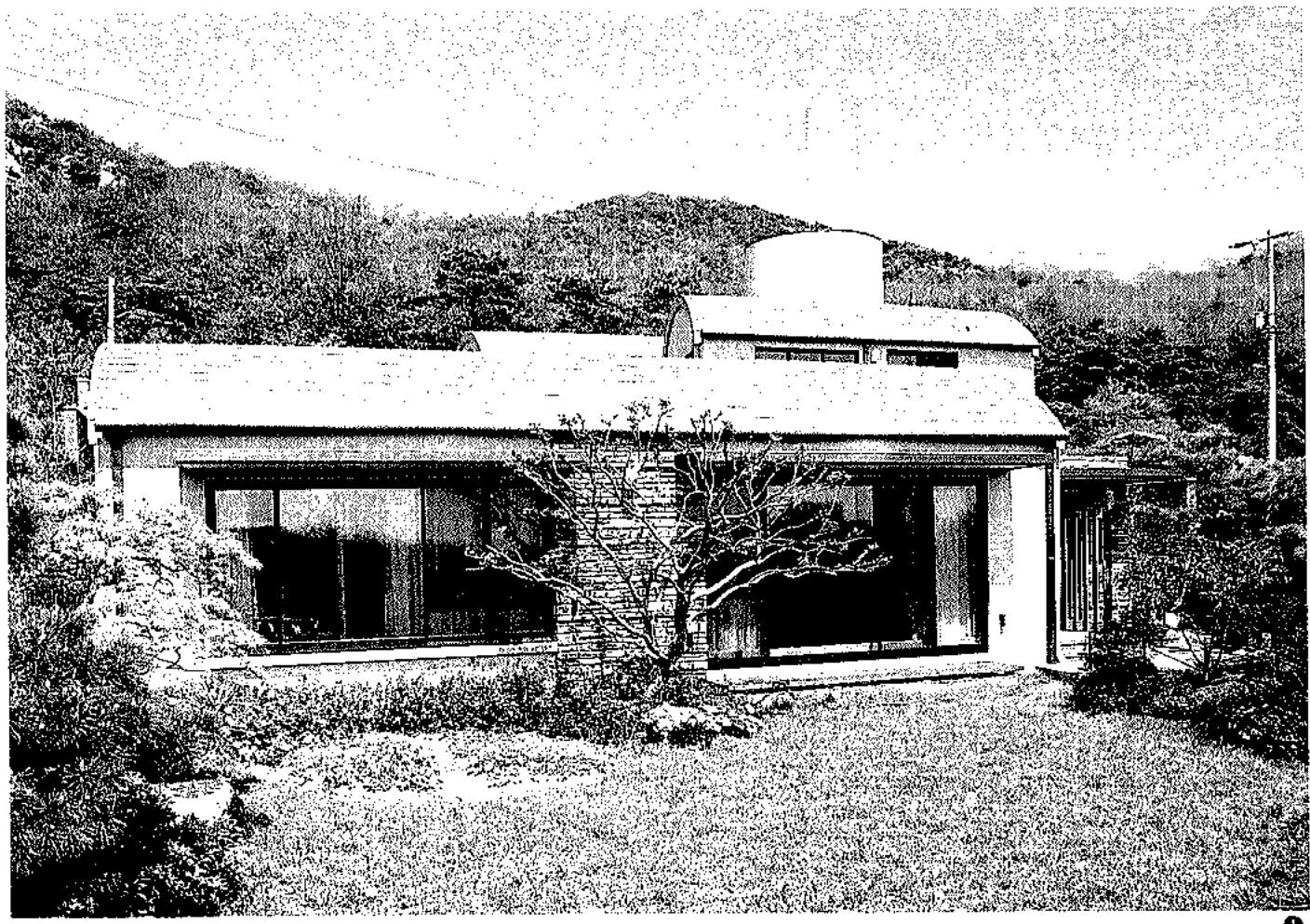
⑭ 2층 객장 내부

⑮ 종단면도

옥련동 茶泉莊

Dhachun Residence

宋光燮/종합건축사사무소 환
Designed by Song, Kwang-Sub



위치 / 인천시 남구 옥련동 576-1
지역 / 도시설계, 3종미관, 일반주거, 주차

장정비

주요용도 / 단독주택 및 균형생활시설

대지면적 / 809.8m²

건축면적 / 283.5m²

건폐율 / 35.01%

연면적 / 419.96m²

용적률 / 43.4%

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구조방식 / 조적조

설비방식 / 패널히팅

주요내장재 / 벽지, 콜라톤 도장

주요외장재 / 드라이비트, 동판 싱글, 제주석

설계기간 / 92.11~93.2

시공기간 / 93.2~93.11

계획담당 / 송광섭, 조상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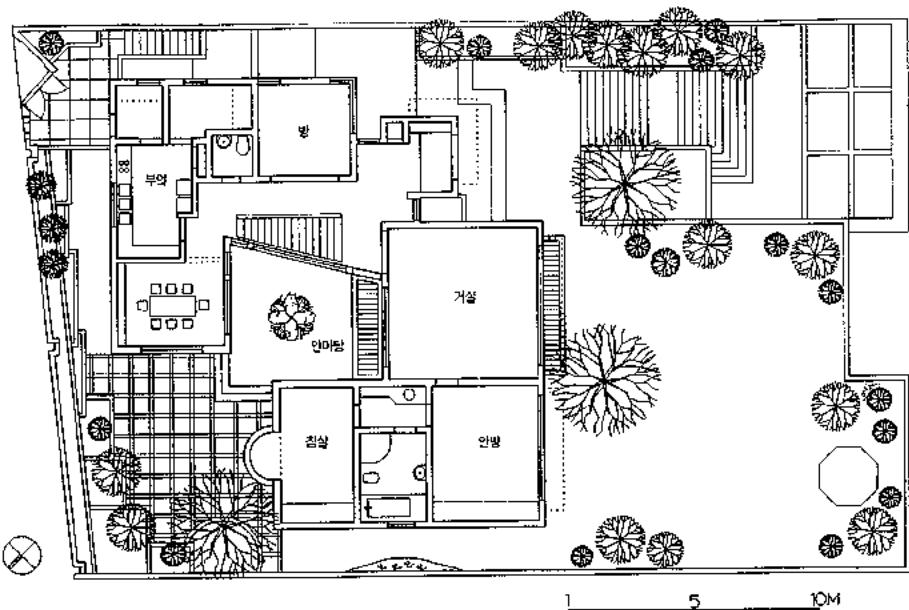
구조설계 / 한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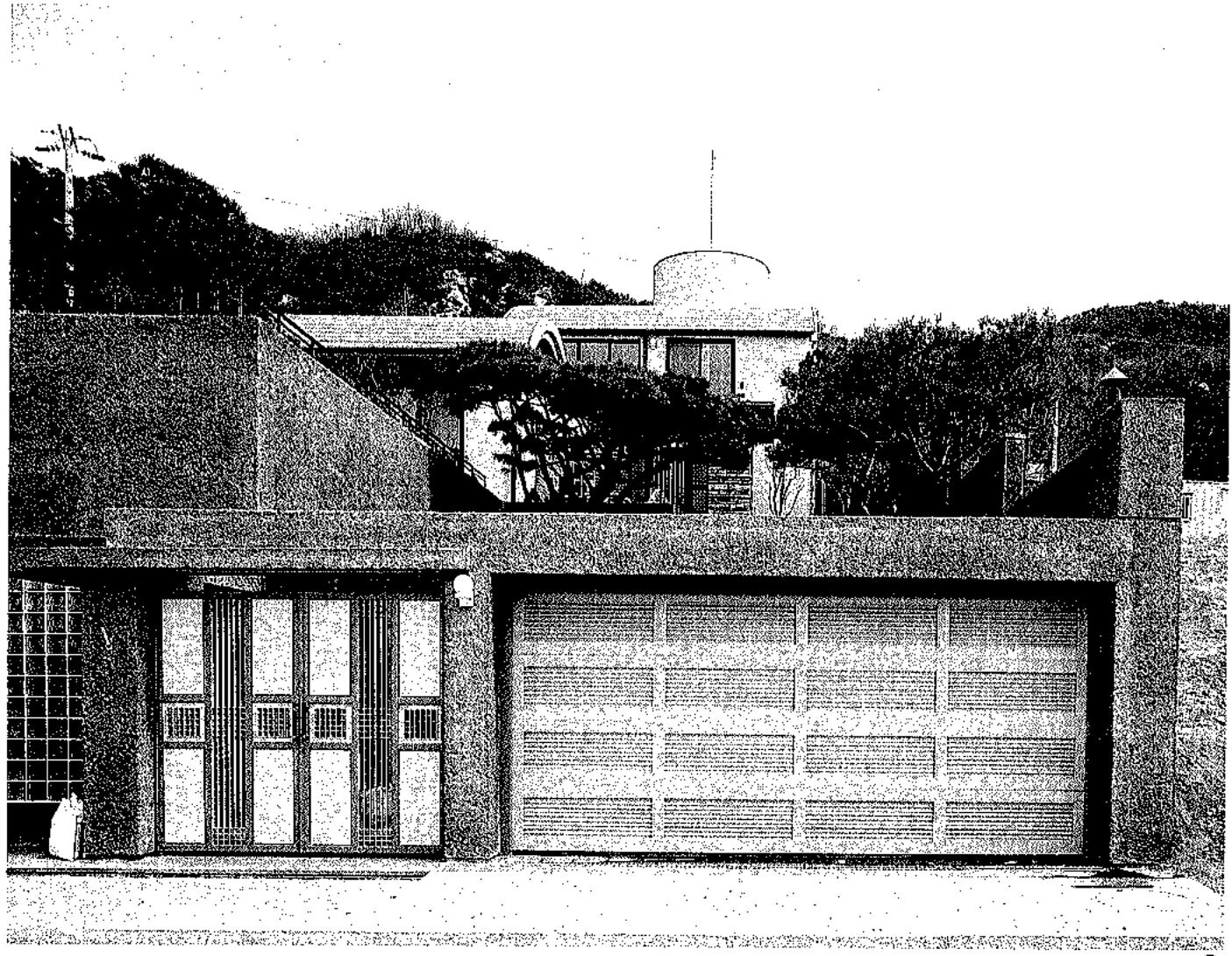
기계설비 / 세종설비

전기설비 / 문화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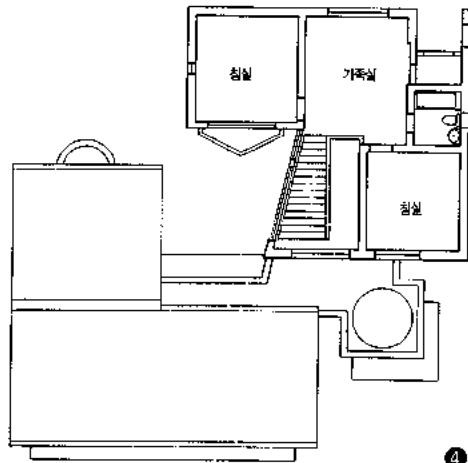
조경설계 / 환건죽·정충식

인테리어설계 / 환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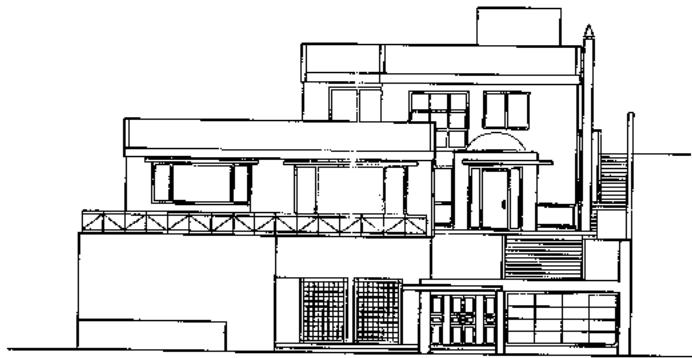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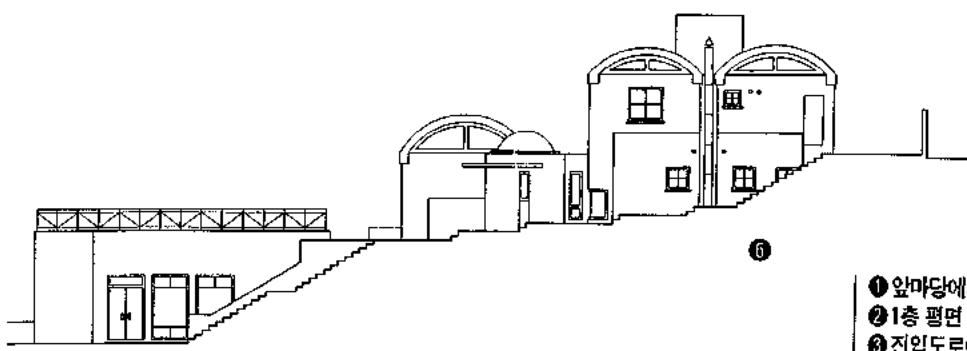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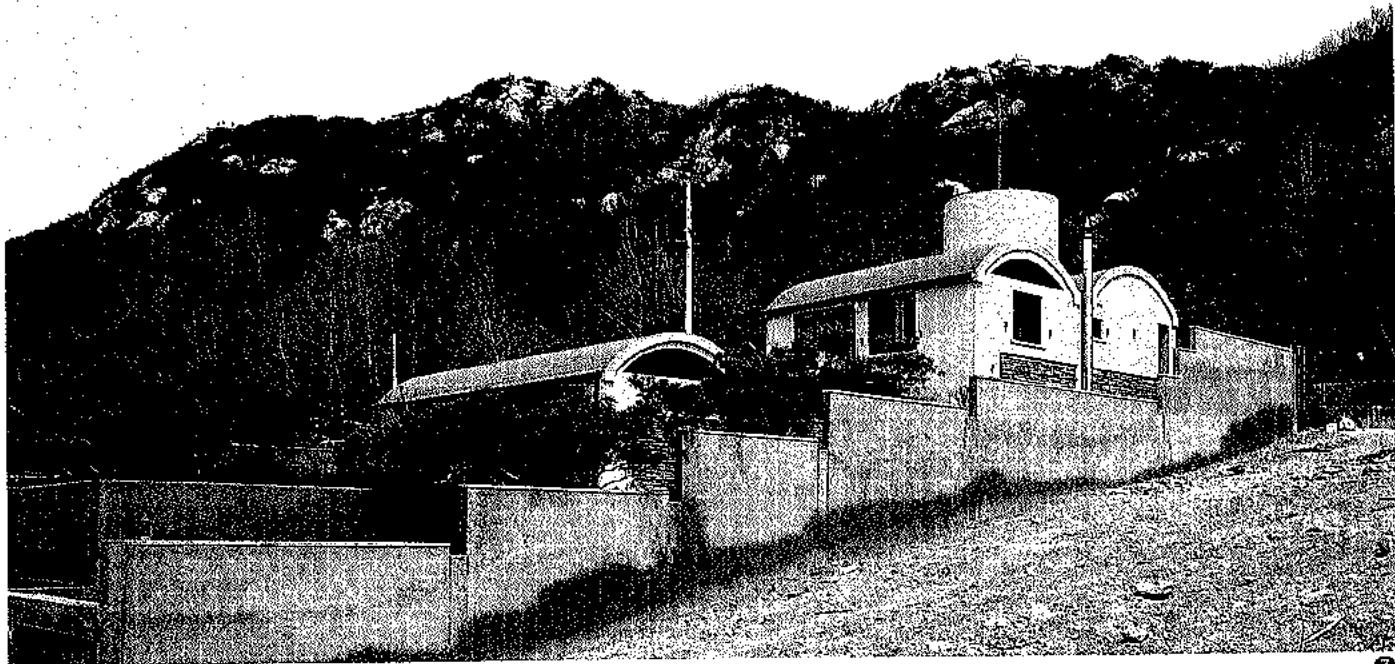
⑤



⑥

- ① 앞마당에서 본 전경
- ② 1층 평면 및 배치도
- ③ 진입도로에서 본 전경

- ④ 2층 평면도
- ⑤ 정면도
- ⑥ 단면도



7



8

술바람과 터는듯한 노을진 바다, 파도소리, 한적하던 풍경과 싱그러운 갯가의 모습과 기억을 담아낼 수 있는 장소, 이미 무분별한 개발은 그러한 물끼어린 추억을 회복시키고, 또 다른 환경공해의 주범이 되고 있는 곳, 옛 장소성에 대한 회복은 지나친 역사와 시간, 자연적 상황과 현실적 요구가 맞물릴 때 인위적 이지만, 어떤 의도화된 목적과 성격은 가능해 질 수 있다. 새로 확을 긋고 성격을 부여하는 진축적 행위는 존재할 수 있는 자연성으로 복귀를 의미한다.

그러한 방법들은 시간과 사전의 켜를 기억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재구성된 소나무 금길은 통과하는 과정적 공간으로서 의미와 높고 낮은 도로를 좀더 인간화 시킬 수 있는 가로의 모습일 수 있다. 그 길은 변화있

는 모습이여야 하며, 멈출 수 있는 작은 모임의 장소로서 제공된다. 또한, 짙은 벽과 창문, 담과 나무들과 함께 각기 성격이 다른 마당들로 구성되며, 서로 상보적 관계를 갖게 된다.

그 마당들은 세개의 모습이 있다.

바다와 파도를 안을 수 있고 하늘이 가득한 바깥마당.

비워두되 결코 비워있지 않으려는 여운과, 시간과 계절을 인지할 수 있는 시지각적이고, 관념적인 희색빛 안마당과 퇴마루.

존재하는 곳에 다시 자리 매김을 한 큰 소나무, 계단식 화단과 남으로 쌓여있는 뒷마당.

그러한 중간영역으로서의 마당공간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주거생활의 격을 높이는 장소가 될 것이다.

주변의 자연적 상황과 풍경, 장소성에서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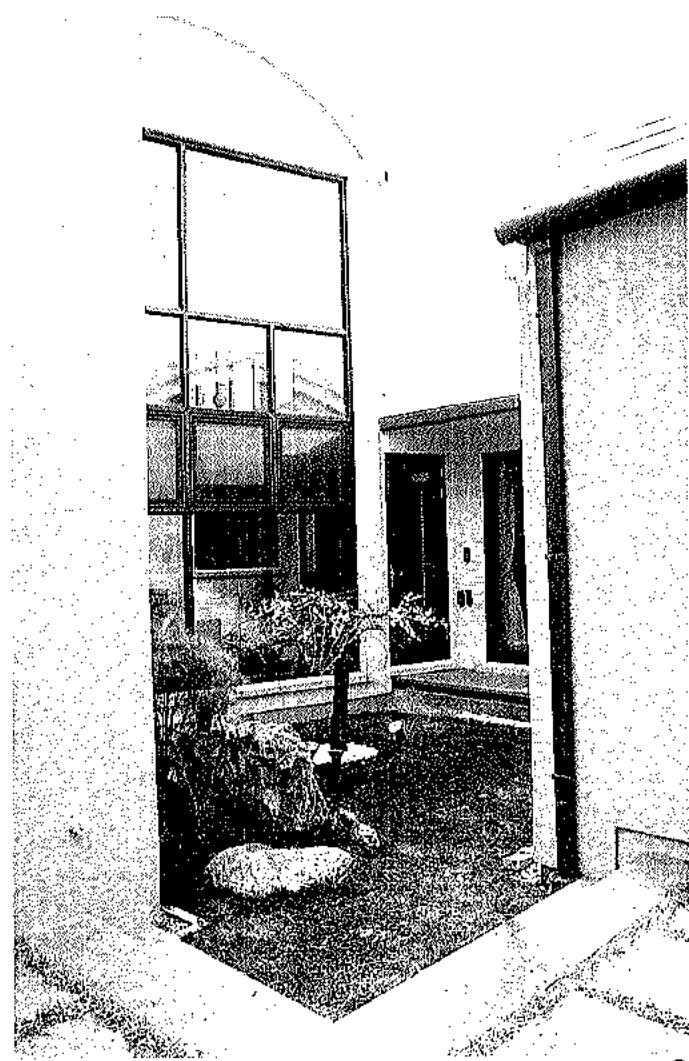
9

는 소재는 인용될 수 있는 요소로 재발견되어야 하며, 그러한 요소로 구성된 소설은 곧 건축적 해결방법일 수 있다. 때문에 청량산 기슭에서 흐르는 산세와 파도의 모습, 바다와 하늘과 땅의 접점은 그렇게 인용될 수 있는 어휘와 콘텍스트를 갖는다.

파도를 연상시키는 4개의 볼트지붕들은 그려한 어휘에서 인용되었으며, 흐르듯 무리를 이루며 합쳐진 모임은 새로운 마을을 이루려는 출발점인 동시에, 안정되고, 편안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정박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안마당을 중심으로한 비움과 채움, 있음과 없음, 모임과 체나누기의 전통적 기법과 배치는 현대 주거에서 재인용되고 활용되어야 하는 주거방식의 새로운 전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⑩



⑪



⑫

- ⑦ 남동측 전경
- ⑧ 계단 홀
- ⑨ 2층 침실 내부

- ⑩ 계단홀에서 본 안마당
- ⑪ 뒷마당에서 본 안마당
- ⑫ 계단홀

회원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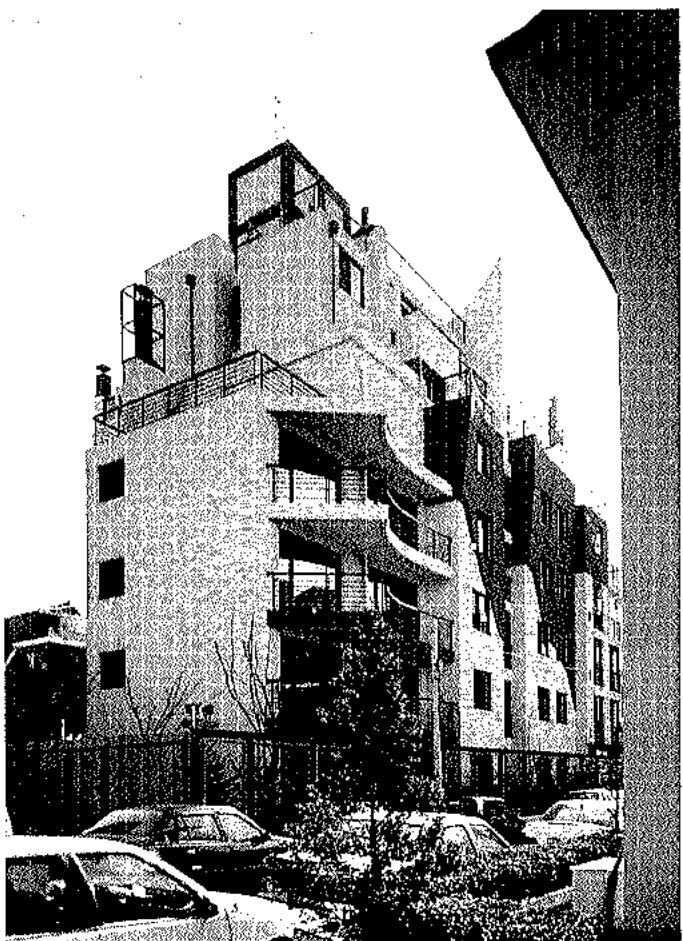
WORKS

포이 탑 빌라

Poi Top Villa

韓在源+崔秉日/한·공간환경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Han, Chae-Won & Choi, Byeong-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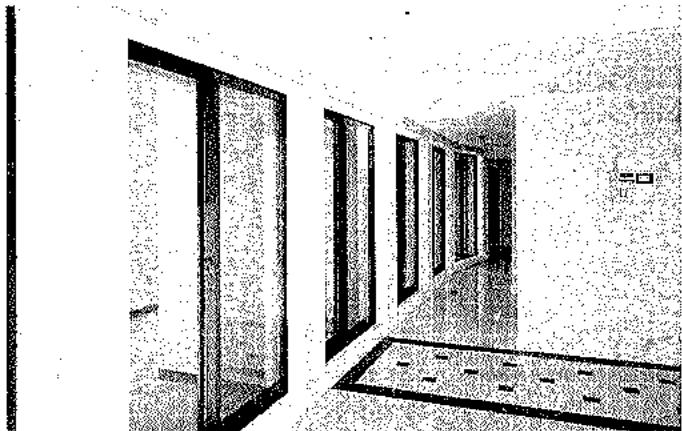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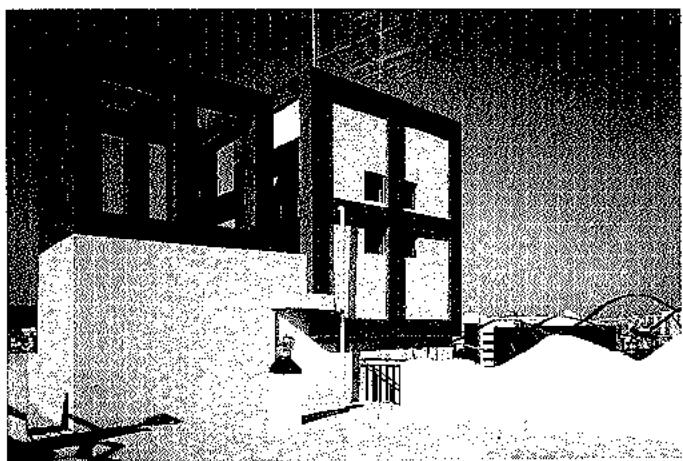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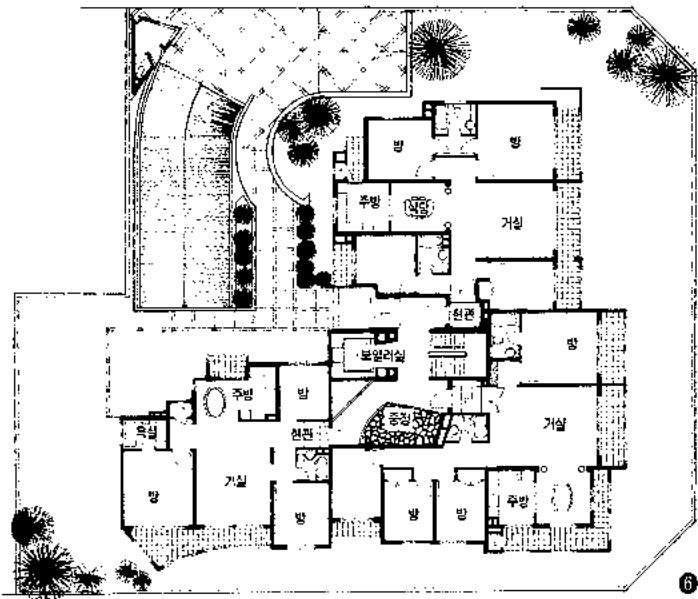
③



④



⑤



⑥

위치 / 강남구 포이동 242-2, 3, 4, 5
지역, 지구 / 일반주거,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 1,162.60m²

건축면적 / 492.69m²

연면적 / 3,268.63m²

건폐율 / 42.38%

용적률 / 234.84%

규모 / 지하1층, 지상8층

구조 / RC조

외장재 / 드라이 비트

세대수 / 19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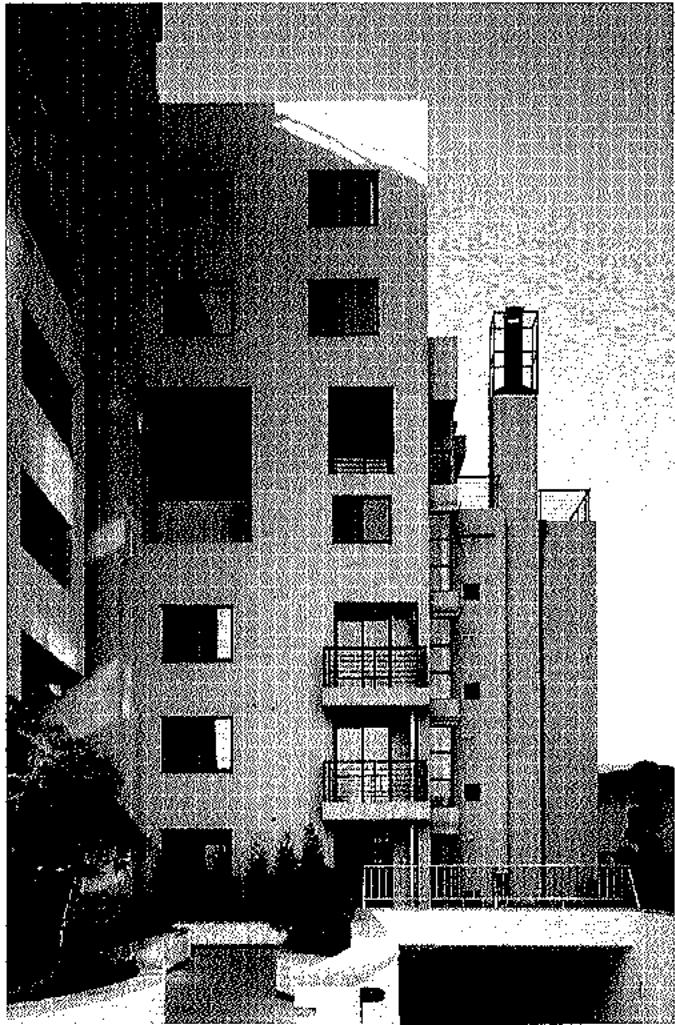
전용 42평형/16세대

전용 30평형/3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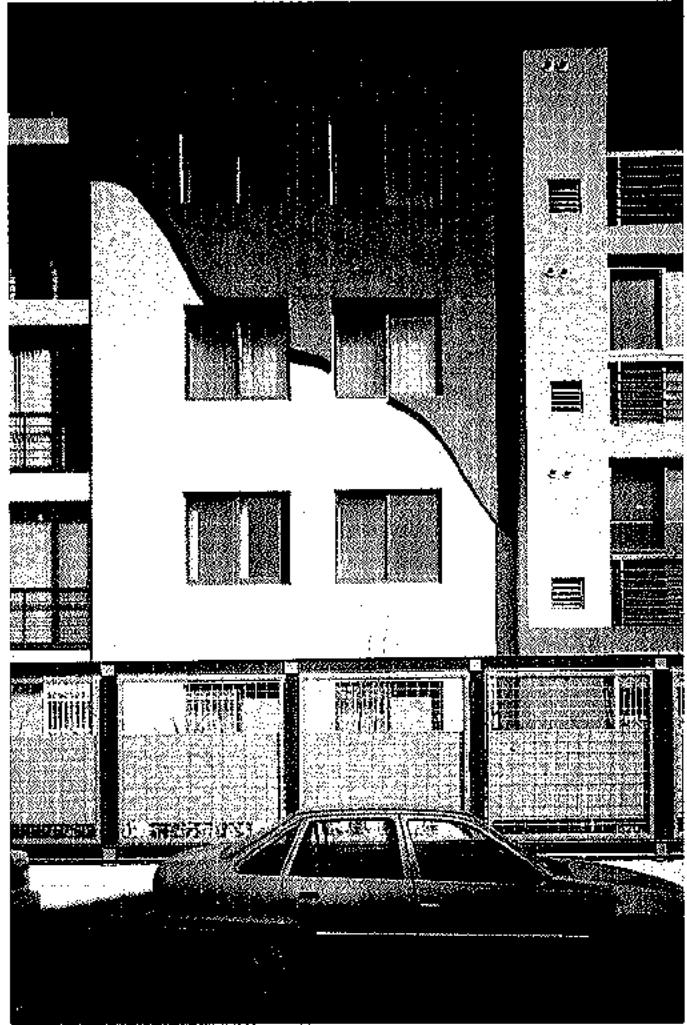
설계담당 / 박주정, 김근강, 김용길

공사기간 / 92년 11월~94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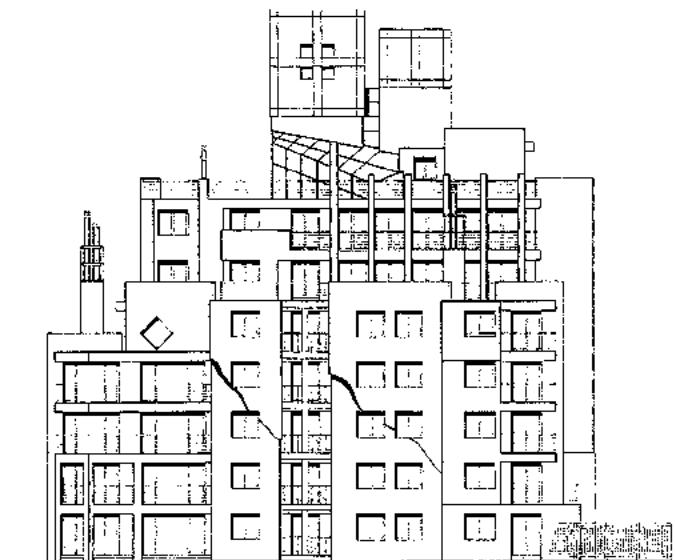
- ① 남서측 전경
- ② 북서측 전경
- ③ 식당에서 본 거실(A타입)
- ④ 7층 내부 통로(B타입)
- ⑤ 엘리베이터 기계실과 물탱크
- ⑥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7



8



9



10

■ 포아동 한 복판에서

4, 5공의 무계획적인 건축물들 속에 주거용 건축물을 설계한다는 것, 그것도 350평이라는 작은 대지에 사업성과 분양성을 논하는 단일 동의 Apt를...

주거용 건축물이 들어서기에는 부질서한 주변 환경과 아직도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대지에 새로운 성격의 건축물들이 들어설 것같은 지역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수없이 많은 고

민을 했다. 그러나 결국 이와 같은 상황들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족한 주거환경을 총족시키기 위해 건축물의 내외부 형태와 기능등을 Apt라는 고정관념적인 개념에서 탈피하고자 했다. 그래서 사용자들에게 보다 새롭게 느껴질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계획의 목표로 삼고 필요한 건축적 요소들을 적용시키려 노력하였다.

■ 내부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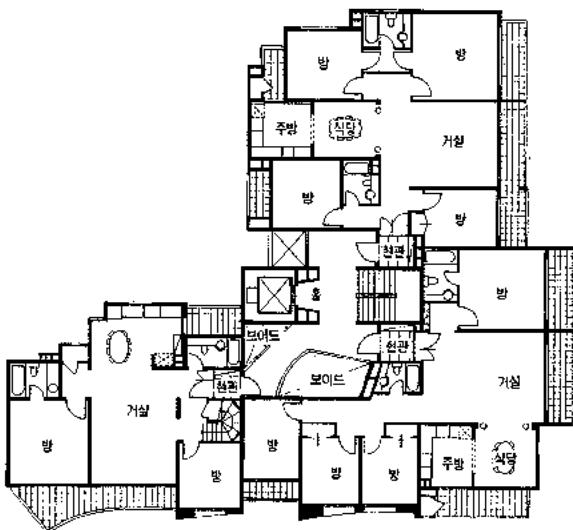
1층 현관에서 각 세대로 연결되는 수직동선을 단순수직동선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Court, Open Space, Bridge 등의 요소를 사용하고 상부에는 자연채광을 끌어 들이기 위해 스카이라이트를 설치해 수직동선 내부를 밝은 공간으로 처리해서 사용자 상호간에 접할 수 있고 시각적 변화에서 오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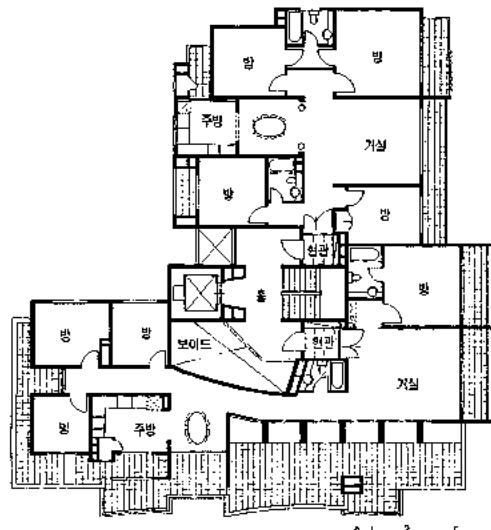
⑪



⑫



⑬



⑭

세대별 평면형태도 같은 면적에서 다양한 평면을 구성하여 사용자들에게 필요에 따른 선택의 폭을 넓게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외부공간구성 및 형태구성

도심 주거용 건축물의 폐쇄적인 조경 및 담장을 지양하고 투시형 담장 설치 등을 통해 사용자들에게는 폐쇄로 인한 좁은 마당의 담담함을 덜어주고 보행자들에게는 도심의 작은 가로공원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했다.

건물의 형태도 기존 Apt의 반복에서 오는 지루함을 탈피하여 조형적인 형태구성과 색채 등의 사용으로 주변 건물숲에서 새로운 형태로 자리잡아 모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건물이 되도록 했다. 이러한 여러가지 실험적인 내·외부요소들을 적극적인 이해로 작업을 이끌어 준 사업주께 감사 to 표하며 사용자와 동네 사람들에게 항상 새로움을 줄 수 있는 집으로 남았으면 한다.

⑦ 북동쪽에서 본 주출입구 전경

⑧ 외벽과 담장 디테일

⑨ 좌측면도

⑩ 정면도

⑪ 거실에서 본 식당(A타입)

⑫ 굴뚝 상세와 6층 옥상날개벽

⑬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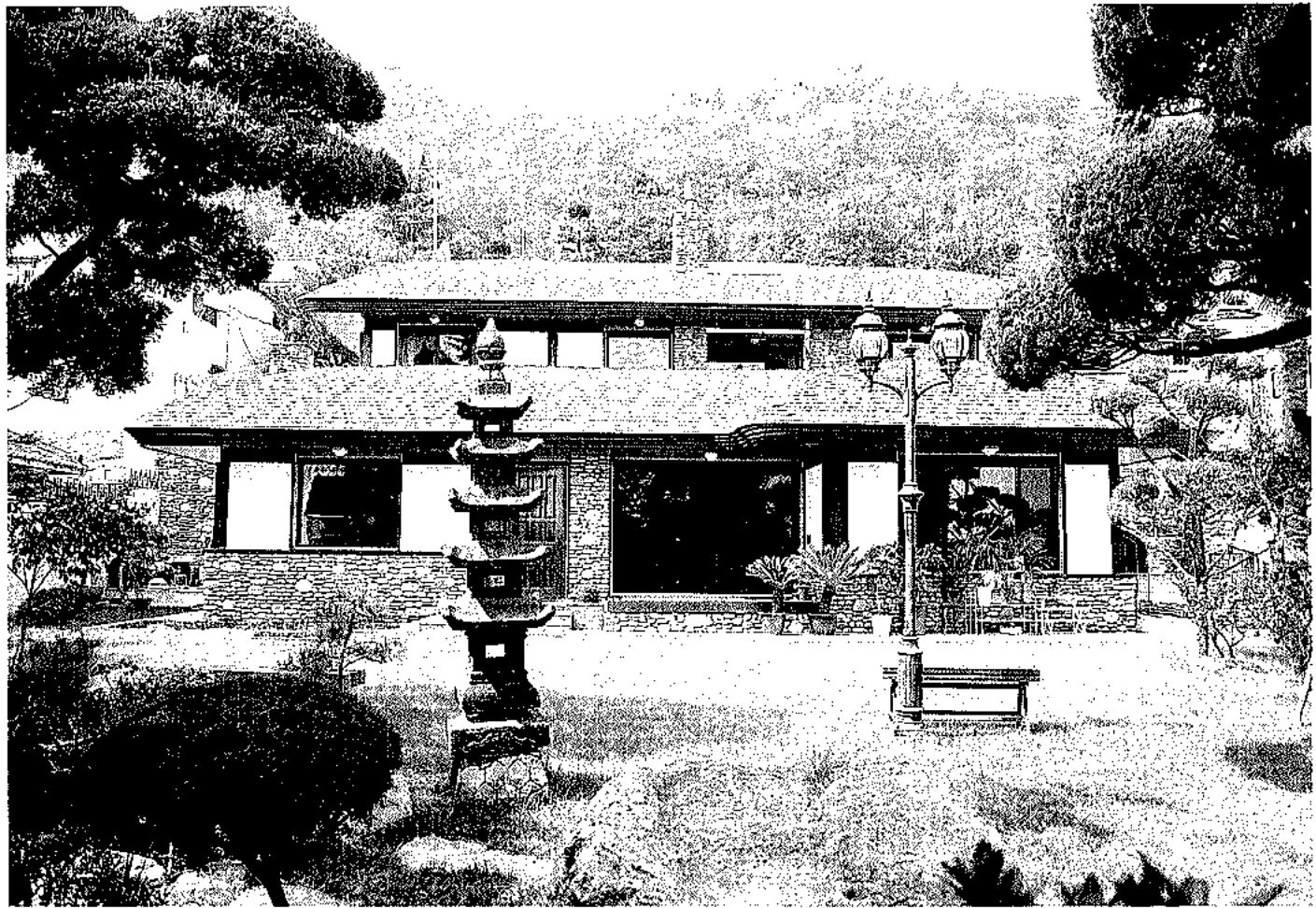
⑭ 6층 평면도

목포 J씨 주택

Mok Po J's Residence

韓頌洙 / 건축사사무소 토방

Designed by Han, Jin-Su



대지위치 / 전남 목포시 오금동

대지면적 / 685.0m²

건축면적 / 222.07m²

연면적 / 266.04m²

건폐율 / 3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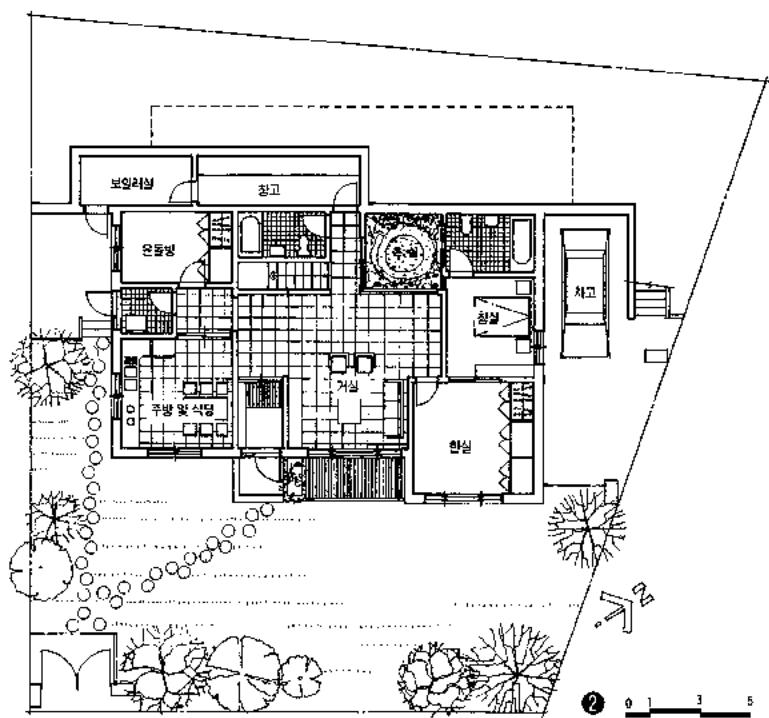
용적률 / 35.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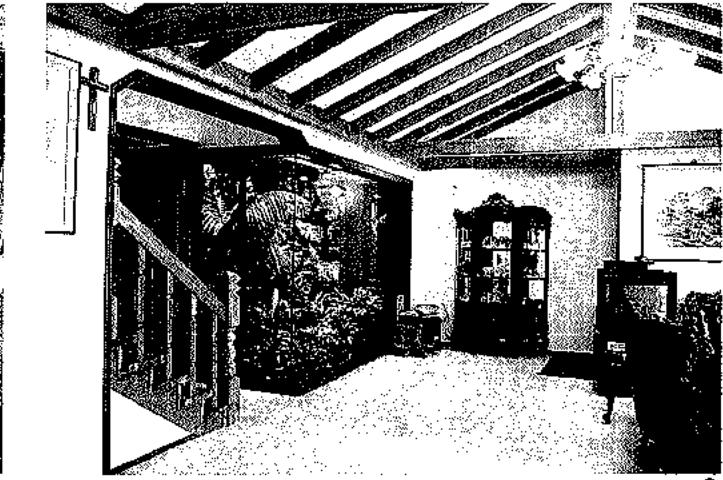
지역 · 지구 / 일반주거, 자연녹지지역, 풍치
지구

구조 / 조적조

외부마감 / 벽-강돌 치장쌓기, 애폭시 본타일
지붕-컬러 아스팔트 성글

- ①전경
- ②배치도 및 1층 평면도
- ③위에서 본 전경
- ④거실
- ⑤외부 상세
- ⑥개단실
- ⑦2층 평면도
- ⑧가족실
- ⑨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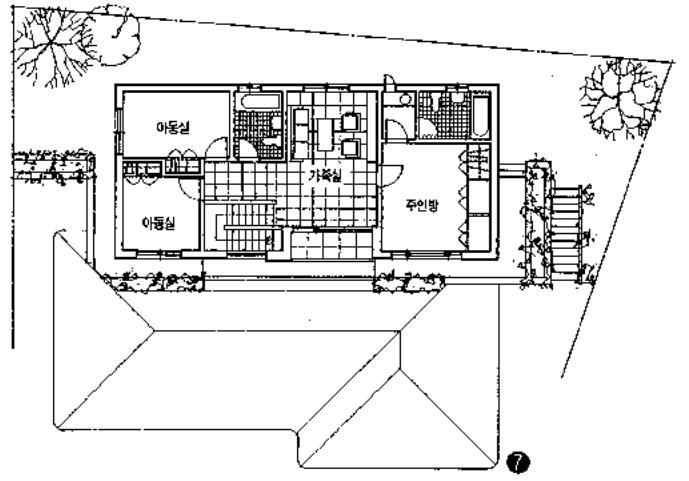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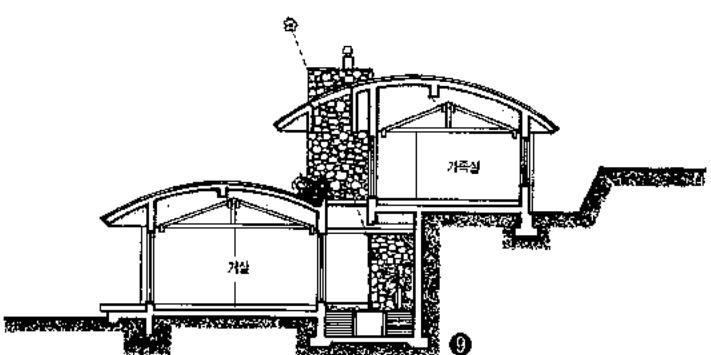
③



⑤



⑥



⑦

목포 유달산 아래 크고 작은 주택들 사이에 위치한 이집은 목포 시내와 바다가 보이고 있다. 전후면이 1층 높이 이상의 고저차를 이루고 있으며, 노후된 기존의 일본식 가옥을 헬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집을 지은 것으로 사업가인 건축주는 노부모와 3대가 함께 살 수 있는 공간 확보와 기존의 대문위치를 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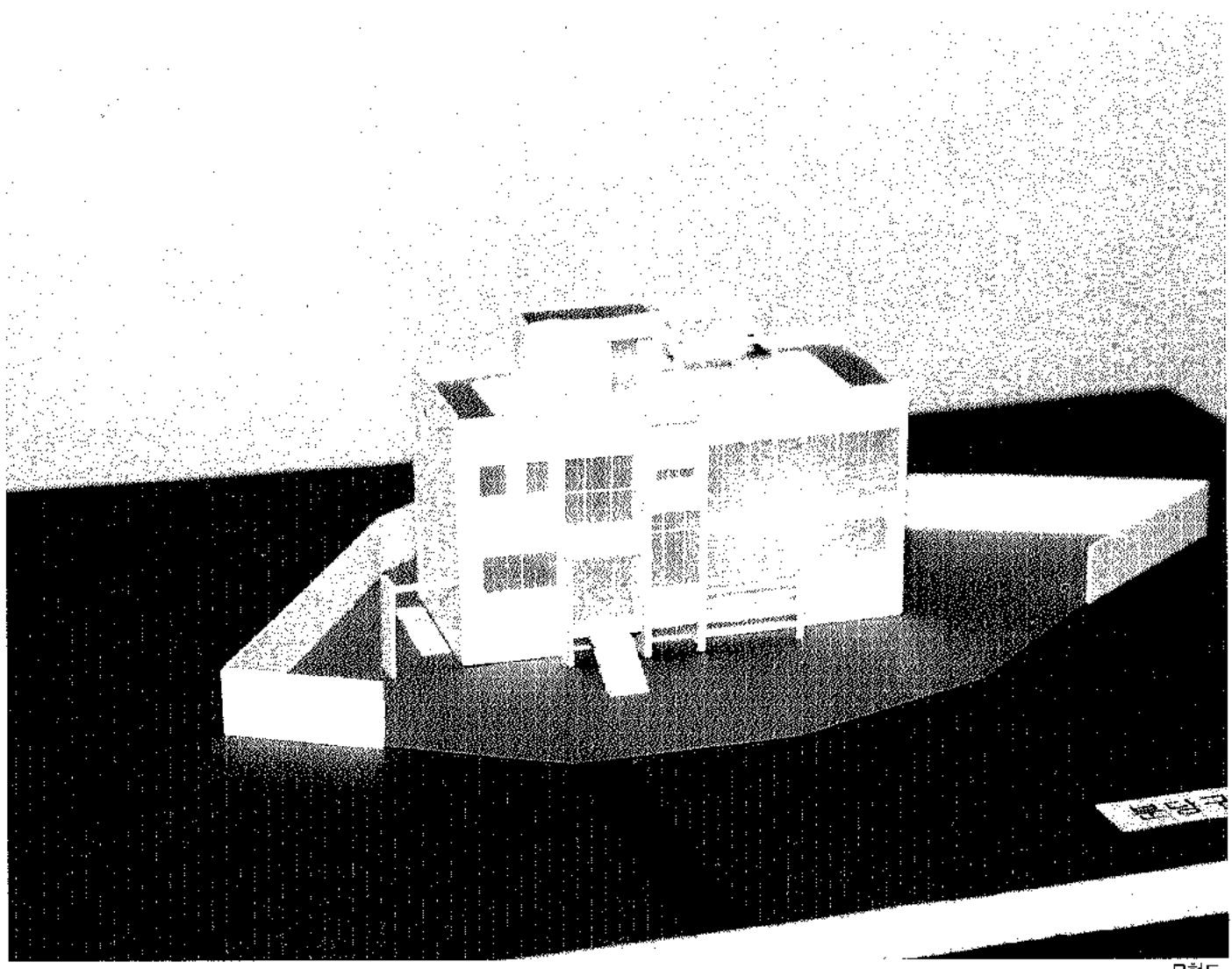
건물은 경사진 후면에 가급적 후퇴시켜 정원을 확보하고 지형차로 인하여 흙에 접한 부분은 채광이 적게 필요한 공간을 두었으며, 중앙부에 온실을 두어 상부에서 들어오는 빛에 의한 시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였다. 1층은 노부모와 2층에는 주인이 생활하며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건물형태를 분리시켜 주변과의 위압감을 줄이고, 지붕을 곡면으로 처리하여 주변환경과의 조화와 의장적으로 전통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분당 K씨 주택

Mr. K's House in Puntang-gu

金錫桓/터·울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Suk-Hwan



모형도

대지위치 /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 95-2

대지면적 / 400.00m²

건축면적 / 79.92m²

연면적 / 210.1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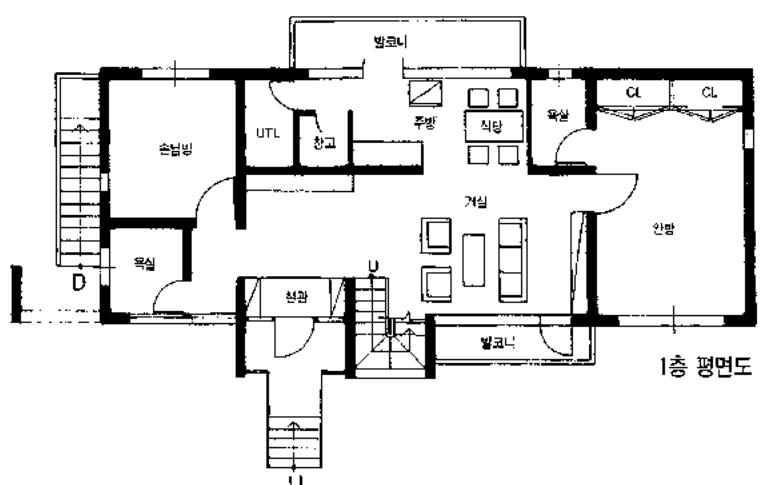
건폐율 / 19.95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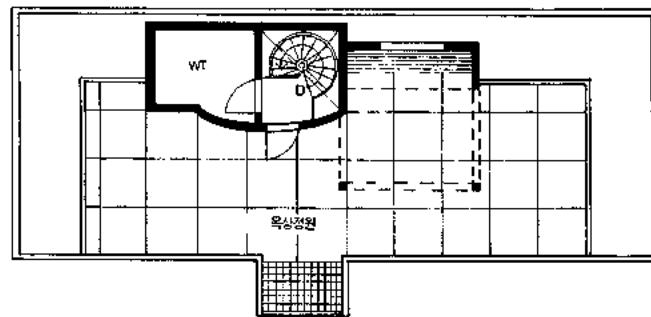
용적률 / 37.95%

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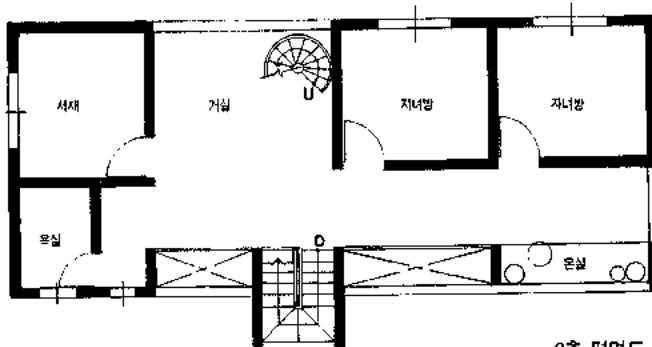
외부마감 / 외벽-드라이버트

창호-퀼러 알루미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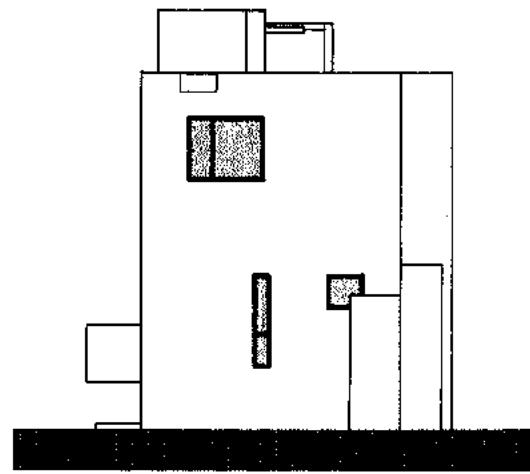
지붕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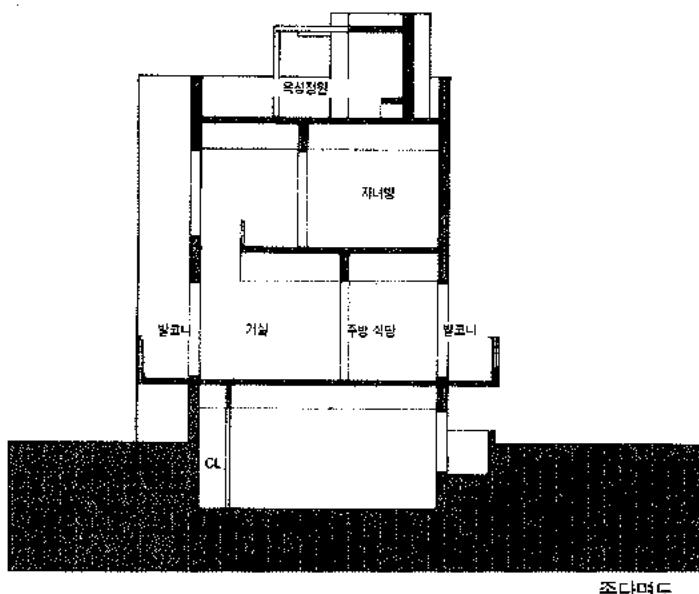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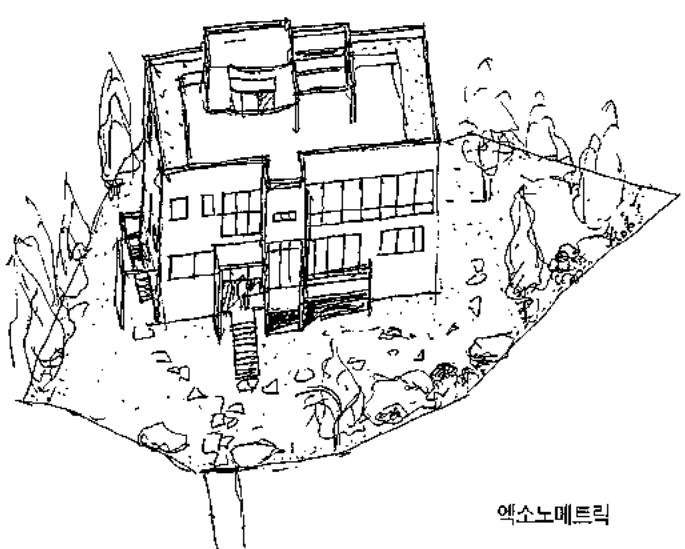
정면도



좌측면도



종단면도



액소노메트릭

건축은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언제나 어디에나 태어날 수 있다. 수요자가 요구하는 몇개의 방과 거실, 식당, 화장실과 같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진보된 축조기술에 의해 무한정 건설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설의 힘만으로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설기술의 진보가 심미적인 감동의 충족까지 해결해 줄 수 있지는 못하다. 세상에 세워지는 모든 건축은 최종적으로 건축가가 심미적인 감성을 불어 넣음으로서, 비로소 사물의 생명력을 지니게 된다. 건축은 처음부터 미의 형상을 위해 임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축가는 건축에 미적 균형을 갖게하기 위해 고심한다. 근대건축의 미

학에는 고전적인 법칙의 적용이 유효하지도 않고, 인위적인 장식이 힘을 발휘하지도 못한다. 현대 건축가는 형태미의 창조에 있어서 추상예술가와 같은 예민한 감각에 자랑할 수 밖에 없다.

이 주택의 대지는 분당구 하산운동에 위치하여 있다. 대지면적은 120평 정도로서 서울과 같은 도시 조건에서는 꽤 여유있게 느끼지는 규모이지만 자연 녹지지역에 규정된 20%의 건폐율을 적용하면 건축 면적의 최대는 24평을 넘을 수 없어서, 교외지에 세워지는 단독주택으로서 기대했던 낙낙한 일층 평면을 꾸미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1, 2층이 개방된 공간으로 연결되게 하였다. 대지조건에 맞춘 배치와 공간의 집적에 의해 장방형의 매스가 되었다. 여기

서는 단순한 매스가 내부에서 개방적인 공간을 얻기에도 편리하였다. 내외부 공간의 경계로서 현관을 강조하고, 계단실 및 지붕시설의 조형요소에 의해 단조로움을 깨뜨리며 수직수평의 균형을 이루도록 계획하였다. 지붕은 일상생활에서 독립된 또 다른 세계의 장소로서, 현대인의 잊어버린 자아를 회복하기 위한 명사의 정원이 된다. 나는 경사지붕 보다 평지붕을, 연와 벽돌벽 보다, 평평한 흰 벽면을 더 좋아한다. 이 건물의 순수한 매스가 절은 녹음의 배경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건축주를 기다리게 하려한다.

건축사 사무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Ⅱ)

The Problem of Architect's Office & Course of Improvement

—지방화 시대에 즈음한 소형 및 아뜰리에 사무소를 중심으로—

지난 6월호에서 건축사사무소의 현안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여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현재 지방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회원을 모시고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한 건축사사무소의 인력관리 문제를 비롯한 경영합리화방안, 제도개선방안, UR 협상타결 이후의 대처방안 등 당면 현안문제점을 스스로 진단해보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모색해보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국제화·개방화·지방화시대를 맞는 우리 건축사사무소의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일 시 / 1994. 7. 14(목) 14:00

□장 소 / 본 협회 소회의실

□참석자 / 오용부(가림건축, 사회)

김무권(현대건축)

류연창(류건축)

안문호(MAC건축)

이봉춘(비전건축)

정구영(동성건축)

정덕훈(청전건축)

(가나다순)

좌담회 광경

■ 인력관리

사 회 :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속에서 날씨마저도 몇십년만에 찾아든 불볕 무더위까지 겹쳐 더욱 괴로움을 느끼게 하고 있는 요즈음 시기적으로 설계물량까지 감소하여 사무실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줄로 믿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 하여 지방은 지방대로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 국제화라는 대명제 하에 UR의 여파가 우리 설계분야까지 강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 건축사들은 이같은 어려운 현실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대비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번 좌담회에서는 지방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현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겪고 있는 문제점들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다.

문제 제기보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좌담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토론의 진행순서는 인력관리, 경영합리화, 제도 및 UR에 대해 항목 별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우선 인력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개진을 바란다.

정덕훈 : 서울에서 4년 반 동안 사무실을 운영하나가 지금은 지방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다보니 제일 큰 문제점이 인력관리 문제였다. 전문인력의 부족, 대도시 취업 선호도 등으로 경력있는 인력 수급문제가 큰 문제이며, 특히 건축사시험으로 인한 인력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설계사무실의 직원을 지도, Control하는 고급인력인 경력있는 PM들이 1년전부터 건축사시험 준비로 인해 실계실을 떠나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 통솔하에 일을 하는 사람이 방향성을 잃게 되므로 사무실 운영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력자의 아직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에 건축허가가 신고제로 전환함에 따라 건축뿐만 아니라 건축과 관련한 위생, 환경, 소방 등 관련법규분야까지 건축사 스스로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까지 해야되므로 이런 분야까지 소화를 해낼지 걱정이 되고 UR까지 닥치면, 과도기적 혼란기가 봉착하게 되므로 건축사와 건축사협회의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다. 개선방향으로는 지방에서는 Partnership을 구성하여 작업을 분업화, 전문화로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경제적이고 질적인, 경영합리화된 사무실 운영을 해야 한다.

김무권 : 인력관리를 과정별로 나누어 볼 때, 첫째로 입사과정, 둘째로 입사하여 건축사시험 칠 때까지의 근무과정, 셋째로 건축사 시험에 합격하고 난 후의 과정으로 구분 할 수 있겠다. 첫째 과정에서는 최근 기업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인턴제도와 방학때를 이용한 실습 등을 통해 설계에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하고 둘째 과정에서는 급여, 복지 등 처우문제도 점차적으로 향상되어야 하겠지만 그보다는 업무에 대한 흥미로 자기발전이나 성취감을 갖도록 중점 지원해야 되겠으며, 협회 차원에서도 건축사보조원 연수 등이 요구된다. 건축사 시험제도는 대학졸업시 적성에 따라 시공분야로 나갈 학생은 사공기사 자격증을 획득하여 건설회사로 취업하고, 설계분야로 나갈 학생은 건축사보와 같은 자격시험을 거쳐 5년후에는 설계 과목만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설계사무소의 인력난 해소와 능력있는 건축사 양성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과정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에게는 일부 경영에 참여케 하여 사무소내에서 약간의 독립성을 부여하면 오랫동안 근무하게 되고 설계 경험 축적도 될 수 있겠다.

류연창 : 지방으로 전출해서 사무소를 경영한 지 약 15년이 지났다. 그동안 경험한 비리를 참고삼아 얘기한다면 졸업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는 대학교육에서 건축계획만이 설계의 전부인 것으로 잘못 알고 오판하다가 사무실에서 전반적인 기본설계, 본설계 업무까지 하여야 하므로 업무에 대한 인식잘못 및 직성이 맞지않아 사무실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 2,3년차인 경우에는 급여의 불만족과 다른 사무실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건설회사, 기업 또는 다른 사무실에 진출하게 되고, 4,5년차인 경우는 건축사시험에 인력을 뺏기게 되는 상태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무실에서는 우수인력을 트레이닝시키는 역할만 수행했지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업무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타 전문직 시험제도의 한 예로 의사전문의 시험에 있어서 마지막 시험에 적성여부를 가늠하는 면접시험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제도를 과감히 적용해야 된다고 본다. 예를들어, 1차시험은 졸업 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2차시험에 설계시험 50%, 경력 및 면접 30%, 필기 20%로 시험제도를 개선하여야



사무실 운영에 있어서는 소수정예회를 이루어야하고, 협회차원에서는 설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있어야 한다.

한다. 그래서 설계에 참여한 사람이 건축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정이 되어야 한다.

이봉춘 : 근년에 와서는 건축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사무소를 퇴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조이다. 또한 중간계층인 2~3년차된 직원의 이동이 고비를 맞으며 주류를 이루고 유형별로는 타사무소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함께 이동하면서 발생되는 급여의 차이로 인한 것이 주된 이유이고, 다음이 진학과 유학을 포함한 타지역으로의 이동과 또한 건설회사나 타직종으로의 전직과 건강상 문제로 인한 휴직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는 십수년간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타사무소의 경력직은 채용치 않고 일정수의 실습생으로만 충원해 왔으며 그것이 인력관리의 한가지 방안 이었다. 조직내에서 직원의 역할과 업무를 체계화 하여야 하며 일방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의하날의 주종관계에서 탈피, 소속인으로서 책임감과 참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소규모 사무소에서 팀장인 실장에게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유사시 업무 연속성에 상당한 타격이을 뿐 아니라 심할 경우 마비상태에 이르게 된다. 궁여지책으로 타사무소에서 대체인력을 찾고 있으나 스카웃보다는 자체적인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봉급처우 문제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이며, 항간에 거론되는 레지던트제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과거의 2급 건축사 제도와 같은 것을 도입해 봄직하다.

인문호 : 무엇보다 건축사의 직업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의 직원이 우리 일의 상당부분을 수족처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만이 아니라 전문직업인으로서 연대의식 같은 파트너쉽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김 무 권

업무를 닥치는 대로 수주하지 말고 전문화,
특성화시켜 질에 비중을 두는 수주 및 설계를 해야
한다.

될 때라 생각한다. 협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공동체 의식의 바탕하에 건축사보의 근무지와 작품활동 등에 대한 주도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동시에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문제에도 한목소리를 내야하며, 건축사 배출 문제까지도 우리의 의지 표명을 해야 한다. 건축사사무소를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만이 건축사 면허를 득할 수 있다는 것과 그렇지 못하면 최소한 건축사사무소 근무경력자에게 건축사면허시험에 유리한 입지를 주도록 제도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한가지 일만을 평생 하여야 겨우 어느 수준에 이를 수 있는 것이 건축설계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동시에 그렇게 해야만 우리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은 물론 우리 자신의 품위 유지는 물론 직원들도 한자리에서 마음 편안히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구영 : 사무소 이직문제는 사실상 급여와 근무조건이 원인일 것이다. 근본적으로 사회통념상 건축사가 엘리트계층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건축사의 기본적인 자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분야의 종사자로서, 현대사회의 경제력, 산업력 향상과 문화발전에 따라 고급문화를 애용하려는 크라이언트들의 취향을 충족시켜 주려면 각분야의 폭넓은 전문지식도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6년제 건축대학의 제안도 생각할 수 있겠다. 물론 고학력의 엘리트 건축사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대졸자가 50% 정도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혼히 비교하는 타분야의 전문가와 직업군의 분류에서 동등한 사회계층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건축사의 새로운 위상과 후진양성을 위해 점진적인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타분야에서 바라볼 때 요즘 같은 고학력시대에 건축사는 대학을 안나와도 된다는 직업관 인식과 대중매체에서 건축사를 설계사로

명칭자체를 잘못 사용하는 등을 미루어 볼 때 건축사 위상정립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해야 된다고 본다.

사 회 : 사무소를 아직하는 이유로는 본인의 자질 부족 군입대, 장래성보장, 근무환경, 건축사시험대비 등을 들 수 있다. 처음 입사 과정에서는 일정 기간동안 재능과 소질을 충분히 파악해서 채용해야 한다. 입사한 직원은 장래성을 보장해 주면서 재능과 소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근무 조건(의료보험, 국민연금, 보너스, 퇴직금, 등등)들을 충족 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젠 지방에서도 품질 관리를 도입하여 고객이 만족스럽도록 시공도면(상세도)까지도 제공해야 한다. 조그마한 작품이라도 정렬을 쓸으면 좋은 작품이나올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지녀야 한다.

■ 경영합리화

정덕훈 :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건축학 교수들과 학생들의 진로에 관하여 토론을 해 볼 때 산학연계의 필요성을 느꼈다. 졸업 후 설계사무소에 취업한 후 설계사무실 실정을 건축학도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실무와 연계성을 갖게 했으면 좋겠다. 저부나 협회 차원에서 실무와 관련되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되도록 해주고 특히 Engineering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계시켜야 된다. 즉 학교다닐 때부터 설계사무실이 너무 이상적인 아틀리에가 되지 않도록 산학연계가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시공회사에 근무하는 기술자들은 정년퇴임이 있는 반면 건축사는 전문인으로서 정년퇴임이 없다는 것을 건축학도들에게 널리 알려 건축사의 위상, 직업관을 홍보하였으면 한다.

김무권 : 경영합리화의 첫번째 방안은 능률적인 업무처리라 하겠다.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할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채용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정예화된 인적구성이 우선 되어야 하겠고, 업무를 닥치는 대로 수주하지 말고 사무실을 전문화, 특성화시켜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를 양보다 질에 비중을 두어 좋은 설계를 한다면 건축물의 질적 향상과 사무소의 경영합리화도 이를 수 있으리라 본다. 쉽게 말씀드려서 설계비도 제대로 못 받는 일 세간 하는 것 보다는 웃게 받는 일 두건 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다. 세금문제도 우리 건축사는 수입금이 100% 노출되는 현실에서 다른 서비스 업종(의사나 변호사)보다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

류연창 : 현재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모든 사무소가 취약하다. 제 자신이 처음에 사무실에서 월급을 받지 않은 때가 있어서 개업 후에는 직원들에게 봉급을 제대로 주기로 다짐을 하였지만 여전히 한두번씩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 형편이다. 이런 사실이 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Partnership이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해결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사무소 운영을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하여야 된다고 본다. UR에 대비,

자연적으로 의식형성이 이루어져 건축사시험제도도 인력관리 차원에서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축사 스스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겠으며, 건축사제도는 졸업후 1차 시험을 보고 경력심사제도를 두어 건축설계를 한 사람이 건축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본다. 건축과 교수도 건축사자격증이 있다면 작품을 낼 수 있도록 개방을 시켜야 되고, 건축사들도 대학으로 출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후배들에게 미래가 밝게 보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 회 : 대학에 출강하면서 후학들에게 공지를 가지고 당부하곤 한다. 그것은 고객을 대하는 차원에서 의사나 변호사 이상의 여건에서 부동산의 부가 가치를 높여주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공지다. 대학을 졸업하고 3년 정도 만으로도 설계 사무소에서 경력을 쌓으면 최소한 자기 집정도의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정도되면 시공회사나 연구소나 학교에 가더라도 누구한테 뒤지지 않을 것이다.

대학에서는 실무 경험 있는 교수들을 영입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한다.

이론만으로만 교육을 하다보면 졸업후 실무에서 많은 회의를 느껴 실망을 많이 한다.

이것을 타파하는 방법으로 산·학연계교육이 절대 필요하다.

정덕훈 :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은 실무에 있는 분들과 공동 작업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 학문과 실무의 조화에 의해 설계의 질적향상을 위한 진보적 노력이 필요하다.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84년도 건축사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일본 건축설계사무소 앙케이트 조사에 의한 자료이지만 협회 차원에서 우리나라 건축사사무소 경영사례를 연구, 조사하여 건축설계사무소의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해 자침서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부했으면 좋겠다.

이봉춘 :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한 해답을 얻어내기란 그리 쉽지 않다. 작품상이라는 예술적인 면과 사무소 경영이라는 경제적인 측면의 상반된 욕구를 동시에 추구하기란 여간 힘들지 않다. 사무소에서 전반적으로 행해지는 업무형태를 구분하면 계획도면을 포함한 수주 단계로부터 실시설계인 노면작업과 각종 심의 및 인허가에 따른 대관업무, 현장시공 감리, 준공이후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나누어지며 그러한 각 단계 요소마다 합리화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제조업과는 달리 업무량은 계획적으로 될 수 없고, Client주문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수주량에 따른 수급조절이 문제이다. 특정 사무소에 업무량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경우와 한번 물량의 감소로 인한 과다 경쟁으로 덤펑수주가 발생한다. 이상론이긴 하지만 적정의 인적 구성으로 적절한 물량을 소화해 낼 때 양질의 결과가 나타나고 그것이 또 다른 계기로 연결되는 선순환의 Circling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류연창

직원과는 Partnership 관계를 유지하고 사무소 운영은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사무실 운영의 합리화란 측면에서 대관 업무를 간과할 수 없으며, 법률개정을 앞두고 있지만, 심의나 허가 업무의 중복부분을 단순화하고 설계변경은 사용검사진 일괄적인 처리 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중간검사와 준공검사 등은 감리자 책임하에 행하게 하며, 군·구 단위까지 세분화 되어 있는 조례, 지침, 내규 등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폐지정리되어야 된다고 본다. 감리자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의 강화와 일정규모 이상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상주감리에 대한 인적구성은 인력수급과 효율화를 감안하여 재조정 되어야 된다.

안문효 : 지방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다보니 지방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몇가지를 말하겠다. 설계비에 포함된 감리비는 교체감리 제도가 폐지된 후 감리비를 제대로 받기 힘든 어려운 실정이다. 감리비와 설계비는 상당 조정되었으나 건축주들은 그 감리비 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설계하였다는 이유때문에 불가불 감리비용도 채 받지 못하고 현장감리에 임하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감리자에게까지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환경이고 보니 건축사들의 이중적 고통은 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설계자가 설계한 작품을 그 자신이 감리를 해야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 자신도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여건이 과도기적이고 보니 그에 대한 한시적이나마 제도권안에서 우리 건축사의 공동체적인 문제를 한번쯤 짊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당분간 해마다 건축사는 상당수 늘어나겠고, 동시에 설계비는 상당히 상승되었으니, 건축사협회로서는 청신호같은 느낌을 반겼으나, 현실감있게 분석해보면 오히려 더욱 열악한 환경임을 감지할 수 있다. 기존 건축사는 물론 새로 건축사면허를



신입회원에게 1년정도의 인턴과정을 거치게 하여 현실여건을 이해시키고, 무리없는 개업으로 이어지게 하는 한시적인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

취득하는 회원에게 이러한 열악한 환경이 우리 스스로 설계비 덤프의 유혹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에서의 건축사 배출정책은 너무나 충격적인 만큼 그것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적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개인적 의견으로서 예를들면 그 많은 신입회원들이 무작정 개업을 시도하면 현실적으로 다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제도적으로 지역별로 소규모감리단 같은 형태를 만들어 신입회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감리비 징수 및 감리수행을하도록 하는 1년 정도의 인턴과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충격흡수를 위한 한시적인 제도이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신입건축사들이 현실여건을 이해하게 되고 무리수없이 개업으로 이어져 건축환경이 열악하게 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게 될 뿐더러 감리에 대한 일반 건축주들에게 새로운 인식의 계기가 될 것이다.

정구영 : 설계감리비가 분리된 자체는 과거 1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어 건축문화는 엄청난 낙후가 우려된다. 현재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소형건축물이 설계감리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면에서는 어느정도 효과를 거뒀을 지 모르나, 건물의 질적인 향상에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이것은 새로운 제도도 없을 뿐더러 설계감리를 분리하면서 감리비를 받고, 설계비는 철두철미하게 지키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감리비 자체를 우리 전회원이 다같이 약사나 의사와 동일하게 받는다면 모두 고생한 사람에게 간다. 그리고 그 많은 일을 혼자서 다 소화하지 못한다. 자연히 타인에 놀아간다. 따라서 설계감리가 분리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류연창 : 감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자가 자기 생각을 현장에 어떻게 전하는가 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감리도 설계의 연장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었다. 소형건축물은 말하자면 이워화해서 감리를 사겼을 때 사실은 내 손으로 내가 설계한 건물을 감리한 사람에게 감리비를 주고 실제적인 건물의 감리는 내가 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회원들 스스로가 건축사의 권익신장 측면을 포기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공사 50억 이상은 책임감리라고 해서 내가 설계는 했지만 설계한 사람은 다 어디로 가고 영뚱한 사람이 감리를 하게 되니 감리비를 적게 받는다 해도(사실상 다 받아야 한다) 감리는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건물안에 노란색 페인트를 칠하라고 했나하면 노란색 톤이 수십가지 인데 그것을 다 어떻게 전해줄 것이며, 외부마감을 화강석 베녀구이 하라고 했는데 베녀구이 특유의 정도, 강도, 색깔이 어떻게 돼야 하는데 그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이다. 집 지으면서 설계변경은 거의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감리한 사람이 해야된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변경한다면 이것은 건축사의 예술문화창조라는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실 건축사 스스로가 감리비를 못 받는 것은 자기 권익을 포기한 것이고, 그 자신이 바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못 받으면 못 받은 대로 자기 실책이지 그것을 못 받는다고 통채로 감리단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협회에서 해결해야 할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대다수인이 좋다고 해서 꼭 그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소수의 의견이라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채택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올바른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건기법에 정부공사 50억 이상, 건축물은 유티트 감리라고 해서 설계와 감리를 분리시켜도록 되어 있으나 죽든 살든 설계자가 끝까지 책임져야지 어떻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 시킬 수가 있는가?

김무권 : 여러분께서, 교체감리나 전문감리단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설계비나 감리비를 제대로 받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모든 제도는 건축예술성을 가진 건축설계의 기본 가치관을 버릴 수 없으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전문감리단을 제도화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나온 발상이다. 법 제도를 정하는 분들 특히, 공무원들에게도 건축예술성을 인식시켜야 하겠다. 다음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방에서는 기계설비·전기·소방 기술사들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대구의 경우 설비기술사 한 사람만 있고 나머지 기술사는 없는 실정이다. 건물이 대형화되고 법 제도는 강화되는 마당에 건축설계의 협력분야 기술자 양성화 및 자격규정이 완화되어야 한다.

사회 : 경영합리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도적인 얘기까지 끓어서 나왔는데, 경영을 하다보면 제도적인 문제가 당연히 뒤따르게 마련이다. 안소장이 말씀하신 설계감리비를 못 받으니까 감리비라도 받으려면 그것을

이원화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절대적인 얘기이다. 과거에 해보니까 그것은 해결이 됐는데, 회원들끼리 마찰이 있었다. 간리비는 주고 실제로는 내가 감리자고, 감리를 넘으로 한다 그러니까,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행정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부실공사가 많이 없어졌는데 건축사끼리 알력이 생긴다. 왜냐하면 현장가서 보니까 잘 못됐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하나면 감리자는 얘기가 안통하니까 건축사(설계자)한테 얘기해서 건축주에게 말하게 한다. 설계자가 얘기한 것은 건축주가 말을 듣는다. 그래서 안소장이 얘기한 것은 실질적인 것이고, 정소장이 말한 것은 설계비를 제대로 다 주면 되는 것을 설계비라도 받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해야하나는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이 설계감리비라 하지말고 설계비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감리비란 말이 불어서 크이언트 한테 직접 청구하여 감리비는 얼마 설계비는 얼마하지 말고 예를 들어 설계비는 10만원이면 10만원, 15만원이면 15만원 해야되는데 감리비 얼마에 설계비 얼마이니까 얼마면 되겠구나 이런 것을 건축주는 모른다. 소위 업자들이 그런 농간을 하는 것이다. 약한 건축사, 돈 때문에 약해진 건축사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방에 계신 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인데 참으면 될 것 같다.

정덕훈 : 일부 변호사, 의사들하고 얘기해보면 공지를 느끼는 것도 있다. 변호사를 때로는 자기 윤리를 떠나는 문제가 있고, 의사도 어떻게 보면 수술비 문제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윤리문제가 나오는데, 비교는 되지만 우리는 든 많은 사람들, 여유있는 건축주를 상대하다 보니 칼자루진 이 사람들의 설계비가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설계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인력관리 등 모든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 건축사들이 일시적으로 조금 배고픔을 참으면 될 것 같다. 그것을 제도적인 것에 의존해서 그릇을 찾을려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자신이 참고 세대로 설계비를 받으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요사이 설계를 해 놓고 감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특히 아파트 감리 등은 토목, 기계, 전기, 기술자 그리고 보조원 등 그 인력이란 엄청난다.

설계사무소에서 그 인력을 확보하기에는 개인적인 사무소에서는 어렵다. 어떤 파트너십에 의해서 서로 모여서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인력활용을 해야만 그 감리단 운영을 할 수 있다. 얼마전 2천5백평짜리 설계를 했는데 설계비가 1억3천인데 감리비는 두배가 넘었다. 실비보상 가상방식으로 계산한 결과다. 이대로라면 설계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경영합리화는 바로 전문감리단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작품성을 떠나서 경영만 생각한다면 감리를 해야된다.

류연창 : 그것은 건축사 스스로가 자기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정부공사 50억 이상이면 감리 및 책임감리 회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저도 현상설계를 하나 했는데 그것이 50억이 넘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런 것들이다. 어차피



이봉춘

사무소내에서 직원의 역할과 업무를 체계화 하여야 하며, 일방적인 상의하듯이 주종관계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건축사들이 설계비를 받든 감리비를 받든 우리는 말하자면 건축문화 창달의 일원이다 하는 그 말을 빼 버리면 건축설계 및 감리 작업이 힘겹고 어렵다. 그런데 감리를 안한다는 것은 그것을 포기한 것이다. 일부 건축사들이 설계를 해 놓고 감리를 안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것은 건축주하고 어떤 갈등 때문에 나타나는 극히 드문 일이다.

정덕훈 : 설계비를 제대로 받는 것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한다. 감리단은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의해 공학적 업무를 수행할 뿐인데 설계비의 두배정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번 건축사법 개정에 의해 요율이 몇년만에 현실화 되었는데 일부 회원들의 경쟁으로 요율대로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원칙적으로 설계비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건축설계에서 창작·예술성을 추구하기 위해 힘들더라도 참고, 기다리면 설계비는 현실화 되리라고 본다.

사회 : 경영합리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도적인 얘기까지 묶어서 나왔는데 경영을 하다보면 제도적인 문제가 당연히 뒤따르기 마련이다. 감리비 명목으로 받기가 어려우니까 감리비를 받기 위해 이원화(설계, 감리 분리) 되는 것이 절실히 설정이었다. 설계자는 감리비를 받아서 상호 감리자에게 주고 실제감리는 설계자가 하여 업무한계가 분명치 않아 회원끼리 보이지 않은 미묘한 감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다시 설계자가 감리하는 제도로 바뀌게 되어, 먼저 걱정되는 것이 감리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앞으로 설계비 얼마, 감리비 얼마 하지말고 설계비라고 해서 설계비를 제대로 받는 인내와 풍토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정덕훈 : 지방에서 건축기술정보의 단점, 사례조사 등의



정구영

지방화시대에 지방업체의 대형화가 예측된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미래지향적 태도변화가
요구된다.

어려운 점도 있다. 기본작품에 대한 기본도면 정도는 협회에서 준비해서 회원들에게 배포해주면 기술향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유명한 설계사무실에서 설계완료된 기술정보내지 특수 Detail은 구하려고 해도 어렵다. 협회 차원에서 시간절약, 표준화 또한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각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도면 Data 정도는 회원들에게 배포해 줄 수 있는 Data Bank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제도 및 UR

사회 : 사무실 운영에 있어서는 소수 정예화를 이루고 협회 차원에서도 설계정보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무소에서도 직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신교육을 게울리 하지 않으므로써 민감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겠다. 다음은 3번째로 사무소운영에 관한 제도 및 UR에 대해서 한 항목으로 뉘어서 토론하도록 하겠다.

류연창 : 설계비 인상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들의 문제다. Drawing 방법, Client 설득력, Partnership 등은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제도적인 문제 또한 건축사 스스로가 안일한 의식을 버리고 소수의견도 존중하고 우선 배고프더라도 먼 홋날을 위해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협회는 모든 자료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봉준 : 시험제도에 건축사사무소 근무자가 건축사가 됨에 있어 타분야 근무하는 자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될 수 있도록 방향 모색이 되어야 하겠으며 그 방법으로는 실기과목인 설계에 비중을 크게 두는 것이다. 한편 향후 몇년간 건축사 증원 프로그램이 사실이라면 현실사회에 미칠 영향과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고민해야 하며 차세대 대안의 하나로 앞서 언급한 2급 건축사나

준건축사 제도를 두어 건축사 전 단계의 과정으로 행해진다면 건축사사무소 소속인으로서 기본적인 보장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정신적 안정감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과거 제도나 법제개정이 일방적인 관주도로 이루어져 상대적인 무력감과 피해의식에 일말의 불안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근본 취지나 목적이 침해받지 않아야 하며 인위적인 왜곡은 없어져야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종합건축사사무소 등록규정 및 건축사시험제도, 타인감리제도 등과 지금에 거론되고 있는 건축감시원과 감리자의 손해배상, 종합건설면허 등이며 나타난 현상으로는 종합건축사사무소는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 무실한 제도상의 문제로 개정을 앞두고 있고, 공무원 특별 전형제도는 건축사의 질적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했으며, 그로 인해 건축사를 취득한 다수가 공직을 떠나게 되었다. 또한 건축감시관 제도는 타인감리의 또 다른 형태로 볼 수 밖에 없으며, 무심과 부실과 불법시공에 대해서는 원인 행위자가 처벌을 받도록 되어야 하며, 소규모 건축물의 시공 면허제는 그러한 측면에서 꼭히 도입되어야 한다.

김무권 : 우리나라는 아직도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외국에 비하면 그래도 많은 설계업무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설계분야가 완전 개방되면 외국에서 많은 건축가들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되며, 대구에도 외국 건축가들이 설계한 건물들이 몇개 지어졌다. 설계디자인 기법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외국 건축가보다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나, 한편으로 우리는 지역의 사회성과 전통성을 잘 알고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으니 모든 면에서 자기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되겠다.

정덕훈 : UR에 대해 지방에서 느끼는 것은 미시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으나 거시적으로는 여파가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방에서는 수주건수와 정보 때문에 서울에 있는 업체들과 유기적인 Joint Venture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과 어느정도 평준화가 되면 UR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 지방이 서울과 격차가 커지면 안되겠다는 것이다. 설계건수의 과반수 이상이 서울업체로 가고 있는데 적·간접적으로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과 노력의 소모가 서울과 지방업체가 유기적인 관계로 상부상조했을 때 UR에 대한 충격이 완화될 것이다.

안문호 : 지방에서 인력문제는 시급하다. 급변하는 건축환경에 대응할 참신하고 능력있는 직원을 구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현실이다. 오히려 지방 대학생을 어느 수준에까지 길러 놓으면 서울이나 대도시로 이직하는 예가 상당히 많고 남아있는 직원들과는 대우문제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고용관계를 정립되야만 그나마 지탱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단시간에 보조사를 교육할 수 있는 CAD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시킬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이런 애로점을 타개했으면 좋겠다. 동시에 UR때문에 규모가 큰 사무소는 큰 사무소대로 규모가 작은 사무소는 작은

사무소대로 타격이 상당하리라 생각하는데 협회차원에서 우리와 여전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각 회원이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각 사무소가 서로의 개방이 가능한 정보는 교류할 수 있는 어떠한 획기적인 시도가 있어야 UR을 극복하리라 생각한다.

정구영 : UR은 지역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개방화 되어도 지역적 특성, 문화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Client들이 전통성을 따르므로 부분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지방 사무소에서도 UR에 대해 연구하고 있고, 서비스와 직원의 자질에 대해서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기에 너무 비판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실에 집착 안주하는 과거의 형태 및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미래 지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오히려 지방화시대에 지방업체의 대형화가 예측된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문제점은 없을 것이고, 사무실 관리운영에 있어서 대부분 대형사무소, 소형사무소를 평가할 때 외형상대평가로 획일화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는 상대평가보다 소수라도 절대 평가되어 협회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사 회 : UR에 대해서 당장 지방은 영향이 없다고 생각 될지 모르지만 경험 부족, 인력 부족, 기술난후, 정보부족 등, 우리 현실에서, 외국(대도시)에서 우리의 영역을 점차 침식 당한다고 생각하고 대비해나가야 한다. 그래서 기술 개발, 공동투자 활성화, 표준화, 전산화, 자동화, 기계화, 인적자원 정예화, 신기술 융합, 비가격 경쟁력 향상, 국내 업체간 수평 협조, CM(Construction Management)도입 등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계획 세워야 한다.

이봉준 : 현상설계에 관하여는 수의계약이나 입찰의 한 대안으로써 시행됨이 바람직하나 과정상 많은 문제로 그 재해가 적지 않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젊은 선인작가의 참여 기회를 넓힐과 동시에 양질의 건축개념이 도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반면 감사 등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이용 전략되고 작품의 내용보다는 특정 사람을 선정하고 내용을 짜맞추는 가당치 않은 사례도 흔히 있었음은 부인못할 것이다. 외국의 예를 통해 현상설계가 건축의 발전에 큰 뜻을 하는 것을 보며 최근 마련된 현상설계 지침에 크게 기대하면서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을바르게 정착되도록 협회가 방관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발주자의 목소리에 좌우되지 않을 확실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겪게 될 손해배상에 따른 책임 소재의 논란 등 제도적 모순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협회에 상설전담 기구가 필요하다. 이를 테면 전문 변호사 등으로 구성한 가칭 법령해석 심판기구를 설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도 건축사회별로 별도의 운영도 가능한 것이다.



설계분야에서 서울과 지방이 어느정도 평준화 된다면 UR출격을 원화시킬 수 있다. 서울과 지방간의 유기적 협동관계가 필요하다.

류연창 : 협회 차원에서 최저가 입찰제도를 폐지한다. 건축사는 조형 창작예술인으로서 특수업무를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건축물의 최저가 입찰제도는 재고되도록 회원 스스로가 폐지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협회 차원에서 적극 방지하도록 대처해야 할 것이다.

안문효 : 서울과 대도시는 물론 저희와 같은 지방에서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문제를 직면한 회원의 경우를 본다. 그것이 때로는 사무실 운영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영업정지와 법적제재의 불이익과 같은 것이다. 예를들어 회원 각자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별에 대한 백서같은 것을 우리 나름대로 정리하여 그 차별이 가능한한 가볍게 되도록 협회차원에서 수습기구같은 활동에 적극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건축사를 위한 변호사가 있지만 그야말로 건축사의 문제를 세부적인 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 전문변호사 및 전문검사제도 등 적극적인 우리의 입지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검토를 하였으면 좋겠다.

사 회 : 현재 서울 모 구청에서는 간이 건축 심판제도를 도입하여 건축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여 이웃간의 불신이나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데 이 방법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장시간 토론에 임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회원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될것으로 확신하며, 앞으로 이와같은 좌담회에 지방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피부에 와닿는 내용을 많은 회원들에게 직접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건축실무의 역사(1)

—해방전 한국건축—

The History of Practical Architecture Business

宋 律/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 공학박사

by Song, Yul

연재에 앞서

불과 100년도 되지 않은 과거임에도 한국근대건축은 남아있는 건물이나 자료의 발굴 자체가 연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할 정도로 급속히 파괴되고 잊혀져왔다. 이제는 소수의 성실한 연구자들에 의한 지속적인 연구의 덕으로 건물이나 자료에 대한 일반의 소개가 어느 정도 보편화된 추세에 이르며 이는 자료의 발굴을 넘어서는 무엇인가 줄거리로 꿰맞추는 해석적 작업을 요하는 시점에 다다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필요성은 그간의 한국근대건축에 관한 연구가 잘못되었다거나 부족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역사연구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필요에 따라 재구성되어야 하는 것임을 반증하는 한 예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다고 우리의 건축역사가 서양의 건축역사처럼 멋들어진 줄거리로 펼쳐지는 않을 것이다. 합리주의나 고전주의나 낭만주의나 표현주의니 하는 추상개념을 덧붙인다고 해서 과거사가 달라질 까닭이 없다. 건축의 이면에 자리한 정신적인 것을 어떤 주의로 묶어내는 작업이나 공통의 경향을 양식으로 범주화하는 작업이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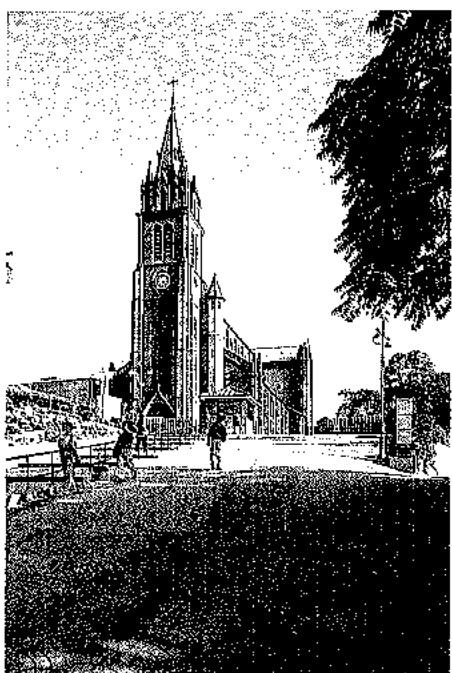
연구작업의 본질적인 면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부인할 정도로 필자가 필자의 무지에 자신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벌거벗은 임금님의 웃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정도의 무지에 대한 소신은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앞으로 연재되는 내용에 몇 가지 독자의 양해를 구한다. 하나는 건축역사서술의 걸음마라 할 수 있는 범주화나 추상화를 이루지도 이를 뜻도 없음을 너그레이 눈감아 주는 것이고 또하나는 필자의 상상이 개입되어야만 가능할 이야기 전달식의 줄거리구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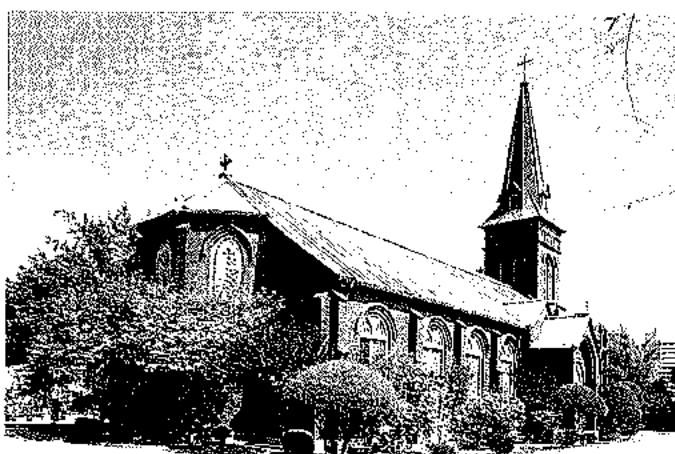
1. 불우한 서구화

이야기의 시작은 오늘날과 관련을 가자는 건축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그럴 경우 더이상 거슬러 올라가기 힘든 시기가 개항 이전의 시기다. 오늘날의 건축은 아무리 바라보아도 전통목조건축 보다는 개항이후 소개된 서구건축과 유사한 점이 많다. 오늘날의 한국건축을 서구건축이라고 부르지 않으니 분명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서구건축이 우리의 건축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현대건축과 전통건축의 단절이 한국건축역사의 크나큰 재앙처럼



명동성당(1898)



중림동성당(1893)



원효로 성당(1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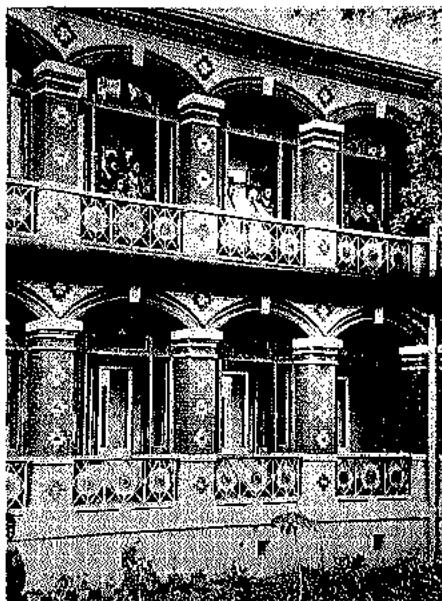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필자는 오히려 그보다는 은연중에 드러나는 한국근대건축과 현대건축의 단절이 보다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개항이후 통감부 설치 이전에 지어진 서양식의 건축은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건축(명동성당(1898), 정동교회(1898), 중립동성당(1893), 천주교주교관(1890), 원효로성당(1907), 숭동교회(1904) 등이 남아있음)과 그리고 외국의 영사관들(러시아영사관(1885), 영국영사관(1892), 벨기에영사관(1905) 등이 남아있음)과 궁궐내 양관이나 기타의 건물(변사창(1884), 정관현(1900?), 중명전(1900?), 독립문(1897) 등이 남아있음)로 대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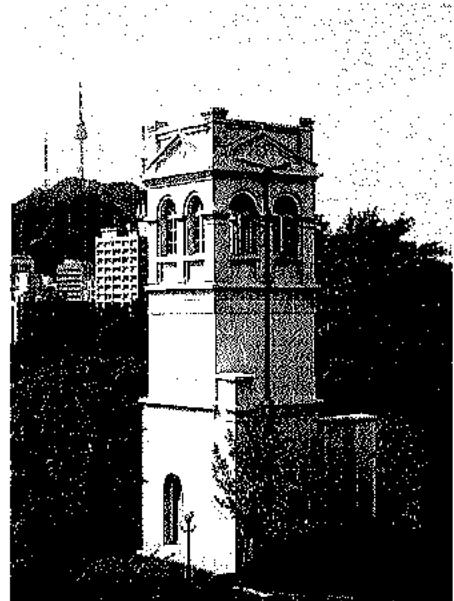
통감부 설치이후 일본인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면서 서양 건축의 소개는 보다 적극적인 것이 되었으며 정복자의 거만한 권위의 상징처럼 건축되었다. 한일합방전까지는 공공건물(공업전습소 본관(1907), 서대문형무소(1907), 한국의원본관(1908), 광통관(1909) 등이 남아있음)이 주로 지어졌고 한일합방이후는 공공건물과 관청건물(한국은행(1912), 상품진열관(구학술원, 1915), 경성역(1925), 총독부청사(1926), 경성부청사(1926)등)이 주로 지어졌다.

이들 서양식의 건축은 외세의존적이었던 정치 만큼이나 우리의 실생활에 필요한 것과는 무관한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었다. 때문에 개항이후 서구화된 건축은 오늘날 건축의 선조라고 여겨지기 보다는 전통건축과의 단절을 초래한 우울한 서구화의 표상이라고 여겨진다.

아관파천시 러시아 영사관에서 일현받는 고종황제



현재 러시아 영사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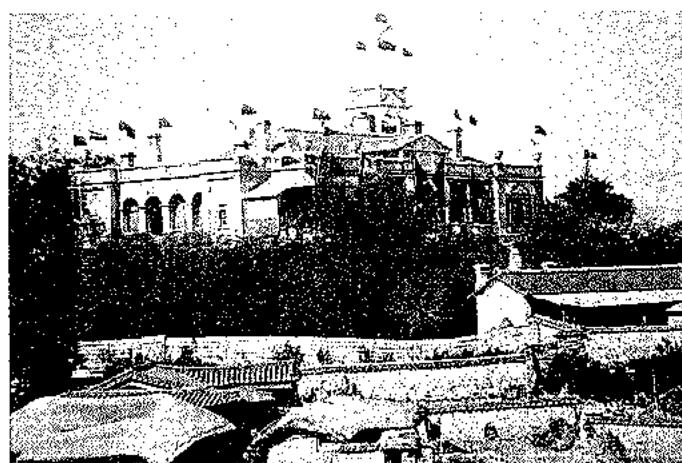


2. 사리진 심의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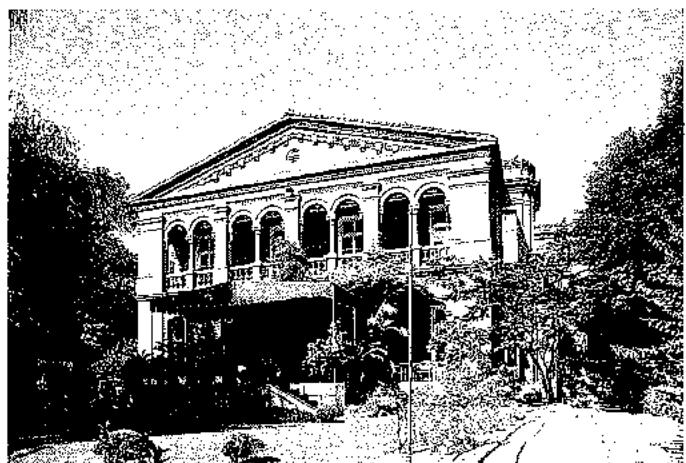
전통건축에서 서양식의 건축으로 전환하게 되는 시점에 접하게 되는 심의석이라는 목수에게서 우리는 가능했을 수도 있었던 전통건축에서의 자연스러운 서구화된 건축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목수였지만 서양식의 건축수법을 익혀 상당한 경지에 다다른 사람이었다. 또 한편 봉건적인 신분제도가 철폐되면서 목수에게도 벼슬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 역사적인 변화의 상징처럼 그는 상당한 지위까지 오르게 된다. 심의석은 1887년 배재학당의 강당 건축시 서구건축의 수법을 접하였고, 1895년에는 관임관 6등의 내부 기수로 관직을 얻어 1905년에는 영선사사장까지 승급하였다.¹¹ 이후 거듭되는 승진으로 그는 1908年 종2품에 오른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²¹ 1896~7년에는 독립문 건립을 준비한

독립협회의 회원 중 일원으로서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고 1900~9년 석조전 공사에도 관여했다.

장인과 건축가의 차이가 없는 것이며 단지 장인이 사회적으로 고양된 것이 건축가라는 바우하우스 선언의 내용을 믿어보자면 심의석은 아마도 르네상스시절 서양의 건축가들이 받았던 것 이상의 대우를 받은 최초의 한국건축가라고 불릴 법도 했다. 그러나 그의 출세가 보편적인 장인들의 위상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의 그의 행적에 대해서도 알 길이 없다. 1908년 심의석이 궁내부 토목과장으로 있을 당시 토목과의 기수로 있던 조한정이 1934년 이왕직 영선계소속으로 조선건축회에 가입한 기록에서 제2 제3의 심의석이 사회의 주도적인 건축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날개잃은 왕가의 건축업무나 관장하는 감금상태에 머물렀음을 상상할 수 있을



러시아 영사관 원래모습



영국 영사관(1892)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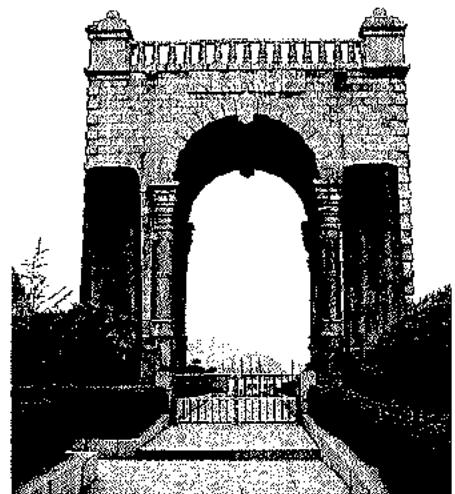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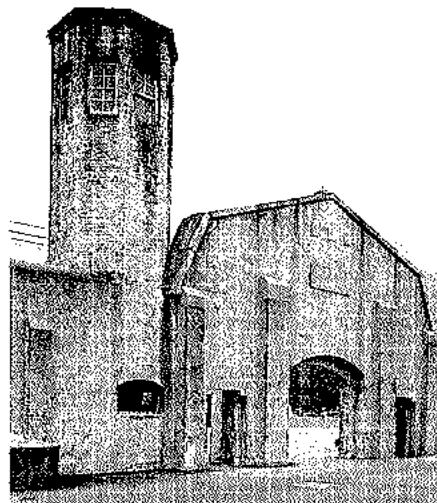
3. 역경 속의 건축 활동

사라진 심의석이 채워야 했을 자리는 일본인들에 의해 대체되었다. 통감부가 설치되는 1906년 이후 다수의 정치적인 건물들이 서울 도시조직의 주요 지역에 세기처럼 파고들어 그 위용을 과시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인들에 의해 지어지는 건축은 우리에게 악의만을 고조시키는 거만한 건축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심의석이 사라진 후 정복자의 광기에 찬 건설이 타성에 젖어들 무렵 새로운 토양에서의 새로운 움직임이 꿈틀거리기 시작하였다. 이미 전통목수에서 서구화된 건축가로의 변신은 화산폭발의 용암으로 덮여 일말의 가능성 조차 사라진 후였다. 수풀속의 들풀은 무의미하지만 용암석 사이에 자라나는 들풀은 무한한 꿈의 상징이듯이 일제하에서의 한국인 건축가들의 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귀중한 것이었다.

한국에 이민 온 일본인들의 자녀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1916년 경성공업학교 건축과가 설립되고 3명의 일본인과 더불어 박길룡과 이기연이 졸업하게 된다. 1922년 경성공업학교는 경성고등공업학교로 변천되면서 매해 약간 명씩의 한국인 졸업자를 배출하게 된다.¹⁰⁾ 한국인의 졸업이 곧바로 이들의 건축가로서 활동을 보장하지는 못하였다. 요즘도 그러하듯이 졸업후 독자적인 실무까지는 수년간의 수련기간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1932년 박길룡이 설계사무소를 개설하기 전까지 한국인의 설계사무소는 전무하였고 또한 일본인들의 설계사무소라 할지라도 그 숫자나 규모 등이 한국인 졸업생을

서대문 형무소(1907)

심의석이 공사에 관여한 독립문



받아들일 만큼 성숙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대개 건설회사(당시 청부업회사로 칭함)에서 설계까지 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31년 경성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조선회사표에 의하면 당시 토목건축관련 회사는 125사가 있었고 이를 중 青水組, 多田工務所, 朝鮮有馬組, 三木合資會社, 坂本組 등이 설계업무까지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계실무를 쌓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은 총독부의 설계조직이었다. 30년대 일본의 대기업이 한국에 진출하고 민간의 자본활동이 활발해지기 이전까지의 건축 대부분은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었고 그러한 관주도 건물의 설계는 총독부 내의 설계조직에서 해결하였다. 1922년 총독부 토목부에 건축과가 생겼으며 여기에서 경성공업전문학교를 한국인으로서는 이기연과 함께 최초로 졸업한 박길룡이 기수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박길룡이 경성공업학교를

졸업한 것은 1919년이며 졸업직후 총독부에 취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총독부의 직원록에 기수로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1922년인 것은 3년여간의 총독부 생활 끝에 기수로 임명된 때문이었다. 총독부의 설계조직에는 한국인이 입사하기가 힘들었을 뿐 아니라 일본인과의 차별대우가 심하여 다년간 고원이라는 임시직원으로 고용된 후에라야 기수로 임관되어 정식 직원의 대우를 받았다. 31년 경성고공을 졸업하고 39년 총독부에 입사한 유원준씨의 이야기는 당시의 분위기를 쉽게 전달해 준다.

친척 중에 동경제대출신인 유만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총독부 회계과장과 동기생이었다. 그의 소개로 총독부에 입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입사한 지 일년이 지나도 고원에서 머물뿐 기수로 임관을 시켜주지 않았다. 그래서 회계과장을 찾아가서 하소연했는데 영선제장사사(筵慶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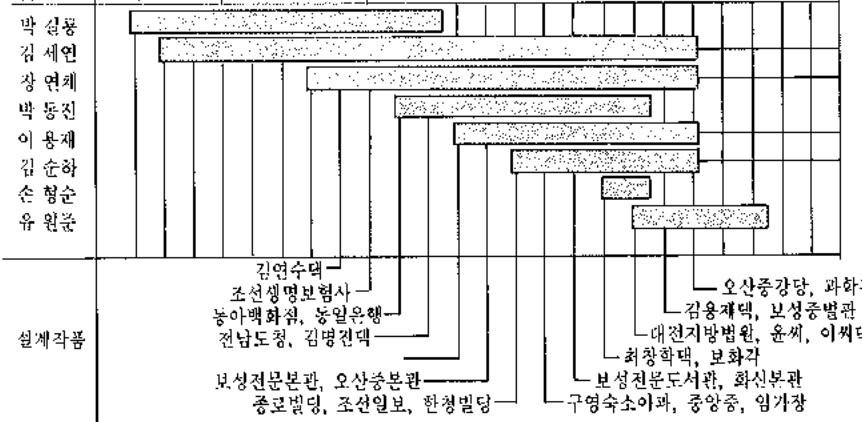


경성부청과 총독부 청사(1926)



심의석이 공사에 관여한 석조전

이름	부서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이름	부서	도복부건축과 내무국건축과 관방회계과 사망



(표) 총독부 설계조직내의 한국인 건축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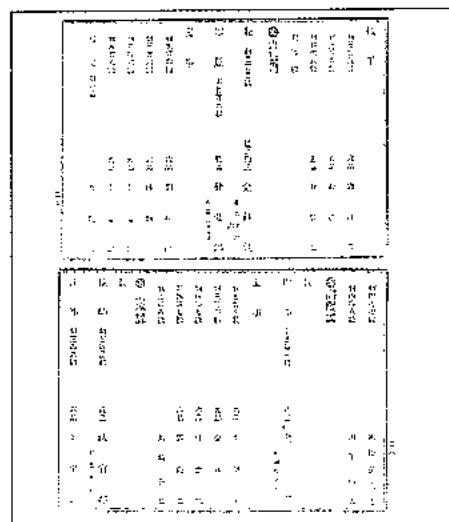
자기보다 선배라서 무어라 말 할 수 없다고 했다. 고민끝에 경성에서 제일 좋다는 과자점에서 과자 한봉지를 사들고 사사에게 찾아갔더니 그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기수로 임관이 되었다… 임관전에는 고원이라고 해서 책임있는 일을 시키지 않았다.⁴⁴

오랜 고원의 생활을 한 대표적인 인물은 손형순⁴⁵을 들 수 있다. 1910년 공업전습소를 졸업한 그는 1915년 입사하였지만 1938년에 가서야 기수로 임관이 되었다. 무려 28년간의 고원생활을 한 것이다.⁴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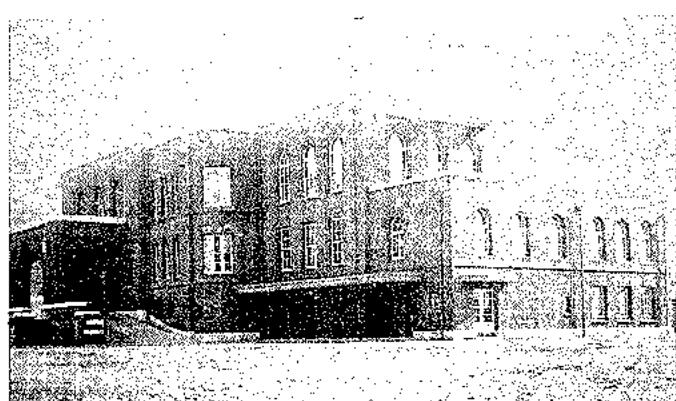
총독부의 설계조직은 1922년부터

도복부 건축과에서 1925년 이후에는 내무국 건축과에서 그리고 1930년 부터는 관방 회계과로 변천되었다. 총독부내의 다른 국가는 달리 관방은 총독 직속의 조직이었다. 이 기간 동안에 철도국 관계의 일을 제외하고는 설계를 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조직이 총독부 관방 회계과였다. 한국인 건축가로서 해방전에 설계작품을 남긴 사람들은 강운과 박인준을 제외하면 모두가 총독부나 관청의 설계조직에 있던 사람들로서 기수급에 해당하는 실무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총독부의 설계조직은 대형설계사무소의 조직과 흡사하였다.⁴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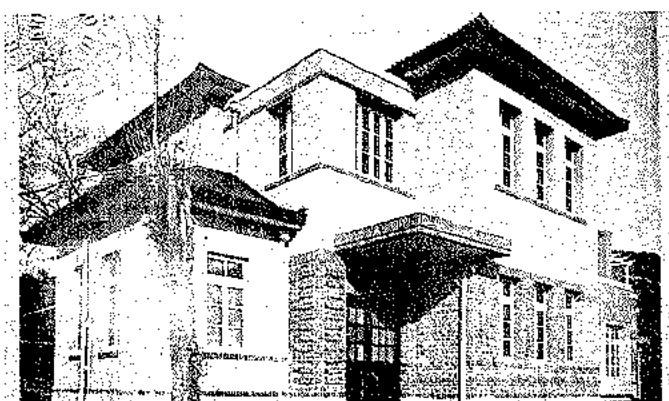
즉 관방 회계과 영선계는 3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회계과장은 丹下 郁太郎(겐조이타로 : 겐조 단계의 형)라는 동경제대 경제학부 출신이었고 각 계의 계장은 기사급에 해당하는 건축전문인이었다. 계장 중 简慶一은 경성고공의 교수로도 있었다. 각 계는 건축물의 유형에 따라 그 성격이 구분되었다. 즉 简慶一이 계장이던 1계는 도청이나 관공서 건물을 위주로, 2계는 학교와 세관을 중심으로, 3계는 형무소나 요양원 등의 건물을 위주로 설계를



궁내부 직원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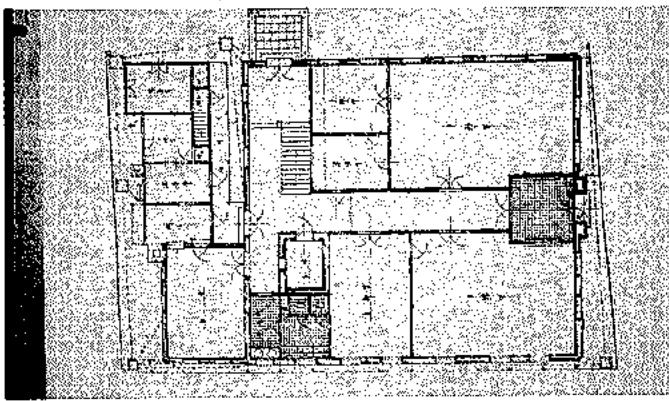
박길룡이 총독부에 근무하면서 맡은 경성제대 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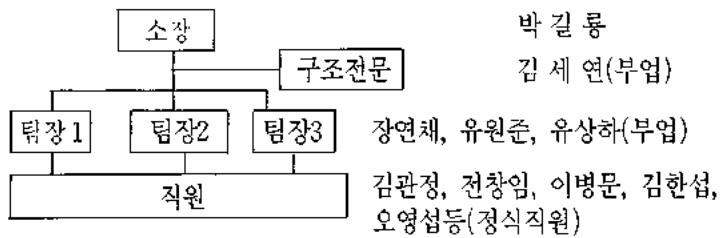
박길룡이 내직(아르바이트)으로 설계한 김연수택(1929)



박길룡이 내직(아르바이트)으로 설계한 조선생명보험사(1930)



조선생명 보험사 평면도



(그림 3-4) 박길룡 사무소의 조직구성¹⁰⁾

담당하였다. 또한 구조와 설비 분야는 독립되어 각 계를 보조하였다. 각 계는 기수들과 이하의 직원 약 30명 정도로 구성되어 하나의 계가 거의 설계사무소 하나에 해당하였다. 각 프로젝트는 기수들이 담당하였고 디자인에 관해서는 토론을 통하여 안이 결정되거나 수정되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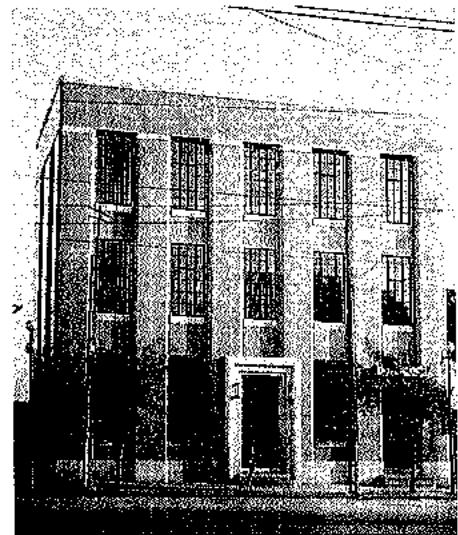
총독부의 설계조직에서의 활동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총독부의 설계조직은 어쩔 수 없는 취업지였고 한국인 건축가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해 주는 곳이 될 수는 없었다. 들풀같이 어려운 한국인 건축가들의 실무는 内職이라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낮에는 총독부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독자적으로 설계업무를 한 것이다.

다음은 1922년에서 1941년까지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에 나타난 한국인 기수들을 표로 작성한 것이다. 이후의 소속여부는 기타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직원록에는 기수 아래의 촉탁 정도까지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 해당하는 인물은 柳洪珪, 朴東麟, 李用火善 등이 있다.

총독부에 근무하며 부업(내직)으로 꾸준하게 활동한 대조적인 인물은 박동진이다. 당시 관리복무규율에는 보수를 받고 타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⁹⁾ 따라서 총독부에 있던 한국인이 부업으로 설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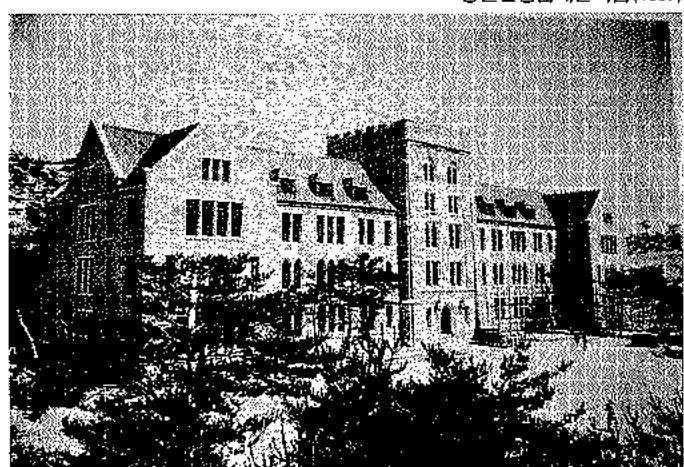
하였더라도 이름을 밝히는 데는 문제가 있었으며 한국인 설계의 건축물이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 『朝鮮と建築』에 소개된 그의 작품은 1935년 9호에 조선일보사와 보선전문본관이 전부인데 그나마 설계자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1932년 박길룡이 유일하게 정식의 설계사무소를 개설하였으니 1932년 이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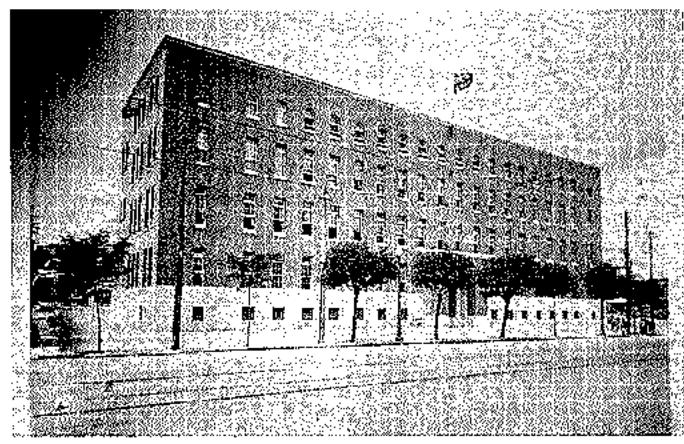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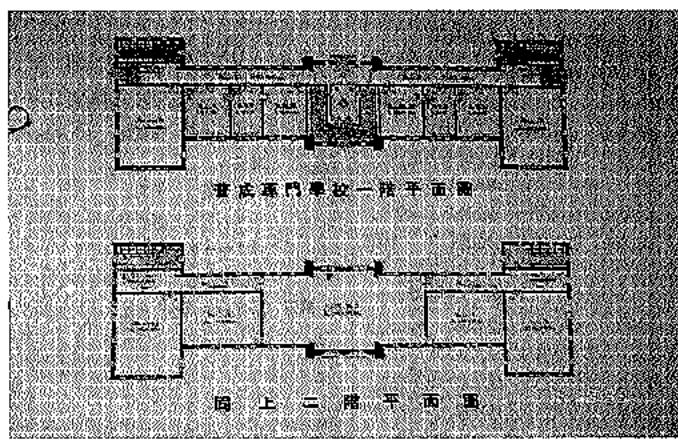
박길룡이 내직(아르바이트)으로 설계한 동일은행남대문지점(1931)



동일은행남대문지점(현국민은행 남대문지점)



박동진이 내직으로 설계한 보성전문본관(1934)



박동진이 내직으로 설계한 조선일보사(1935)

박길룡작품을 제외하고는 전부
아르바이트로 이루어진 작품이었다.
1932년 설계사무소를 개설하기 전에 박
길룡이 부업으로 설계한 것들 중에
『朝鮮と建築』에 소개된 건물은
김연수택(1929년 2호), 조선생명보험사
사옥(1930년 11호), 동일은행
남대문지점(1931년 2호), 종로백화점
동아(1932년 2호) 등인데 설계자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러나 32년 7호에 소개된
김명진택은 박길룡건축사무소라고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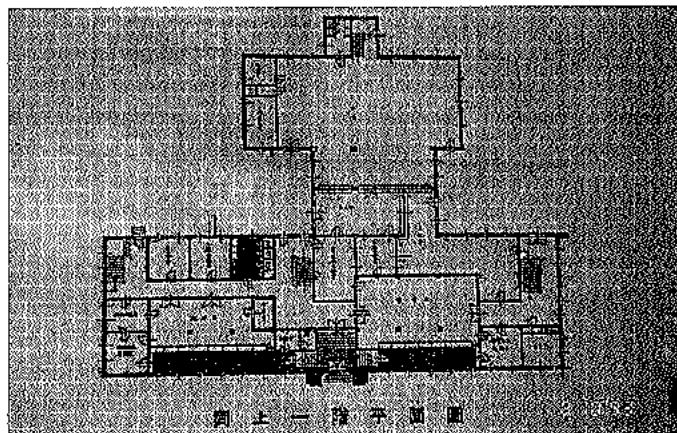
32년 2월에서 7월사이에 설계사무소를

개설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사무소
개설 이후 『朝鮮と建築』에 소개된
박길룡의 작품은 한청빌딩(35년 10호),
화신백화점(37년 12호), 신당동
윤씨택(39년 3호), 가회동
이모씨택(전용순대, 39년 9호) 등인데
모두 박길룡건축사무소라고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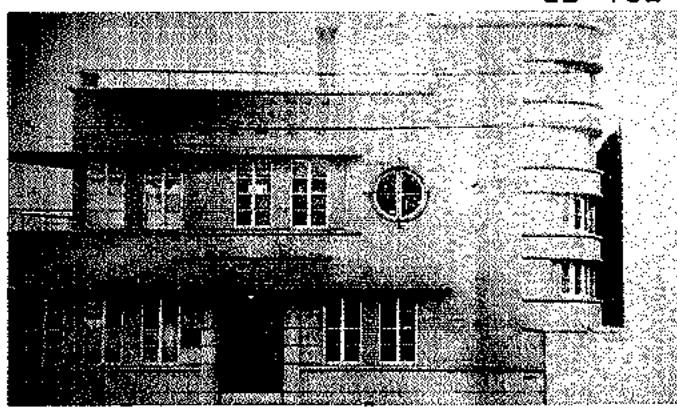
여러 사람의 회고에 의하면 박길룡의
설계사무소는 한국인 건축인들이
모여드는 구락부 같은 성격을 지녔다고
한다. 이는 단순히 저녁때 사람들이 모여
환담이나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보여서 건축설계일을 하였던 것이다.¹⁰⁾
즉 기수급에 오른 한국인 건축가들이
박길룡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프로젝트의
기본설계를 담당하거나 담당치 않더라도
토론하며 안을 결정하는데 참여했던 것
같다. 그리고 정식직원으로 있던
사람들은 주로 도면작성을 하였다.

박길룡의 사무소는 식민지하의 어려운
상황에서 생존해야 했던 한국인
건축가들의 어려운 실무활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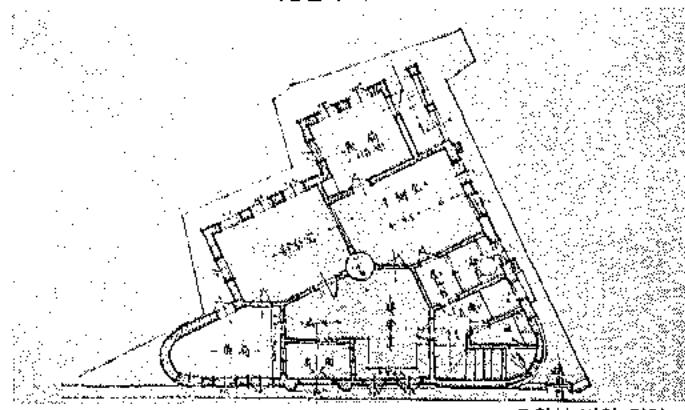
조선일보사 평면도



유상하가 내직으로 설계한 오원석 병원(1932)



박동진이 내직으로 설계한 오산중학교 본관(1934)



오원석 병원 평면도

1) 관보 제 32호에서 3861호, 김준일, “경운궁의 영건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26쪽에서 제안용

2) “궁내부 직원록”, 1908

3) 1919년에서 1930년까지 14명의 한국인 졸업자가 배출되었고 1931년에서 1941년까지는 40명의 한국인이 배출되었다.

4) 필자논문 “한국근대건축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159쪽 유원준과의 대답자료 중

5) 해방이후 조선건축기술단의 고문이었고 대한주택공사의 전신인 주택영단에 근무하였다.

6) 필자논문, “한국인근대건축가의 형성과 후원자”, 1993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7) 총독부 설계조작의 구체적인 면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 이하 기술한 총독부 관방 회계과 영선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논자와 안창모가 1992년 7월 3일과 7월 30일 김희춘생님과 대담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8)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1922년에서 1941년판에 나타난 건축설계관련부서에 나타난 한국인을 정리하여 표로 만든 것. 이중 1925, 1927, 1929, 1937, 1940년판은 확인치 못하였음.)

9) 菊山嘉男, (총독부회계과장) 「官廳における建築技術員の内職問題に就て」, 『朝鮮と建築』 10집(1931년) 2호, 15쪽, 그는 회계관장으로서 관리들이 내직으로 설계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결론은 내직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10) 논자의 김희춘 증언, 건축가 81년 5/8에 있는 유원준의 회고에 박길룡 사무소에 드나들던 것이 아르바이트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11) 이 표는 김희춘, 유원준 등의 면담에 의해 구성한 것임.

환경보전과 건축디자인

Environment Protection & Architecture

李璟會/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Lee, Kyeong-Hoe

I. 서언

오늘날 지구 환경의 오염은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산업혁명 이후 가속화된 도시화 및 공업화로 인해 인류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으나 그 결과로서 대기오염, 오존층의 파괴, 각종 자원의 고갈 등 지구환경 생태계의 평형을 위협하는 현상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지구 환경문제는 건축분야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세계 각국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 중에서 35~40%정도가 가정부문이나 상업용 건물에서 사용됨으로써 건축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 비중이 매우 크며,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이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에너지는 건축을 이해하는 새로운 차원을 제공해 준다. 건물에서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건축설계단계에서 시공단계까지 에너지 문제에 대한 고려는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를 고려한 건축디자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에너지절약기술활용의 경제성을 초월하여 지구환경보전이라는 측면에서 건축에 대한 새로운 개념설정과 창조적 설계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건축」은 자연에너지를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여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며 실내 공간의 페인트를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축가의 형태 창조에 자극을 주어 주변환경에 어울리는 건축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환경보전의 측면에서 현대건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환경건축」의 출현과 최근 동향을 알아보며, 환경건축디자인의 구체적인 기법과 사례를 제시한 후, 인간환경의 관점에서 21세기 건축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II. 건축과 환경문제

전통적으로 건축디자이너는 건물의 외피 디자인을 통해 실내환경을 조절하여 왔다. 그러나 근대건축을 가능하게 한 기술의 발전은 건물의 구조와 재료변화를 가져왔으며 실내환경조절을 위한 건축디자인은 거의 무시되었다. 철골과 유리커튼월이 시작적 효과와 구조의 경량화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 많은 근대 건축은 겨울철 난방 및 여름철 냉방을 위해 기계적인

공조설비없이는 폐적한 환경조절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인공조명 및 공조설비는 급진적으로 발전하였고 실내환경은 기계환기시스템과 공기조화설비에 의해 조절되므로 환경조절은 건물형태나 외피 특성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에너지 위기와 지구환경오염으로 인해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막대한 에너지사용에 의한 지구오염에 대한 염려와 인공조명 및 기계적 공기조화 건물에 대한 제설자의 불만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갔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면서 실내환경의 질을 개선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에너지문제에 대한 위기의식과 지구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욱 폐적한 실내환경을 요구함에 따라 건물에서의 에너지소비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편리하고 깨끗한 에너지에 대한 선호로 인하여 에너지 비용은 더욱 상승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91년도 91.9%)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총에너지 소비량 중 건물부문의 사용량이 35%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물에서의 에너지절약 문제는 매우 절실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1992년)에 의하면 상업부문에서 에너지절약잠재력이 33%로서 타 분야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업용 건물의 대표적 유형인 사무소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서 건물외피를 통한 열손실이 지적되고 있다. 사무소 건물의 고층화, 대형화는 건물외피구조의 경량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에너지 소비량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표 1).

표 1. 부문별 에너지소비량 및 절감효과 (92년 기준 : 에너지경제연구원)

구 분	산업부문					계
	비전력부문	전력부문	가정부문	상업부문	수송부문	
비율(%)	39.9	15.8	5.0	5.1	34.1	100
에너지절약잠재력(%)	25.7	14.8	28.8	33.3	16.0	26.3
에너지절약잠재력(백만TOE)	11.4	2.6	1.6	1.9	6.1	23.6
절약순편익(십억원)	904.7	322.0	341.1	433.2	634.4	2,635.4

최근 건축심의시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에 대한 에너지절약 계획심의를 강화하여 건축설계단계에서 에너지절약에 관한 철저한 계획 및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가들의 외피 디자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에너지절약 설계가 단순히 설비기술자에 의한 수치 계산에 머무는 인상을 주어 실제로 건물 에너지 절약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는 1991~1993년 동안 서울시에서 에너지심의를 받은 90개 사무소 건물의 외벽구조와 창면적비(창면적/외벽면적)에 대한 특성을 보여준다.

전체 건물의 74.5%가 경량외피구조체이며, 70%이상의 건물이 창면적비 40%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최근의 사무소건물의 설계동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량구조 건물의 에너지 소비문제는 실로 엄청나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량구조체와 중량구조체의 냉난방부하를 비교해 보면 경량구조체의 평균냉방부하는 중량구조체보다 연간 2.04Mcal/m³정도 더 크며, 평균냉방부하는 연간 1.62Mcal/m³정도 더 크다.

특히 대부분의 경량커튼월구조의 경우 스팬드럴부분에는 그림 1과 같은 디테일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경우 여름철에 직사일광에 의한 공동(cavity)부분의 과열현상으로 유리가 파손될 수 있으며 또한 실내에 과도한 냉방부하를 일으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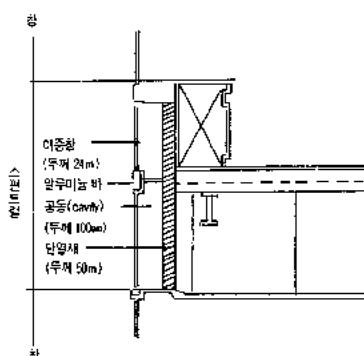


그림 1. 사무소 건물의 외피구조 예

실제로 경량커튼월구조의 에너지 소비문제에 대해서 여의도 63빌딩을 예로 들면 이 건물은 연간 26.6kg/m³연료와 254.4kWh/m³의 전기를 사용하는데, 이 에너지 소비량은 인구 10~15만명의 도시가 1년간 사용하는 에너지양이다. 이러한 문제의 주요원인의 하나는 건물외피의 경량커튼월 구조때문인데, 표 4는 에너지효율을 고려한 건물 및 인텔리전트 빌딩과 63빌딩의 에너지성능을 비교한 것이다.

여기에서 63빌딩은 타 건물에 비해 3~5배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에너지 소비형 건물은 에너지소비뿐만 아니라 지구환경오염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건물에서 사용할 기름의 원유를 수송하는 배의 침몰이나 화산에 의한 원유의 바다유출로 인근 해역이 오염되고 자연생태계는 파괴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소비의 급격한 증가로 현재 대기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약 25%가 높은 350ppm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은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연소때문이다. 이산화탄소와 같이 온실효과를 발생하는 가스의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전체의 기온 상승과 이에

표2. 서울시내 사무소건물의 외피구조 및 창면적비(1991-1993년)

구조	재료	빈도(%)	창면적비	빈도(%)
경량구조	화강암(두께 30mm)	27(30.0%)	0.2~0.29	7(10.4%)
	단열재		0.3~0.39	9(13.4%)
	금속재	23(25.6%)	0.4~0.49	20(29.9%)
	커튼월		0.5~0.59	12(17.9%)
중량구조	유리재	17(18.9%)	0.6~0.69	7(10.4%)
	커튼월		0.7~0.79	10(15.0%)
			0.8~0.89	2(0.3%)
	소계	67(74.5%)	계	67(100%)
구조체	화강석		0.2~0.29	4(17.4%)
	+ 콘크리트	14(15.5%)	0.3~0.39	5(21.7%)
			0.4~0.49	5(21.7%)
			0.5~0.59	3(13.1%)
중량구조체	외부마감재		0.6~0.69	3(13.1%)
	+ 콘크리트	9(10.0%)	0.7~0.79	2(8.7%)
			0.8~0.89	1(4.3%)
	소계	23(25.5%)		23(100%)
합계		90(100%)		

표3. 경량구조건물과 중량구조건물의 냉난방부하비교

구분	경량 구조체	중량 구조체
평균 난방 부하	25.4 Mcal/m ³ ·년	23.4 Mcal/m ³ ·년
평균 냉방 부하	33.4 Mcal/m ³ ·년	31.8 Mcal/m ³ ·년
합계	58.8 Mcal/m ³ ·년	55.2 Mcal/m ³ ·년

표4. 서울시내 대형 사무소건물의 에너지소비 비교(1991년)

구분	63빌딩	H빌딩	L빌딩	S빌딩	K빌딩
		에너지절약형 건물			
에너지*	26.6 (kg/m ³ ·년)	13.2	7.7	4.6	5.7
전기(kwh/m ³ ·년)	254.4	116.7	185.9	191.3	99.3

* 오일환산에너지 *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

따른 해수면의 상승이 발생한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지구 기온이 1~2°C 상승하면 강수량이 10%감소하고, 지표수가 40~70%감소되며 이것은 농업 및 생활용수에 큰 영향을 미치고 토양유실을 심화시킨다. 현재 화석연료의 소비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미국이 전세계의 1/4을 차지하며 우리나라로 석탄과 석유 사용량이 전체 에너지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기온상승에 따른 지구의 파국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건물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 지름길이다.

이와 같이 에너지 자원의 부족과 에너지의 소비에 따른 제반 환경오염문제는 장기적으로 현대건축의 에너지와 그 문제점을 다시 환기시키며 인간을 위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건설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건축가의 반성과 의식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인 '지구환경오염'문제는 결코 건축분야와 무관하지 않으며, 건축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III. 환경건축의 출현과 최근 동향

1980년 중반에 접어들면서 지구환경 문제를 자각한 건축가들 사이에 새로운 건축운동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즉, 건축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시각적 대상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자연생태계와 일부로서 존재하는 「환경에 순응하는 건축」 또는 「자연과 함께 하는 건축」을 의미하는

「환경건축(Environmental Architecture)」, 「녹색건축(Green Architecture)」 「자연건축(Natural Architecture)」 또는 「생태건축(Ecological Architecture)」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다. 「환경건축」은 인간과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환경으로부터 인간의 오관(Sense)을 통해 전달되는 자극(Stress)을 자연적인 방법으로 극소화함으로써 감각적으로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행위(설계) 또는 그 결과로서의 인공물(건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경건축」은 경험주의적 철학에 근거하여, 자연환경의 일부로서 인간의 생존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자연스럽고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경을 주체로 하는 건축」의 이념을 표방한다. 즉 「환경건축」은 태양열, 햇빛, 바람, 지열 등 자연에너지의 이용을 극대화하여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인간에게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게 된다. 이를 위해 「환경건축」은 자연형 태양열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내공간을 냉난방하며 실내에 가급적 많은 햇빛을 끌어들이고 건물의 자연환기 성능을 향상시킨다. 또한 태양전지(Solar Cell)등을 사용하여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고, 독성이 없는 표준화된 건축자재를 이용하며,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중수시스템 등을 도입하고자 한다.

현재 「환경건축」을 위한 기술개발은 기초연구로부터 제품개발, 성능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실용화 단계에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Norman Foster, 그리스의 A.N.Tombazis같은 건축가들이 「환경건축」에 대한 깊은 연구와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 작업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건축분야에서 지구 환경오염문제를 먼저 인식한 건축가들이 1982년 PLEA(Passive and Low Energy Architecture)를 창립하였다. 금년에 7월 이스라엘에서 제 11차 국제회의를 갖게 되는 PLEA에서는 건축과 도시계획분야에서 건축가들의 생태적, 환경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쾌적한 생활환경의 창조를 목표로 하는 현대건축이 에너지 소비자향적이며 기술중심적인 패러다임에 집착하여 생겨난 건물에너지 과소비와 이에 따른 환경오염문제를 깊이 자각한 건축가들이 태양이나 바람과 같은 청정에너지를 건물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태기후디자인을 주창하고 실제로 세계각국에서 지역기후에 적합한 자연형 건물을 디자인함으로써쾌적하고 아름다운 저에너지 건축을 다양하게 창출하고 있다.

PLEA 현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PLEA는 건축과 도시계획에서 생태학적, 환경적인 의무를 이행하려는 전세계적인 모임이다.

2. PLEA는 Passive and Low Energy Architecture의 약자로서 생태기후적이며 환경적인 디자인의 원리, 그리고 그 응용과 혁신적인 기법의 개발, 출판과 보급을 위한 모임이다.

3. PLEA는 건설기술과 건축과 도시계획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수준높은 연구와 업무를 지향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환경건축」의 공통적인 특징은 태양열, 빛, 풍력, 지열 등 자연적 환경요소와 심리적 요소, 의장적 요소 등을 다차원으로 통합 디자인하였다는 점이었다. 결국 다양한 분야의 「환경건축」기술은 개개의 기술로서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으며 이러한 요소들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통합작업이 바로 건축가의 중요한 임무이다. 또한 「환경건축」운동은 일부 전문가들 만의 움직임이 아니고 건축가, 산업경영자, 엔지니어, 행정당국자 그리고 학생들과 일반인의 높은 관심과 참여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건축」은 21세기의 건강한 지구환경을 위해 모든 건축가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이다. 화석연료를 전혀 쓰지 않는 건물은 앞으로 10년 이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환경건축」을 당장 실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건축가의 의지와 관심부족에 있다. 「환경건축」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지름길은 건축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자연에너지를 건축에 활용하는 것이다.

IV. 환경건축의 디자인 기법과 사례

자연생태계의 일원으로서 환경건축은 그 정의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자연에너지의 적극적 이용과 건축계획적 방법의 적용에 의한쾌적한 실내기후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환경건축의 목적은 시대의 발전에 따라 건물의 유형과 건물성능수준이 복합, 고도화되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도 변질 혹은 퇴색될 수 없는 건축의 지상과제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환경건축디자인기법의 근저에는 자연형 디자인 원리가 이념적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다.

[1] 자연형 디자인 원리

건축의 기원은 외부기후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Shelter'에서 출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건축환경디자인은 외부기후조건을 쾌적조건에 적합하도록 조절하는 건축적 대응행위라고 할 수 있다.

건축환경의 조절방법은 크게 자연적인 방법에 의한 자연형 조절과 기계적인 방법에 의한 설비형 조절의 두가지로 분류된다. 이 두가지 조절방법은 실제의 건축환경에 있어서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되는데 자연형 조절이 선행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기계적 조절은 자연형 조절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보조적으로 사용된다.

자연형 조절은 건물의 형태, 구조, 외피계획 등의 건축적 계획을 통해 기계적 장치의 도움없이 실내환경조건을 인간의 감각적 요구에 적합하도록 조절하는 방법이다. 즉 자연형 디자인 원리는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연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있다. 자연형 원리를 적용한 건물의 자연형 설계는 생체기후학(Bioclimatology)의 과학적 원리를 응용하여 건물에서 태양열, 햇빛, 바람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내지조성에서 건물상세에 이르기까지 상호 관련된 자연과 건물-환경 시스템의 관점에서 건물을 설계하는 기후디자인이다. 이 방법은 건물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며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축설계 방법이다.

자연형설계는 다양한 기후조건과 주변환경에 대응하여 설계초기단계부터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결정과정으로 이루어지며 복잡한 실내환경성능요소들의 상호관계를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해결한다.

자연형설계는 환경성능요소별로 자연형 태양열난방설계, 자연형 냉방설계, 자연채광설계, 자연환기설계 등 전문분야로 나누어지며, 지금까지는 체계적으로 통합된 설계방법이 결여되어 종합적인 실내환경성능이 저하되고, 실제 설계업무에서 잘 이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자연형설계의 기본이 되는 생체기후디자인(Bioclimatic Design)은 특정 기후조건에 부합하도록 건축 설계하는 방향으로서 “Psychrometric Chart”를 이용하여 건물의 외피가 실내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을 실현하고 동시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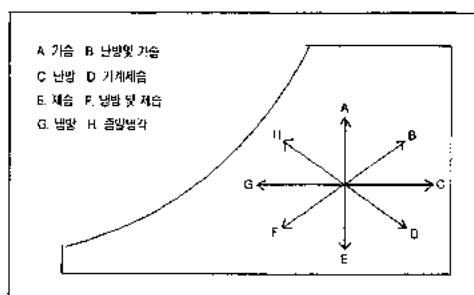


그림 2. 실내환경조절방법

생체기후 디자인을 위해서는 습한공기선도에 의한 실내환경의 쾌적범위를 알아야 한다. 인간의 쾌적 범위는 문화나 개인의 신체적 조건 그리고 심리적인 기대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와 같은 쾌적 범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비교적 정확한 쾌적범위가 설정되었다. 일반인들의 쾌적 범위는 온도가 대략 20°C 에서 25.6°C 범위, 상대습도 (RH)는 20%에서 80% 범위에 있음을 습한공기선도에서 알 수 있다. 습한공기선도상에서 실내환경조절은 그림 2에서와 같이 이루어진다. 즉, 기후조건이 습한공기선도에서 쾌적 범위의 아래 혹은 윗편에 속하면 자연형 난방 설계방법이 사용되고 위 혹은 오른편에 속하면 자연형 냉방 설계 방법이 사용된다.

건물설계자는 계절별 혹은 월별 기후조건이 습한공기선도상에서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를 파악하여 건물이 때에 따라 적합한 자연적인 실내 환경 조절방법을 갖출 수 있도록 기후 설계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자연형 디자인 원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내 열환경 측면에서 난방기에는 태양열과 같은 외부의 열획득을 촉진하고 내부는 열 손실을 억제하며 냉방기에는 외부 열의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내부 발생열을 외부로 신속히 배출하는 것이다.

습한공기선도상에서 실외기후조건이 표시된 쾌적범위를 벗어나고 있을 경우 건물의 자연형 열환경 조절원리는 다음과 같다.

(1) 자연형 난방설계

겨울철에 기후조건이 각 영역에 속할 때 설계방법은 아래와 같다.

- ⓐ 영역 : 태양열을 이용한 자연형 난방 설계방법 이용
기계설비의 도움없이 쾌적한 실내 열환경 조성가능
- ⓑ 영역 : 난방설비를 설치하여 보조난방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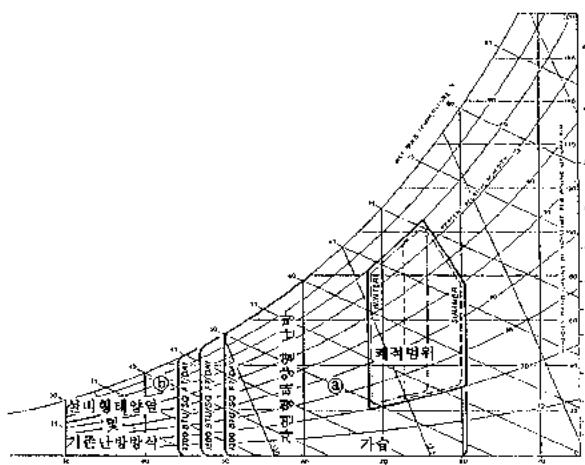


그림 3. 자연형 난방설계 방법

(2) 자연형 냉방설계

여름철 기후조건이 각 영역에 속할 때 설계방법은 아래와 같다.

- ⓐ 영역 : 자연환기를 이용한 냉방이 가능하도록 건물을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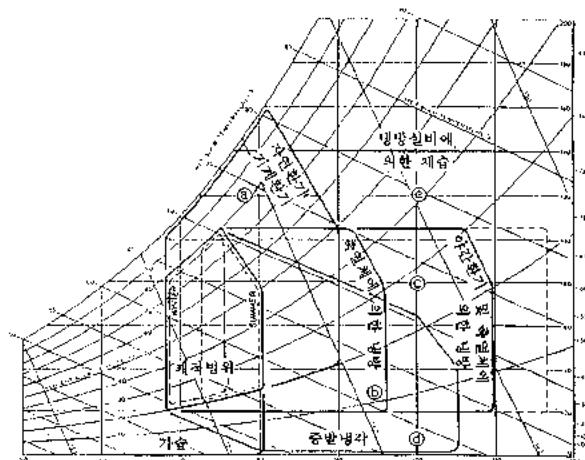


그림 4. 자연형 냉방설계 방법

- ⑤ 영역 : 높은 축열용량의 축열체를 이용한 냉방방법 사용
- ⑥ 영역 : 야간환기에 위한 냉방과 높은 축열용량의 축열체를 이용한 냉방방법을 병행 사용
- ⑦ 영역 : 증발냉방방법 사용
- ⑧ 영역 : 기계설비에 위한 제습 및 냉방 이용

(3) 자연체광 및 자연환기

실내 빛환경 측면으로는 상업용 건물(사무소, 백화점, 상점등)이나 학교건물과 같이 고도의 실내 빛환경성능과 다양한 조명에너지 소비가 요구되는 건물 유형에서 최대한의 자연체광을 유입하는 것이 자연형 조절의 기본이 된다.

또한 최근 문제화되고 있는 병든 건물 증후군(Sick Building Syndrome)을 비롯하여 많은 실내공기 오염문제는 극도의 건물외피 기밀화에 따른 자연 환기 부족이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건물에는 기계식 환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나 공기 턱트를 비롯한 환기 장치 내부에 오염물질이 누적되거나 세균 등이 서식하여 오히려 실내공기 악화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 겨울철 실내공기 오염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연구보고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건물의 자연환기 성능제고 역시 자연형 조절의 기본원리이다.

[2] 자연형 태양열 난방기법

(1) 자연형 태양열 난방 기술

'자연형 태양열 난방기술'은 태양열을 건물의 냉난방에 이용하는 것으로 자연형 태양열 설계라고도 부른다. 가장 간단한 자연형 태양열 난방(Passive Solar Heating)방법은 남쪽에 큰 창을 두어 겨울철 햇빛이 실내로 직접 들어와 실내공기를 덥히거나 실내의 바닥과 벽을 가열시키는 방법이다. 그림 5는 르네상스시대 Raphael에 의하여 디자인된 로마 바티칸궁전의 loggia에서 발견되는 자연형 난방원리의 적용 예이다.



그림 5. 로마 바티칸 궁전의 loggia에 적용된 자연형 난방원리

구체적으로 자연형 태양열 설계방법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직접획득방법, 간접획득방법, 분리획득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난방시스템의 구조형태에 따라 직접획득형, 축열지붕형, 부착온실형,

자연대류형, 이중외피구조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현대 자연형 태양열 건물을 위한 설계기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디자인원칙

- 태양열 획득에 유리한 대지선정
- 태양열 획득에 유리한 건물의 주향 및 형태 계획
- 태양열 획득에 유리한 개구부 계획
- 여름철 일사 차단 및 겨울철 일사획득을 위한 차양계획
- 계절별 요구에 따른 효과적인 조경계획

② 배치기술

- 건물간에는 인동간격을 확보하여 대지조건에 영향받지 않고 태양열의 획득이 가능하게 한다(일조계획)
- 건물의 향에 따라 유효일조시간이 변동하므로 난방부하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정남향이 가장 유리하다.
- 실내계획은 건물로 사입되는 주광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남측 창은 크게, 북측 창은 작게 한다.

- 여름철에는 그늘이 지고 겨울철에는 태양광의 입사를 유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창을 설계한다.
- 여름철의 그늘 형성과 겨울철의 일사획득을 위하여 효과적인 차양 등 인공시설물과 건물 남측 전면에 활엽수를 식재한다.

③ 공간설계기술

- 용적이 적고 동선이 짧으며 단순한 형태로 효율적인 공간을 구성한다.

○ 비거주공간은 가급적 북측에 배치하며 거주공간을 사용시간대, 사용자 및 빈도에 따라 열적조닝을 한다.

- 남측 창은 겨울철에 충분한 정도의 일사를 입사시키므로 열획득에 유리하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실내 과열의 주원인이 되므로 적정크기의 차양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겨울철 주광이 입사되는 실내의 바닥과 벽부분에 열용량이 큰 재료를 사용하면 양간에도 쾌적범위를 유지할 수 있다.

- 현관에는 가능한 한 방풍실을 설치하여 현관출입문의 개폐에 따른 열손실을 방지한다.

○ 자연통풍은 실내공기의 환기효과와 쾌적한 환경을 위한 자연냉방 효과를 지니고 있으므로 자연통풍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한다.

- 내부의 열발산이 많은 부분은 통풍의 주경로에 위치하도록 공간을 구성한다.

○ 태양열의 입사를 고려해서 발코니 등을 열적 완충공간으로 활용하고 자연형 태양열 시스템의 원리를 이용한다.

④ 부위별 설계기술

- 창틀과체의 종류에 따라서 일사량 취득 및 전도율이 다르므로 이에 의한 실내 입사 태양복사 열량 및 손실을 조절한다.

○ 유리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창의 위치, 계절의 특징, 태양광선에 의한 열취득, 내부발생열 등의 요소가 분석되어야 한다.

- 태양열에 의하여 취득된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층유리의 사용과 창의 한쪽은 막고 한쪽만을 사용하는 창의 구성을 한다. 창호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창문틀에 흄을 끼서 창호가 닫혔을 때 밀착하도록 하는 방식과 투막이(Weather Stripping)를 침기가 될 만한 곳에 부착하여 기밀화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투명단열제(Transparent Insulation),

동적단열제(Dynamic Insulation), 개량투과체(Advanced Glazings), 상변화축열재(Phase-Change Storage Materials), 통합 기계설비(Integrated Mechanical System), 태양전지(Solar Cells)등과 같은 첨단 건축재료 및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2) 자연형 냉방기술

여름철 오후의 과열기간동안 자연의 원리를 이용하여 폐적범위까지 실내온도를 낮추는 것을 자연형 냉방(passive cooling)이라 한다. 자연형 냉방은 천공복사, 대기, 지표, 물 등 실내기온보다 차가운 자연요소들을 이용하여 실내를 냉방한다. 그림 6은 이탈리아 Vicenza에 위치한 팔라디오풍의 Costizza빌라에 적용된 자연형 냉방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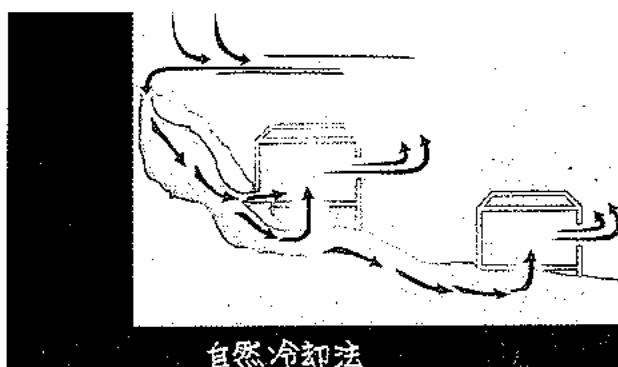


그림 6. Villa of Costozza에 적용된 자연형 냉방원리

일반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냉방방법은 태양복사를 차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건물의 창문, 벽, 지붕을 태양열로부터 차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단열벽, 여러겹의 창, weatherstripping, 적정창문의 크기 등 겨울철에 열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한 설계방법이 여름철에 태양열 획득을 줄이는 데에 효과적이다. 자연형 냉방을 위해서 창문에 차양을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고정창보다는 가동차양장치가 더욱 편리한 실내를 유지할 수가 있다.

또한 자연형 냉방을 위하여 건물의 향에 따라 다른 종류의 유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열획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동측면과 서측면에 열선흡수(heat-absorbing) 및 증발냉방(evaporative cooling), 복사냉방(radiative cooling), 지중냉방(ground cooling)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자연형 채광기술

1) 주광설계기침

자연채광설계에서는 창의 방위와 위치, 창의 크기, 루버, 유리창의 장치(차양, 블라인드) 및 실내표면의

반사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요소는 자연채광 이외의 다른 인자의 영향도 받는다. 또한 이들 요소는 상호 이율배반적인 영향도 갖는다. 예를 들면, 높은 주광률을 얻기 위해서는 창의 크기를 증가시켜야 하지만 현회를 고려하면 창의 크기를 작게 하거나 차양장치가 필요하다.

2) 자연채광방식

자연채광방식에는 창의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와 특성이 있다.

① 천창채광방식

지붕에 설치한 천창에 의하여 천공광을 실내로 사업하는 방법으로서 천창 주변 내장재는 반사율이 높은 재료나 색채를 사용한다.

② 광선반(light shelves) 혹은 반사루버(reflecting louvers) 이용방법

태양광을 반사루버나 광선반에 반사시켜 건물 깊숙이 자연광을 도입하는 방법이다. 인접공간의 실내표면에 반사율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거나 광선반 및 반사루버를 때에 따라 작동 가능하게 하면 효과적이다.

③ 광정(light well)을 이용한 방법

천창으로 도입된 빛을 광정을 통하여 건물의 저층부까지 도입하는 방법이다.

④ 선스쿠프(sunscoop)방식을 이용한 방법

건물 외부에 선스쿠프를 설치하여 컴퓨터제어에 의한 선스쿠프가 태양의 궤적을 따라 움직인다. 선스쿠프에서 반사된 태양광을 집광하여 실내를 채광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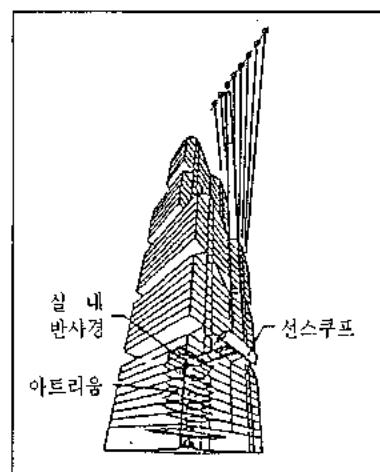


그림 7. 선스쿠프(상하이은행)

⑤ 덕트채광방식

고반사율의 박판경을 사용한 도파甬트에 의하여 천공산란광을 실내에 사업하는 방법이다. 수직형, 수평형, 수직·수평겸용 방식이 있다. 덕트를 최장 10m까지 연결할 수 있다.

(4) 아트리움을 이용한 자연형 디자인 기법

아트리움은 열환경 측면에서나 빛환경 측면에서 현대 건축의 이상적인 환경전략적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연형 디자인 개념이 도외시 된 아트리움은 건물의 에너지 부하를 급격히 상승시키므로 신중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아트리움의 일반적인 열적 특성은 일반적으로 대공간(높은 천장, 넓은 면적)이므로, 수직 온도분포 및 수직 기류의 분포에 큰 차이가 생기기 쉽고, 지붕·외벽이 유리로 구성되어 있어서 직사일달의 영향을 받기 쉽다.

따라서 동절기에는 태양에 의해 따뜻해진 공기를 건물속에 모아, 야간에 빙열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 효과가 높은 건물을 계획할 수 있다.

열환경측면에서 아트리움 설계는,

① 기후에 따른 향,

② 온실효과로 인한 과열현상,

③ 굴뚝 효과로 인한 하부의 냉기 침입,

④ 수직온도의 차이,

⑤ 다양한 온도분포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며,

⑥ 유리면 가까이에서 발생하는 콜드 드래프트(cold draft)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아트리움은 빛환경 측면에서 건물안으로 햇빛을 끌어들여 햇빛의 변화, 사계절의 변화, 하루의 시각변화를 느낄 수 있어 건물내의 사람들에게 희석함을 제공한다. 빛환경조절 측면에서의 아트리움의 설계에서는 실 깊이까지 빛을 제공하기 위한 실배치, 아트리움 주변벽체, 투과율이 높은 투명유리 사용, 여름에는 자연형 차폐물로 일사를 배제하고 루버와 같은 장치로 확산광을 도입하는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아트리움의 크기와 아트리움의 형태는 주광의 이용을 결정하며, 주광의 반사 성능은 구성재료에 따라서 변한다. 따라서 최대의 주광효과를 얻기 위해 아트리움의 폭을 줄이고 충분한 자연광이 저층까지 도달할 수 있는 높이로 아트리움을 설계한다.

(5) 자연 환기법

건물 내에서 발생되는 오염 물질은 자연대류 혹은 환기 시스템에 의해서 발생원으로부터 분산된다. 이러한 오염물에는 거주자의 먼지, 카펫, 의복, 기구로부터의 실오라기, 담배 연기로부터의 연기와 먼지, 커피용기, 요리 및 세척과정에서의 습기, 인체, 프린트, 청소, 개방형 연소기구, 가구 및 건물내 다른 재료로부터의 증기 및 가스 등이 있는데 이러한 오염물로 인한 실내 공기 오염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실내 오염물질의 발산이 적은 건축자재의 사용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설계기술이 요구된다.

자연 환기를 고려한 설계 기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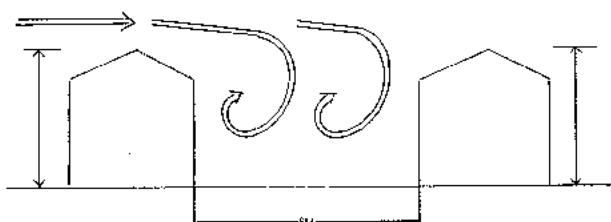


그림 8. 기류변화에 따른 건물배치방법

① 건물에 의한 기류변화를 고려한 배치기법

건물 주위의 기류는 건물의 형태와 배치방법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 건물 전면에 의한 풍속 저하역 안에 건물이 위치하게 되면 여름철 주풍향에 의한 환기효과가 감소되며, 겨울철에는 판류에 의한 열손실이 감소된다. 따라서 대지분석단계에서 미기후에 의한 바람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여름철 주풍향을 최대로 이용할 수 있고, 겨울철 주풍향은 차단할 수 있도록 풍속 저하역의 효과를 잘 이용해야 한다.

② 개구부 설계 기법

맞통풍이 없는 실에서 개구부의 수는 매우 중요하다.

실내 기류의 분포는 개구부의 위치와 실내 칸막이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실내공기의 원활한 순환을 위하여 개구부의 위치와 크기를 잘 배치해야 한다. 특히 창의 개폐방법과 에어벤트의 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45도 루비 블라인드 : 공기의 흐름을 하향으로 조절(60도일 경우 공기흐름 감소)

수직개폐 개구부 : 윗부분 개폐시 공기흐름을 상향조절(추운 기후에서 유리), 아랫부분 개폐시 인체의 냉각효과를 높일 수 있다(열대기후).

통기구(Air Vent Slot) :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고층건물의 외기에 면한 창의 트랜섬(Transom:민홀대)에 설치하여 실내에 외기를 도입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그 효과는 높지 않다.

[3] 「환경건축」 디자인의 사례

(1) KI 빌딩

최근에 완공된 새 3세대의 KI빌딩은 천단정보빌딩에서의 환경건축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준다. 이 건물의 주요 사용자는 건축디자이너, 기술자, 연구자이다. 이 건물에는 입주자들이 그들의 작업을 지능적으로 수행하고 동시에 건물내에 장시간 머무르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이 준비되어 있다.

KI빌딩의 특징은 아트리움에 있다. 모든 실들이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배치되었으며, 동시에 여러 새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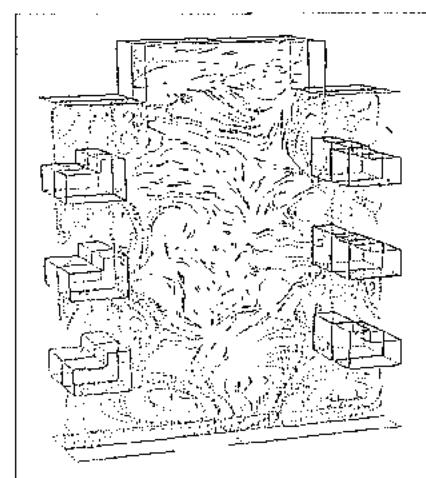


그림 9. KI 빌딩 아트리움의 기류분포 시뮬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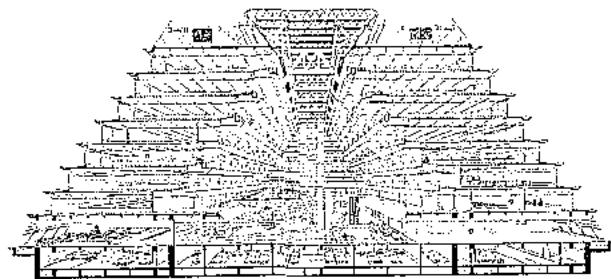


그림10. PANASONIC빌딩의 단면투시도

기술들, 예를 들어 빛, 음, 열의 감지나 향공조같은 환경적 요소들이 채택되었다. 또한, 리프레쉬먼트나 휴식을 위한 충분한 공간인 열람실, 리프레쉬코너, 옥상정원 등이 아트리움 근처에 배치되었다. 이러한 환경건축적 요소들은 오피스내 거주자의 수준높은 생활을 지원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그럼은 KI빌딩내 아트리움에서 자연 환기 및 공조에 의한 환기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아트리움은 실내환기 효과뿐만 아니라 자연채광면에서도 우수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2) PANASONIC 빌딩

PANASONIC 정보통신센터는 최신의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환경건축」의 개념을 도입한 대표적 건물로서 실의 바닥이 30cm씩 띠어져 있어 이 공간은 자유로운 배선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며 또한 공기조화용 굽기공간으로 사용이 된다. 외기는 이 공간으로 흡입이 된 후 가열이나 냉각이 되어 이 공간을 통하여 취출된다. 이 시스템은 각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환경을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

조명은 아트리움 상부와 측면의 거대한 창에서 들어온 빛이 흰색의 내부표면에 반사되어 내부공간을 밝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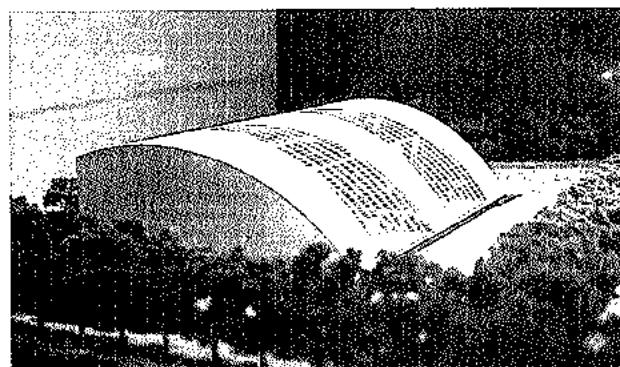


그림12. Duisburg Microelectronic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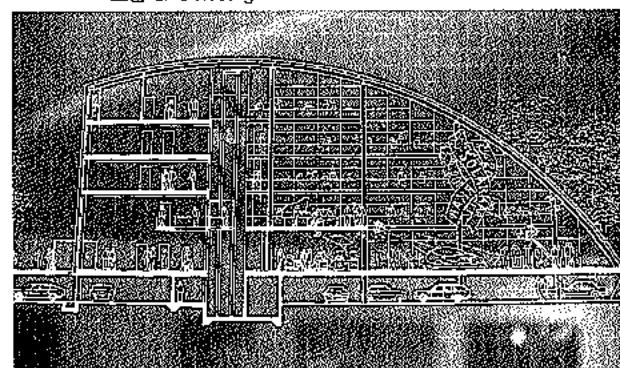


그림13. Duisburg Microelectronic Center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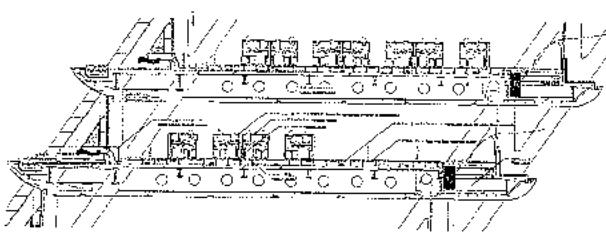


그림11. PANASONIC빌딩의 단면상세도

해준다. PANASONIC 정보통신센터는 혁신적인 「환경건축」설계기법을 도입함으로써 편안하고 가벼성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내부의 아트리움은 자연석 마감과 자연광의 유입으로 실내부가 전원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게 한다. 모든 층은 아트리움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많은 모임의 장소를 가지게 한다. 22m×57m의 넓은 사무공간은 무주공간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슈퍼프레임”구조를 채택하였다.

(3) Duisburg Microelectronic Center

그림 12는 Norman Foster가 설계한 독일의 Duisburg Microelectronic Center로서 첨단 사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환경건축적 요소를 도입하였는데, 특히 남측 수열면을 제외한 3면의 외피에 투명 단열재를 디자인의 주요소로 활용하였다. 그림 13은 Microelectronic Center의 주단면으로 남측공간은 아트리움을 조성하여 태양열을 최대한 반아들이며, 북측 공간은 투명단열재를 하여 단열하는 동시에 채광효과를 얻음으로써 에너지 절약효과와 함께 최적의 사무환경을 제공하도록 계획되었다.

(4) Frankfurt am Mein 상업은행

Norman Forster가 설계한 하이테크 인텔리전트 빌딩인 이 건물은 초고층 건물에서 구사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환경건축적 요소가 도입되어 있다. 다양한 환경 건축적 요소 가운데에서도 가장 주된 개념은 건물내부를 수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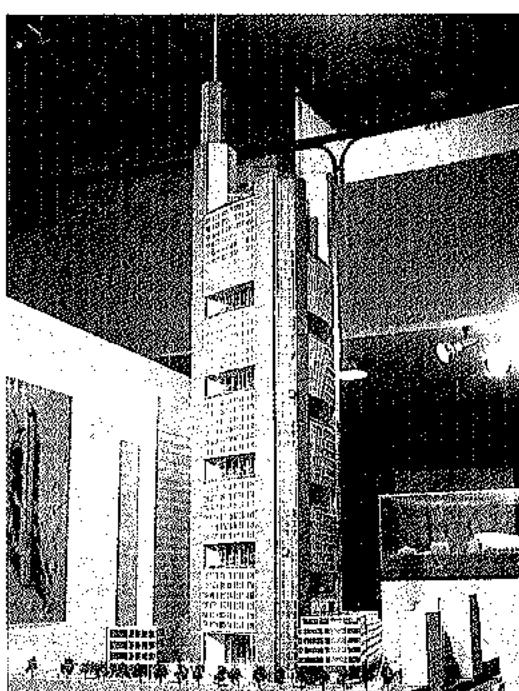


그림14. Frankfurt am Mein 상업 은행(N. Fors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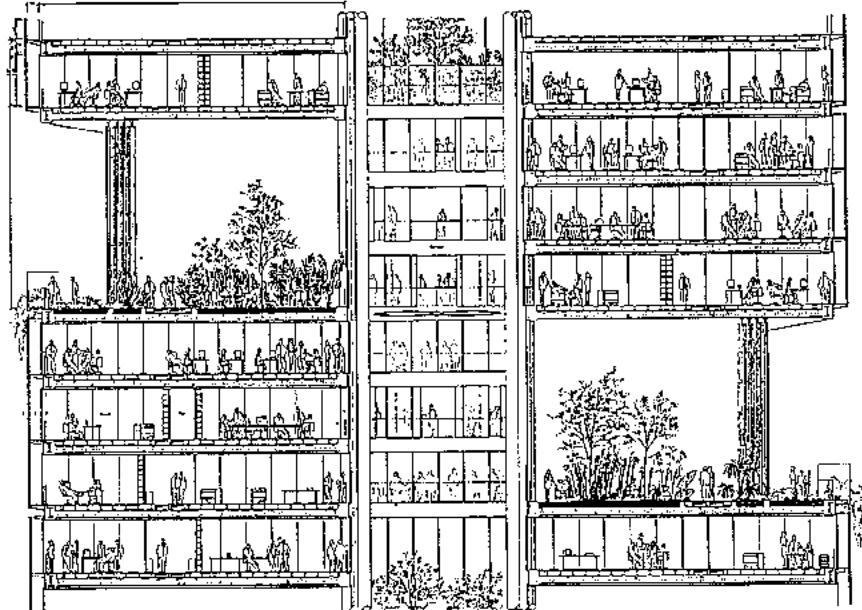


그림15. Frankfurt am Main 상업은행의 광정 단면

관통하는 광정으로서 첨단 사무환경에 피로하기 쉬운
작업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시켜 주는 조경요소와
함께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성능을 제고시킴으로써
건물의 유지측면에서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어있다.

V. 21세기를 향한 건축의 전망

[1] 건축과 환경의 새로운 관계 정립

건축역사에서 과거에는 지역의 풍토에 적합한 자연형
환경조절이 대부분이었으나 산업혁명 이후 건축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인공적인 실내 환경조절을 만연시켰다.
그러나 인공적인 환경조절은 에너지 고갈 및 자구환경
오염문제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자연환경의 일부로서
인간의 생존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자연스럽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기후에 순응하며,
자연에너지의 이용을 극대화하는 「환경건축」이 21세기
건축의 중심개념이 될 것이다.

즉 자연형 태양열 건물설계, 에너지 절약형 설계,
자연환경에 의한 건강건축, 건축에서 자연채광도입 등
「환경건축」원리를 통합한 디자인이 건축설계의 미래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의 「환경건축」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열환경

「환경건축」측면에서 쾌적한 열환경을 위해서는
최적방위, 일영, 인동간격, 열환경에 유리한 최적형태,
열적인 조닝(zoning), 기후특성에 따른 평면형,
냉난방부하, 외피의 열성능, 단열특성, 그리고 차양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고려사항외에 에너지성능을 고려한 외피디자인
설계의 개념이 확고히 뿌리내려야 하며
개구부디자인에서 상충적인 요소의 적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② 빛환경

빛환경측면에서는 건물의 주광이용, 건물형태구성,

단면구조, 실내조도 및 주광률 분포특성, 광원배치 및
채광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따라야 한다. 또한 빛환경에
있어서 「환경건축」디자인 개념의 정착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연채광설계의 일반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공기환경

실내공기환경측면에서는 자연환기를 위한 통풍,
개구부의 위치 및 개폐방법, 향에 따른 개구부의
적정크기, 침기, 누기, 그리고 환기방법 등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역시 환경건축디자인 개념에
입각한 쾌적한 공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정환기량, 효과적인 환기방법 설정, 에너지 절약과
자연환기의 통합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건축」디자인은 산업발전에 따라 새로운
건물유형에 능동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첨단정보통신기술과 고도의 건물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여 미래의 건물로 대표되는 인텔리전트 빌딩의
경우, 건물의 인텔리전트화의 궁극적 목적은 실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라이프사이클 코스트를 절감하는 것으로서 환경건축의
개념과 연계된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중정을 중심으로
개인의 작업공간을 개폐가능한 창 주위에 배치하고 실의
어디에서나 외부조망, 자연채광, 자연환기가 가능하며
개인공간에 대한 환경조절을 개인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적극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2] 신환경기술의 개발·보급

최근 태양열시스템을 위한 건축재료와 설계방법이
개발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투명단열재(transparent insulation), 동적 단열재(dynamic
insulation), 개량투과체(advanced glazings), 상변화
축열재(phase change materials) 같은 첨단 건축재료와
통합된 기계설비(integrated machanical system),
태양전지(solar cell) 등이 있다.

최신 시스템 중에서 가장 실용성이 높고 건축설계를

위한 획기적 성과는 투명단열재와 개량투파채의 개발이다. 투명단열재는 열관류율이 낮고 태양광을 고도로 투과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이를 이용하면 겨울철 건물 수직면에 낮은 고도로 도달하는 태양복사열을 효과적으로 건물난방에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냉방부하의 경감과 효율적이고 안정된 실내주광률을 유지할 수 있다. 개량투파채는 열관류율이 특히 낮으면서도 태양 및 주광투파율이 전통적인 유리에 상당하는 유리로서 특히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탁월하게 개선시킨다.

이러한 신환경기술은 건축가, 건축관련기술자, 건축연구자, 제품생산자 가운데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개발, 적용, 발전될 수 없으며, 각 주체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보다 체계한 건축환경을 창조하기 위한 건축적 요구가 최근 크게 비등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신환경기술의 도입 및 독자적인 연구·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3] 「환경건축」디자이너의 역할

미래 건축프로젝트의 핵심적 주제는 주거용 건물의 초고층·고밀도화, 해상도시·공중도시·환경생태도시의 개발, 공업화주택, 인텔리전트빌딩, 지하공간의 개발 등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건축프로젝트는 환경보전의 문제와 한층 더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생활폐기물 및 오수, 대기오염 등의 환경적 처리, 무공해 청정에너지 이용기술의 건축·설비분야에의 응용, 저에너지 소비형 건축물의 개발, 지역·풍토건축에서 나타나는 환경건축요소의 발견 및 응용 등의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결국 「환경건축」의 철학을 가진 건축가, 건축연구자, 기술자 및 기업가 등이 주체가 되어야만 한다.

이제 환경보전을 위한 건축가의 역할은 첫째로 사회적으로 환경전문가의 입장에서 환경보전에 대한 선도적인 책임과 의무를 자각해야 하며, 둘째로 건축설계에 있어서 자연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건축디자인 기법을 개발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지구환경보전은 금세기 인류가 당면한 최고의 목표이므로 환경디자이너로서의 건축가는 깊은 자성을 통하여 자연에 순응하는 건축환경 창조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오직 하나뿐인 지구환경을 보전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V. 결 언

지구환경문제는 건축설계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건축설계에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건축설계의 목표인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건축설계단계에서의 고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건축설계자는 「환경건축」디자인의 기본개념과 건물이 위치한 주변환경의 전체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각 인자간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지조건, 건물의 배치, 공간의 구성, 공간의 형태, 개구부의 위치와 모양, 방위, 인접공간과의 관계 등은 모두 공간의 열적, 시각적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공간의 환경성능은 미적인 관점에서 보다 만족스러운 인간의 반응을 유발시킨다. 따라서 공간의 내적 아름다움은 표피적인 시각적인 관점보다 인간의 오감 전체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의 환경성능에 따라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근대건축이 새로운 건축언어를 찾아 내던져 버렸던 전통건축에서 「환경건축」의 교훈을 되찾아야 하며, 건축설계의 창작물이 환경생태계에서 아주 작지만 고리인 것을 깊이 인식하고 생태계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인간 본래의 자연적인 평화를 위해 주변환경에 적응하는 「환경건축」의 디자인 원리를 활용해야 한다.

「환경건축」의 원리는 첨단의 인텔리전트 빌딩의 설계에도 적용된다.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고도의 건물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미래의 건물로 대표되는 인텔리전트 빌딩에서 건물의 인텔리전트화(지능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체계한 환경을 제공하여 작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를 절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의 작업공간을 개폐가능한 창 주위에 배치하여 작업공간에서 외부조망, 자연채광, 자연환기가 가능하며 개인공간에 대한 환경조건을 개인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곧 환경건축의 기본이념과 디자인 원리가 인텔리전트 빌딩의 설계에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나라 건축가들도 「환경건축」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환경건축」에 대한 원리와 디자인 방법을 습득하여 건축설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가의 모든 지혜와 노력을 쏟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매우 평범한 진리에 기초하여 “지구환경과 인간생활에 적합한 21세기 건축문화창조”에 앞장서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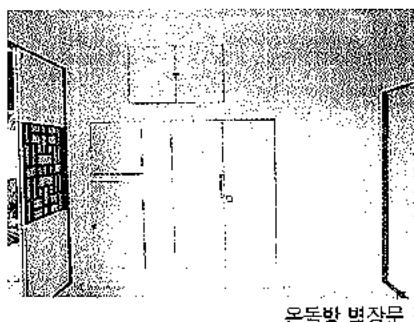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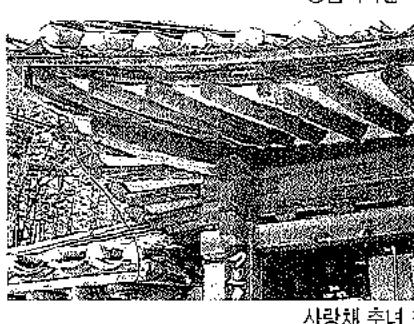
한국의 전통건축

—강릉 金潤起 가옥—

Houses of Kang-neung Province

張順鏞 / 삼성건축사사무소

by Chang, Soon-Yong



1. 서언

현대적인 건물을 설계하면서 한국적인 영상을 설계개념에 도입하려는 의도가 발표되는 기사를 접할 기회가 많아졌다. 이제는 모방의 시대를 지나 한국적인 건물을 만들려는 여유와 자신감이 생긴 것으로 보여진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벌어진 토론을 매우려면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짐작된다. 한옥이 갖는 조형의지의 원리가 터득되어야 응용이 자유로워지며 재치와 기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조형의지의 원리를 교과서적으로 해석한 책은 없고, 결국은 산발적 연구를 짚어가며 설계자가 자체적인 노력으로 터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구와 응용을 병행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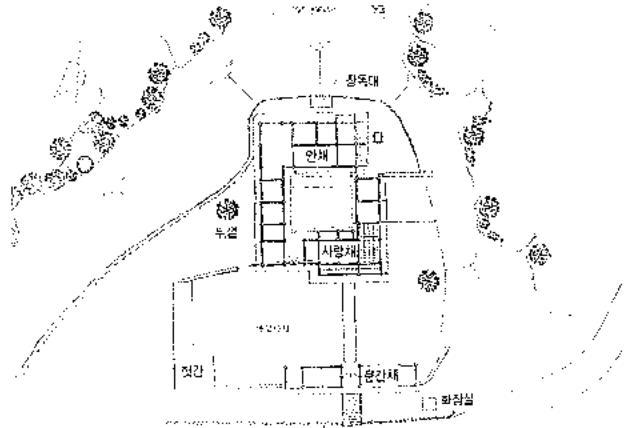
국가적인 보물로 지정된 한옥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된 내용이 많으나 그러한 한옥은 수량이 제한되어 있어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일반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분간이 용이하지 않다. 조형의지의 일반적인 모습을

더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한옥들을 소개하여 본다.

이번에 소개하는 것은 강릉시 축현동 389번지에 소재한 김윤기 가옥으로 1985년에 강원도 문화재 자료 57호로 지정된 건물이다. 1919년에 건립된 것이라 하므로 75년이 경과된 건물이며 강원지방의 건물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2. 배치

동산을 등에 지고 남향으로 경사진 터에 자리잡은 이 가옥은 근래에 진입로가 시멘트로 포장된 것과 전주가 들어선 것과 냉장고, 플라스틱 제품 등의 현대적인 생활도구를 제외하면 한적한 전원에 규모있게 세워진 주택인 것을 알 수 있다. 강릉시내에 이와 같은 건물이 여러 채 보존되고 있다는 것은 한옥에 잠재하고 있는 매력이 적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 매력이 무엇인가를 논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주택에서 전통건축은 생활하기



김윤기 가옥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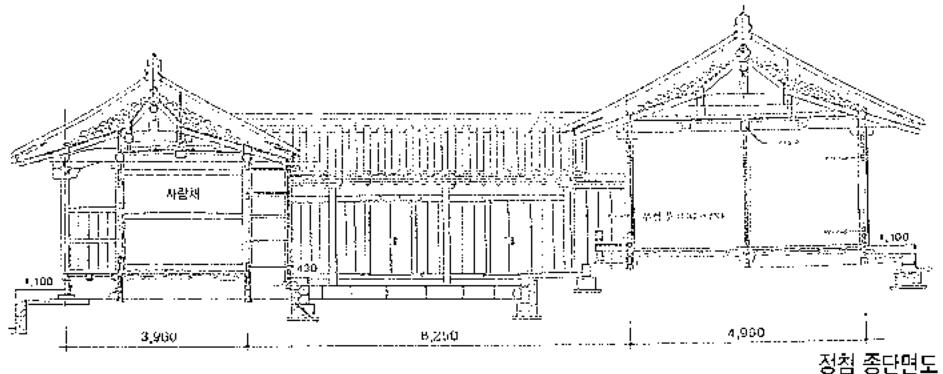
불편한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으나 한국인의 심성에 차지하고 있는 한옥에 대한 매력적인 관점을 확인하고 응용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보아진다.

건물이 자리한 부지는 대략 350평 정도이고 중심체 면적 규모는 100평 정도이며, 중심체 건물의 실제 면적을 기둥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면 23칸곱에 46.2평 규모이다. 건물의 배치상황으로는 안채와 사랑채가 □자형으로 중심건물을 이루고, 사랑채 앞으로 바깥마당이 있으며 이 마당의 서쪽에는 문간채가 있고, 남쪽에는 소슬대문과 그 좌우로 고방이 연속되어 대문체를 이루고 있다.

문간채 하부로는 토석 담장이 설치되어 주거공간의 경계선을 명시하고 있다. 진입로에서 바라보자면 담장으로 둘러친 가옥으로 적절한 위치에 최소한의 담장이 시설되고 뒷편으로는 개방되어 있어, 뒷동산 까지도 생활공간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대문을 들어서면 정면으로 사랑채가 시야에 들어온다. 문간에서의 진입축이 사랑채 중심선이 되도록 하여 문간채가 안채의 중심축 보다는 동편으로 자리잡아 서편으로 바깥마당을 넓게 형성하고 있다.

3. 평면

안채는 정면 4.5칸에 측면 두 칸으로 장원도 지역의 겹집집의 특색을 보이고 있다. 안채에서 대청이 없이 전부 방으로 구성하고 서편에 부엌이 배치되었다. 이 건물은 현 소유주의 조부가 1919년에 건립하였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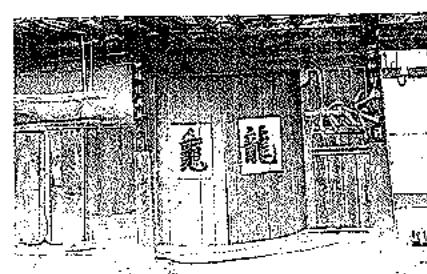
정침 종단면도

전하므로 그다지 오래된 집은 아니다. 이와 유사한 배치를 보이는 주택으로는 강릉시 박월동에 있는 최대석 가옥(유형문화재 81호)이 있으며 배치 형태는 좌우가 바뀐 모습이다. 김윤기 가옥은 사랑채와 문간채가 동편에 배치되나 최대석 가옥은 서편에 배치된다. 따라서 부엌의 위치도 김윤기 가옥에서는 서편이 되지만 최대석 가옥에서는 동편에 배치되었다. 부엌 위치를 지역에 따라 선호하는 방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한 연구논문도 있으나 동일한 지역에서 방향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부엌의 위치는 생활동선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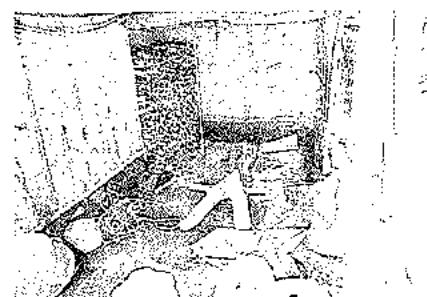
본 가옥에서는 지형상 뒤꼍이 서편에 형성되며 바깥 마당과는 사잇담으로 구분되므로 부엌과 뒤꼍 및 바깥 마당으로의 동선이 유기적으로 된다. 반면에 최대석 가옥에서는 뒤꼍이 동편에 마련되므로 부엌이 동편에 배치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부지의 지형 여건상 전방과 일조상태 등의 조건이 제일 좋은 곳에 정침을 자리잡은 다음에는 부엌과 사랑채 및 문간채가 기능적 유기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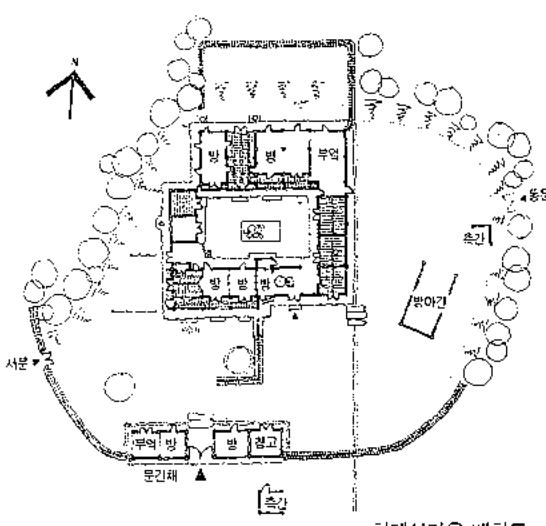
안채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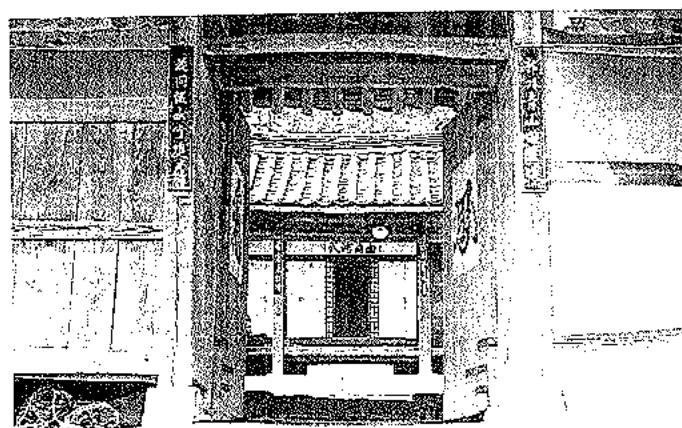
안채 출입문



헛간채의 디릴방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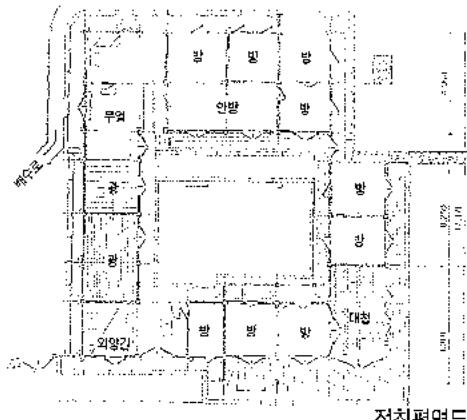


최대석가옥 배치도



대문에서 본 사랑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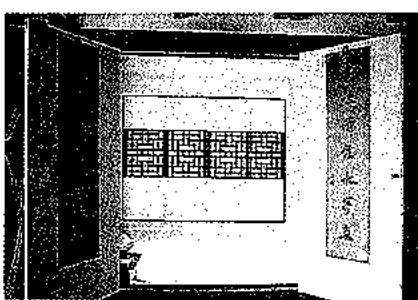
- ① 서측 마당이 이 건물의 뒤곁에 해당하며 처마 밑에 빵아들 창작더미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위를 치감케 한다.
 ② 부연이 없으나 추녀위로 사래를 두어 처마곡을 잡고 있다. 처마 곳에는 목재로 만든 구조물이 시설되었다. 원래는 네방으로 넓은 병 가과(양침)이었으나 공활식으로 대체되어 있다.
 ③ 사랑방 품면에 충단으로 구성한 벼장에서 편리한 위치에 문유 설치하였다.
 ④ 대문에 세물인 방과 기둥의 주현으로 김주인의 품위를 표원하고 있다. 문간의 좌측은 편벽이고 우측은 회면으로 되어 형태는 대장적이나 대조적인 색감구성 때문에 시선이 대문으로 유도된다.
 ⑤ 전면에 희바루를 놓았다고 안방의 한사영창에 유리창을 깔은 것이 주목된다.
 ⑥ 퇴어 나린 문안방과 환관에 써붙인 방과 기둥의 주현이 돋보이고 문 모판판이 놓기구가 정리되어 농사살을 하는 선바의 짐임을 암시한다.
 ⑦ 토별과 잘 짠은 창작더미와 디밀방이 규모 있는 주변의 보습을 보여준다.
 ⑧ 대문의 중실축이 사랑채의 중앙으로 연결된다.
 ⑨ 정사의 선자로 구성하여 크게 원 서까래를 사용해야 하므로 짧은 서까래로 푸녀 옆에 붙여 대이 키워마를 구성하는 수법이다.
 ⑩ 사랑채 온돌방 사이에 있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개폐되는 성격이 필요하므로 불발기형 장지문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⑪ 건물을 감싸고 있는 수목과 햇빛이 양양하여 안온한 청정을 만들고 있다. 원편각의 안채에서 한각 부분을 부엌의 환기구가 되도록 하였다.
 ⑫ 기둥의 주현과 영창위의 판액이 사랑채임을 느끼게 한다. 사랑채 전면부는 대청식으로 저상하여 격식을 달리하였다.
 ⑬ 한 강의 넓은 괴물을 만들고 하부의 문두에는 해인방과 통제로 된 것이다. 우편문에 새겨진 부채 도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⑭ 사랑채의 온돌방과 대청 사이에 있는 문으로 실내축에 서화를 걸어 사랑방의 문화를 더하고 있다.
 ⑮ 외양간, 문간, 온돌방, 사랑채가 디자인 주체와 정면을 이루고 있다.
 ⑯ 전면의 석죽과 담장이 외관상으로는 폐쇄적인 주택처럼 보이나 대문을 들어서면 개방적인 모습으로 진화된다.



정첨평면도



사랑채 엉선자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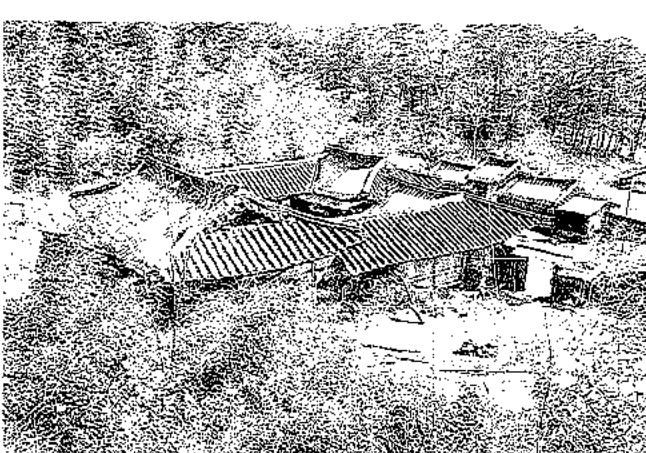
불발기 형식의 장지문⁴⁰

합리적인 자리잡기가 설정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랑채는 그자형으로 구성되어 반칸의 전면 퇴마루를 두고 온돌방 두 칸과 동편에 대청 두 칸으로 형성되었다. 사랑채의 대청에도 창호를 설치하여 일반적으로 개방되는 대청과는 대조되는 것은 지역적 특성으로 해석하고 있다. 온돌방의 뒤로는 치마 밑에 반침을 구성하였다. 사랑채의 구조는 5량 지붕에 흘쳐마 팔작지붕으로 만들고, 전면부에는 주두를 사용한 초익공 양식을 이용하였으나 익공자체는 간략화하여 외단부는 수직으로 절단하였다. 부연이 없는 흘쳐마 구조이면서 추녀와 사래의 형상으로 구성한 것은 추녀에서 크게 흰 부재를 사용치 않으면서 처마곡을 살려내기 위해 이전부터 사용되어온 기법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고, 선자는 전형적인 선자와는 다른 엉선자 기법이 적용되었다. 온돌방의 반자부분은 고미반자로 구성하여 벽의 일부에 환기구멍을 두어 기후환경에 적응도록 한 것도 지역적 특장 중의 하나이다. 고주위에서 퇴랑과 대량이 합보되도록 하였고, 중도리의 위치를 고주열 보다

안쪽으로 들여서 배열한 것은 고주열 상부벽을 미장으로 마감할 때에 중도리와 동자주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마감 처리상의 편리성을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랑채 전퇴부분의 서측면에 판벽을 설치한 것은 안채로 드나드는 출입 동선과의 시선을 차단시키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온돌방의 전면에는 통식대로 쌍창을 설치하고 내측에는 완자영창을 두었다. 방과 방 사이에는 완자살을 사용한 불발기형의 미닫이 4짝이 분합문으로 설치되어 있어 불발기문이 대청쪽에 설치되는 방법과는 다르게 되어 있다. 이 점은 주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되어진 것으로 보이고, 온돌방에서도 서측방이 주인이 상주하는 방이 되며 손님이 내방하였을 때는 동편방에서 접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청의 전면부에는 4짝의 세살 청판분합문이 설치되었고 분합문 상부로 인방과 상인방을 추가하여 머름대와 같은 형상으로 구성하였는 바, 이것은 이 지역에서 오래된 건물에 남아있는 모습으로 그 역사적 기원은 상당히 고시내의 격식이 유전되어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상부의



지붕전경⁴¹



사랑채 전면⁴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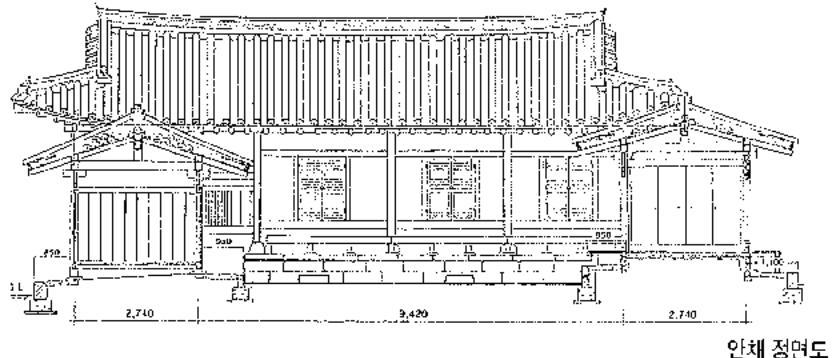
착고판에 완자문양을 투각하여 치장한 것은 주인의 취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 맷는말

강릉지방 또는 강원도 지역에 있는 □자형 주택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겹집형태의 안채가 세워지고 다음에는 한 편의 익채가 증축되었다가 경제적인 기반이 확립되면 사랑채가 별동으로 건립되면서 배치형태를 □자형으로 취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건물에서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는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한 때는 안채로 들어가는 문간이 사랑대청의 북편 칸에 있었다는 집주인의 설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 전체가 일시에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추측이 가능하게 된다.

사랑 대청의 북편에 연접된 온돌방은 대청과는 분리 되었으나 온돌방의 전후 퇴마루에 의해서 연결되었다. 안채에서 부엌의 남쪽으로 연속된 익채는 세칸에 장마루를 깔아 꼭간 또는 수장고로 활용되도록 하였고, 이어서 전면부에는 외양간 한칸과 문간과 온돌방이 배치되어 사랑채와 연속된다. 지금은 소를 키우지 않아 외양간을 헛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소가 드나드는 판문이 남아 있고 그 앞의 처마 밑으로는 시렁을 매달아 농기구를 보관토록 되었으나 농기구도 종류가 많지 않다. 기계화된 영농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문간의 동편 일부는 판벽으로 막고 있는 것으로 보아 판벽 내측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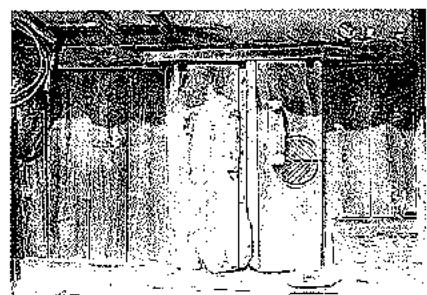
안체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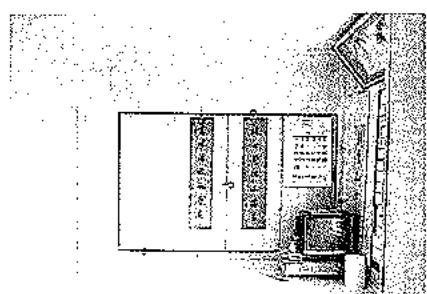
지붕평면도

아궁이가 설치되어 쇠죽을 끓이는 시설이 퇴화되어 남아 있다. 그리고 문간의 하인방을 휘어내린 부재를 사용한 것도 정겨운 모습이라 하겠다.

대가집에서는 보편적으로 건물의 명칭인 당호(堂號)를 사용하거나 몇 개의 편액이 있게 마련이다. 사랑채 전면에 편액이 둘이 걸려 있으며 오른편 것은 鶴峙幽居라 하였다. 강릉 선교장에서 仙橋幽居라 한 것과 비교되며, 선비가 출세를 구하지 아니하고 전원에 은거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도학적인 기풍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으며, 일제시대에 이 건물이 세워진 것을 고려하면 암울했던 시대적 표현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굳이 의미를 풀이한다면 “까치 고개에 깊이 들어앉은 거처”라고 할 수 있겠다. 또 하나의 편액은 面商跨武라 하였는데 주인의 설명으로는 고개 이름에 상고개와 무고개가 있어 “상고개를 앞두고 무고개를 지난다.”라는 의미라고 한다. 정확한 어원은 알 수 없으나 행상들이 넘나들며 쉬어가는 장소가 되어 상고개라 하지 않았는지 추측해 볼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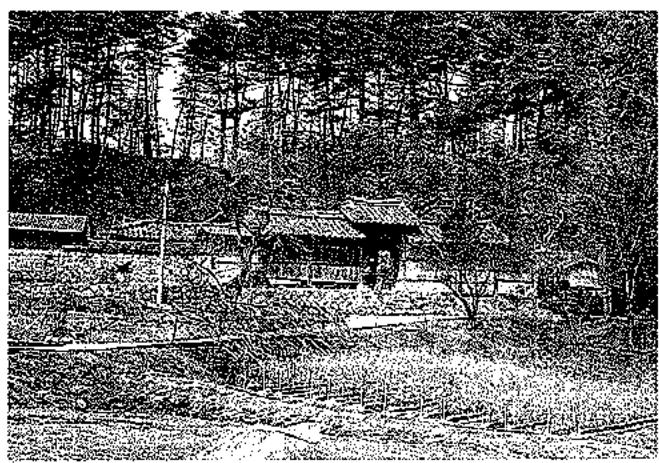
외양간 판문



맹장지 분합문



정침 정면



전경

화곡지구 아파트

Hwagok-District Apartment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서울의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 서민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주택보급을 위하여 화곡지구 아파트 기본설계경기를 시행한 바, 지난 6월 2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본지에서는 이번 설계경기의 심사내용과 입상작 중 최우수작(빛건축안)과 우수작(행림건축안)을 소개한다.

1. 추진경위

- 공모공고 : '94. 4. 15(세계일보, 내외경제신문)
- 응모신청등록 : '94. 4. 20(34개사)
- 작품접수 : '94. 6. 3(13개 작품)
- 작품심사 : '94. 6. 15
- 심사결과발표 : '94. 6. 21

2. 실 사

○ 심사위원 명단

- 위원장 : 안영배 / 서울시립대학교
- 위원 : 강석원 / 건축가협회
김광문 / 건축학회
김린 / 가전건축
김창일 / 정림건축
변영진 / 도시개발공사
심우갑 / 서울대학교
여홍구 / 한양대학교
이필원 / 국립건설시험소
이호진 / 건국대학교
조성룡 / 건축가협회 (가나다순임)

○ 심사방법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방법에 의해 단계별 기명투표 방식

○ 심사단계

- 5단계 심사

- 1차 : 비우수작 6점 탈락 - 1차 여파(다수득표순으로 탈락)
- 2, 3차 : 우수작 4점 선정 - 입상작 4점 선정(다수득표순으로 선정)
- 4차 : 우수작 2점 선정 - 탈락 2점 입선작으로 결정 (다수득표순으로 2점 선정)
- 5차 : 최우수작 1점 선정 - 평판수 이상작을 최우수작으로 차첨작을 우수작으로 선정

3. 입 상 작

- 최우수작 :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인·빛(대표 : 민승렬)
- 우수작 :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 이용호)
- 입선작 : (주)엄 앤드 이 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 이각표)
종합건축사사무소 가화(대표 : 강석후)



4. 시 상

구 분	시 상 내 용	비고
최우수작(1점)	상장, 상패 및 상금 25,200천원, 당해지구 설계권부여	
우수작(1점)	상장, 상패 및 상금 18,900천원	
입선작(2점)	상장, 상패 및 상금 9,450천원(각 1점당)	

5. 심사위원 소고

안영배 위원

○(주)두원 종합건축사사무소 신동해 안

-외부공간의 계획은 비교적 양호하나 동측에 있는 주동이 T자형이고 너무 길고 굴곡이 많은 것은 대단히 좋지않다.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인·빛 민승렬 안(최우수작)

-건물의 매스 및 형태가 주동마다 다르게 다양하며 공개공지의 분포도 편중되지 않고 모든 주동이 고르게 활용되도록 잘 계획되어 있다.

-중앙부분에 공개공지가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좋다. 외부공간도 변화가 있으면서 공간의 흐름이 유연성 있게 잘 계획되어 있다.

-주동의 배치는 물론 단위주거계획등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우수하게 잘 계획되었다.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류춘수 안

-외부공간의 폐쇄감이 강하다.

-주동이 T자형으로 주호의 프라이버시가 떨어진다.

○(주)남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오평국 안

-중앙부에 넓은 공개공지가 있으며 주동에서의 조망성이 양호하다.

-101동과 107동이 T자형과 L자형으로 되어 있어 프라이버시가 약간 떨어진다.

○(주)행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용호 안(우수작)

-중앙부에 넓은 공개공지가 있어서 시원하고 조망성도 대단히 양호하다.

-서측부분에 있는 세개의 주동의 저층부분이 서측의 채광성과 조망이 좋지않다.

-주동계획, 단위주호계획 및 건물의 외관이 다양하다.

○(주)업 앤드 이 종합건축사사무소 이각표 안(입선작)

-주호계획 및 단위주호계획은 양호하다.

-외부공간이 단조로우며 폐쇄성이 강해서 답답하다.

○예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임종대 안

-주동의 길이가 너무 길고 L자형의 주동은 좋지 않다.

○(주)우보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한숙원 안

-건물의 형태가 다양하고 좌향도 다양해서 외부공간의 변화가 좋다.

-법규나 규정을 어긴 점이 많다.

○종합건축사사무소 가화 강석후 안(입선작)

-공개공지의 계획이 양호하며 주동에서의 조망성은 좋다.

-주동계획, 단위주호계획 모두 양호하다.

○종합건축사사무소 인더플랜 조대희 안

-중앙부에 넓은 광장을 둔 점이 우수하다.

-주동이 T자형과 L자형이 많아 주호의 프라이버시가 떨어진다.

○(주)부림 종합건축사사무소 김호 안

-중앙부에 넓은 공지를 두고 동측까지도 개방되어 있어서 개방성이 높고 조망성도 좋다.

-주동의 길이가 길고 T자형의 주동형태는 좋지않다.

○(주)예우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성래 안

-배치계획은 비교적 양호하다.

-주동형태가 T자형 및 L자형이 많은 점은 좋지않다.

○(주)세마 종합건축사사무소 심성보 안

-주동의 배치계획은 대체로 양호하다.

-주동이 긴 것이 많고 특히 T자형이 많은 점은 좋지 않다.

김광문 위원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주관하는 화곡지구 설계경기에 임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를 행하였다.

1) 교통 및 차량동선계획—단지의 규모가 650세대 정도의 크기라면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주된 차량통행이 단지를 횡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

2) 단지내의 Open Space를 어떻게 설정했는가?—시각적인 효과에 치중했는가 또는 주민들의 이용에 더많은 신경을 썼는가?

3) 모든 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중심시설(구매시설, 관리동) 이용에 불공평한 점은 없는가—차도를 횡단하는 일이 없는가?

4) 주호가 지나치게 길어 병풍 또는 거대한 벽으로 느끼고 그것 때문에 부근의 환경의 변화를 조례하지 않는가.

5) 평면계획에서는 각 주호가 비슷한 조건으로 양호한 환경을 갖도록 하기위한 노력이 엿보이는가. 등등... 이상과 같은 조건에 만족하는 안을 찾기가 무척 어려웠다.

교통계획에 대하여는—단지와 주민들이 단지내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우회도로를 설치하고 싶었고

Open Space에 관하여는—거대한 Open Space를 시각적인 효과때문에 하나 설치하기 위하여 사소한 회생을 무릅쓰는 것과 크지는 않지만 휴면 스케일적인 적은 규모를 각세대들 단위로 나누어 설치할 것인가.

주호는—적절하게 분절시켜 짧게 배치하고 너무 폐쇄된 느낌이 들지않게 하고 있는가

평면계획에서는—몇몇안을 제외하고는 무난한 것으로 결국은 배치계획에서 개념정립이 계획안의 승패를 나 눈 것으로 생각된다.

최우수작은 가장 결점이 적은 것이다. 반면에 이렇다 할 장점도 크게 부각된 것도 아니다.

(장점)*Open Space를 적절하게 분절시킨 것. 주민들의 효과적인 이용이 될 것이다.

*주차를 Open Space 밖으로 둔것.

(단점)*남북의 차도의 통과때문에 단지를 크게 양분시 키고 있다. 특히 1, 2, 3동과 9동은 그외의 동에 비하면 성적인 취급을 받고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운동장의 위치 재고?

*상가건물은 관리동과 같이 단지 중앙에 두고 싶다.

심우갑 위원

금번의 화곡지구 아파트 설계경기의 부지는 매우 까다

로운 조건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출품된 작품들 중 다수가 우수한 수준이었음에 고무되었다. 한가지 안타까웠던 점은 여러개의 작품이 법규나 제한조건 등 지침에 맞추지 못하여, 작품내용은 우수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입상권에서 탈락했다는 것이다.

설계경기의 심사를 할 때마다, 한두달간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작품들을 단 몇시간 만에 평가하고 당선작을 결정해야 하는 곤혹스러움이 있었으나, 이번 심사에서는 심사위원들을 사전에 공개하고 작품들을 미리 검토할 수 있는 면밀간의 시간여유를 갖게 함으로써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평가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흡족하게 생각된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올해 들어서 이미 두번째의 시도라고 하는데, 다른 공공부문에서나 사적부문에서도 이와 같은 절차가 도입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번 심사에서 주안점을 둔 사항은 주동배치, 육외공간의 구성, 차량 및 보행자의 동선처리, 향 및 조망의 처리, 주차공간의 처리 등의 단지계획적인 사항과, 전반적인 외관, 스카이라인, 평면 등의 건축적인 사항들로서 입주후의 거주자들의 생활편의와 만족도의 관점에서 보고자 하였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독특한 해결책이 제시된 안에는 좀더 가중치를 두고자 하였으나, 지나치게 실험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안은 배제하도록 의도하였다. 당선작은 비교적 평이하게 문제를 풀었으나 앞의 주안점을 둔 사항을 대부분 무리없이 해결하였다고 생각된다. 대지의 경사를 적절히 이용하여 레벨차가 있는 육외공간을 효율적으로 분산 배치하고 주요 육외공간 내부로는 차량 진입을 억제하여 안전하고쾌적한 육외공간을 조성한 점, 레벨차를 적절히 이용하여 진입, 환기, 채광 등이 용이한 지하 주차공간으로 처리한 점, 될 수 있는 한 많은 세대가 남향에 면하고 열린 조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동 배치를 배려한 점 등이 특히 우수하게 생각되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관리동을 주동들로 구성된 클러스터 내부에 위치시킴으로써 오픈스페이스 체계의 클라이맥스가 손상을 입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김창일 위원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한 화곡지구 현상설계는 심사위원 명단 사전공고, 입선작품 제작비 지급, 최우수작에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에 의한 설계비 산정방법 등 현상설계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사항들을 개선사킴으로써 건축계의 발전에 이바지한 점 높이 평가합니다. 출품된 13점 작품들 대다수가, 건축주가 요구한 제한된 대지면적에 많은 세대수를 요구한 현상공모 지침으로 인하여, 조금은 침신한 Idea의 계획안이 각종 법규 및 제약으로 인하여 탈락되고, 단지내에 거주하는 많은 세대가 그래도 동일한 생활환경 조건으로 계획한 무리하지 않고 무난한 작품이 최우수작으로 선택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 결과로 보아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대지면적에 최대의 세대수 수용을 지양하고 더 좋은 주거환경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현상공모를 시행하여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주기 바란다. 또한 현상공모시 색채 조감도는 지양함이 어떤지 검토하기 바란다. 출품된 13작품이 거의 전폐율, 용적률

이 비슷한데 조감도에 따라 주위환경이 여유있어 보이는 것이 있고 여유가 없이 밀도가 굉장히 높게 보이는 등 시각적인 차이를 보이는 문제점이 대두됨으로 이를 Model로 대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며 꼭 조감도가 필요하다면 혹독 조감도로 대체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본다.

변영진 위원

이번 심사에서 나는 정답을 맞추지 못한 셈이다. 당선작에게 찬성표를 던진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수작에 그친 작품에 미련을 두었다. 상당수 응모안이 중복도 또는 양복도 형태의 주호계획을 포함할 수 밖에 없었지만, 모든 세대를 남향 또는 동(남)향의 편복도로 해결한 입상권 작품들이 설득력을 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L형의 편복도 형태가 세대간에 대각 방향으로 마주보게 함으로써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우려케 한 다른 탈락작품과는 달리 당선작이나 우수작이 건축적 완성도에서 크게 우월하다고 이해하더라도, 당선작의 경우는 복도를 너무 자주 굴절시킨 까닭에 당초부터 못마땅했던 터이다. 장대한 판상형의 무미건조함을 줄이려는 의도로 수긍한다 해도 불필요하게 과도히 자주 굴절되었다. 실제 이용에서 어떨지의 염려도 적지않고, 하자요인을 증대시킬 뿐더러 방재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여겨진다. 입상권 작품의 배치계획은 서로 유사함을 보이는데, 북쪽 강서로측 진입구와 남쪽 화곡로측 진입구를 이어 단지를 1:2나 1:3으로 나눈듯한 교통축과 여기에 외곽순환도로를 이어서 들리면서 몇단의 고저차가 있는 아파트들에 접근시킨다. 순환도로에는 동쪽에서 부출입구 하나를 더 둔다. 급경사지의 지형조건과 6m, 8m의 소로에 둘러싸인 대지조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김 린 위원

화곡지구 아파트의 현상설계는 금년초 건설부가 제정 공고하여 2월 1일부터 시행한 건축설계경기 운영지침에 의하여 진행되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한다. 심사위원이 사전에 공고되고, 심사과정과 결과도 밝히도록 되어 있음은 앞으로의 현상설계의 질서를 확립하고 건축설계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믿기 때문이다. 공모한 작품이 심사전에 심사위원에게 송달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조치 또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심사 이틀전에 13점의 공모안을 접수하여 설계자의 계획의지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획지의 주위 여건이 쉽사리 머리속에 정리되지 않았다. 심사당일 새벽 계획토지의 현장확인에 나섰다. 도면에서 읽은 것보다 대지의 경사가 심하게 느껴졌다. 입상후보 네점의 마음에 두고 심사에 임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사태에 직면한다. 주최측에서 작성한 지침의 준수여부와 법규의 적합여부에 두점이 저촉된다. 설계경기도 운동경기처럼 경기규칙은 엄수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평등한 경기가 되기 때문이다. 네점의 수상작과 한점의 최우수작을 선정 투표하는 순간에도 결격사유로 탈락한 두점의 작품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현상설계경기의 목적을 참신하고 창의적인 작품개발의 기회로 전제하여, 설계지침에 보다 큰 융통성을 부여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는다.

여홍구 위원

이번 현상설계에는 모두 13작품이 제출되었다. 이들 작품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는 단지의 내부에 공원과 놀이터 등을 배치하고, 도로를 단지외곽으로 돌려서 배치시킨 것과 둘째로는 단지의 내부까지 도로와 주차장을 진입, 배치시킨 것이다.

전반적으로 소형아파트로써 많은 세대를 배치해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원활한 계획이 쉽지 않은 현상설계였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작품이나 우수작은 비교적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을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인다. 특히, 낭선작은 동별로 차도나 주차장이 관통되지 않고 개별적인 중정을 갖고 있도록 계획하여 보차분리와 동별 녹지공간의 확보가 적절히 이루어진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다만, 관리사무소등의 기능이 중앙에 위치한 점은 실시계획에서 재배치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일반주민들의 관리사무소 이용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관리사무소에 인접한 동의 프라이버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로의 선형이 명확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느슨하기 때문에 단지의 안전문제와 용이한 접근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도로의 선형을 보다 명확하게 해줌이 필요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조경에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수목을 결정할 때, 꽃이 피고 낙엽이 지는 것을 주민이 느낄 수 있는 수종을 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금번 심사는 도시개발공사가 심사에 필요한 현장모습을 비디오로 담아 심사에 큰 도움을 준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작품의 수준은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된다.

이필원 위원

우선 매우 어려운 설계조건에서 응모한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특히 당선하신 네분에게 축하드린다. 심사에 참여한 결과, 개인적 소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까다로운 대지조건에 대한 분석과 해법제시에 응모자가 고심을 많이 함으로써 설계에 있어 주위 환경과의 조화와 배려가 중시된 경향이다. 이 점 앞으로 도시환경이나 건축문화 발전에 바람직한 현상이며 불가피한 추세라 하겠다.

둘째, 아파트라는 공동주거단지에서 공용공간에 대한 중요성의 재인식이다. 응모한 대다수에서 중앙광장, 상가, 관리사무소 등을 단지의 중앙 또는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두고 상징적 공간으로서 개성있는 건축형태 제시를 위해 노력한 것이 많이 보였다. 이 점에서 우리 아파트 주거문화가 성숙되어가는 정표로 보이며, 앞으로 계속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이번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아쉬운 점으로서는 설계조건상 기준호수(660호)가 용적률 200% 이상의 대지고도 이용이 불가피하게 만듭으로써, 까다로운 대지조건과 함께 건물 배치상 결정적인 제약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과감하고 창의적인 응모안 몇개는 기준호수 미달과 법규상 문제로 초반 탈락하게 된 것은, 앞으로 좋은 설계안을 얻기 위해서도 좋은 설계조건을 제시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본다.

이호진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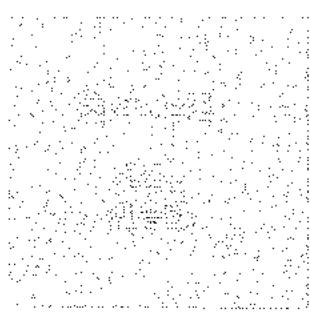
금번 현상설계에 난이한 제한조건으로 인하여(용적률, 고도제한, 부담스러운 세대수, 대지의 경사, 인근의 저층형 주거지역 등) 계획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이를 극복하여 좋은 주거환경을 형성한 훌륭한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그러나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는 심사기준을 설정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므로, 본인은『좋은 주거환경이 되기 위한 계획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심사시의 중점사항으로 고려하였다.

- 1) 열려진 옥외 공간이 얼마나 많이 확보될 수 있었나?
- 2) 막혀지지 않은 연속적인 Open Space가 잘 이뤄진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자, T자, L자에서 오는 폐쇄적인 공간구성이 되어서는 안되었다.
- 3) 그럼으로써 인동간의 Privacy가 확보될 수 있었고,
- 4) 외부로의 시야(View)가 시원하게 열릴 수 있었다.
- 5) 차량 동선과 사람의 동선이 분절될 수 있었나가 중요하며,
- 6) 각 주동들이 골고루 자연환경을 최대한 얻을 수 있어야 한다.(각 세대의 공평성)
- 7) 창의적인 의장성 창출
- 8) 단위세대의 효율적 공간배분 계획
- 9) 안전성에 따른 제반 시설계획 등을 심사의 기준으로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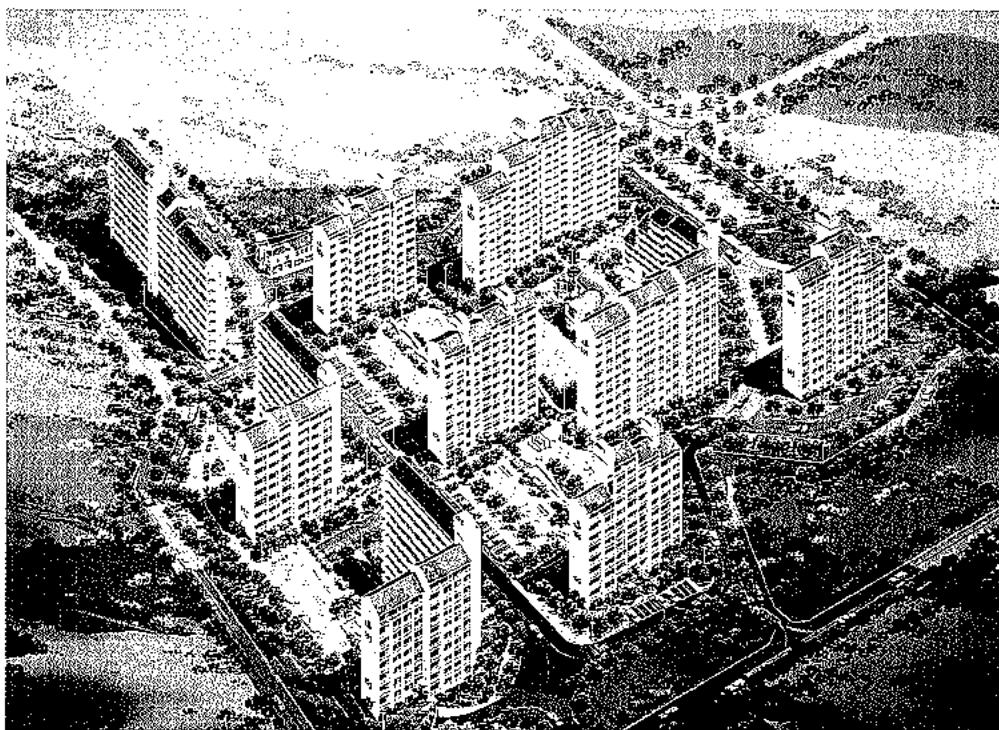
조성룡 위원

당선된 안은 지상의 차량동선과 지하 주차장 출입을 외곽에 설치함으로써 거의 완전한 보차분리를 시도하고 있다. 보행로, 놀이터, 관리동 등의 금융시설이 배치되어 있는 주동 사이도 폐쇄한 외부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배치형식이나 주동의 시스템이 다른 용모안에 비하여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고, 크게 무리한 점도 발견되지 않지만 단위평면과 주거동 계획에서 참신함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점이 아쉽다. 관리동의 위치도 다른 쪽으로 찾아졌으면 하고, 그 규모를 줄여서 기능별로 분산시키는 것이 단지 전체계획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번 설계 경기에서는 부정형의 대지모양과 고도제한, 나소 두리해 보이는 세대수 조건 때문인지 유니크한 안이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서측의 경사가 급한 부분의 처리에서 무리한 안이 많이 발견되고, 일조권, 인동거리, 건물높이를 부분적으로 위반한 안이 많았다. 작년『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활동으로 건설부 설계경기지침이 새로 마련되고『현상설계』에서『설계경기』로 그 명칭부터 바뀐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바람직한 안을 도출해 내려면 그 애말로 불꽃튀는 설계『경기』가 되어야 하고, 공정한 경기를 위하여 합당한『경기 규칙』이 있어야 함은 명백한 일이다. 특히 공동주택과 같은 집단 시설의 설계 경기에서 법규의 준수 여부는 그 결과에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 새로 제정된 지침을 첫번째로 시행한 도시개발공사의 프로젝트들이 회를 거듭함에 따라 좋은 성과를 거두고 그 애말로 훌륭한 도시주거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한다.

현대설계 COMPETITION



위치 / 강서구 화곡동 화곡택시
개발사업지구 내
대지면적 / 24,420.84m²
연면적 / 65,294.01m²
건축면적 / 6,088.87m²
건폐율 / 24.93%
용적률 / 201.91%
도로율 / 16.22%
녹지율 / 32.93%
12평형 / 108세대
15평형 / 161세대
18평형 / 271세대
25.7평형 / 120세대



조감도

실용적이지 못한 대지 형태를 최대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동서 방향으로 심한 경사를 가진 본 대지는 단지내에서나 단지 외부에서도 평온함과 안정감, 단순함을 찾게하여 아래에 부합되는 Simple한 주거동 형태를 추구토록 했다.

획일적이며 일반적인 배치 개념을 배제하여 개성있는 단지를 만들려고 노력하였으며, 각각의 다른 기능을 갖는 육외 공간을 상호 연계 보완하여 공간의 확충과 개방감을 연출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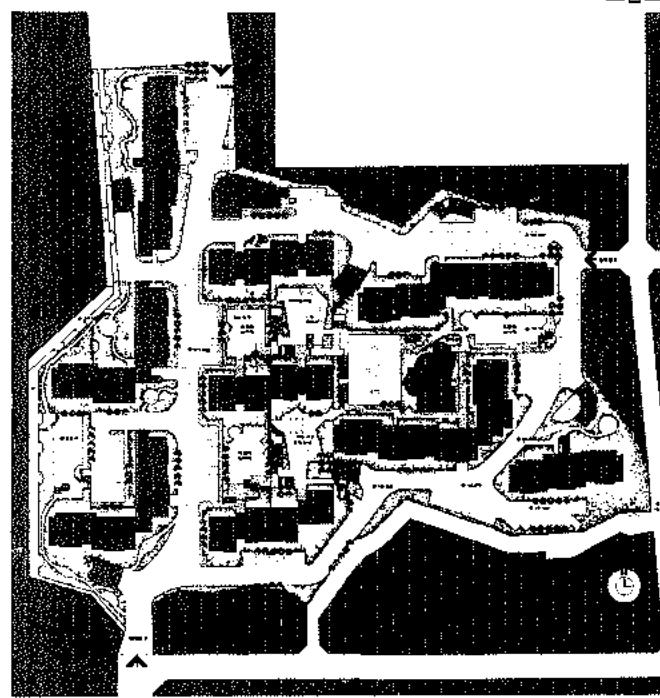
고른 일조량 확보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주거동의 남

향 배치를 고려했으며 부대시설 이용의 편리성 도모를 위한 합리적인 배치를 고려, 전통적인 한국 동네의 개념을 도입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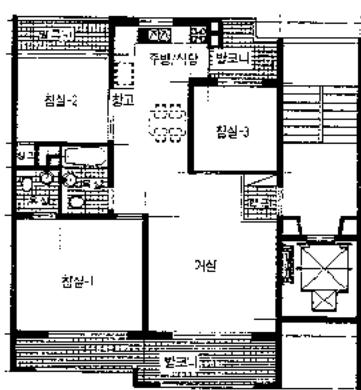
좁은 콘크리트 Box 속 주거생활에서 여유 있는 옥외 Space로 유도하여 정신건강 생활을 풍요롭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주거동 내의 차량 출입을 불가능토록 하여 단지내는 공원화 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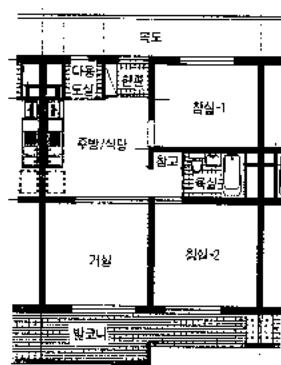
집약된 편의시설을 계획하였으며, 단조로움을 탈피한 다양한 공간을 연출시켜 조형적인 성격을 부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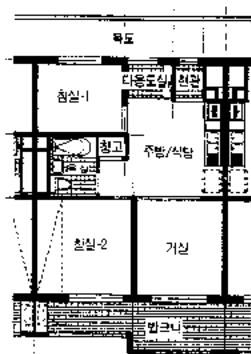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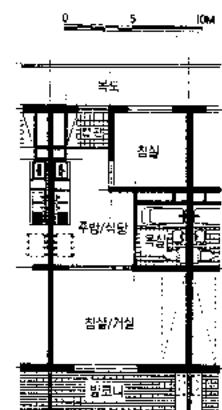
25.7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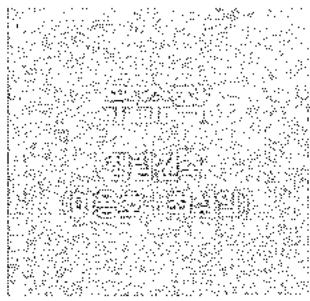
18평형



15평형



12평형



대지면적 / 24,825m²
연면적 / 64,882.97m²
건축면적 / 5,843.81m²
건폐율 / 23.54%
용적률 / 195.63%
도로율 / 22.56%
녹지율 / 33.03%
12평형 / 110세대
15평형 / 160세대
18평형 / 267세대
25.7평형 / 123세대
설계담당 / 손대선+권창용



조감도

• 배치계획

- 대지의 경사를 이용하여 서축 주거동은 저층부를 테라스형태로 계획하였고, 중심에 Open Space를 적극 확보하였다.

- 대지 외곽에 순환도로를 설치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간섭을 피하도록 하였으며, 부대편의 시설은 단지의 결절점에 위치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 보행자 동선 및 주차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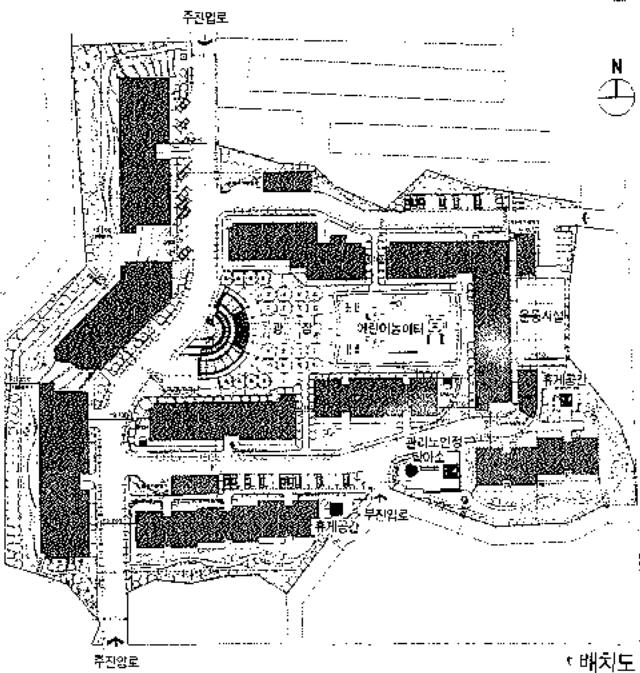
- 주차공간과 서비스 동선의 유기적 연결성을 확보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주 보행자 동선은 Open Space 및 공원, 광장, 휴게공간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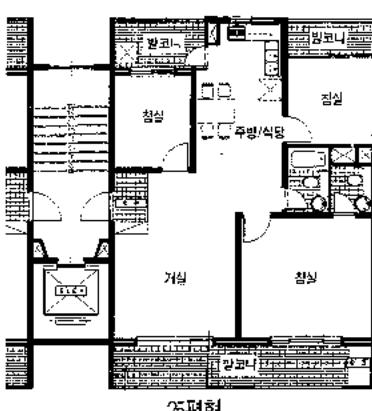
• Open Space 계획

- 녹지면적의 다양화와 상징적 식재를 통한 주거동의 영역성 및 친근감을 부여하였고 주거동과 인접한 지역에 휴게공간을 확보(편의성 노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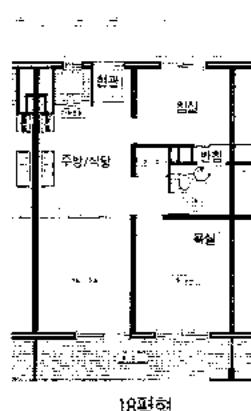
- 건물 후면과 단지 외곽 측지를 소규모 휴식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 배치도



25.7평형



18평형



15평형



12평형

1994년 6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6월분 1천2십만6천7백3십5m²보다 12.4%(1백2십6만9천8백4십2m²) 증가한 1천1백4십7만6천5백7십7m²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6월 누계 5천9백7십6만5천5백7십2m²보다 23.5%(1천4백4만5천3십3m²) 증가한 7천3백8십1만6백5m²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월비

전월 5월분 1천2백2십4만8천2백5십8m²보다 6.3%(7십7만1천6백8십1m²) 감소한 1천1백4십7만6천5백7십7m²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概況(地域別增減狀態)

(연면적기준·전년동일비)

(단위/m²)

구 分	1993년도	1994년도	증 · 감	비율(%)
증가지역	부 산	644,322	1,526,506	882,184 136.9%
	대 구	637,907	679,510	41,603 6.5%
	인 천	318,593	530,258	211,665 66.4%
	광 주	58,249	440,360	382,111 656.0%
	강 원	461,442	496,321	34,879 7.6%
	충 북	277,208	394,973	117,765 42.5%
	충 남	360,688	578,545	217,857 60.4%
	경 남	655,019	761,907	106,888 16.3%
감소지역	제 주	55,571	422,595	367,024 660.5%
	서 울	1,333,941	1,053,317	(280,624) -21.0%
	대 전	397,042	198,993	(198,049) -49.9%
	경 기	3,086,661	2,939,027	(147,634) -4.8%
	전 북	607,582	411,034	(196,548) -32.3%
	전 남	416,492	241,211	(175,281) -42.1%
	경 북	896,018	802,020	(93,998) -10.5%
	합 계	10,206,735	11,476,577	1,269,842 12.6%

全國圖書申告概況(用途別增減狀態)

(연면적기준)

(단위/m²)

용 도 별	5월분	6월분	증 · 감	비율(%)
단 둑 주 택	791,287	829,830	38,543 4.9%	
다 세 대 주 택	289,807	357,128	67,321 23.2%	
연 립 주 택	179,426	137,821	(41,605) -23.2%	
아 파 트	5,827,746	5,071,092	(756,654) -13.0%	
근린생활시설	1,477,657	1,614,862	137,205 9.3%	
종 교 서 설	68,549	100,004	31,455 45.9%	
의 료 시 설	13,314	88,765	75,451 566.7%	
교육연구시설	279,325	367,402	88,077 31.5%	
업 무 시 설	246,617	300,221	53,604 21.7%	
숙박시설	367,934	285,593	(82,341) -22.4%	
공 장	1,125,269	1,176,538	51,269 4.6%	
기 타	1,581,327	1,147,321	(434,006) -27.4%	
계	12,248,258	11,476,577	(771,681) -6.3%	

市·道別前年對比 全國圖書申告概況(6月分)

구분 건축사회	1993년			1994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 울	3,329	3,373	1,333,941	1,405	1,417	1,053,317	(1,924)	(1,956)	(280,624)	-21.0%	
부 산	1,008	1,077	644,322	843	1,111	1,526,506	(165)	34	882,184	136.9%	
대 구	1,279	1,398	637,907	1,494	1,502	679,510	215	104	41,603	6.5%	
인 천	502	511	318,593	480	488	530,258	(22)	(23)	211,665	66.4%	
광 주	232	236	58,249	237	297	440,360	5	61	382,111	656.0%	
대 전	351	361	397,042	344	355	198,993	(7)	(6)	(198,049)	-49.9%	
경 기	1,758	2,512	3,086,661	1,618	2,027	2,939,027	(140)	(485)	(147,634)	-4.8%	
강 원	690	819	461,442	543	668	496,321	(147)	(151)	34,879	7.6%	
충 북	648	788	277,208	524	635	394,973	(124)	(153)	117,765	42.5%	
충 남	457	478	360,688	490	541	578,545	33	63	217,857	60.4%	
전 북	405	553	607,582	331	386	411,034	(206)	(167)	(196,548)	-32.3%	
전 남	490	703	416,492	284	338	241,211	(206)	(365)	(175,281)	-42.1%	
경 북	891	1,324	896,018	743	917	802,020	(148)	(407)	(93,998)	-10.5%	
경 남	1,172	1,462	655,019	924	1,064	761,907	(248)	(398)	106,888	16.3%	
제 주	218	246	55,571	1,001	1,048	422,595	783	802	367,024	660.5%	
합 계	13,430	15,841	10,206,735	11,261	12,794	11,476,577	(2,169)	(3,047)	1,269,842	12.4%	(-=마이너스)

市・道別 前年對比 全國圖書申告概況(1~6月分)

구분	1993년			1994년			대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축사회											
서울	20,926	21,479	9,972,983	10,274	10,660	9,336,240	(10,652)	(10,819)	(636,743)	-6.4%	
부산	5,769	7,522	4,641,507	5,955	6,763	5,590,297	186	(759)	948,790	20.4%	
대구	7,554	8,254	3,899,921	8,261	8,936	4,004,076	707	682	104,155	2.7%	
인천	4,015	4,192	3,145,766	2,897	3,038	4,046,094	(1,118)	(1,154)	900,328	28.6%	
광주	1,866	2,137	1,737,804	2,521	3,093	3,693,098	655	956	1,955,294	112.5%	
대전	2,159	2,358	1,940,982	2,692	2,839	1,676,508	533	481	(267,474)	-13.6%	
경기	11,871	14,700	13,939,859	12,455	14,921	15,729,090	584	221	1,789,231	12.8%	
강원	3,431	3,902	1,734,020	3,324	3,776	2,048,721	(107)	(126)	314,701	18.1%	
충북	4,074	5,100	2,831,740	3,921	4,692	2,761,572	(153)	(408)	(70,168)	-2.5%	
충남	2,925	3,097	2,648,112	3,292	3,476	8,071,702	367	379	5,423,590	204.8%	
전북	2,134	2,621	2,104,291	2,262	2,652	2,716,592	128	31	612,301	29.1%	
전남	2,692	3,611	1,982,758	3,346	4,035	2,125,054	654	424	142,296	7.2%	
경북	4,511	6,364	3,919,859	4,694	6,118	5,045,797	183	(246)	1,125,938	28.7%	
경남	6,390	7,960	4,746,934	6,781	8,025	6,019,918	391	65	1,272,994	26.8%	
제주	1,101	1,343	519,046	2,201	2,342	945,846	1,100	999	426,800	82.2%	
합계	81,418	94,640	59,765,572	74,876	85,366	73,810,605	(6,542)	(9,274)	14,045,033	23.5% (=마이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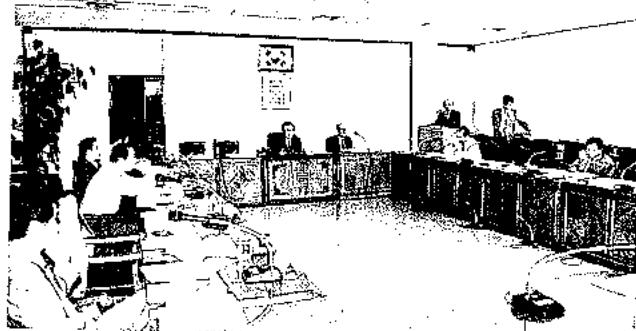
用途別 前年對比 全國圖書申告概況(6月分)

구분	1993년			1994년			대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축사회											
단독주택	5,034	5,103	1,037,731	3,893	3,962	829,830	(1,141)	(1,141)	(207,901)	-20.0%	
다세대주택	493	541	227,646	729	774	357,128	236	233	129,482	56.9%	
연립주택	106	117	163,581	97	106	137,821	(9)	(11)	(25,860)	-15.8%	
아파트	189	943	3,763,885	188	858	5,071,092	(1)	(85)	1,307,207	34.7%	
근린생활시설	4,163	4,316	1,470,443	3,610	3,697	1,614,862	(553)	(619)	144,419	9.8%	
종교시설	125	140	90,905	128	145	100,004	3	5	9,099	10.0%	
의료시설	17	18	23,231	14	25	88,765	(3)	7	65,534	282.1%	
교육연구시설	187	214	436,394	162	189	367,402	(25)	(25)	(68,992)	-15.8%	
업무시설	150	161	520,129	140	146	300,221	(10)	(15)	(219,908)	-42.3%	
숙박시설	105	108	179,054	183	201	285,593	78	93	106,539	59.5%	
공장	884	1,331	1,047,626	889	1,219	1,176,538	5	(112)	128,912	12.3%	
기타	1,977	2,849	1,246,010	1,228	1,472	1,147,321	(749)	(1,377)	(98,689)	-7.9%	
합계	13,430	15,841	10,206,735	11,261	12,794	11,476,577	(2,169)	(3,047)	1,269,842	12.4% (=마이너스)	

用途別 前年對比 全國圖書申告概況(1~6月分)

구분	1993년			1994년			대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축사회											
단독주택	33,547	34,325	6,647,091	26,354	26,863	6,203,184	(7,193)	(7,462)	(443,907)	-6.7%	
다세대주택	7,431	7,997	3,791,555	4,397	4,757	2,210,094	(3,034)	(3,240)	(1,581,461)	-41.7%	
연립주택	381	431	603,106	603	793	1,178,644	222	362	575,538	95.4%	
아파트	1,066	5,318	22,630,102	1,084	4,579	25,078,278	18	(739)	2,448,176	10.8%	
근린생활시설	23,180	24,465	9,015,571	25,792	26,496	11,933,106	2,612	2,031	2,917,535	32.4%	
종교시설	722	865	599,481	848	972	762,101	126	107	162,620	27.1%	
의료시설	92	98	175,778	120	140	309,978	28	42	134,200	76.3%	
교육연구시설	629	812	1,750,673	712	844	2,062,666	83	32	311,993	17.8%	
업무시설	796	861	2,394,496	685	734	2,034,389	(111)	(127)	(360,107)	-15.0%	
숙박시설	730	788	943,667	1,231	1,292	1,591,895	501	504	648,228	68.7%	
공장	4,199	6,719	5,268,099	5,364	8,074	8,161,083	1,165	1,355	2,892,984	54.9%	
기타	8,645	11,961	5,945,953	7,686	9,822	12,285,187	(959)	(2,139)	6,339,234	106.6%	
합계	81,418	94,640	59,765,572	74,876	85,366	73,810,605	(6,542)	(9,274)	14,045,033	23.5% (=마이너스)	

이사회 개최



이사회 광경

본 협회의 주요 당면 과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이사회가 지난 6월 14일(제19회)과 24일(제20회) 그리고 7월 5일(제21회)에 각각 개최되어, 보고사항에 이은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순으로 진행되었다. 각 회별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9회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체계 단일화에 관한 연구 용역 시행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3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 승인의 건
- 준비위원장에 이춘상 이사 를 선임하고, 고문 및 위원 구성은 준비위원장에게 위임함
- 인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제32조는 유보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 회계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제32조 “~세출예산의 1% 이상 10% 이내를 예비비로 ~”로 수정하여 승인하고 나머지는 유보함
- 위임선결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제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음 이사회에 상정하여 개정하기로 하고 유보함
- 직제 및 사무분장 개정(안) 승인의 건
- 대한건축사협회 직제 개편 (안)은 원안대로 승인하

고, 직원 정원 조성(안)은 법제연구실 정원에 대해서만 원안대로 승인하되, “전문 연구위원”을 “책임 연구위원”으로 “연구원”을 “연구위원”으로 수정하여 승인하고, 나머지는 부회장이 검토한 후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유보함

- 신규직원 채용 승인의 건
- 신문과 직원채용을 유보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 94년도 각 위원회 조사연구사업 계획 승인의 건
- 건축설비 위원회 사업계획은 유보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 행정쇄신위원회 국민제안에 대한 대책 협의
- 최대한 우리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협의함

제20회

- 94년도 긴급 임시총회 개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제21회

- 95년도 예산편성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95년도 예산편성위원장에 김인곤 이사, 부위원장에

김규태 이사를 선임하고, 위원선임은 예산편성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기로 함

- 에너지절약형 건축설계 핸드북 발간 승인의 건
- 건축설비위원회의 사업계획으로 에너지절약형 건축설계 핸드북 발간사업을 원안대로 승인함
- 제건축 진단업무 심의관정 방법 작성연구 및 재건축 진단업무 심의위원 보수지급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재건축 진단업무 심의관정 방법 작성연구 및 제건축 진단업무 심의위원 보수지급을 승인하고 아래 따른 예비비(20,888,000원) 사용을 원안대로 승인함
- 94세종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대한 협의
- 본 협회 수상후보자를 한국건축가협회와 논의한 후

이사회에서 추천하기로 협의함

- 회관지분 분배 용역에 대한 협의
- 서울건축사회 회관 전립위원회와 본 협회의 가칭 “회관지분 관리위원회”(위원장—이일운, 위원—이종관, 김인곤, 김택성 이사, 오인준 감사)가 논의하고 용역은 시행하지 않기로 협의함
- 건축사시험 시행예산 조정에 대한 협의
- 다음 이사회에서 결의하기로 협의함
- 특별비상내책위원회 예산 사용에 대한 협의
- 본 협회 회계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처리하되, 특별비상내책위원회와 계속 논의하기로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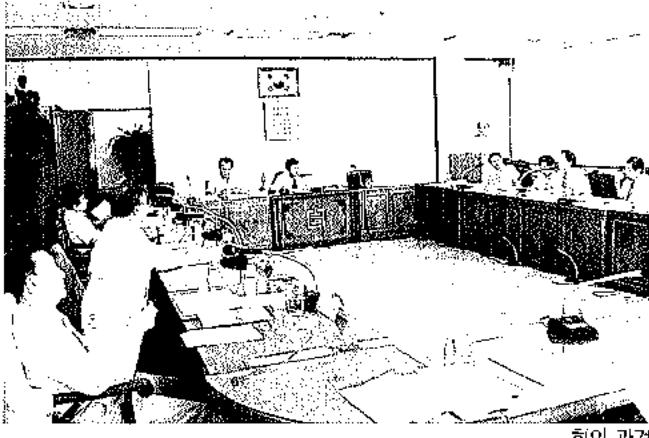
본 협회, 특별비상대책위원회 개최

건설업체의 실체, 감리업 허용요구 절차를 위해 구성된 본 협회의 특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수)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별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에 제1회 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명칭 및 인원을 구성하고 주요 일간신문에 “건축사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게재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지난 6월 29일의 제2회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 위원회 활동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갔다. 또한 지난 7월 8일의 제3회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규칙제정과 함께 자문단, 기획단을 선임하고 설계용역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을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12일에는 제1회 기획단 회의가 열려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자료 제출토록 요구한 설계용역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상·단기 계획의 정체 방향)과 주요 선진국의 건축사제도 및 설계 용역과 시공관련 자료들에 대해 협의하였다. 연이어 오후 2시에는 본 협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해외 설계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연설회의를 열어 우리나라와 각국의 풍토, 문화, 역사, 지역적 여건들을 비교, 검토,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하였다.

이날 협의사항의 세부내용으로는 설계용역업과 시공건설업과의 업무관계, 설계용역업의



회의 광경

해외 진출확대 방안 및 정부의 지원 육성방안, 설계용역의 전문화 방안, 설계의 공공성 확보와 신용보증제도의 확립에 관한 사항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이어 13일에는 해외건축사제도에 관한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선진 각국의 설계용역업과 건설업체와의 관계에 관한 분석

을 통해 설계와 시공이 명확히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지난 7월 15일에 있었던 제4회 위원회에서는 특별비상대책위원회 규칙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부위원장에 부산건축사회회장(전학주)을 선임하였으며, 특별비상대책 특별회계설치 및 예산 편성(안)을 결정하였다.

경북건축사회, 등반대회 개최



기념촬영 광경

경북건축사회(회장 김태웅)는 지난 6월 11일(토) 경주남산에서 등반대회를 가졌다. 등산부회원들이 주축이 된 이날 행

사는 참석자 전원이 정상을 정복한 후 기념촬영을 하는 등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광주건축사회, 간담회 개최



건축3단체
간담회 광경



건축관련 공무원
간담회 광경

또한 지난 6월 22일(수)에는 광주건축사회(5층 회의실)에서 관내 건축관계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협회에서 김덕수 회장 외 18명과 광주직할시 김태호 건설주택국장 외 11명 등 총 31명이 참석하여 협회 업무현황 보고, 광주직할시 및 각구 건축관련 주요업무보고, 회원애로 및 전의사항과 건축업무에 관한 재반사 항을 협의하였다.

'94 건축가 미술전 개최

작년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예총회관 1층 전시장에서 '94건축가미술전이 열렸다. 올해로 세번째인 이번 전시회는 그간 건축사들이 바쁜 업무 속에서도 순수한 열정으로 창작한 작품들

을 선보여 관람객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번 미술전에는 한창진(한정건축)의 27명의 건축가들이 작품을 출품하였다.

「대전도시·건축연구재단」설립



대전지역에서의 건축문화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설립목적으로 한 가칭 「대전도시·건축연구재단」(발기인 임근수)이 지난 7월 18일 대전시 대덕롯데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들어갔다.

앞으로 빛이하게 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국제·개방화 시대를 앞두고 대전지역 건축단체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도시건축 연구재단은 전국 최초의

지역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민간 연구재단이라는데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UR과 지자체에 대비하여 지역차원에서의 경쟁력 확보 및 후진양성, 기술축적 활용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에는 본 협회 오용석 회장이 참석, 축하 인사와 함께 대전지역 활동을 위해 부단한 연구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KENNETH F.BROWN 아·태 문화건축 디자인상 시상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와 하와이대학 공동후원으로 개최되는 Kenneth F.Brown 아·태문화건축 디자인상 시상을 위한 등록 신청을 현재 접수 중에 있다. 현대건축의 현저한 본보기를 인식, 규명함과 아울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민감하고 인도적인 환경의 발전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시상은 아시아태평양 연안 국가 중에서 1970. 1. 1~1994. 1. 1 동안 완성된 모든 실제건축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등록마감일은 1994. 12. 15., 출품마감일은

1995. 2. 15이며, 시상식은 1995. 3. 22~24에 개최될 아시아, 태평양 건축에 관한 제1회 국제심포지엄과 동시에 행해질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분은 아래 주소로 문의 바람.
Leighton Liu, Design Award Program Chair, School of Architecture,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1859 East-West Road, Honolulu Hawaii 96822
Tel : (808)956-8311,
Fax : (808)956-7778

현대산업개발, 「공동주택 학생공모전」 수상작 발표

현대산업개발은 건축공학과 학생들에게 공동주택 개발을 연구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주택 학생공모전을 실시, 수상작을 발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의 46개 대학에서 168개팀이 참가하여 규모면에 있어서나 내용면에 있어 비중있는 공모전으로 자리잡았다.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대상 : 개나리마당, 골목길따

라파란 대문집

우수상 : 도시선언, 깊이있는 집, 주호의 가변에 따

른 놓거와 부분적 암 대가능한 아파트

장려상 : ① 도시형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유니트 개발 계획안

② 현대아파트의 새로운 경향

③ 해운…존재한다.

④ 길, 공터, 모듈, 꿈

⑤ 도심형 초고층 집합주택 개획안

⑥ Identity(가변성)

⑦ 193의 가능성

현실비평연구소, 전시회 개최

현실비평연구소는 오는 9월 9일부터 24일까지 「지역성의 향방과 발견」이라는 주제로 강의와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 현대 건축의 주류와 흐름을 고찰하고, 이 시대의 우수한 건축물에 대한 형상적 의미를 작가의 사고 논리를 통해 표현

하고자 하는 이번 전시회는 “한 마음 갤러리”와 평창동 “토털미술관”에서 각각 개최된다.

참여작가는 다카마츠신, 우시다, 이토오, 펀드라, 이파미준, 최두남, 화제한, 백문기, 우경국, 이범재, 이일훈, 조성봉, 정기용, 최동규 등이다.

'94 Posco 강구조 작품상 발표

한국강구조학회가 주관하고 포항 종합제철주식회사가 후원한 '94 Posco 강구조 작품상 대상에 삼성항공의 사천기계 조립공장(설계 : 삼우설계)이 차지

했다. 이번 행사는 강구조의 창의력을 배양시키고 철강이용 기술을 개발시킴으로써 우수한 강구조물의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